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865-01

2021년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아동 · 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중심으로 -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865-01

2021년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중심으로 -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중심으로 -

2021. 11.

연구수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젠더법학연구소)
연구책임자	최희경(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강정은(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김구슬(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김진(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김희진(국제아동인권센터 前 사무국장/변호사) 박숙란(박숙란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연구보조원	우지우(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원)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체계도	10
3. 연구방법	11
4. 기대효과	12

II.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실태 분석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선행연구	15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통계 현황	19
3.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제 및 정책	31
4.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주요 판결	56
5. 소결	77

III.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분석

1. 조사 설계	81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당사자 조사	83
3.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계 종사자 조사	128
4.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학계 전문가 조사	218
5.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정책 담당자 조사	235
6. 소결	252

IV.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국제법규 및 해외사례

1. 국제법과 국제기준	265
2. 독일의 현황 및 입법례	273
3. 일본의 현황 및 입법례	297
4. 호주의 현황 및 입법례	305
5. 소결	313

V. 법제 및 정책제언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제 개선방안	319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330
3.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의 인권적 구제를 위한 정책제언	338

VI.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예방 안내 책자(안)

1. 디지털 성착취 범죄와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매뉴얼 분석	347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예방 안내 책자(안)	402
3. 참고자료: 교직원 대상 디지털 성폭력·성매매 예방 통합교육 매뉴얼	414

참고문헌 421

별첨

1. 아동·청소년 면접조사 조사지	432
2. 종사자 면접조사 조사지	435
3. 학계 면접조사 조사지	439
4. 관계부처 담당자 조사지	443

표 목 차

〈표 II-1〉 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유형별 분포	20
〈표 II-2〉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발생건수 추이(2010년~2019년)	21
〈표 II-3〉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	22
〈표 II-4〉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피해자 연령별(20세 이하) 발생 현황	22
〈표 II-5〉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령	23
〈표 II-6〉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피해자 지원 현황(2021년 8월 기준) ·	25
〈표 II-7〉 지원센터 2020년 지원 실적	25
〈표 II-8〉 피해자 세부 현황	26
〈표 II-9〉 피해 유형별 현황	26
〈표 II-10〉 성폭력 피해 상담소 (2020년 12월 기준, 167개소)	27
〈표 II-11〉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1년 11월 기준, 18개소)	29
〈표 II-12〉 해바라기센터 (2021년 11월 기준, 39개소)	29
〈표 II-13〉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유관기관의 협력 방법과 내용	30
〈표 III-1〉 개별면접과 초점집단면접 조사 대상	82
〈표 III-2〉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현황	83
〈표 III-3〉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 질문 구성	86
〈표 III-4〉 관계 종사자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129
〈표 III-5〉 관계 종사자 설문 분석	131
〈표 III-6〉 학계전문가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현황	219
〈표 III-7〉 학계전문가 심층면접조사 내용	220
〈표 III-8〉 정책 담당자 서면조사 참여자 현황	236
〈표 III-9〉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240
〈표 III-1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240
〈표 III-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 인지 및 처리절차	241
〈표 III-1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예산 및 인력 현황	247
〈표 III-13〉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예산 및 인력 현황	247
〈표 III-14〉 관계기관 종사자 대상 아동권리 및 성착취 범죄의 특수성에 관한 교육현황	249
〈표 III-15〉 관계기관 종사자 대상 워크숍 등 현황	249
〈표 IV-1〉 일본의 아동포르노 사건 피해 아동 수	298
〈표 VI-1〉 부처별 피해자 지원 내용 (2021년 9월 기준)	412

그림 목 차

〈그림 II-1〉 성범죄 유형별 피해아동청소년	24
〈그림 IV-1〉 2011년-2020년 일본의 아동 성착취 현황	297
〈그림 IV-2〉 2019년 아동포르노 피해양태별 현황	298
〈그림 IV-3〉 호주의 아동성착취 신고 현황 (2013년~2018년)	306
〈그림 IV-4〉 2019년~2020년 연령별 사이버불링 신고 건수	311
〈그림 VI-1〉 분석기준 항목	350

연구요약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1) 가속화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실태 인식 필요

- 최근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연령도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연령대는 13~15세였다.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2017년도에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성매수의 70%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성착취물(음란물) 제작 등의 범죄는 39.7%에 이르렀다.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매수 알선 범죄의 91.4%가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 대비 5.9%p 증가하였다.
- 또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특성을 살펴보면, 3,859명의 피해자 중 여자 아동·청소년이 94.5%(3,646명)였으며, 2019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1,936명 중 여성은 1,695명(87.6%), 남성은 241명(12.4%)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실태를 유추할 수 있다. 2020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은 2019년의 1.7배로서 피해자 4,973명을 지원했으며 여성은 4,047명, 남성은 926명이고 지원 유형은 삭제지원(93%), 상담지원(6.7%), 수사·법률지원연계(0.3%) 등이다.

- 2019년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사건과 더불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드러나며, 우리 사회는 디지털을 매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에 경악할 수 밖에 없었다. 각 범죄의 상당수 피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이는 그루밍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아동·청소년은 특히 취약한 대상이며, 디지털을 매개한 성착취물은 쉽게 재생산되고 확산되는 결과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보호를 요청하기 어려운 실태를 나타내는 결과이다.
- COVID-19로 인한 디지털 기기 활용도가 높아지며 디지털 성착취 범죄 위험이 더욱 우려되는 실태이다. COVID-19의 대유행은 온라인 등에서 각종 성착취의 위험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유엔 또한 COVID-19가 특히 여성아동과 여성에 취약하며, 아동들이 온라인 등에서 학대, 폭력, 착취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COVID-19 상황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각종 성착취에 대한 모니터링은 힘들어지고, 각종 성착취 행위가 더욱 음지로 숨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므로 피해가 지속되고,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cpat International은 2018년 한국의 아동 성착취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 아동은 소비주의와 금전에 대한 압박을 받으며, 이는 아동들을 성매매와 온라인 성착취에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은 성인에 의해 제작되기도 하지만, 첨단기술에 익숙한 한국 아동들이 스스로 촬영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은 아동 성착취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의 근원이자 전송지 또는 목적지이다.”라고 평가하였다.
- 성착취범죄 피해아동·청소년 중 80% 가량이 욕설, 폭행, 폭로 협박 및 동영상 촬영 등 성착취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가 파악한 피해 유형은 유포 피해가 1,001건(29.7%), 불법촬영이 875건(26.0%), 유포불안이 414건(12.3%)으로 2차, 3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특별히 높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성을 알 수 있다.

- 이처럼 성착취 피해·가해자를 밝히고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착취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은 불안, 우울, 충동, 폭력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문제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성착취로 인해 그 심각성이 더욱 드러나고 있다.
- 따라서 이처럼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디지털 범죄의 실태를 알고, 피해아동·청소년이 마주하는 단계별 어려움을 파악하며,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범죄 예방과 범죄 발생 이후 신속한 보호조치를 아우르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연구가 필요하다.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아우르는 법·제도 개선 필요

-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가능성을 인식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성범죄자들이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을 만나고 유혹(그루밍)하거나, 실시간 비디오 스트리밍을 통한 온라인 아동 성학대를 보거나 참여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어냈다. 현재까지 알려진 디지털기술매개 성범죄는 딥페이크, 섹스팅, 불법촬영, 메신저 대화방 성희롱, Sextortion(“Sexual” and “Extortion”)등이 있으며, 잘 갖춰진 한국의 네트워크망을 활용한 디지털매개 성범죄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디지털 접근가능성과 디지털 문해력이 상당히 높은 반면, 성별화된 성문화와 성차별 인식 수준은 변화가 더디며, 사회 인식과 법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변이되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종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아동·청소년이 어린 연령부터 성매매와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 주요 국가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사건 특성을 반영한 구제방안을 시행 중인데, 대표적으로 영국의 경우, 국가범죄수사국 산하 온라인 아동 성착취 및 학대 보호센터를 통해 디지털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사건에 대한

신고, 조사, 분석, 전문가 개입을 전담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며, 호주의 경우 통신미디어청 산하 인터넷 안전국에서 성착취 이미지가 업로드 된 웹사이트에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강력히 부여하고 신속 삭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따라서 국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와 관련된 법적·행정적 변화를 이 해하고, 법·제도적 공백과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3) 디지털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 필요

- 대한민국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하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2019년 10월 협약 이행에 관한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 의를 받았다. 위원회는 “아동폭력”에 대한 포괄적 전략 수립 및 전문성 확보에 대한 권고를 하였다.
- 즉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는 아동에 대한 ‘폭력’의 한 유형으로 아동학대 대응 정책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온라인 폭력을 포함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와 발굴이 현저히 적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 디지털 성착취를 포함한 모든 아동 폭력에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과 전략이 부재한 점, 전문성 있는 관계 종사자가 부족한 점을 우려하며, 모든 아동에 대한 폭력을 아우르는 국가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고, 문제의 경향을 확인하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것, 이를 통해 모든 형태의 아동 폭력을 방지, 근절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을 수립할 것, 전문가 양성 및 관계종사자와 대중의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포함한 아동 폭력과 아동학대 사 건을 수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할 것, 효용성 있는 법제도 이행을 위한 충분 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 모든 형태의 성착취 및 성학대로부터 보호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 조치를 권고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형태의 아동 폭력을 금지한 제19조 와 별도로 제34조를 통해 모든 형태의 성착취와 성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범죄는 아동

폭력 중에서도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며, 성별에 따른 범죄피해가 크고, 성착취 피해 범죄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장기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인식한 것이다.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성폭력과 성학대가 만연한 한국의 실태를 지적하며, 특히 13세를 기준으로 하는 연령 이상의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 무엇보다 성착취 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을 범죄자로 취급하며 그들에 대한 사법적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우려하면서, 모든 형태의 성착취 범죄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온라인 그루밍’을 법상 정의하고 형사범죄로 규율할 것,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할 것,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을 폐지할 것, 나아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신고를 두려울 수 있는 아동 친화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구체적으로 권고하였다.
-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대해 권고하였다. 국제사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가 국내법 관할을 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를 별도로 채택하여 그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 한국 또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2008년 제1차 국가보고서 제출에 따른 심의 이후, 협약 이행 정기보고서에 선택의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있다. 그 결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2008년 최종견해 이후로도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정보가 불충분한 점을 반복하여 지적하였고, 선택의정서가 정의하는 모든 아동 성착취범죄를 국내 형사법이 완전히 포괄하도록 관련 법제 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4)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예방과 피해구제방안 등을 위한 논의 필요

- 디지털 성착취 범죄 예방을 위한 공적·사적 영역의 책임을 이해하고, 민관협력

과 국제협력을 통해 반복되는 피해에 대처하여야 한다. 특정 사건을 계기로 일부 법제가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전면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한 충실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 아동권리 관점에서 신분위장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지침 또는 사법경찰관의 아동인권 감수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반 여건은 부재한 실정이다. 피해가 발생한 직후, 피해아동·청소년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에 대한 논의도 부족한 결과, 아동·청소년은 성착취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 또한 개정 내용이 온라인(디지털)에서 일어나는 행위태양과 처벌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어, 온라인 환경을 매개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착취 범죄까지 아우르는 제도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삭제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개정된 법률이 실제 현장에서 입법취지에 맞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 무엇보다 예방조치 수립과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 전반에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아동권리 기반 접근을 실천하여야 한다. 일련의 법 개정 과정에서 아동의 목소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는 아동 성착취 문제와 같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 아동집단의 견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COVID-19 상황으로 인해 발달한 온라인 환경은 아동의 참여를 강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중요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입법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이 접근할 수 있고, 아동의 의견이 고루 청취되고 정당한 비중을 부여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자원과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의견 청취와 관련해서 이번 연구에서는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예방 안내 책자(안) 개발을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보완해 보고자 한다.
- 관련 대책 전반에 아동·청소년 중심적 관점이 결여되어, 아동·청소년이 범죄피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고, 그

과정 전반을 조력하며, 그와 함께 범죄에 엄중히 답하는 입법·사법·행정의 유기적인 연계가 배제된 문제도 짚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디지털 매체 운영주체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함께 논의되지 않고 있다.

- 개인 간 문제를 넘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예방을 위한 사회 전반의 능동적인 역할을 촉구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라는 행위태양의 범죄를 국내법이 포괄하도록 개선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속한 구제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대한민국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마련되어야 한다.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예방을 위한 눈높이에 맞춘 안내 책자 개발이 필요하다.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 발간자료 등의 현황을 검토·분석하여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성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책자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현황, 피해특성 및 피해발생 과정을 분석하고 관련 법제 및 판결문 등을 검토·분석하며, 해외 우수 사례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피해자 및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등을 통해 나타난 다양한 전문의견을 반영하여 디지털 성착취 피해예방 및 인권적 구제, 추진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제인권규범을 바탕으로 아동 성착취, 특히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개념과 피해현황, 피해발생과정, 피해특성 등에 대해 검토·분석한다.
- 둘째,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착취 관련 국내 법제, 주요 판결문 등을 검토·분석하고 해외 주요국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제 등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셋째, 아동·청소년 관련 법제 관계종사자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착취에 따른 피해 현황을 파악한다.
- 넷째, 2019년 제5·6차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를 이행하며, 아동·청소년

년의 디지털 성착취 피해 예방 및 수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국내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아동·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 성착취 관련 안내자료(안)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1) 문헌 연구 및 관련 법령, 판결례 분석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와 관련된 연구보고서, 논문, 도서 등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분석한다.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국내·외 법률, 지침 등 관련 법규, 정책, 국제인권기준, 주요 판결례 등을 검토·분석한다.

2) 관련 통계 분석

-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다.
- 각종 연구보고서 등 관련 통계 등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실태 및 특성을 검토·분석한다.

3) 사전 정책회의를 통한 면접조사 질문지 및 통계 설문지 개발

- 심층면접질문지 개발을 위해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 관련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사전 정책회의를 실시한다.
- 면접질문지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실태 및 특성 파악, 수사방법 등에서의 문제점, 피해발생과정, 피해현황,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 법제 및 정책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질문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4) 심층면접 및 초점핵심집단 면접(FGI - Focus Group Interview)

-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성착취에 대한 정량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당사자 15명, 관계 종사자[법원, 수사기관(경찰, 검사), 변호사, 유관기관 종사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시민단체 활동가 등)] 20명, 정부부처 업무 담당자(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10명, 학계전문가 5명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초점집단면접(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를 실시한다.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대응 부처 종합대책이 새롭게 마련되고 있는 시점을 고려하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실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범부처 대상 FGI를 실시한다.

5)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단계별로 연구진행에 대해 현장 및 학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한다.
- 심층면접과 초점핵심면접 등에서 파악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예방과 구제방안, 추진체계 구축 등에 대한 법제 및 정책개선안을 도출한다.

3. 기대효과

- 첫째,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제 정비 및 정책개선 관련 연구에 기여한다.
- 둘째,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주요 판결례 분석에 기여한다.
- 셋째,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실태 파악 및 이에 대한 예방책 연구에 기여한다.
- 넷째,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수사상의 문제점 분석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기여한다.
- 다섯째,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에 기여한다.

II.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실태 분석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선행연구 및 통계 현황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선행연구

-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 시작된 것은 캠코더 등을 이용한 동의 없는 개인 성행위 동영상의 촬영 및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그것의 유출과 소비가 이루어진 1990년대 후반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디지털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공론화되고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며, 2017년을 기점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와 관련한 실태 및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 (2)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법제 연구 등, (3)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 수사기법을 모색하는 연구, (4) 해외 주요국가의 관련 법제를 비교 분석하여 현행 국내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연구가 있다.
-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주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와 관련된 해외 각국의 법제를 비교·분석하거나 실태분석을 통해 현행 법제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특정 형태의 성착취에 주목하여 처벌의 확대·강화를 제시하는데 초점을 둔 경우가 많으며,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적 관점에서 총괄적인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사이버공간 확장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화·발전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 및 피해특성에 관한 실태파악 및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해 심층면접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의 분석을 토대로 인권적·성인지적·교육적 관점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예방 및 피해구제, 추진체계구축 등 종합적인 정책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통계 현황

- 대검찰청 2020년 범죄분석에서 2019년 아동성폭력 분석결과를 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아동청소년성폭력 피해자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연령은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대부분이 여성임을 알 수 있다.
- 또한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에서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19.3% 증가하였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2020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이 2019년의 1.7배임을 알 수 있는 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역시 2019년과 2020년에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임을 알 수 있다.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제 및 정책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제

-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특히 디지털성착취와 관련한 법률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범죄를 규율하는 일반법인 「형법」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규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법령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방지, 피해자보호 등을 위한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이 1991년 11월 비준하여 「헌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IV.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국제법규'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형법

- 2020년 5월 「형법」(이하 “형법”)이 개정되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되었고 강간 등의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 의제강간죄 연령 상향으로 인해 16세 미만의 성착취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법적인 피해자로 인정받고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형법은 제287조부터 제296조의2에 이르기까지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를 규율하고 있다. 2013년 4월 개정되면서 포괄적 인신매매죄를 신설한 것이다. 그 외에도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제287조)가 있으며, 성매매와 성적 착취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을 처벌하는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등의 죄(제288조)가 있다. 또한 성매매와 성적 착취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을 처벌하는 인신매매죄(제289조) 또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제290조),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치상죄(제291조),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의 죄(제292조) 등이 있다.
- 앞서 살펴본 형법 규정이 보호하는 대상에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 역시 포함된다. 그러나 2013년 4월 인신매매죄나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또는 유인’하는 구성요건이 추가된 형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현장에서 수사, 기소되어 처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 대법원은 친권자인 모가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후 13개월된 자녀를 주거지에서 데리고 나와 베트남에 입국한 사례에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6. 20.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따른 상대적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라는 관점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을 알선한 자에게는 형법상 인신매매죄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 목적의 약취·유인죄가 적극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기화로 2020년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성매매에 관여한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들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여 사실상 처벌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성매수범죄에 이용당한 모든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분명히 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범죄는 열악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지위를 악용한 성착취라는 관점을 분명히 한 개정으로, 아동 권리를 중심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개정이라 평가할 수 있다.
- 현재 성매수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자발적으로 성매매범죄에 가담했다고 해석하여 범죄자로 의율하고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수사 내지 소년부 송치, 나아가 보호처분을 부과하던 규정은 전부 삭제되었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 2020년 6월에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광고, 소개, 시청, 구입행위까지 처벌대상에 포함하여 처벌범위를 보다 확대하였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예비·음모죄가 신설되었다. 2020년 12월 개정에는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 한편, 2021년 9월 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으로는, 흔히 ‘온라인그루밍’ 규정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 목적 등의 대화 등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제15조의2), ‘신분비공개수사’ 혹은 ‘신분위장수사’ 등 아동·청소년

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규정이 대대적으로 신설되었다(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9까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제13조),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제8조의2)의 법정형 또한 상향되었다.

- 여기서,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에서 정의하는 ‘디지털성범죄’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제11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제15조의2)의 죄와 ②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는 죄(제14조제2항), 그리고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4조제2항의 죄(제14조제3항)를 말한다.

(3) 디지털(온라인) 환경 관련 법령

- 디지털 혹은 온라인 환경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예방하고 불법 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디지털 환경 관련 법령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개정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 2020년 6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이하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책무를 구체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22조의5). 즉,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폐업이나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함께 신설되었다.

나.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여기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이며, “이용자”란 이러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아동·청소년은 ‘이용자’의 지위에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성착취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 때 성착취 관련 불법정보 혹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은 ‘불법정보’로서 누구든지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관련 불법정보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44조의7).
- 정보통신망법은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제41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표시하고(제42조), 광고를 금지하며(제42조의2),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제42조의3),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에 관한 사항(제4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정보통신망법은 2018년 12월 개정(2019년 6월 시행)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제44조의7제3항제1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 또한 신설하였다(제44조의8).
- 이후, 2020년 6월 개정(2020년 12월 시행)시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신설하였다(제44조의9, 제64조의5). 또한,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하고(제47조의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를 대응하도록 하고(제48조의5),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하였다(제48조의6).

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에 대한 안내문 등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방지, 피해자보호 관련 법률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정하는 “성폭력범죄”에는 형법상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제2조제1항제2호). 또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제14조) 또한 의율하고 있다.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 등을 처벌하는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관한 규정도 2020년 3월 신설되었다(제14조의2).
- 2020년 5월 개정 당시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범죄의 법정형을 전반적으로 상향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대상에 포함하고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제14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또한 새롭게 마련되었다(제14조의3).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제3호). 특히, 불법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7조의3). 이에 근거하여 설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경우 주로 피해영상을 삭제하는 것을 지원하고, 수사 및 기타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지원을 ‘연계’하는 것일 뿐, 직접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지원 등 법률지원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2)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관련 정책 현황

(1)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2017년 9월)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은 불법촬영을 수단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영상물 유포 등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인식하며, 디지털 성범죄 전 과정에 걸쳐 총 22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한 범정부 종합대책이다.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2018년 4월)

- 2018년 4월 30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소송지원, 사후모니터링(점검) 등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3) 디지털 성착취 범죄 근절과 피해 구제를 위한 범정부 협력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중요성을 감안하며, 2018년 10월부터 종전의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주재 여가부 차관)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와 통합돼 여성가족부장관 주재로 격상되었다.

(4)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대상 성매매 집중단속 실시 (2019년 2월)

- 2019년 2월 7일, 여성가족부는 2019년도 여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점검·단속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성매매 등 여성폭력 현장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하고 맞춤형 피해보호지원을 통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5) 위기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 강화

- 2020년 4월,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통계청·경찰청 청장, 중소기업 ombudsman 참석)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하였다.

(6)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전담센터 운영

- 2021년 1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이하 특화상담소) 운영이 시작되었다(경남 1366, 경북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대구성폭력피해상담소, 부산성폭력피해상담소, 전북성폭력피해상담소, 제주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충남1366, 이상 전국 7개소).

3)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등

(1)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2016)

- 성착취범죄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은 가정에서 탈출, 즉 ‘가출’하여 가정 밖 청소년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가출’을 지위비행으로 보아,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 중 가출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소위 ‘우범소년’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7)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김삼화의원, 남인순의원이 각 2017. 2., 2016. 8. 대표발의한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였다. 주요 골자는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여 이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할 것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전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3) 국회 계류 중인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019)

- 2019년에는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성명 발표도 있었다.
- 이 성명은 2017년 7월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여 이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정부의 입장에 문제제기하며 국회의 전향적인 역할을 요구한 것이다.

3.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주요 판결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의미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 (구)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규정하였으나,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항 제5호의 ‘-중략-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이하생략-’규정으로 전부 개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되기 전부터 ‘명백하게’라는 해석을 덧붙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좁게 해석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해석은 청소년성보호법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전면 개정때 ‘명백하게’라는 규정을 넣어 더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포섭되는 범위가 더 엄격해졌다고 할 것이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502 판결)

- 위 판결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고합162판결로 사실관계는 ‘성기 노출 및 자위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한 주체는 피고인이라는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필름 또는 동영상 역시 모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부근에서 그들 몰래 본인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거나 또는 자위 행위를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1심 판결에서 ‘아동·청소년등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제작한 필름 또는 동영상이 위 법률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규정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문상에는 “아동·청소년 등이”라는 내용은 없으나,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등이 제 4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다.

(3)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도 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 등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 위 판결은 음란물제작을 처벌하는 이유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또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한다.
- 이에 현재 문제되는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개인방송에 있어서도 촬영하여 재생 가능한 형태로 될 때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것이다.

(4)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이미 성매매의사 가지고 있었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는 판결(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 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위의 대법원 판결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이미 성매매의사를 가지고 있던 청소년에 대해서도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으로써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의 인정 범위를 넓혔다고 할 것이다.

(5)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 17733 판결)

- 위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나체나 속옷만 입은 상태가 되게 하여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거나,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자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였던 사안’에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으로,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았을 때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 위 사안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들의 신체를 이용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그 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6)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에 따라 취득한 추가자료들과 이에 기초하여 취득한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320, 2019전노22(병합) 판결)

- 위 판결은 수사기관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범행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긴급압수한 뒤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받은 후 디지털증거분석에 따라 취득한 자료들 중 추가자료들에 의해 이 사건 각 추가범행 외에도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의 증거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한 것이다. 이에 위 판결은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에 따라 나온 추가자료들에 의해 추가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한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할 것이다.

(7) 휴대폰 영상통화를 통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구체적인 판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1.11.11.선고 2011고합116 판결)

- 위 판결은 아동·청소년에 대상 디지털 성착취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 바, 휴대폰 영상통화를 통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성립 및 휴대폰으로 전송되어 온 영상통화 영상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이 성립되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8) 여성 청소년 6명과 함께 생활하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청소년들에게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을 인정한 사안

-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2021도51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내면서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 7. 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이 여성 청소년 6명과 함께 생활하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위 청소년들에게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을 유죄로 인정 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5129 판결)’이라고 하고 있다.
- 위 사건의 1심 판결(울산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20고합73판결) 범죄 사실에서는 ‘피고인 1이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에서 성매수남 역할을 하면서 미성년 여성을 만나 성행위를 한 후 피고인 2, 3, 4를 불러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한다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거나, 피고인 2, 3, 4가 성행위를 하는 현장을 갑자기 덮쳐 경찰에 제보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

을 위협하면서 ‘혼자서 성매매를 하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닥칠 수 있지만 피고 인들과 함께 성매매를 하면 안전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인하는 방식으로 일명 “조건사냥(성매매 여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위 사건은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건사냥 관련하여 성매수, 공동공갈,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합숙소 운영관련하여 알선영업행위, 성매매강요등, 탈출성매매여성추적 관련하여 공동감금, 공동공갈까지 이루어져 조직적으로 피해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성착취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이는 스마트폰채팅에 플리케이션으로 피해아동청소년들을 유인 성매수, 공동공갈, 합숙으로 이어지고, 이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선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빠져나온 피해아동청소년을 불러내 감금까지 이루어지는 전형적이고 잔혹한 디지털성착취행위라고 할 것이다.

4. 시사점

- 대검찰청 2020년 범죄분석에서 2019년 아동성폭력 분석결과를 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연령은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대부분이 여성임을 알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에서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19.3% 증가하였으며,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의 2020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이 2019년의 1.7배임을 알 수 있는 바,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역시 2019년과 2020년에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임을 알 수 있다.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제에 있어 특히 2020년 4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성매매에 관여한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들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여 사실상 처벌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성매수범죄에 이용당한 모든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분명히 하였던 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범죄는 열악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지위를 악용한 성착취라는 관점을 분명히

한 개정으로, 아동 권리를 중심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개정이라 평가할 수 있다.

- 2020년 6월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광고, 소개, 시청, 구입행위까지 처벌대상에 포함하여 처벌범위를 보다 확대한 점, 2021년 9월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개정사항으로는, 흔히 ‘온라인그루밍’ 규정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 목적 등의 대화 등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제15조의2), ‘신분비공개수사’ 혹은 ‘신분위장수사’ 등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규정이 대대적으로 신설된 점(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9까지), 2020년 6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책무를 구체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된 점, 2020년 6월 개정(2020년 12월 시행) 정보통신망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신설된 점(제44조의9, 제64조의5),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하고(제47조의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를 대응하도록 하고(제48조의5),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48조의6)을 새로 마련한 점 등을 보면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이나 수사기법 관련 법률이 대대적으로 보강된 것을 알 수 있다.
-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으로 불법촬영을 수단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영상물 유포 등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인식하며, 디지털 성범죄 전 과정에 걸쳐 총 22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한 범정부 종합대책, 2018년 4월 30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 삭제지원, 수사 지원, 소송지원, 사후모니터링(점검) 등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 2018년 10월부터 종전의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주재 여가부 차관)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와 통합, 2019년 2월 7일,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점검·단속 기본계획을 마련, 2020년 4월,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통계청·경찰청 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참석)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 2021년 1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이하 특화상담소) 운영이 시작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다양하고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20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7), 국회 계류 중인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019)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중심에 둔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죄 예방과 피해구제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와 함께 이들의 삶을 지지하는 지역사회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한 방향성 제시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판례에서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음란물의 내용과 함께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 및 제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2013도12607판결)라고 하여 좁게 해석하는 한계가 있기는 하나,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2018도9340판결)한다고 하고 있으며,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

태로도 범할 수 있다(2016도177733판결)고 하여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처벌범위를 넓히는 판시 또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건사냥 관련하여 성매수, 공동공갈,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합숙소 운영관련하여 알선영업행위, 성매매강요등, 탈출성매매여성추적 관련하여 공동감금, 공동공갈까지 이루어져 조직적으로 스마트폰채팅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아동·청소년들을 유인 성매수, 공동공갈, 합숙으로 이어지고, 이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선영업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빠져나온 피해아동·청소년을 불러내 감금까지 이루어지는 전형적이고 잔혹한 디지털성착취행위에 대한 사건에 대해 10년 이상의 형으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짓는 대법원 판시(2021도5129판결)도 유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Ⅲ.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분석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당사자 조사

1) 조사 개요

-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 참여자는 디지털 매체와 환경을 매개로 성착취 범죄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피해 당시 청소년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면서 현재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 특성상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며, 지속적인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연령까지를 조사 대상으로 섭외한 것이다.
-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은 모두 여성으로, 연령은 만 14세부터 만 22세였다. 참여자의 거주지역은 서울, 인천, 대전, 전북 등이었고,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경험한 지역과 현재 거주지역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다만, 참여자 대부분이 가정해체와 학대 등으로 탈가정 상황을 경험한 배경과 물리적 공간에 한정되지 않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범죄가 발생한 지역은 본 연구보고서에 따로 적시하지 않았다. 또한, 참여자 모두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성착취 관련 지원기관과 계속하여 연계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이에 지원 내용의 장점과 보완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심층면접조사는 2021년 6월부터 2021년 9월 중순까지 진행하였으며, 참여자는 전국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청소년정보보호법 제47조의2), 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제9조, 제10조)과 성매매피해상담소(제17조) 등의 추천을 받았다. 그리고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추천을 받았다. 가능한 경우, 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을 통해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사람들을 소개받아 조사하는 “눈덩이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 본 연구의 모든 심층면접조사에 공통질문으로 반영한 참여자의 기본사항(나이, 성별, 거주지역), 디지털 성착취 범죄 인식, 처벌 및 피해구제와 예방에 대한

질문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이 경험한 피해 현황을 확인하였고,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되 수사 및 재판과 피해자 지원체계라는 공통의 틀을 유지하였다.

2) 조사 결과

(1) 한계

- 첫째,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는 전국 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 가급적 지역별 표본을 구성하려고 하였으나, 제한된 인력과 자원 속에 바쁜 업무가 지속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의 특성상 일부 지역에서만 참여자 섭외가 이루어졌다. 15명의 참여자 중 86.7%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며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지역 격차 등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둘째, 2020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밝힌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여성이 81.4%, 남성이 18.6%였고, 여성 피해자의 46.2%가 10대와 20대였고(전체 여성 피해자 중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는 44.4%), 남성 피해자의 41.7%가 10대와 20대였다(전체 남성 피해자 중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는 39.6%). 그러나 심층면접에 참여한 15명의 아동·청소년은 모두 여성이었고, 조사에서도 특별히 성착취 범죄 피해자의 성별에 대한 언급은 제시되지 않았다.
- 셋째, 최근 2020년 중순부터 2021년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와 관련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과 성폭력방지법 등 다양한 법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법 시행 시점이 얼마 지나지 않은 현재, 심층면접을 통해 개정된 법조항이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되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참여자가 보고한 성착취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나 처벌 규정의 한계 중 일부는 개정된 법으로 해소 가능한 지점도 있었다.

(2) 시사점

- 본 심층면접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 지원과 예방 체계 전반에서 개별 아동·청소년이 느끼고 경험한 내용을 청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법·제도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 참여자들이 사용한 표현방법과 단어 등의 표면적 내용 이면에 자리한 이들의 진정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도 계속하였다. 특별히 심층면접 참여자들의 범죄 피해내용을 상세히 제시한 이유는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일상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맥락상 놓치지 않기 위함이었음을 밝힌다. 참여자들이 보고한 범죄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의존성을 이용하는 범죄 수법을 알 수 있었다.
- 심층면접 결과,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일상에서 흔하게 쓰이는 SNS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라인 같은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오픈채팅방 등에서 악질적인 범죄가 발생하고 지속되고 있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성착취 범죄 피해 연령도 10대 초반으로 낮아지는 경험을 참여자들의 응답에서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성착취 범죄 피해는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에게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성착취 범죄를 성범죄, 성폭력, 성매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으로 구분하지만, 참여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모두 아동·청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발생한 착취적 범죄였으며, 범죄의 유형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로 중첩되어 발생하였다.
- 수사 및 재판 현황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경찰 신고로 이어졌다. 다만, 아동·청소년이 범죄 발생 즉시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성착취 피해자 지원기관과 연계된 경우도 범죄 신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자발적으로 범죄 피해를 신고한 참여자는 15명 중 2명에 불과했다.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자신의 인격적 존엄성과 주체성을 회복하는 데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 구제의 중요한 측면인데, 고소·고발 등으로 범죄 신고에 적극적으로 나아

간 참여자는 많지 않았다. 신고한 경우에도,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아는 참여자도 거의 없었다. 지원기관과 연계된 경우에는 지원기관에서 모니터링 한 결과를 알려주었는데, 피해자 지원체계에서 아동·청소년 당사자를 배제하지 않는 제도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환경(절차와 조사 공간 포함), 비밀이 유지되는 안전한 신고 방법, 수사기관 법원의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역별로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지원기관 확충 등이 준비되어야 하며,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일상유지와 가정환경 지원을 위한 보호자 대상 의무적 상담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사례에서는 보호자에게 알려지길 원치 않으면서도 원칙적으로는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던 참여자들의 응답은 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며, 피해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관점이 변화될 필요를 시사한다.

- 관계기관 종사자의 역량과 전문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들에 대한 성범죄,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이 의무교육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주제에 따른 법령과 제도에 대한 설명 이전에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실천을 도모할 수 있는 실천적인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이는 곧 성착취에 대한 현장과 대중의 인식 변화를 진전시키고, 지원기관을 찾는 피해아동·청소년의 긍정적 변화인자로 기여할 수 있다.
- 또한, 「아동복지법」상 만 18세 미만으로 정의되는 아동,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성보호법 등에 따라 만 24세 이하, 연 19세 미만으로 정의되는 청소년, 그리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부 정책 등이 나뉘어지는 정책의 분절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아동·청소년의 삶의 모습은 이들의 특정 연령이나 이들이 머무르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아동·청소년은 계속적으로 발달하는 연속적 시간에서 경험을 반복하며 나름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간다. 다만, 아동·청소년이 그들이 태어나는 부모와 가정, 지역과 국가를 선택할 수 없듯, 아동·청소년이 마주치는 어떠한 환경에서든 그들의 기본적 권리가 지켜지는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학교와 위클래스,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의 상담 선생님을 각각 만났지만, 가정문제와 성착취 범죄가 따로 다루어졌던 참여자들의 경험은 범죄를 조기에

막아내지 못한 우리 법·제도의 현실이다.

- 무엇보다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의 안정적 시행, 개편된 양형기준을 실천하는 처벌 강화가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며, 나아가 성구매자 대상 함정수사 제언과 기업의 책무성 강화 및 국가의 관리·감독, “성착취 범죄”에 대한 개념 정의 등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아우를 수 있는 형사법령 개정도 계속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계 종사자 조사

1) 조사 개요

- 관계 종사자 면접조사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당사자와 비교해, 성착취 아동·청소년을 위해 일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의 욕구와 경험을 파악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였다.
- 관계 종사자 대상 면접조사에는 직역, 활동지역, 성별, 경력 등을 고려해 총 20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 구성은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i) 먼저 실제 아동·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과 검사,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법률조력을 하는 변호사 그룹을 제시할 수 있다. (ii) 다음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을 상담하고 법률지원 외에도 의료·심리·정서지원 뿐만 아니라 관련 영상물 등을 삭제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관 및 단체 그룹이다. (iii)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성착취에 국한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로 구성했다.
- 관계 종사자는 개별 면접과 초점집단 면접(FGI)을 병행하여 종사업무의 특성과 직무별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관계 종사자 심층면접조사는 2021년 7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약 2개월 15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조사내용은 우선 공통질문으로 성별, 관련 업무 경력 등의 기본사항, 디지털 성착취 범죄 인식, 피해 현황, 처벌과 피해구제, 종사자 교육·훈련(전문성), 유관기관 협력 현황과

한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또한, 관계 종사자를 (i) 수사기관(경찰, 검사) 및 판사, 변호사 그룹과 (ii) 현장지원기관 및 시민단체 그룹 등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질문에 대한 공통의 틀은 ‘수사·재판과 피해자지원체계’로 유지하되, 지역별로 실제 수행하는 업무에 기반해 답변할 수 있도록 문항을 조금 달리 구성하였다. 관계 종사자 설문은 아동·청소년 피해 당사자와 동일하게 구성하되, 아동·청소년 피해 당사자와 달리 관계 종사자에게는, 교육·훈련 현황(전문성), 유관기관 협력 현황과 한계, 보호자와의 관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추가로 질의하였다.

2) 조사 결과

(1) 한계

- 종사자 대상 면접조사의 경우 각 직종별 참여 인원수가 적어 과대대표될 가능성이 있고 모든 직종이 포함되지 못하는 등 참여자들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응답자의 근무 지역의 경우 수도권이 약 75%에 달해 지역별 의견을 고루 청취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다. 종사자 조사는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 등 수사 및 재판 관련 기관, 피해자 지원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분해 진행되었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동보호체계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착취 이슈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범주를 넓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조사는 2021년 7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되었다. 청소년성보호법 ‘온라인 그루밍’ 관련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및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관련 규정이 9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사 기간 당시 관련 규정들이 시행 전이거나 시행 직후였기 때문에 관련 개정 법률의 운영 실태를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자기가 스스로 행하는 업무에 관한 답변이라는 점에서 스스로 겪은 경험 등에 의존하고, 소속 기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향후에는 조사의 객관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 지역

간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상호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조사를 설계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시사점

이하는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 아동·청소년성매매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시민단체 종사자들의 응답을 종합해 조사 설문 항목별로 비교·분석했다.

가. 디지털 성착취 범죄 인식

- 우선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관계 종사자들이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또한 모색해 보고자 했다. 판사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해당하는 죄명이 불분명하다보니, 관련 통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진술했다. 변호사의 경우 현행법상 ‘성착취’에 대한 정의가 부재해, 결국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성착취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 경찰은 호기심이 많고 쉽게 유인되는 등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악용한 범죄라고 답했다. 대신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 성인 가해자와 다른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경우, 과거 성폭력과 성매매, 음란물로 나누어 규율했던 것에서 벗어나, 디지털 환경을 이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일체라고 답한 참여자가 있었다. 반면 성착취라는 용어가 모호하며 성착취와 성매매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도 있었는데, 이 참여자의 경우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착취로 보아야 한다고 답변해 성매수범죄에 이용당한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는 관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 판사의 경우,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개념에 대해 디지털 기기(스마트폰 등)와 SNS, 온라인 등과 같은 ① 디지털 환경, 성매수범죄로 인한 수익을 알선자에게 대부분 착취당하는 ② 착취의 특성, 유혹과 유인 등에 취약한 ③ 아동·청소년

의 특성,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 그 내용을 유포하고 협박, 강요하는 그 ④ 후속 행위 태양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변호사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동의, 자발성 여부를 고려해서는 안 되며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모든 성착취 범죄와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하여 일어나는 범죄를 모두 망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아동·청소년성매매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와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이하 ‘상담소’) 종사자들은 온라인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인식되어서는 안 되며, 현행법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더욱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이 성매매를 성착취로 접근하지 않고 가벼운 범죄로 간주하거나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기기 및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 침해행위’라고 정의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자발성 및 동의에 대해 성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착취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디지털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만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청소년성보호법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성착취 범죄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은 모두 피해자로 의율한다는 관점이 현장에서 이행되지 못하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나. 피해 현황

- 경찰의 경우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진으로 공론화되었을 뿐 이미 이전부터 관련 사건은 존재해왔다고 했으며, 검사 또한 새로 생긴 범죄라기보다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상 죄책감 없이 좀 더 진입이 자유로워진 특징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판사의 경우 범죄를 다른 사람에게 뱉내는 수단, 놀이, 재미 등으로 가볍게 여기는 문제 또한 심각하며, 익명성 등 인터넷 환경에 기반해 확대 재생산이 된다는 점과 상업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경향성을 이야기했다. 변호사는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재생산을 예측할 수 없고 피해가 국외로까지 확산될 수 있어 사실상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원센터와 상담소는 피해자의 연령이 저연령화되는 경향이 발견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한 범죄의 특징상 완전한 삭제는 사실상 불가능해 사례가 계속 누적되는 특징을 언급했다.

- 판사는 피해 유형을 크게 ㉠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 ㉡ 배포와 판매, ㉢ 시청, 소지, ㉣ 디지털 성착취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변호사는 피해자가 피해를 가늠하지 못하는 사이 가해자는 조직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수하여 협박한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가장 흔한 피해유형으로 불법 촬영 및 유포를 꼽았다.
-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대해서는, 종사자들 모두 성인과 달리 쉽게 유혹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더 쉽게 노출하고 일명 ‘그루밍’, 협박에 약한 취약한 특성을 강조했다. 경찰과 검사는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신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더욱 심각하다고 진술했다. 변호사 또한 ‘그루밍’ 상황의 아동·청소년이 ‘일탈계’를 운영한 것에 대한 죄의식 등 본인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유입경로가 되는 매체의 경우, 경찰은 처음에는 일반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SNS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한 다음 유포 등을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한다는 응답이 있었으며, 사실상 모든 매체가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매개 및 유통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유통은 클라우드 등 외국에서 운영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주된 매개라고 답했다. 검사의 경우 일반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오픈채팅과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언급했다. 판사 또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메신저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을 이야기했다.
- 지원센터와 상담소의 경우에도 유입 경로가 되는 매체로는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이 언급되었으나 새로운 시스템이 계속 개발됨에 따라 경로를 한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전통적인 유입 경로인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소셜 네트워크, 오픈 채팅 뿐 아니라 최근에는 유튜브, 클라우드에 기반한 메신저 프로그램부터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에 이르기까지 대화

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온라인 공간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원센터와 상담소는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 역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제시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한 피해가 발생하는 플랫폼이 특징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하며, 최근에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대형 사이트, 커뮤니티에서의 유포 사례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의 성별이 남성인 경우 ‘몸캠 피싱’의 비율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이 성착취가해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사례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가정 내 보호·양육환경이 미흡한 경우 더욱 디지털 성착취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또한 제시했다. 결국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와 같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또한 자라날 가정이 해체되거나 양육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보호시스템에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했는데, 각자의 전문성을 고려해볼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 성착취 범죄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피해 양상에 대해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경찰과 검찰은 공통적으로 오프라인 범죄에서 유포 등 온라인으로 넘어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사는 범죄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이어지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고 진술했다. 변호사 또한 성착취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시민단체의 경우에도 디지털 환경은 어디까지나 매개일 뿐 온라인과 오프라인 범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특징을 제시했다.
- 그 밖에도 지원센터와 상담소는 성구매자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 직업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르게 말하는 등 교묘한 방법을 고안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찰의 경우 피해를 막기 위해 다변화되는 매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 온라인에서 실명제를 강화하는 방안 또한 제안했다.

다. 수사 및 재판 현황

① 사건 인지 경위

- 경찰과 검찰 모두 보호자에 의해 신고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경우 사건이 기관으로 유입되는 경로 또한 학교 등 다양하지만 보호자에 의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시민단체나 유관기관에서 상담을 받다가 종사자와 함께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한 사건에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먼저 발견하기도 한다고 진술했다. 검사는 경우에 따라서 경찰들이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가해자 관련 정보를 알아낸 뒤 사건을 수사하게 되기도 한다고 답했는데, 이와 같이 피해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수사방식은 아동·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삭제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는,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 보호 관점에 집중할 수 있어 현장의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변호사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여전히 피해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지 않는 사례가 확인된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의 성인지각수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지원센터와 상담소 또한 변호사와 같은 의견이었다.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도 경찰이 “대상아동·청소년” 명단을 기관으로 보내는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을 성매매 처벌법상 피의자로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 지위로 조사에 참여했는데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서 피해자의 잘못도 있다는 전제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피해아동·청소년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례를 지적했다.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② 보호자와의 관계

- 경찰과 검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보호자에 관한 정보가 없거나 피해아동·청소년이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수사기관이 연락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진술했다. 지원센터나 상담소

의 경우에는 합의나 경찰 조사 참여 등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의 의사가 다른 경우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고려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 구체적으로 검사는 아동·청소년이 성착취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잘못된 것 같다는 죄책감 때문에 부모에게 혼이 날까 두려워 제대로 진술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보호자가 조사에 동석하지 못할 경우 국선 피해자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학대가해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고, 아동·청소년이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관련 지원기관 종사자가 조사에 동석하도록 하되, 추후 보호자에게 안내한다고 답변했다. 보호자가 성착취 범죄 가해자인 경우 아동·청소년과 분리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동·청소년이 장애를 가진 경우 보호할 시설을 찾지 못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점 또한 지적했다. 즉, 아동·청소년이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보호자가 적절히 개입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지원기관 혹은 국선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변호사 또한 아동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보호자가 조금이라도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잘못이 있다는 인식을 주게 될 경우 아동·청소년이 신고를 꺼리기도 하며, 많은 피해아동·청소년들이 피해사실을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했다. 수사기관이 이러한 상황에도 부모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안내해, 결국 사건이 진행되지 않은 사례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 변호사와 지원센터, 상담소의 경우 오히려 아동·청소년이 적절하게 지원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에 대한 지원 및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보호자 역시 아동·청소년의 피해에 큰 충격을 받아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많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지 알지 못해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2차 피해에 노출시키는 등의 의도와 다른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모가 자녀가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도리어 아동·청소년에게 학대를 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 또한 여러 사례를 통해 지적했다.

③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알 권리

- 전반적으로 관계종사자들은 아동·청소년의 알 권리에 대해 형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이 마주하게 되는 조사와 재판이 어떤 것이고 가해자의 처벌과 나의 피해 구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형사절차 과정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경우 그 선택에 따른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아동·청소년에게 잘 안내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 역할에 관해 고민하는 관계종사자 또한 찾기 어려웠다.
- 지원센터와 상담소 또한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알 권리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진술했다. 오히려 아동·청소년의 곁에 그를 지원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부분을 지원 기관에 모두 떠맡기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원센터와 상담소는 피해자를 대신해 재판 모니터링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 경찰의 경우 보호자의 조사 참여 등을 할 때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먼저 확인하고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진술도 있었다, 하지만 해바라기센터 수사관이 아닌 한 피해자가 직접 소통하지 않으며, 아동·청소년과의 소통과 보호는 수사관의 역할이 아니라는 답변도 있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알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다.
- 검사의 경우 결국 아동·청소년이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고, 아동·청소년이 수사 진행을 원하지 않거나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 아동·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동·청소년에게 진행 중인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것 또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처한 상황에 따라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답했다.
- 판사의 경우 보통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피해아동·청소년의 의견과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으며, 가해자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경우 소년보호재판의 심리 비공개 원칙 등에 따라 처분 결과 또한 피해자에게 안내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④ 수사 방법 등 수사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 경찰과 검사의 경우 디지털 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가해자 특징이 어려운 점 등 수사의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강조되었다. 또한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영장 집행이 어려운 메신저 프로그램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사이버범죄 협약 등 국경을 넘은 국가적 차원의 수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다.
- 경찰의 경우 실명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애플리케이션 사업자 등에 대한 책무가 요청되어야 하며, 일대일 대화 녹음이 불법이 아닌 것과 같이, 일대일 채팅방 또한 대화로 해석해 좀 더 쉽게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제시되었다. 검사 또한 추가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영장 발부 등 선제적인 대응 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 지방청의 경우 사이버와 성폭력을 함께 담당하는 ‘사이버 성폭력 전담수사팀’이 있지만 최전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경우 사이버수사팀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이 나뉘어진 점 또한 확인되었다. 결국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사이버와 성폭력을 함께 수사하는 팀이 경찰서까지 확대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지원센터와 상담소는 사이버 수사 담당 수사관의 경우 성범죄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해, 피해자를 탓하는 등 피해아동·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 사례를 공유하며, 결국 수사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조사를 할 때 국선 피해자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안내하지 않는 경우 또한 발견되었다.
- 경찰은 피해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자책감, 죄책감을 가짐에 따라 수사기관의 연락에 응하지 않거나 보호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을 다그쳐 피해자 스스로 중요한 증거인 애플리케이션 등을 삭제하거나 피해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를 진술하기도 했다. 성범죄에 이용당한 아동·청소년은 모두 피해자라는 관점이 가정과 사회에서 잘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다. 검사는 현행법상 행위태양 중 ‘시청’, ‘소지’와 같은 경우에는 목격자가 없는 한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다는 점 또한 제시했다.
-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경찰의 경우,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으로 수사가 더욱 위축될 수 있으며, 증거로

인정되지 않거나 불능미수 등으로 실제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등 관련 규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규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진술했다. 검사의 경우, 경찰이 위장수사를 하러 들어갔는지 아니면 진짜 범죄를 하러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정당한 목적을 위한 수단 또한 적정해야 하는데 만약 이 수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등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부패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까지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사 참여자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연락하기 위해 피해자를 이용하는 등 피해아동·청소년을 통한 함정수사를 시도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다.

- 변호사의 경우, 특히 경찰과 검사, 판사의 태도는 피해아동·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성인지 감수성과 공감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⑤ 재판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 판사는 피해아동·청소년의 연령이 낮음에도 피고인(가해자)이 범죄사실을 다투는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이 법원에서 증언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매우 어렵고 힘들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으로 법원이 진술분석가, 전문심리위원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 지원센터와 상담소의 경우, 성매수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이 성매수납을 공갈했다는 범죄사실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공유했다. 법원의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범죄자로 취급되거나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⑥ 2차 피해 대응

- 경찰의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의 조사 참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고, 피해자 진술이 기재된 속기록의 열람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검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진술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결국 피해 구제(처벌)로 가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

온라인 환경을 활용한 수사기법이 보완되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판사는 피해아동·청소년의 신분 비공개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의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이기도 한 성착취 증거물에 관한 보관과 열람, 등사에 관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및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아 피해아동·청소년의 목소리 변조 방식 등을 요청했는데 고려되지 않았던 사례 또한 제시했다.

- 지원센터와 상담소는 피해아동·청소년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경우, 피해자 변호인으로부터 2차 가해에 노출되는 상황 또한 제시하며, 이러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활동을 한다고 진술했다. 또한 지원센터와 시민단체 모두 피해아동·청소년이 해바라기센터, 경찰, 성착취 관련 센터 등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반복된 피해 진술을 하는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에 신속하게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검사의 경우 지인 등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등 보다 근본적인 국민의 인식과 사고가 변화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라. 처벌과 피해 구제, 예방

- 경찰의 경우, 피해자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는데, 피해아동·청소년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대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점이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법원에서 선고할 때 초범인 사정이 고려되거나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에 비해 문리적 혹은 법리적 해석에 따라 낮은 형으로 선고될 때의 아쉬움 또한 제시되었다. 좀 더 적극적인 법원의 해석과 법 적용을 요청하고 있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역시 가해자를 처벌할 때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침투하며, 유포 행위 횟수에 관계없이 유포 자체로 피해자가 지속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에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진술했다.
- 검사는 최근 디지털 환경에만 집중하다보니 양형 기준이 온라인만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오프라인에서 유형력으로 벌어지는 범죄 또한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성착취 범죄 또한 함께 양형을 높이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살인죄 등 다른 범죄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 양형이 낮지 않은데 오히려 법정형이 높다보니 법원이 증거를 까다롭게 보게 되면서 입증이 어려워지는 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변호사들은 처벌과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징, ‘그루밍’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기관에게 더욱 전문성이 요청된다는 것이었다.

- 종사자들은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관한 고민 또한 많았다. 경찰의 경우,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특성을 언급했다. 검사는 우연한 호기심 등으로 범죄에 진입했다가 성인과 달리 관련 영상물을 잘 삭제하지 않는 등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하다가 오히려 성인들은 달아나고 아동·청소년이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아동·청소년 개인의 탓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구형하기 어렵다는 문제 또한 진술했다. 변호사와 판사 모두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성인들이 도리어 아동·청소년의 취약성을 악용해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아동·청소년에게 부추기고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지원센터와 상담소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에게 기프티콘 등을 보내고 ‘너네 반에 있는 친구 얼굴 사진을 보내라’와 같이 범죄를 강요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 판사의 경우 가해아동·청소년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인 경우가 있으며, 그 역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성인 가해자와는 달리 봐야하는 지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인 재범 예방과 회복, 사회복귀의 목적, 회복적 사법의 가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범죄의 책임을 아동·청소년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수강명령 처분’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화된 보호처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변호사의 경우, 유포로 인한 추가 피해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그러한 점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피해자가

아동일 때 촬영된 영상이었다고 주장할 때에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피해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인 음란물이라 판단하는 사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등이 제시되었다.

- 일명 ‘온라인 그루밍’ 규정인 청소년보호법 제15조의2에 대해서는 모든 종사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검사의 경우 온라인 공간에서의 ‘그루밍’에 머무른 경우에는 그 단계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직접 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규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좀 더 피해자에게 실효적이고 궁극적인 구제수단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있었다. 검사의 경우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이나 피해자의 심리 치료나 이사 비용 등을 부담시킬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가 디지털 성착취 범죄까지 확대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 ‘예방’과 관련해서는, 모든 종사자들이 공통적으로 ‘교육’을 강조했다. 누구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므로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종사자들이 강조했다.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 개입 혹은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여러 종사자들이 강조했다.
- 경찰은 ‘대중’을 상대로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진술했다. 검사의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러한 범죄를 척결할 수는 없으며 국가와 부모, 학교, 사법기관 등 모두가 함께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해 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결국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문제는 아동·청소년의 문제이며, 아동이 자라나는 가정환경, 아동보호시스템과 같은 구조의 문제를 함께 보아야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판사의 경우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에게 결국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처벌된다는 점에 대해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대중에게 널리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판사는 피해아동·청소년이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는 피해자가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관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 변호사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에 눈을 일찍 뜬 되바라진 아동’이 아닌 ‘위험한 상황에 처한 아동’이라는 인식이 전제되는 것이야말로 예방의 기초라는 것이다. 지원센터와 상담소 또한 전 연령층에게 디지털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고 피해 상황을 잘 알려,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누구에게나 손을 내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마. 피해자 지원체계

① 아동·청소년의 정보접근권

- 경찰의 경우, 다양한 지원내용을 안내하고 있었지만, 보호자가 아닌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안내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아동·청소년에게 적합하고 친화적인 방식과 내용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없었다. 재판 이후 법원에서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는 절차 등이 있는지 또한 확인할 수 없었다. 지원센터와 상담소의 경우, ‘유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유포 차단 등을 위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관련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② 피해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 피해아동·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종사자 모두 한 목소리로 ‘삭제 지원’을 꼽았다. 검사의 경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의 삭제에 이르기 위해서는 기술이 더 발전되어야 한다고 진술했다.
- 모든 종사자들이 언급한 삭제 지원을 하는 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온라인 사이트 폐쇄 등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운영자 등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삭제 권한이 없어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라는 한계,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이 확인이 되지 않는 한 삭

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등 실무상 어려움도 제시했다. 오히려 관련 매체에 ‘경고’할 수 있는 권한이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 주어진다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최근에는 영상물이 아닌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삭제 지원의 대상이 이러한 ‘텍스트’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결국 피해자가 일상에서 회복해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담과 경제적 지원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 또한, 현재 피해자를 위한 지원서비스가 쪼개져 있어,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검사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서비스 공급자 관점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 중심의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 로드맵(roadmap)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각자가 가진 시스템의 강점을 공유하고 상호 보완해 피해자 지원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은 변호사도 지적했는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미 제공되고 있음에도 피해자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없어, 피해자에게 종합적으로 안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또한 피해자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경우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동보호체계나 성폭력지원체계 등에서 보호받지 못해 민간 기관을 찾게 되는 사례를 제시했다. 결국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동보호체계 혹은 성폭력지원체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보호되기 위해서는 통합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경찰의 경우, 갈 곳 없는 피해아동·청소년이 발생할 경우, 보호할 수 있는 기관으로 아동·청소년을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지역적으로 가까운 주변 청소년쉼터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했다. 판사는 공통적으로 피해아동·청소년이 궁극적으로 성착취 범죄로 인한 피해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심리·상담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결국 예산과 인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범죄는 성학대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체계에서도 성학대에 특화된 지원체계가 미흡하다고 답변했다. 아동학대시스템의 개편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찰이 성학대로 판단을 해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게 되는데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성착취와 아동학대 시스템이 분절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바. 종사자 교육·훈련 현황

- 사법기관의 경우, 전담부서가 있더라도 결국 순환 보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훈련에 관한 시스템이 마련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경우 ‘범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아동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추가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검사의 경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잘 마련되어 있는데, 결국 그 교육을 어떻게 ‘제공’하느냐보다 그 교육을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잘 ‘숙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답변도 있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와 같이 특별한 주제에 관한 교육은 제공되지 않는 것 같다고도 했다. 판사는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각 사건마다 달리 판단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결국 교육으로 메울 수 없는 훈련의 영역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변호사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으로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은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되어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도 이러한 점이 제대로 교육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교육에 아동 인권, 아동·청소년의 특수성,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사. 유관기관 협력 현황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형사절차를 넘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하지만 형사절차 관련 기관의 경우, 협력하는 유관기관은 업무절차에 따라 필수적으로 연계되는 기관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검사의 경우 사건의 공정성 등의 문제로 특정 시민단체 등과 협력할 때,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하기도 했다.

- 경찰의 경우 협력기관으로 공통적으로 해바라기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선 피해자 변호사를 언급했다. 다만,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아동보호를 담당하는 구청, 분리보호 이후 아동을 보호할 시설 등을 언급한 경찰 참여자의 경우, 형사단계 이후 상담 등 피해자를 지원하는 체계가 실효적으로 작동되어야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구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검사의 경우 협력기관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센터, 국선 피해자 변호사 등을 언급했는데, 피해자의 욕구와 개별적 특성 등을 고려한 신변보호, 심리 상담을 위해서는 결국 인력과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아쉬움도 발견할 수 있었다.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현재의 상황, 처벌의사, 피해회복 여부 등 필수적으로 살펴야 할 내용이 있는데, 국선 피해자 변호사가 이에 관한 내용을 법원에 잘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소년보호재판을 담당하는 경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유관기관과 소통하고 있었는데, 예산 지원이 열악하다 보니 결국 수감명령 등을 함께 할 기관을 발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 지원센터와 상담소는 수사기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경우, 다른 기관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같은 내용의 피해사실을 여러 번 진술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술했다. 교육청 등과 연계해 학교에서도 성착취피해자를 지원하는 관련 기관에 대해 잘 숙지하고, 피해학생을 발견할 경우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잘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는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수사기관, 정부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었다. 심지어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 사업자와도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민단체는 서로 기관 간 연계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정보 공유를 꺼리거나 경계하기보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일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각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연계,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3.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학계전문가 조사

1) 조사 개요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현황 및 현행법제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 조사의 취지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명확한 개념 및 포섭범위 확인을 통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둘째,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실태 및 현행 법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제도의 개선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형법, 형사정책, 젠더법, 피해자학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고자 하였다.
- 조사 대상은 형법, 형사정책, 피해자학, 젠더법 분야의 전문가들로, 대학 및 국책연구기관, 관련 학회 등에서 활동하는 5명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디지털 성착취 범죄 관련 선행연구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
- 조사방법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COVID-19와 관련한 상황으로 대면접촉이 용이치 않은 경우가 있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일부 전환하여 융통성 있게 진행하였다.

2) 시사점

- 면접조사에 참여한 학계 전문가들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및 이를 계기로 근래에 추진된 일련의 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초적인 법제가 정비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행 법제의 구체

적인 항목과 관련해서는 실효성 및 정당성에 우려를 표하며 개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학계 전문가 FGI 분석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제·정책의 구체적 개선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종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 법제 마련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사이버공간 확장에 따라 범죄의 수단과 방법도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 법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사후 처벌 방식으로 행해지는 입법을 넘어,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초연결 사회의 특성을 이해하여 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한 법·제도를 면밀한 검토 하에 마련하여야 한다. 지금 당장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는 메타버스를 이용한 성착취 유형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다. 여러 통계조사에 의하면 메타버스의 주요 이용자는 10대 여성이며, 메타버스를 이용해 여성인 아동·청소년을 노리는 성착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메타버스를 규제하는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보니, 아동·청소년 대상 메타버스 내 성착취 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메타버스를 포함하여, 끝없이 진화하는 신종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법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불법과 책임에 비례하는 처벌

-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규제의 사각 지역에 있던 광고·소개, 구입·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한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의 엄격한 규제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 아동이 아닌 가상의 아동이 등장하는 표현물에 대해서까지 급격히 상향조정된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아야 한다. 물론 5년 전 헌법재판

소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실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배포 등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법정형이 대폭 상향된 현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충격적인 범죄사건을 계기로 조성된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형벌의 비례성을 도외시킨 채 신속하게 법정형을 상향한 입법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의 경우에도 불법과 책임에 비례하는 처벌이어야 한다.

(3)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 규제 범위의 확대

- 아동이나 청소년을 온라인 대화로 유인해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이 현행 법제에 포함되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범죄에서 그루밍은 피해자들과 신뢰를 형성하여 성적 학대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범죄상황이 외부로 노출될 위험을 낮추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또한 그루밍이 지속되어 이미 성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성적인 의도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단계부터 차단해야 사실상 무한대인 피해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루밍 행위의 처벌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성착취 범죄의 예비단계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그루밍 행위가 반드시 온라인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오프라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그루밍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루밍 성범죄에 대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이를 처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4)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한 수사법제 정비

-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온라인 사이트나 SNS 등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적발이 용이하지 않다. 익명성에 철저히 숨어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약탈하는 가해자들을 찾아내고 처벌하기 위하여 청소년 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수사특례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더하여,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착취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온라인 수색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온라인 수색이란 국가가 타인의 정보기술시스템에 동의 없이 혹은 비밀리에 접근하여 저장된 기록을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며, 쉽게 설명하자면 국가에 의한 해킹행위라고 하겠다. 다만 잠입수사 기법이나 온라인 수색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할 우려를 내포하므로, 그 요건과 절차를 정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5) 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

-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피해 영상물의 삭제 지원이다. 현재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차단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다. 이 지원센터는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2017. 9. 26.)’에 따라 2018년 설치된 이래로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을 위한 기술적인 시스템과 채증·수사 지원, 검색, 추적, 삭제 지원, 유포현황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성폭력상담소 등 다른 피해자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수사·법률·의료 등에 관하여도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자 등이 신고하거나 제보한 불법정보에 대해 심의하고 해당 정보에 대해 직접 삭제를 요구하거나 접속차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엄밀히 살펴보자면, 현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불법정보와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권한이 없고, 피해자의 요청, 신고에 따라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하거나, 경찰청에 채증 자료를 작성하여 제보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된다. 이로 인해 디지털 성착취물의 신속한 삭제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차단조치의 신속성, 효율성,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시스템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6) 기타

- 온라인 매체 등에 익숙하고 인터넷을 통한 활동이 활발한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고 즐기는 잘못된 문화와 관행에 젖어들지 않도록, 안전하고 성평등한 디지털 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초·중·고 학교교육에 편입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업무종사자(예컨대, 교사, 피해아동기관 종사자 등) 및 보호자를 위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을 수행할 기관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 한편, 디지털 성착취의 경우 그 범죄수단의 특성으로 인해 범죄내용과 결과가 중합은 부인할 수 없지만, 종래의 형법원칙을 왜곡할 정도의 과도한 처벌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전통적인 형벌 이외에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새로운 보안처분의 개발 및 도입은 검토될 수는 있다. 예컨대, 재범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팅 애플리케이션, 채팅 사이트의 접속내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한 다든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영상에 접근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조치들을 모색해 볼 수 있다.

4.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정책담당자 조사

1) 조사 개요

- 정부가 추진 중인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대응정책과 관련하여 부처별 이행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정책담당자 10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 조사의 목적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각 부처 정책담당자가 인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의 개념 및 현황을 파악하여 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둘째, 아동·청

소년 디지털 성착취 대응정책과 관련하여 주요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 업무의 내용과 각 부처 간 협업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제도의 개선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정책담당자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제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조사 대상은 경찰청,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담당자 등이다. 조사방법은 정책간담회를 겸한 대면조사를 계획하였으나, COVID-19 상황으로 대면접촉이 용이치 않아 서면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서면질문지는 각 부처별 업무현황에 따라 별도로 작성·제공하였으며, 충분한 검토 및 내부 논의를 거쳐 답변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여유있게 설정하였다.

2) 시사점

- 서면조사에 참여한 주요부처 정책 담당자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범죄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오프라인의 경계없이 다양한 양상으로 확산되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및 이를 계기로 근래에 추진된 일련의 법·제도 개선 내용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을 부처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을 보내주었다.
- 그러나, 성착취범죄의 피해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이나 그들을 지원하는 관계종사자들의 증언과는 달리, 정책담당자들은 현행의 시스템 안에서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가 분절적으로 중첩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의 보호라고 하는 국가적 책무를 이행하는 각 부처에는 형식적으로만 확인되는 연계·협업을 넘어 실질적으로 피해당사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제도 안에서 큰 과오없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이 아닌가 아쉬움이 남는다.

- 또한, 적극적인 법제 개선 논의와 관련하여서도 정책담당자들은 법적 근거 및 현실적 제약 등을 이유로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의 권리 인식에 기반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IV.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국제법규 및 해외사례

-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아동이 포함된 성착취물이 무작위로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착취 문제는 한 국가의 사회적 문제가 아닌, 국제적 접근이 필요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가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 성착취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조약 및 지침을 채택하여 국제적인 공조의 노력을 진행해 왔으며 해외 다수 국가들은 형법 등의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아동 성착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짚어보며 아동권리협약 등 협약의 당사국으로서의 한국의 의무에 대해 살펴보고, 독일, 일본, 호주 등 해외의 국가들은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 협약이자 헌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아동이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모든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 규제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여 형사절차 진행에 있어 당사국의 의무 등 보다 구체적인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2021년에는 다양한 아동 폭력 중 특히 온라인 상에서의 아동 성착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제25호」를 채택하였다. 이 일반논평은 특히 당사국에 “사이버 공격, 디지털 기술로 촉진된 온라인 성착취 및 학대 등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이와 관련된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며 피해 아동에게 구제와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디지털 기술로 촉진되는 폭력과 성착취 및 학대는 가족과 친구, 청소년의 경우 연인처럼 아동이 신뢰한 대상에 의해 자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과 규제 및 제도를 정기적으로 검토, 갱신하고 집행하는 등 입법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은 협약에 대한 일종의 유권해석으로, 당사국에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문서이다.

-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외에도 국제사회에서는 팔레르모 의정서를 통해 아동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를 포함한 성착취 행위를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성매매가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인신매매의 성격을 띠며 조직범죄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국제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0년부터 아동의 매매와 아동 성착취에 대해 특별절차를 마련하여 독립적 전문가인 특별보고관을 임명, 아동 성착취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새로운 동향을 파악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평가 후 권고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 특별보고관은 2015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한 아동의 매매와 성착취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유엔 가입국이 아동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을 권고하여 한국 역시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유럽 집행위원회의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온라인 상에서의 아동학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아동 성착취 자료의 2/3 이상이 유럽에서 제작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유럽연합은 2007년 「성착취 및 성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 유럽 평의회 협약」, 그리고 2011년 「아동 성학대, 성착취 및 포르노그래피 방지에 관한 지침(2011/93/EU)」을 제정하여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시급히 정책을 마련하여 법률 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아동의 성학대 및 착취 예방, 피해자 보호, 국내 및 국제 공조와 협력 증진,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확립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 유럽의 국가 중 특히 독일은 한국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비교될 만한 충격적인 아동 성착취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으며, 이후 온라인 상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아동 성학대 및 그루밍 행위의 처벌, 잠입수사의 절차 및 허용 요건과 관련하여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였다. 이는 동일한 제도를 골자로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을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한국의 현 상황에서 시사

점이 크다. 그루밍 행위의 처벌과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한 그루밍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성보호법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전화 통화 또는 서면을 이용한 그루밍 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루밍 행위가 반드시 온라인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역시 ‘온라인 그루밍 행위’가 아닌, ‘그루밍 행위’ 전반에 대한 규제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가 필요하다. 또한, 독일 형법은 자신이 접촉하는 대상이 아동이 아니더라도 아동인 줄 알고 성적 행위를 위해 접촉하였다면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점도 참고할 만 하다. 잠입수사와 관련해서는, 독일 형법은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를 위해 수사관이 관련 사이트 등에 잠입하여 활동하는 과정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해 실제의 사건을 묘사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실제 사진 및 영상을 제작 또는 유포하는 경우에는 절대 면책될 수 없다. 현재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잠입 수사관이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지, 판매 또는 광고할 수 있는 성착취물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데, 실제의 사건을 묘사하거나 실제 사진을 이용한 영상물을 사용하는 것은 수사를 위해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잠입 수사관의 활동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겠다.

- 한국과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형 및 관련 법제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최근 아동 성착취 실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으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회 전반의 인식 및 관련 법제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확인된다. 이에, 아동의 매매와 아동 성착취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15년 방문 조사 이후 일본의 미성년자 상품화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 사회에서 성착취를 사회가 용인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에 대응하여 해마다 실태 분석을 실시·공표하고, 국가 공안위원회의 통합조정 하에 정부의 전 관계부처가 긴밀한 연계·협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지원체계가 분절되어 있는 한국에 시사점을 준다. 특히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정부기관

이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계하는 구조는 한국에서도 참고할만 하다.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방식의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호주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아동 학대물 또는 아동 착취물이라는 명칭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어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개념 및 포섭범위 마련 시 참고할 수 있다. 호주 형법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정의하며, 이를 엄격히 관리하고, 아동 성착취물이 발견되는 경우 유포자 개인 뿐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콘텐츠 호스팅 제공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또는 콘텐츠 호스팅 제공자는 본인이 관리하는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거나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처벌된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주 형법을 통해 관리·감독의 책임을 기업의 경영자에게까지 부과하고 있다. 한편, 2019년에는 아동 성착취 방지에 대한 법률 총 망라한 아동 성착취 방지 개정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호주 내 뿐 아니라 호주의 인터넷 서비스 및 콘텐츠 호스팅을 통해 국외에서 거주하는 아동이 성적으로 착취되는 상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V. 법제 및 정책제언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제 개선방안

- 오늘날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이 일상 깊숙이 들어와, 인간,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을 서로 촘촘히 연결하는 이른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살아가고 있다. 고도로 지능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혁신의 창출이 가능한 반면, 초연결사회에서 인간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대상화’되기 쉽다. 인간 ‘대상화’를 통한 대표적 인권침해가 성의 상품화·성착취이며, 초연결사회는 다양한 방식의 디지털 착취를 통해 새로운 인권침해 상황을 야기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사회의 대응은 선제적이거나 예방적이지 못하며, 사후 입법을 통해 대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사회적 충격을 계기로 형법,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이 추진되었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되면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대응 법제가 어느 정도는 정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해 법정형을 강화하고 구성요건을 확대하여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범위에 포함시키고, 온라인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 특례를 도입하였다.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범죄 전반에서 예방효과가 제고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 이후 여론의 영향을 받아 급하게 추진된 법 개정은 몇몇 지점에서 정당성이나 실효성과 관련하여 정밀한 재검토의 과제를 남겼다.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의 개념 정의와 포섭범위 확대

- 아동·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이용하여 이들의 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그 자체로 착취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범죄 유형은 모두 성착취로 이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 성폭력범죄, 성을 사는 행위, 그리고 성착취물 등으로 나누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범죄를 본질적으로 바라본다. 최근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성매수범죄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모두 피해자로 의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은 여전히 성폭력,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등을 구분하고, 성매매의 경우는 아동·청소년의 탓으로 돌리는 시선이 남아있으며, 이를 피해자의 비행 또는 범죄로 간주하는 경향도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에 따르면, 피해아동·청소년은 죄책감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가정에서 성매수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또 다른 폭력에 노출되기도 했다. 성착취에 대한 정의, 디지털을 매개한 성착취 범죄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은 현재, 법과 제도의 분절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라는 범죄 특성과 나날이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의 모습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정의 규정을 포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즉, 형법과 청소년성보호법 등에서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성착취는 권력 불균형을 전제하는 개념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해 성착취 범죄를 근절하고 처벌할 필요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다. 성매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모두 성착취 범죄로 통합하여 정의하고, 각각의 범죄 행위에 대한 형량을 달리 규정할 수 있다.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은 어디까지나 매개일 뿐, 성착취 범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아동·청소년을 유인·강요하거나 성적 피해를 주는 모든 형태의 범죄로서, 디지털을 이용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는 관점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청소년성보호법에 ‘성매매’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도록 목표할 필요도 있다. 과거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실상 구별되지 않는 범죄를 구별하려는 법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 성착취 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형사법제에 반영된다면, 성착취 범죄를 근절하고 규율하기 위한 처벌의 주안점이 ‘착취 행위자’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이용당한 아동·청소년이 죄책감을

갖지 않고, 범죄 피해를 이유로 가정에서 또 다른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명확히 인지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정의하여 다양한 행위태양을 포섭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에 대한 인권적 구제를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이다.

-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취지에 부합하여 아동·청소년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로 개편되기 위해서는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 폐지는 필수 과제라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에서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폐지 이후에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가출과 음주, 흡연 등을 이유로 혹은 성매수 남을 공갈했다는 범죄사실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았던 사례가 확인되었다.

2) 처벌 흠결에 대한 입법적 보완

(1) 신종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처벌 및 대응 입법 필요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사이버공간의 확장에 따라 범죄의 수단과 방법도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든 범죄유형에 있어 법률이 완벽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처벌의 공백이 커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주요한 책무이다. 즉, 큰 이슈가 발생한 이후에야 사후처방 방식으로 행해지는 입법을 넘어,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초연결사회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한 법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현재 메타버스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형의 범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법제 영역이다. 종래 SNS와 게임에서 제공되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최근 급속히 확산되면서,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장소가 메타버스로 이동·진화하고 있는 징후가 포착되기 때문이다.

- 메타버스란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지칭한다. 여러 통계조사에 의하면,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주요 이용자는 10대 여성 청소년인데, 아바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온라인의 낯선 사람에게 느끼는 심리적 경계를 한층 더 약화시킨다는 점이 특히 위험요인으로 작동한다. 2021년 10월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들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기관에 한 달에 4~5건 정도 ‘메타버스를 이용한 성착취’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메타버스의 특성을 고려한 명확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재, 아바타를 이용하여 상대방 아바타에게 행하는 성적 행위들에 적용할 법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메타버스에서 시작된 관계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현실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메타버스를 포함하여, 끝없이 진화하는 신종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입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오프라인을 통한 그루밍의 규제 강화

- 그루밍행위 자체는 성적 행위가 아닐 수 있지만, 성인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아동과 친밀해지기 위해 접근하고, 그 이후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성착취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왔다. 이에 청소년성보호법은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범죄로 규정하여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다(제15조의2).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범죄에서 그루밍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성적 학대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심리·정서적으로 종속된 상황에서 범죄의 적발도 어려워 더욱 위험하다. 무엇보다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단계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사실상 무한대로 확장되는 피해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루밍행위의 처벌은 중요하다.
- 그런데 성착취 범죄의 예비단계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그루밍행위가 오프라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그루

밍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는 문제점이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규제 강화가 강조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그루밍행위의 위험성이 특히 부각되면서, 오히려 전통적인 범주의 그루밍행위에 대한 규제가 간과된 것이다. 독일의 입법례를 보면, 음란한 콘텐츠(서면, 음성 또는 이미지 매체, 데이터 저장 매체, 도화 또는 기타 구현물에 담기거나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저장과 독립적으로 전송되는 내용 포함)나 그에 상응하는 대화를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그루밍행위의 경우 그 자체로 아동 성학대를 구성하며, 음란한 콘텐츠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의 콘텐츠 등을 이용하여 아동을 성적으로 유인하는 경우에도 아동 성학대의 예비로 규정하여 처벌한다. 요컨대,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그루밍에 한정하지 않고 아동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아동과 접촉하여 영향을 주는 포괄적 행위들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그루밍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전화통화나 서면, 또는 대화 등을 이용한 그루밍행위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정비되어야 한다.

3)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수사법제 정비

- 암호화, 익명화를 특징으로 하는 다크웹과 텔레그램이 등장하면서, 범죄 현장에 남겨진 흔적이나 단서를 토대로 범인과 증거를 찾던 과거와는 수사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으며,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온라인 사이트나 SNS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등 전통적인 수사기법으로는 그 적발이 용이하지 않게 되었다. 익명성에 철저히 숨어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약탈하는 가해자들을 찾아내고 처벌하기 위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 수사 및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잠입수사 이외에 온라인 수색도 허용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으며, 현행 잠입수사 규정 또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1) 온라인 수색의 허용

- ‘온라인 수색’이란 유체물 형태의 압수물 획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오프라인 수색’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디지털정보 획득을 위한 수색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 기술적 수단(원격 통신 감시 소프트웨어)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정보기술시스템에 비밀리에 접근하여 이용자의 시스템 이용을 감시하고 시스템에 저장된 내용을 열람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성범죄의 무대가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이동함에 따라, 점차 더 많은 유형의 범죄정보들이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예방 또는 수사를 위해서도 디지털 기술의 역할이 커졌다. 이에 온라인 내지 사이버공간에서의 수사 활동에 관한 기술적·법적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크 웹 상에서 전개되는 모든 형태의 범죄를 대상으로 온라인 수색이 허용될 수는 없지만, 형법상 내란죄, 테러단체조직죄, 아동성착취물의 유포·취득·소지 등은 물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죄 등에 대해 엄격한 요건 하에 온라인 수색을 허용하는 독일의 입법례는 참고할 수 있다.
- 우리는 현재 온라인 수색에 관한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법적 논의도 공론의 장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로 이행되기 이전에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온라인 수색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 수색은 강력한 비밀처분으로 국가의 영장주의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 향후 입법을 통해 온라인 수색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이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 목적의 온라인 수색을 허용하는 입법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거쳐 관련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장치들을 마련했던 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2) 잠입수사제도의 실효적 이행

- 잠입수사란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거나 몰래 숨어들어가 범죄를 수사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위장수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수사기법은 청소년성보호법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도 수사 현장에서도 종종 활용되던 기법이며, 학계에서도 이른바 ‘함정수사’의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왔다. 종래 우리 대법원은 함정수사를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나누어, 이미 범죄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범죄의 기회만을 제공하는 ‘기회제공형’은 적법할 수 있지만, 범죄의사가 없는 자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으로 범의를 일으켜 범죄를 실행하도록 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허용되지 않는 위법수사로 판단해 왔다. 또한 기회제공형에 속하는 경우에도 수사의 위법이 중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서는 ‘잠재적’ 성적 의도를 가진 행위자 또는 범의 여부가 불확실한 행위자에 대해서도 잠입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예컨대 랜덤채팅에의 잠입수사의 경우 범의유발형 위법한 함정수사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 수사관이 불법 대화방이나 다크웹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분을 가공하여 일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어, 이 경우 자칫 위법한 함정수사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던 것이다.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수사를 명시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은 잠입수사의 허용범위 및 절차, 잠입수사를 통해 얻은 증거물의 증거능력, 수사관의 법적 책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잠입수사에 관한 규정은 제도 자체로 잠재적 가해자의 범의를 축소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성착취 범죄에 예방적 효과가 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잠입한 경찰을 맞닥뜨린 위험을 상정하기 때문이다. 이전의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가해자로 위장하여 아동·청소년을 만났던 것에 반해, 명문화된 위장수사 규정에 따라 성착취 범죄 가해자를 단속하는 형태로 변화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대상 함정수사는 심층면접에 참여한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이기도 했다.

- 다만 잠입수사는 수사의 신의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허용요건 및 절차와 관련하여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현행의 규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 우선, 잠입수사의 허용요건과 관련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의 규정은 잠입수사가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지, 판매 또는 광고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내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이다. 온라인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곳에 잠입한 수사관이 신분 위장을 위해 범죄자들로부터 요구받은 영상을 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최대한 방지하여야 함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실제의 사건을 묘사하거나 실제 사진을 사용한 영상물을 사용하는 것은 설령 수사를 위해 피해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잠입수사관의 활동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잠입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관의 면책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 징계 또는 문책하지 아니하며, 손해배상의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한 그 어떤 영역에서도 보기 힘든 생경한 구조이다. 물론 법 원칙상 공무집행과 관련한 책임 범위의 해석에서 당연히 도출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명시적인 면책 규정에 따라 오히려 종래 함정수사 제한의 법리가 간과되고 잠입수사의 남용이 우려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당한 법 집행을 수행한 수사관을 보호하면서도 수사의 대원칙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조문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
- 반면, 개정된 잠입수사 규정은 제도가 남용될 것을 지나치게 우려하여,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현장의 지적도 있다. 예컨대,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에 따르면,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에만 처벌되는데, 신분비공개수사나 신분위장수사를 실시하는 수사기관은 성인이므로, 그루밍죄의 기수범이 성립할 수 없다. 범죄자가 자신과 연락하는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믿었다면 (불능)미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그루밍법은 물론 잠재적 가해자를 색출하기 위한 잠입수사의 도입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이다. 그 밖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수사를 하려면 상급

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수사가 더욱 위축될 수 있으며,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또한, 개정 법률이 위장수사의 범위인 ‘디지털 성범죄’를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밋’ 제15조의2의 죄로 한정하고 있어, 수사기관 등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의 대상으로 포섭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률을 개정하여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범위를 명백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4)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도입

- 디지털 성착취물은 영상물의 무한 복사, 소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영구적인 불안상태에 놓이게 된다. 디지털 성착취물 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절실한 도움은 영상물의 조기 차단 및 삭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영상물의 삭제·차단의 주체는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을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이다. 수사기관은 신고 등으로 사건 초기에 피해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영상물을 직접 삭제·차단하거나 이를 서비스제공자들에게 직접 요청하지 못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다. 수사기관에 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또는 요청의 권한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자율규제조치를 요구하거나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하고, 불이행시 삭제 등을 명령하는 절차 등을 진행하는데,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에 제약이 되는 현실이며, 일련의 절차를 거쳐 삭제명령이 있기 전까지 유통될 위험도 있다. 디지털 성착취 역시 행위 제지 등을 통한 현장 초기대응이 필요하나, 온라인에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은 부재한 상태이다.
- 즉, 수사기관이 신고를 받거나 범죄현장을 확인하거나 또는 의심사실을 발견한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영상물의 확산을 차단하는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에 대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응급조치에는 첫째, 영상물 채증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것이 포함된다. 신고 또는 인지 등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 피해영상물이 확인되거나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이 해당 영상물

에 대한 자료 확보 등 채증을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여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직접 영상물의 삭제·차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둘째, 범죄행위의 제지 및 처벌 경고 등도 응급조치에 포함되어야 한다. 오프라인 범죄에 대한 범죄행위 제지를 온라인 범죄에 구현하자면, 피해영상물이 유포중이거나 유포가 의심되는 플랫폼 채널에 경고 문구를 현출하여 영상물 유통 채널의 비활성화를 유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셋째, 피해자에게 보호 및 삭제 지원 절차를 안내하는 것도 응급조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시설 등으로 인도하는 것도 가능하여야 한다. 범죄 대응체계가 피해 지원체계와 분절되어서는 안 되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피해자 지원은 실효적인 수사에도 기여할 수 있다.
- 이러한 응급조치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다크웹 등 각종 폐쇄적 플랫폼에 처벌 경고를 효율적으로 현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점검·개발하고, 응급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며, 응급조치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보급하는 것이 더불어 준비되어야 한다. 2021년 출범한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또한 2021년 10월, 성폭력처벌법 등에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의 신고 또는 발견 즉시 피해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초기 대응을 취하도록 ‘응급조치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5) 적절한 법정형과 양형기준 마련

- 디지털 성폭력 전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규제의 사각지대였던 광고·소개, 구입·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도입되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처벌의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도 대폭 상향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 법제가 여전히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성을 간과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것처럼, SNS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매개로 성매매 범죄가 발생하고, 성폭력·성매매 상황에서 사진이

찍혀 유포되거나 협박을 받는 등 오늘날 성착취 범죄의 배경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관계 종사자들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 디지털 환경에서 일어나는 행위태양에 관한 처벌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성착취 범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 모두에서 넘나들며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오프라인에서 성착취 범죄로 시작되었지만 관련 성착취물 유포 등 온라인 범죄까지 이어지는 사례 또한 많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예비단계로 볼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개정안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불명확한 성착취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즉, 강화된 처벌 규정이 성착취 범죄 예방과 근절에 실효적으로 작용하려면 오프라인을 전제하는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과 양형기준도 디지털 성범죄만큼 상향되어야 한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시청, 구입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법정형이 규정된 이후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이들 범죄에 대해 오히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보고도 있는데, 불법과 책임의 크기를 넘어선 과도한 처벌이 되지 않기 위한 고민에서 나온 선택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 그러나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힘의 우열관계를 이용한 착취적 범죄라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중대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예방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즉, 가상의 표현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라는 존재를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표현물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으며(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가17 결정), 얼마든지 가상의 경계를 넘어 현실의 범죄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불법의 정도와 책임이 비례하는 형사법 원칙은 지켜져야 하지만,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서 불법의 정도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1) 디지털 성착취 예방교육 강화

- 디지털 성착취 예방교육 강화는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 참여한 아동·청소년과 관계 종사자, 학계전문가 대부분이 한 목소리로 강조한 과제이다.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에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예방교육은 강사에 따라 강의내용에 들어가는 여부와 비중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실태가 지적되었다. 심층면접에서 학교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한 아동·청소년은 없었으며, 참여자 모두 성착취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일상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 즉, 가정, 학교, 사회, 국가 모두가 디지털 성착취 범죄 근절과 예방이 우리의 사회의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그 범죄가 아동·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고 즐기는 잘못된 문화와 관행이 고착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성평등한 디지털 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디지털 성착취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4대 폭력예방교육에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처벌 강화 또는 응보만으로 척결할 수 없으며, 또래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발달적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범죄 발생에 앞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관계 종사자와 아동·청소년 모두 이러한 교육에는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교는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이기 때문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조항과 관련된 문제가 교육 시스템의 모든 수준에서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야 하고,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의 위험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아동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적절한 자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CRC/C/156, para. 28).

- 한편, 디지털 성착취 사건은 법무부, 경찰, 여성가족부 등에서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원화된 지원체계가 없고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어느 곳에서 어떤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거나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대상에 따라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내용도 맞춤형 교육내용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복지·지원체계의 연계·협력

-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국가의 책무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아동복지법」 제4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며,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제1항, 제2항). 위기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교육과 특별지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도 이미 현행법에 명시된 청소년복지·지원체계의 한 내용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3조, 제14조, 제16조 등).
- 아동·청소년은 물론 관계 종사자 대상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학대나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이 해체된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관련된 가해아동·청소년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범죄에 노출되고, 범죄를 행하고,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그 누구도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발달을 지지하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다. 가정을 벗어난 아동·청소년은 생존을 위해, 의지할 사람을 찾기 위해, 성착

취 범죄에 내몰리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복지·지원체계는 본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복지체계도 각각의 보호·지원체계와 잘 연계되지 않았다.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종사자가 나름의 노력은 했으나, 아동·청소년을 중심에 두고 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과 서비스가 무엇인지 검토되며, 교육행정과 복지행정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시민단체 종사자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관계하고 있으나, 성착취 범죄 대응체계와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어려움을 보고했다.

-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2020년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아동보호체계 전면개편이 이루어졌다.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위기가정의 보호대상아동으로, 위기청소년으로 공공의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범부처 통합과 협력이 필요하며, 현행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복지 지원체계의 소통과 연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도 마땅히 중요하다.

3) 아동·청소년 권리기반 접근을 통한 회복적 사법의 실천

- 심층면접에 참여한 관계 종사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모호한 결과, 수사과정에서 가해자로 분류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을 찾기 힘든 상황에 봉착하기도 한다. 디지털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 보호지원을 받으나,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해아동·청소년도 아동·청소년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가 학대 피해자이거나, 부모 빈곤 및 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등으로 가정해체를 경험하거나, 가정 내 갈등과 위기 상황에서 탈가정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사회가 지키지 못한 위기가정의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노출되고, 범죄를 학습하고, 범죄를 행하거나, 범죄 피해자가 되는 모든 과정은 결코 성착취 범죄 가해자로 분류된 아동·청소년을 단지 ‘범죄자’로만 취급해서는 안 될 이

유를 보여준다.

- 따라서 이들이 가해자의 위치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때에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단순히 처벌 강화와 응보적 관점만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보다 원가정 보호와 관계 개선을 중점에 두는 다양한 보호와 지원이 효과적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 아동 사법제도의 취지와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기초하여, 이들의 권리보장과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을 위반한 아동·청소년의 진정한 반성과 이를 통한 사회적 복귀를 도모하는 일련의 정책은 곧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자신의 일상을 회복하는 결과에도 기여할 수 있다. 피해와 가해를 이분법적으로 보기에 앞서, ‘아동·청소년’을 중심에 둔 정책의 아동권리 기반 접근은 범죄의 순환을 차단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처벌’보다 ‘예방’의 관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회복과 사회복귀’라는 아동사법제도의 목적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도 동등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4) 범정부 디지털 성착취 대책 전담기구 설치

- 디지털 성착취에 대응하여 정부의 전 관계부처가 긴밀한 연계·협력을 도모하고, 특히 피해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이 연계하며,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대응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통합적 관점에서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전담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앞서 제시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복지·지원체계의 연계·협력 제언과 같은 맥락에서 디지털 성착취 범죄 대응 업무는 다양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법제에서는 범죄 예측 및 모니터링, 유포차단, 검거, 삭제, 피해자 지원, 예방 등이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심층면접에 참여한 관계 종사자들은 분절되고 중복되는 피해자 지원체계를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는데, 경찰과 검찰,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 간 연계나 협력 없이 별도로 피해자 지원이 행해지고 있으며, 지원 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 기관 간의 소통이나 연계 부족은 피해자들도 신속한 지원을 받기 힘든 결과로 나타나며, 기존에 지원된

내용을 포함해 피해아동·청소년에 관한 정보 등이 공유되지 않아 지원의 공백이 생기거나 범죄피해가 방치되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 검찰청, 범죄피해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던 창구를 일원화하여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자문위원회 또한 2021년 10월 ‘성범죄 피해자 ONE-STOP 지원’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로 법무부 내 피해자 지원 신청 원스톱(One-Stop) 접수 창구를 설치하고, 2단계로 각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며 통합회의를 개최하고, 마지막 3단계로 피해자 지원 통합 기구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 피해아동·청소년이 성착취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각 전달체계의 개별 기관이 어떤 내용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 로드맵(road map)”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법원행정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함께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과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범정부 디지털 성착취 대책 전담기구 설치가 필수적이다. 이 때 기구는 각 부처별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TF 혹은 위원회 방식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를 망라하는 전담기구가 있을 때, 비로소 공통의 계획에 따라 협력적 업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분절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이루어질 수 있다.

5) 디지털 성착취 범죄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무 강화

- 아동·청소년 피해 당사자 대상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의 아동·청소년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를 이용한 성매매 등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미성년자도 허위정보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할 수 있었고, 성인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아동·청소년은 기성세대와 달리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만큼, 접근 가능한 디지털 매체의 범위와 그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디지털 환경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유통되는 유해매체, 불법매체의 문제를 보여준다. 청소년범죄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성착취 범죄 매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설명한 아동·청소년 참여자도 있었는데, 해당 영화 모두 “청소년관람불가”였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유해매체 규제가 적절히 이행되지 않는 실태를 뒷받침한다. 채팅 애플리케이션 상단에 ‘경고’가 뜨긴 하지만,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응답 내용도 있었다.

- 생각건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현출되며 이용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매체와 관련된 기업은 사실상 성착취 범죄의 동조자이자 방조자로서, 범죄 예방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아동은 권리의 주체자인 동시에 소비자, 합법적으로 고용된 피고용인, 미래의 피고용인과 기업가,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사회나 환경의 구성원 또는 구성요소로서 기업의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다(CRC/C/GC/16, para. 2). 국가는 기업의 활동과 경영이 아동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침해된 경우에도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CRC/C/GC/16, para. 4). 또한, 기업이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유익한 디지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제공하도록 독려해야 한다(CRC/C/GC/25, para. 36).
- 이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정책 집행에 있어 기술적 지원과 협력은 당연히 요청되며, 아동·청소년의 피해 회복을 위한 사회적 기구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것도 떠올릴 수 있다. 거대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자신들의 경영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심리적 영향을 포함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조사보고서를 연 1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미국 페이스북 내부 고발 기사 참조). 기업은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과 확장에 충분히 기여하는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각종 유해한 정보와 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화하는 책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현출되며 이용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대부분 은밀하게 발생하고 그루밍 등으로 종속적 관계가 시작되기 쉬운 특성상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서 더 큰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모니터링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매체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 한편, 채팅 애플리케이션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개인 간 대화 내용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에게 성범죄 관련 정보관리 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그루밍을 처벌하는 현행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범죄가 사전에 준비되고 발생하는 공간을 관리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또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확산에 고의 또는 과실로 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범죄 피해자인 원고로 하여금 배상금 산정의 적절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은 명백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이 자신의 책무를 인식하고, 그에 적합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주 형법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처벌하고, 기업이 아동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본사의 경영자 또는 경영진까지 처벌하는 호주의 사례는 특히 참고할 만하다.

6)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도의 도입 검토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근래의 디지털 성착취물 범죄는 조직화·기업화되어 불법 영상물 등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하고 거액의 수입을 얻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죄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종래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범죄사실의 특정 및 개별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 입증에 어려워 범죄수익환수가 좌절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에 2020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등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보다 원활하게 환수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되었다. 다만, 여전히 현행법상 재산 몰수는 부가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이 있을 때에만 부가적으로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하다. 범죄자가 해외로 도주해 재판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또는 재판 도중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법원이 별도로 추징을 명령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것이다.

-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지위와 의존적 특성을 이용하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악질적인 성격과 더불어 온라인 환경에서 범죄의 확산과 재이용이 손쉽고, 그 수익구조도 기업화되어 있다. 범죄의 기소나 유죄판결 없어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어야 한다. 독일,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 범죄자의 해외 도주나 사망 등의 이유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한 사건 또는 최종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독립몰수제도 또는 민사몰수제도)한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다. 다만 독립몰수제를 도입할 경우, 선의의 제3자가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제 구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3.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의 인권적 구제를 위한 정책 제언

1) 보다 실효적인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 오늘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하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체계는 기존의 성폭력·성매매 여성 지원체계, 혹은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등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디지털 매체의 특성에 기반하여 전통적인 성범죄와 그 양상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과거와 전혀 다른 전문성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아동·청소년이라는 연령에 따른 지위와 성착취 범죄 피해자라는 이중의 취약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 우선 청소년성보호법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디지털을 매개로 하여 아동·청

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일어나는 성착취 범죄” 등으로 정의하여 다양한 범죄를 포괄하고, 이들 피해자를 실제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공간의 접근성과 안정성, 종사자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 아동의 의견이 제대로 청취되는 일련의 시스템 등이 요구된다. 예컨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거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독립적으로 사이버상담을 할 수 있는 기능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도 같은 취지였다.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상담소 및 센터의 업무의 성격상 성인 성매매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위기 청소년 등과는 달리 특화된 발견·상담·교육·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확인하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 다만,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현재까지 전국 17개 지역에 설치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예산에 따라 지원인력이 3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독립적 기구가 아닌 3년 계약기간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하는 것부터 상담, 법률·의료·심리지원, 교육, 부모지원, 주거, 학업, 일자리 등 자활지원 및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사후지원하도록 법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범죄피해에 대한 구제와 회복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더욱이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범죄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와 지원 프로그램이 갖춰져야 한다. 위기청소년과 보호대상아동을 발굴하여 성착취 범죄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는 활동은 사실상 아웃리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도 있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을 중심에 둔 의미 있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 지원이 실천되려면, 이들 지원기관에 대한 과감한 예산투자와 충분한 권한 부여가 필요하며, 나아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일상을 다각적 방면에서 지지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연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한편,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에서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은 피해 영상물의 삭제 지원이다. 이는 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과 관계 종사자와 학계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하다. 현재 디지털 성착취물의 삭제·차단 지원업무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지원센터는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2017. 9. 26.)」에 따라 2018년 설치된 이래로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을 위한 기술적인 시스템과 채증·수사지원, 검색, 추적, 삭제지원, 유포현황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성폭력상담소 등 다른 피해자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수사·법률·의료 등에 관하여도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자 등이 신고하거나 제보한 불법정보에 대해 심의하고 해당 정보에 대해 직접 삭제를 요구하거나 접속차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그런데 엄밀히 살펴보면, 현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불법정보와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권한이 없고, 피해자의 요청, 신고에 따라 해당 사이트에 삭제요청을 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요청을 하거나, 경찰청에 채증자료를 작성하여 제보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디지털 성착취물의 신속한 삭제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차단조치의 신속성, 효율성,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시스템이 정비될 필요를 알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고유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업무와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이에 인력과 예산도 미약한 문제도 있다. 유포와 재확산이라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특성에 부합하는 구체 대책이 제대로 실천되려면, 현행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충분한 인적·재정적 자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이 진행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 또한, 민사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이 입은 정신적 피해, 삭제 지원 비용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로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 성착취 범죄 피해 구제와 대응에 있어, 무엇보다 ‘지속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또한 중요하다. 판사 등 관계 종사자는 피해아동·청소년의 궁극적인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심리·정서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 면접조사에서 나타났듯이, 피해아동·청소년은 일상의 다양한 트라우마를 보고 하기도 했다. 학계 전문가 또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상담지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2) 디지털 성착취 관련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화

- 심층면접 결과, 관계종사자 중 아동권리에 기반한 교육을 받아 본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직접 범죄명과 범죄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떠한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듣고, 신속한 재판 보장과 재판 결과를 통지받으며, 보호자 또한 아동·청소년의 일상회복에 적절히 역할하도록 안내하고 교육하는 일련의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현실을 알 수 있었다.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무엇이며, 이들의 권리보장이 왜 중요한지, 성착취 범죄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무엇에 중점을 두고 피해회복과 구제를 지원해야 하는지 분명한 관점을 견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이 아동·청소년을 중심에 둔 조력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제도·정책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되더라도, 그 제도를 현장에 실천하는 사람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법제는 형식적인 문구로만 남게 된다.
- 현재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대응 업무 분장을 살펴보면, 법무부, 경찰,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매매상담소,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등에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관련 부처가 많아서 이들도 윈스톱으로 피해자 지원을 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인데, 온라인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와 방식으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착취의 피해 특성을 이해하고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행하기에 업무담당자 등의 역량이 부족한 경

우도 많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현장전문가, 활동가 등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3)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사법환경 및 지원체계 마련

- 신고 단계에서부터 수사와 조사, 재판, 이후 사후 지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발달단계, 개별적 상황과 특성이 고려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이 마주하게 된 상황을 각자에게 맞는 언어로 안내되어야 하며, 표명된 의견은 실제로 절차에서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심층면접 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 대부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절차에 관한 안내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는 들은 적이 없으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참여자 대부분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사법체계는 아동을 존중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관련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 결과, 수사 전반에 아동친화적인 절차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없이 아동·청소년 홀로 조사에 참여하거나 아동·청소년 의사에 반해 경찰에 신고되고 보호자에게 알려졌으며, 조사를 받는 피해아동·청소년 앞에서 가해자에게 전화하여, 참여자의 실명과 신고 사실을 언급한 경찰도 있었다. 아동·청소년이 피해를 입은 즉시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보다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수사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밀이 유지되는 안전한 신고방법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범죄 발생 즉시 스스로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성착취 범죄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보호자에게 알려질 것을 가장 염려하고 있었고, 가해자의 지속적인 협박이나 임신 등 외부적 요인을 계기로 보호자에게 상황이 공유되었다는 점이 나타났다.
- 범죄피해의 당사자는 아동·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묻고 직접 소통하는 기관 또한 찾기 어려웠다. 국선 피해자 변호

사제도가 있지만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 수사방법 또한 아동·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관계 종사자 조사에서 경찰들이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아동·청소년을 통해 가해자 정보를 알아낸 뒤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수사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조사 참여자 또한 합정수사는 수사의 초점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아동·청소년의 개별적 욕구와 연령 등의 상황을 고려한 전문화된 지원체계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을 만나는 기관들은 성착취 범죄 피해를 발견한 경우 즉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등 특화된 기관에 연계함으로써 피해아동·청소년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기관 간 연계와 소통이 되지 않은 결과, 피해아동·청소년이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피해 사실을 여러 번 진술하게 되는 경험도 보고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은 각 지역에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기관이 확충되고, 보다 촘촘한 지원이 연계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4) 법 개정 취지를 이행하는 실효적인 법 집행

- 무엇보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계기로, 대폭 변화된 법률이 개정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성매매 범죄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은 모두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피해자’라는 정체성을 사회 전체가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에도 계속하여 비슷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조직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처벌도 가볍게 나오는 실정이다.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개정안 도입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회제공의 형식으로 위장수사를 행하는 관행도 계속되고 있고, 실제로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삭제로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사건을 입건할 수 없자,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광고행위로 입건한 사례도

있었다. 여전히 성매매와 성착취를 구분하며, 성착취 범죄를 아동·청소년의 타, 비행, 범죄로 간주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게 마주할 수 있었다.

- 법률의 변화는 사회적 인식을 견인하는 주요한 수단 중 하나이지만, 결국 그 법이 현장에 실천되고 정착되는 결과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적절한 이해와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다. 기존의 수사관행을 탈피하여 성착취 범죄 ‘가해자’ 대상 위장수사로 전환하고, 모든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자로 처우하고 적절한 지원체제와 연계하며, 인신매매와 다름없는 성착취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처벌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법 집행이 실천되어야 한다.

5) 디지털 성착취 범죄 처벌을 위한 국제공조 활성화

-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처벌에 있어서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효적인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강화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아동착취 및 온라인보호센터(CEOP,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ommand)’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학대에 대한 신고, 조사, 분석, 전문가 개입을 전담하며 국내·외 공조를 주도한다. 즉, 인터폴,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사법당국 등이 설립한 국제사법공조체계인 지구촌가상대책반과 협력 체계를 이루어 온라인상에서의 국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대처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연방범죄수사청(BKA) 산하 ‘아동·청소년 성범죄 추방 본부(Zentralstelle für die Bekämpfung von Sexualdelikten zum Nachteil von Kindern und Jugendlichen)’가 국내 및 해외 기소 당국과 관련 기관 및 조정 사무소 사이의 연계기능을 수행하며, 인터폴 및 유로폴의 중앙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공조와 연계하여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실효적으로 근절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체계도
3. 연구방법
4. 기대효과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1) 가속화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실태 인식 필요

최근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연령도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연령대는 13~15세였다.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2017년도에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성매수의 70%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성착취물(음란물) 제작 등의 범죄는 39.7%에 이르렀다.¹⁾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매수 알선 범죄의 91.4%가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 대비 5.9%p 증가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특성을 살펴보면, 3,859명의 피해자 중 여자 아동·청소년이 94.5%(3,646명)였으며,²⁾ 2019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1,936명 중 여성은 1,695명(87.6%), 남성은 241명(12.4%)으로 나타났다.³⁾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실태를 유추할 수 있다. 2020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은 2019년의 1.7배로서 피해자 4,973명을 지원했으며 여성은 4,047명, 남성은 926명이었고 지원 유형은 삭제지원(93%), 상담지원(6.7%), 수사·법률지원연계(0.3%) 등이다.

2019년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사건과 더불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드러나며, 우리 사회는 디지털을 매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1) 김지영·항지태·최수형·김현아(2018), 「2018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여성가족부, 71면.

2)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3. 18.),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을 통해 이뤄져”.

3)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9. 12. 30.),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 월평균 삭제지원 건수 지난해보다 2배 ↑”.

각 범죄의 상당수 피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이는 그루밍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아동·청소년은 특히 취약한 대상이며, 디지털을 매개한 성착취물은 쉽게 재생산되고 확산되는 결과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보호를 요청하기 어려운 실태를 나타내는 결과이다.

COVID-19로 인한 디지털 기기 활용도가 높아지며 디지털 성착취 범죄 위험이 더욱 우려되는 실태이다. COVID-19의 대유행은 온라인 등에서 각종 성착취의 위험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유엔 또한 COVID-19가 특히 여성아동과 여성에 취약하며, 아동들이 온라인 등에서 학대, 폭력, 착취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⁴⁾

COVID-19 상황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각종 성착취에 대한 모니터링은 힘들어지고, 각종 성착취 행위가 더욱 음지로 숨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므로 피해가 지속되고,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cpat International은 2018년 한국의 아동 성착취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 아동은 소비주의와 금전에 대한 압박을 받으며, 이는 아동들을 성매매와 온라인 성착취에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은 성인에 의해 제작되기도 하지만, 첨단기술에 익숙한 한국 아동들이 스스로 촬영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은 아동 성착취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의 근원이자 전송지 또는 목적지이다.”라고 평가하였다.⁵⁾

성착취범죄 피해아동·청소년 중 80% 가량이 욕설, 폭행, 폭로 협박 및 동영상 촬영 등 성착취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⁶⁾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파악한 피해 유형은 유포 피해가 1,001건(29.7%), 불법촬영이 875건(26.0%), 유포불안이 414건(12.3%)으로 2차, 3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특별히 높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성을 알 수 있다.⁷⁾

4) 유엔사무총장(2020), 「코로나 19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보고서」(Policy Brief: The Impact of COVID-19 on children), <https://www.unicef.or.kr/upload/120/118616/Policy%20Brief%20on%20COVID%20impact%20on%20Children,%2016%20April%202020.pdf>.

5) Ecpat(2018), 『Country Overview: South Korea』, p.3.

6) 정현미 외 5인(2016),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15면.

7)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9.12.30.), 위의 글(주 3).

이처럼 성착취 피해·가해자를 밝히고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착취로 인한 1·2차 피해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은 불안, 우울, 충동, 폭력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문제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성착취로 인해 그 심각성이 더욱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디지털 범죄의 실태를 알고, 피해아동·청소년이 마주하는 단계별 어려움을 파악하며,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범죄 예방과 범죄 발생 이후 신속한 보호조치를 아우르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연구가 필요하다.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아우르는 법·제도 개선 필요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가능성을 인식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성범죄자들이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을 만나고 유혹(그루밍)하거나, 실시간 비디오 스트리밍을 통한 온라인 아동 성학대를 보거나 참여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어냈다. 현재까지 알려진 디지털기술 매개 성범죄는 딥페이크, 섹스팅, 불법촬영, 메신저대화방 성희롱, Sextortion(“Sexual” and “Extortion”)등이 있으며, 잘 갖춰진 한국의 네트워크망을 활용한 디지털매개 성범죄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접근가능성과 디지털 문해력이 상당히 높은 반면, 성별화된 성문화와 성차별 인식 수준은 변화가 더디며, 사회 인식과 법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변이되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종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아동·청소년이 어린 연령부터 성매매와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⁸⁾

주요 국가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사건 특성을 반영한 구제방안을 시행 중인데, 대표적으로 영국의 경우, 국가범죄수사국 산하 온라인 아동 성착취 및 학대 보호센터를 통해 디지털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사건에 대한 신고, 조사, 분석,

8) 김애라(2020), “디지털 ‘매개성’을 고려한 젠더폭력 가피해 범주의 재설정 필요성”,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 모색 라운드 테이블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가 개입을 전담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며, 호주의 경우 통신미디어청 산하 인터넷 안전국에서 성착취 이미지가 업로드 된 웹사이트에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강력히 부여하고 신속 삭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와 관련된 법적·행정적 변화를 이해하고, 법·제도적 공백과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3) 디지털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 필요

대한민국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2019년 10월 협약 이행에 관한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받았다. 위원회는 “아동폭력”에 대한 포괄적 전략 수립 및 전문성 확보에 대한 권고를 하였다.

즉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는 아동에 대한 ‘폭력’의 한 유형으로 아동학대 대응 정책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온라인 폭력을 포함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와 발굴이 현저히 적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 디지털 성착취를 포함한 모든 아동 폭력에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과 전략이 부재한 점, 전문성 있는 관계 종사자가 부족한 점을 우려하며, 모든 아동에 대한 폭력을 아우르는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문제의 경향을 확인하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것, 이를 통해 모든 형태의 아동 폭력을 방지, 근절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을 수립할 것, 전문가 양성 및 관계종사자와 대중의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포함한 아동 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할 것, 효용성 있는 법제도 이행을 위한 충분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모든 형태의 성착취 및 성학대로부터 보호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 조치를 권고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형태의 아동 폭력을 금지한 제19조와 별도로 제34조를 통해 모든 형태의 성착취와 성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범죄는 아동폭력 중에서도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며, 성별에 따른 범죄피해가 크고, 성착취 피해 범죄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장기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인식한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성폭력과 성학대가 만연한 한국의 실태를 지적하며, 특히 13세를 기준으로 하는 연령 이상의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 무엇보다 성착취 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을 범죄자로 취급하며 그들에 대한 사법적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우려하면서, 모든 형태의 성착취 범죄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온라인 그루밍’을 법상 정의하고 형사범죄로 규율할 것,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할 것,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을 폐지할 것, 나아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구체적으로 권고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대해 권고하였다. 국제사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가 국내법 관할을 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를 별도로 채택하여 그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한국 또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2008년 제1차 국가보고서 제출에 따른 심의 이후, 협약 이행 정기보고서에 선택의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있다. 그 결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2008년 최종견해 이후로도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정보가 불충분한 점을 반복하여 지적하였고, 선택의정서가 정의하는 모든 아동 성착취범죄를 국내 형사법이 완전히 포괄하도록 관련 법제 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4)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예방과 피해구제방안 등을 위한 논의 필요

디지털 성착취 범죄 예방을 위한 공적·사적 영역의 책임을 이해하고, 민관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해 반복되는 피해에 대처하여야 한다. 특정 사건을 계기로 일부 법제가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전면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한 충실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아동권리 관점에서 신분위장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지침 또는 사법경찰관의 아동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반 여건은 부재한 실정이다. 피해가 발생한 직후, 피해아동·청소년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에 대한 논의도 부족한 결과, 아동·청소년은 성착취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개정 내용이 온라인(디지털)에서 일어나는 행위태양과 처벌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어, 온라인 환경을 매개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착취 범죄까지 아우르는 제도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삭제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개정된 법률이 실제 현장에서 입법취지에 맞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예방조치 수립과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 전반에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아동권리 기반 접근을 실천하여야 한다. 일련의 법 개정 과정에서 아동의 목소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성착취 문제와 같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 아동집단의 견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⁹⁾ COVID-19 상황으로 인해 발달한 온라인 환경은 아동의 참여를 강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중요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입법사결정 과정에 아동이 접근할 수 있고, 아동의 의견이 고루 청취되고 정당한 비중을 부여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자원과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의견 청취와 관련해서 이번 연구에서는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예방 안내 책자(안) 개발을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보완해 보고자 한다.

관련 대책 전반에 아동·청소년 중심적 관점이 결여되어, 아동·청소년이 범죄피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고, 그 과정 전반을 조력하며, 그와 함께 범죄에 엄중히 답하는 입법·사법·행정의 유기적인 연계가 배제된 문제도 짚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랜덤 채팅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디지털 매체 운영 주체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함께 논의되지 않고 있다.

9)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03),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일반논평 제5호, CRC/GC/2003/5.

개인 간 문제를 넘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예방을 위한 사회 전반의 능동적인 역할을 촉구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라는 행위태양의 범죄를 국내법이 포괄하도록 개선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속한 구제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대한민국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예방을 위한 눈높이에 맞춘 안내 책자 개발이 필요하다.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 발간자료 등의 현황을 검토·분석하여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성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책자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현황, 피해특성 및 피해발생 과정을 분석하고 관련 법제 및 판결문 등을 검토·분석하며, 해외 우수 사례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피해자 및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등을 통해 나타난 다양한 전문의견을 반영하여 디지털 성착취 피해예방 및 인권적 구제, 추진체계 구축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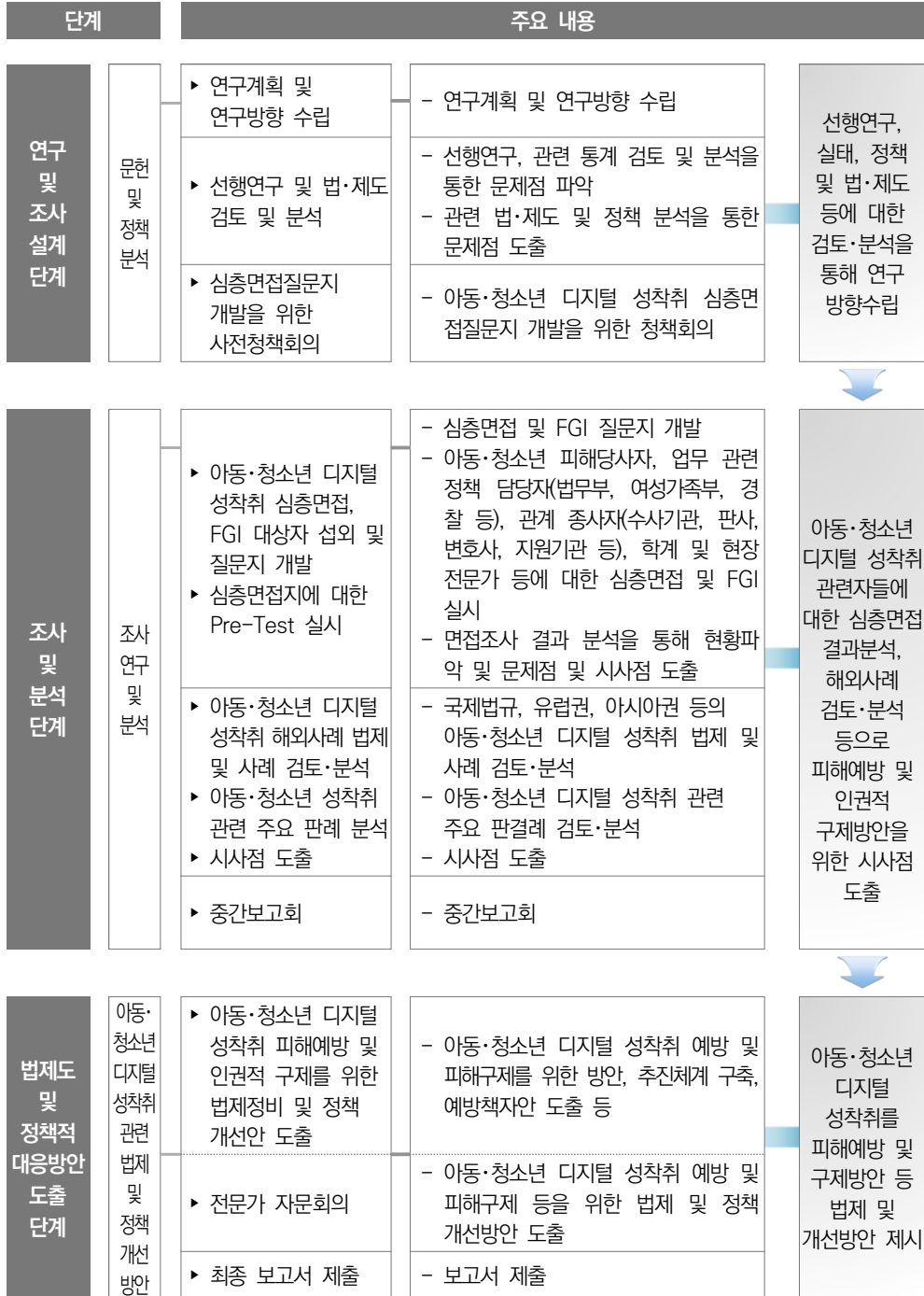
첫째, 국제인권규범을 바탕으로 아동 성착취, 특히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개념과 피해현황, 피해발생과정, 피해특성 등에 대해 검토·분석한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착취 관련 국내 법제, 주요 판결문 등을 검토·분석하고 해외 주요국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제 등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아동·청소년 관련 법제 관계종사자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착취에 따른 피해 현황을 파악한다.

넷째, 2019년 제5·6차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를 이행하며,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착취 피해 예방 및 수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국내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아동·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 성착취 관련 안내자료(안)을 제시한다.

2. 연구체계도



3. 연구방법

1) 문헌 연구 및 관련 법령, 판결례 분석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와 관련된 연구보고서, 논문, 도서 등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분석한다.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국내·외 법률, 지침 등 관련 법규, 정책, 국제인권기준, 주요 판결례 등을 검토·분석한다.

2) 관련 통계 분석

○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다.

○ 각종 연구보고서 등 관련 통계 등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실태 및 특성을 검토·분석한다.

3) 사전 정책회의를 통한 면접조사 질문지 및 통계 설문지 개발

○ 심층면접질문지 개발을 위해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 관련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사전 정책회의를 실시한다.

○ 면접질문지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실태 및 특성 파악, 수사방법 등에서의 문제점, 피해발생과정, 피해현황,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 법제 및 정책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질문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4) 심층면접 및 초점핵심집단 면접(FGI - Focus Group Interview)

○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성착취에 대한 정량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당사자 15명, 관계 종사자[법원, 수사기관(경찰, 검사), 변호사, 유관기관 종사자(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센터, 시민단체 활동가 등) 20명, 정부부처 업무 담당자(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10명, 학계전문가 5명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초점집단면접(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를 실시한다.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대응 부처 종합대책이 새롭게 마련되고 있는 시점을 고려하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실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법무처 대상 FGI를 실시한다.

5)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단계별로 연구진행에 대해 현장 및 학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한다.

○ 심층면접과 초점핵심면접 등에서 파악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예방과 구제방안, 추진체계 구축 등에 대한 법제 및 정책개선안을 도출한다.

4. 기대효과

첫째,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제 정비 및 정책개선 관련 연구에 기여한다.

둘째,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주요 판결례 분석에 기여한다.

셋째,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실태 파악 및 이에 대한 예방책 연구에 기여한다.

넷째,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수사상의 문제점 분석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기여한다.

다섯째,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에 기여한다.

Ⅱ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실태 분석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선행연구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통계 현황
3.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제 및 정책
4.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주요 판결
5. 소결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선행연구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 시작된 것은 캠코더 등을 이용한 동의 없는 개인 성행위 동영상의 촬영 및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그것의 유통과 소비가 이루어진 1990년대 후반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디지털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공론화되고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며, 2017년을 기점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 전반적인 실태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선행연구는 실태 및 분석에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다수 있다.

우선, 장명선(2018)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 연구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아동·청소년의 가출경험 및 성매수범죄와 관련된 인권침해 실태, 성매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등을 분석하여 디지털 성착취범죄와 관련된 현행 법제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06년부터 매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협약이행을 점검하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총괄보고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실태 조사 결과와 주요 행정통계 및 타 분야 통계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아동·청소년 인권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도출한 18개 정책과제 중 하나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 및 성범죄 처벌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원혜옥 외(2020)의 온라인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는 온라인 그루밍 및 온라인 성매매에 특히 주목하여 그 실태를 검토하고, 독일, 호주, 영국 등 외국의 법제와 비교하여 우리의 현행법제는 여전히 미흡함을 지적하며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희정 외(2020)의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유형·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는 최근 10년간 가장 급증하고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실태를 분석하였는데,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의 기준이 불명확하며 주관적인 개념임을 지적하면서 구성요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규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정익중 외(2020)의 아동디지털성범죄 전문영향평가 보고서는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근거한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일환으로 행해진 연구로서, 현행 아동디지털성범죄법·제도가 아동에게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수정 외(2019)의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체계분석과 법·제도적 대응방안 연구보고서는 주로 채팅앱을 이용한 성착취 실태 및 구조, 그리고 유형에 대한 조사·분석에 근거하여 국내 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영국, 호주, 미국 등 외국의 법제 검토를 통해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이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성행위에 동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아동에게 책임을 묻는 인식 변화를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용어를 성착취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그 밖에도 온라인 그루밍 행위의 처벌 및 위장수사의 허용범위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김한균 외(2018)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불법영상물 유통 차단 및 제재 강화방안 연구보고서는 2017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범정부 종합대책이 수립된 이후 추진되어온 정책 현황에 대한 분석 및 비판적 평가를 통해 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불법영상물 유통·판매범죄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재의 도입, 디지털성범죄자 처벌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입법정비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법제 연구

둘째, 최근 그루밍을 통한 성착취 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법제 연구도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숙희 외(2020)는 최근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사건 판결문들에서 그루밍 성범죄

죄의 요소를 확인하고, 정책적 시사점으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체계 보완, 신고의무제의 확대실시, 관련기관 종사자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성적 동의연령의 상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장다혜 외(2018)의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방안 연구보고서도 그루밍을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주요 유형 중 하나로 파악하여 그에 대한 처벌 및 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현숙(2017)은 탁틴내일연구소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그루밍의 특성을 검토하고,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3)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 수사기법을 모색하는 연구

셋째,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 수사기법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있다. 윤지영(2020)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법제 개선 방안 연구는 폐쇄된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사기법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온라인 수색과 잠입수사의 법제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신상현(2020)도 최근 개정된 독일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잠입수사관 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채윤희 외(2020)는 디지털성범죄 수사에서 위장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사관의 일탈을 사전에 차단하며, 증거수집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장수사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지수 외(2020)는 모바일 메시지를 통한 디지털 성착취물 시청행위의 입증을 위한 포렌식 기술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천성덕 외(2019)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온라인 성착취물 최초 유포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4) 해외 주요국가의 관련 법제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연구

넷째, 해외 주요국가의 관련 법제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있다. 김혜진(2020)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 및 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선진 국가들의 입법, 제도 현황을 검토하였다. 고명수(2020)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물 수요(소지, 시청)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에서 독일의 논의상황을 소개하며 실효적 규제를 위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죄’의 구성요건을 좀 더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한다. 김성현 외(2019)의 온라인 기반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는 영국, 미국, 호주 등 해외 여러 국가의 관련법제들을 참조하여 온라인 그루밍의 규제, 의제강간연령의 상향 조정, 합정수사의 허용범위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다. 박다온 외(2020)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의 국제적 실태와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국 및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의 대응 정책에 주목한 연구를 통해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에 대응할 전문조직의 구성, 기술적 대응 역량의 강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신고 의무 등을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또한, 홍태석(2020)은 딥페이크 이용 아동성착취물 제작자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일본의 판례와 논의상황을 소개하였으며, 안경옥(2020)은 독일의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을 검토하여 우리 형법예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외에 김경희 외(2020)는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학교 안에서 디지털 성폭력의 가해 및 피해가 상당한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놀이문화로 가볍게 여겨지는 문제를 확인하였다. 학교 디지털 성폭력을 놀이문화가 아닌 구조적 폭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이 필요하며, 디지털 성폭력을 음란물로 한정하는 현행 법률의 협소한 이해가 학교 디지털 성폭력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정책시사점을 도출한 연구이다.

5) 소결

선행연구들은 주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와 관련된 실태를 검토하고 해외 각국의 법제를 비교·분석한 결과로, 현행 법제의 한계점을 파악하며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특정 형태의 성착취에 주목하여 처벌의 확대·강화를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으며, 아동·청소년의 권리기반 관점에서 총괄적인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사이버공간 확장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화·발전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 및 피해특성에 관한 실태파악 및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해 심층면접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의 분석을 토대로 인권적·성인지적·교육적 관점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예방 및 피해구제, 추진체제구축 등 종합적인 정책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통계 현황

현행법은 청소년성보호법에 신설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규정(제2조 제5호, 제11조)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제15조의2)’에 ‘성착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 성착취 범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관련 통계도 성폭력, 성매매, 성범죄 등으로 나뉘어 도출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착취적 성격의 모든 성범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부재하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의 상품화, 즉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및 그 알선행위,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목적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법원의 판단 이유에서도 알 수 있듯, 성적 착취란 성매매, 성폭력, 그 밖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범죄를 아우르는 개념이다(울산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고합194 판결 참고). 대검찰청에서도 2020년 4월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하면서, 제작과정에서 성범죄·협박·강요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성착취 영상물’로 정의하고 이러한 영상물의 제작·유통·소지 범죄를 ‘성착취 영상물 범죄’로 규정하였는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그 자체로 착취적 성격을 띄고 있음을 반영하였다 할 것이다.¹⁰⁾

따라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통계 현황은 관계부처가 제시한 성범죄 관

10) 권인숙 의원 법무부 요구자료 답변서(자료 담당: 법무부 형사기획과)

런 통계자료를 포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발생 추이와 경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1) 대검찰청 2020년 범죄분석: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¹¹⁾

대검찰청 2020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강제추행(13세 미만 피해자 73.5%, 13세~20세 피해자 48.2%)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다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피해는 강간/간음(15.3%), 통신매체이용음란(6.0%) 범죄가 차례로 높았던 반면, 13세 이상 20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강간/간음(23.6%) 다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16.2%)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II-1〉 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유형별 분포

(단위 : 건, %)

성폭력 유형	피해자 연령		계
	13세 미만	13세~20세	
강간/간음	210(15.3)	1,680(23.6)	1,890(22.3)
강제추행	1,012(73.5)	3,423(48.2)	4,435(52.3)
강간등	25(1.8)	86(1.2)	111(1.3)
강간등살인/치사 /상해/치상	9(0.7)	88(1.2)	97(1.1)
특수강도강간등	0(0.0)	5(0.1)	5(0.1)
카메라등이용촬영	33(2.4)	1,154(16.2)	1,187(14.0)
성적목적의장소침입	2(0.1)	85(1.2)	87(1.0)
통신매체이용음란	83(6.0)	349(4.9)	432(5.1)
공중밀집장소추행	2(0.1)	238(3.3)	240(2.8)
계	1,376(100.0)	7,108(100.0)	8,484(100.0)

11) 대검찰청 정보자료>통계자료>범죄분석>아동성폭력 (출처: <https://www.spo.go.kr/common/files/Download.do?cfIdx=CF00000296&cfGroup=COMMON&cfRename=0de68438-992a-43ef-901b-d37b4ac461bb.zip>)

이러한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2010년 이후로 대체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지난 10년간 16.6% 증가하여, 피해 연령이 저연령화되는 경향도 알 수 있다.

〈표 II-2〉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발생건수 추이(2010년~2019년)

(단위 : 건, %)

연도	발생건수			증감률	
	13세 미만	13세-20세	계	13세 미만	13세-20세
2010	1,180	6,218	7,398	-	-
2011	1,057	6,883	7,940	-10.4	10.7
2012	1,127	7,834	8,961	-4.5	26.0
2013	1,172	8,719	9,891	-0.7	40.2
2014	1,208	8,322	9,530	2.4	33.8
2015	1,272	7,753	9,025	7.8	24.7
2016	1,231	7,342	8,573	4.3	18.1
2017	1,270	8,079	9,349	7.6	29.9
2018	1,283	7,308	8,591	8.7	17.5
2019	1,376	7,108	8,484	16.6	14.3

관련하여, 법무부가 밝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에서도 성폭력범죄 사건은 계속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6년 4,615건으로 접수되었던 성폭력범죄 사건은 2020년 4,932건으로 늘어났다.¹²⁾

12) 권인숙 의원 법무부 요구자료 답변서(법무부 형사기획과), 위의 글(주 10).

〈표 II-3〉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

연도	구분 사건 접수	처분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구속	불구속			
2016년	4,615	4,585	572	1,130	2	1,461	1,420
2017년	4,767	4,659	554	1,166	24	1,460	1,455
2018년	4,585	4,513	491	1,240	19	1,404	1,359
2019년	4,468	4,521	420	1,222	21	1,468	1,390
2020년	4,932	4,487	434	1,365	23	1,174	1,491

※ 불 기 소: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기 타: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 관련죄명: 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준강간등, 위계등간음·추행, 장애인간음등, 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등), 성폭력범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추행)

경찰청이 추출한 아동·청소년(20세 이하) 대상 최근 5년간 성폭력 현황 결과에서도 유사한 추이를 볼 수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카메라 등이용촬영죄의 발생 비율도 대체로 높아지고 있다. 다만, 경찰청이 분류한 성폭력범죄는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른 성폭력범죄 유형과 차이가 있는데, 성폭력범죄에 대한 일관된 통계가 미비한 실태라 할 것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통계에 성매매 관련 통계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같다.¹³⁾

〈표 II-4〉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피해자 연령별(20세 이하) 발생 현황

성폭력범죄	2016	2017	2018	2019	2020
강간, 강제추행	6,951	7,664	6,888	6,754	5,758
카메라등이용촬영	941	1,163	1,159	1,178	996
통신매체이용음란	388	433	400	431	618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60	38	85	86	78

13) 권인숙 의원 경찰청 요구자료 답변서(자료 담당: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한편, 대검찰청 2020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20세 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92.6%가 여성이었다. 다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여성이 87.0%, 남성이 13.0%로, 13세~20세 남성 피해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소위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하는 성폭력범죄는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는 범죄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표 II-5〉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령

피해자 성	피해자 연령		계
	13세 미만	13세~20세	
남성	179(13.0)	447(6.3)	626(7.4)
여성	1,196(87.0)	6,650(93.7)	7,846(92.6)
계	1,375(100.0)	7,097(100.0)	8,472(100.0)

2)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¹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 그 밖에 계도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공포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2019년에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753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자는 2018년 대비 19.3%(2018년 223명, 2019년 266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01.2%(2018년 251명, 2019년 505명) 증가하였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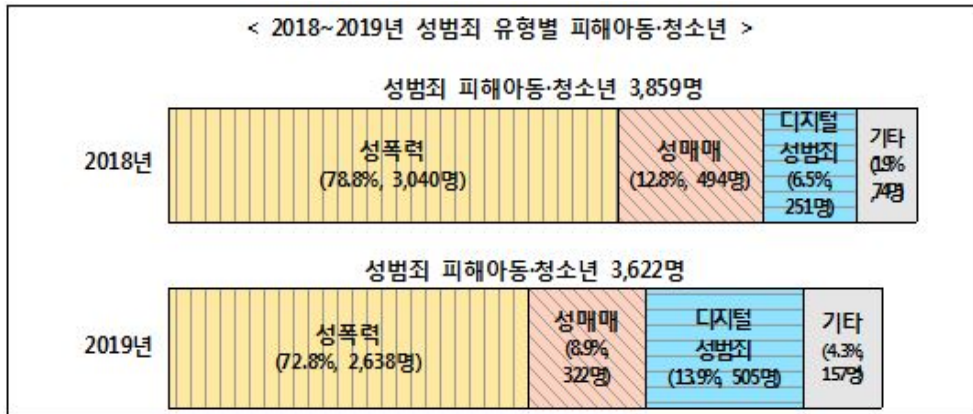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자 2018년 2,431명 → 2019년 2,090명, 피해자 2018년 3,040명 → 2019년 2,638명), 성매매(범죄자 2018년 493명 → 2019년 310명, 피해자 2018년 494명 → 2019년 322명)와 달리 범죄자 대비 피해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조사를 담당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 아동·청소년

14) 이하의 내용은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21. 4. 1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결과”,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479>에 기초하여 제시한 것이다.

15) 이때의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착취물 제작, 아동복지법상 음란행위 강요에 대한 범죄를 말하며, 성폭력 범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범죄(성매매,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영업), 아동복지법 위반(음란행위 강요 제외)에 대한 죄는 별도의 통계로 제시하고 있다.

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는데, 이러한 결과 역시 온라인을 매개하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확산 가능성을 포함한 높은 위험성을 뒷받침한다.

〈그림 II-1〉 성범죄 유형별 피해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착취물 제작 등은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이 각각 93.4%, 92.5%였고,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62.9%인 결과도 주목할 수 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 대부분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는 실태를 유추할 수 있는 한편, 사회 곳곳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잠재적 위험성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는 성매수범죄와 구별되어 제시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매수 경로를 살펴보면, 채팅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이 90.5%였다. 2021년 8월 기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현황 결과도 “온라인 모니터링 및 오프라인 아웃리치” 지원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¹⁶⁾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범죄도 디지털을 매개하는 실태를 나타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는 포괄적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정의가 부재한 현행법·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

16) 권인숙 의원 여성가족부 요구자료 답변서(자료 담당: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표 II-6〉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피해자 지원 현황 (2021년 8월 기준)

센터명 (지역)	신고, 상담지원		온라인 모니터링 및 오프라인 아웃리치	의료, 법률 학업, 자립 지원		부모등 법정대리인 교육		사후관리 (멘토링)		타기관 지원연계	
	실인원	건수	건수	실인원	건수	실인원	건수	실인원	건수	실인원	건수
계	909	6,097	2,816	258	1,012	55	263	12	27	68	84

3) 2020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실적¹⁷⁾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운영 실적도 참고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총 4,973명에게 상담·삭제지원, 수사지원 등 약 17만 건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표 II-7〉 지원센터 2020년 지원 실적

(단위: 명, 건)

기간	피해자 (명)	지원건수(건)				
		합계	상담지원	삭제지원	수사·법률 지원연계	의료지원 연계
2019	2,087	101,378	5,735	95,083	500	60
		(100.0%)	(5.7%)	(93.8%)	(0.5%)	(0.1%)
2020	4,973	170,697	11,452	158,760	445	40
		(100.0%)	(6.7%)	(93.0%)	(0.3%)	(0.02%)

4,973명에 대한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이 4,047명(81.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남성 피해자 비율도 전년도 12.2%에서 18.6%(926명)로 늘어났다. 또한,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를 제외하면, 10대(24.2%)와 20대(21.2%)가 전체의 45.4%로, 피해자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결과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17) 여성가족부(2021. 3. 16.), “2020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2019년의 1.7배”,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

〈표 II-8〉 피해자 세부 현황

(단위: 명, 건)

구분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미상
2020	여성	4,047	1,007	863	267	77	36	1,797
		(100.0%)	(24.9%)	(21.3%)	(6.6%)	(1.9%)	(0.9%)	(44.4%)
	남성	926	197	189	65	57	51	367
		(100.0%)	(21.3%)	(20.4%)	(7.0%)	(6.2%)	(5.5%)	(39.6%)
	계	4,973	1,204	1,052	332	134	87	2,164
		(100.0%)	(24.2%)	(21.2%)	(6.7%)	(2.7%)	(1.7%)	(43.5%)

가장 많은 피해유형은 불법촬영 2,239건(32.1%)이며, 유포 1,586건(22.7%), 유포 불안 1,050건(15.0%), 유포협박 967건(13.8%)에 대한 피해가 차례로 많았다. 각각의 피해는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도 많았는데, 운영 실적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1명당 평균 약 1.4건의 피해를 중복하여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범죄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성을 알 수 있다.

〈표 II-9〉 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 명, 건)

기간	합계	유포	불법 촬영	유포 협박	유포 불안	사진 합성	사이버 괴롭힘	기타
2020	6,983	1,586	2,239	967	1,050	349	306	486
	(100.0%)	(22.7%)	(32.1%)	(13.8%)	(15.0%)	(5.0%)	(4.4%)	(7.0%)

* 기타 : 스토킹,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기타 폭력으로 나타났다.

4)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 피해자 관련 연계기관 현황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 피해자 관련 지역별 연계기관 목록으로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를 제시한다.¹⁸⁾ 수사기관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 관련 문제에 대처하고 전문화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성폭력과 성매매, 아동학대 범죄 등이 분절적으로 인식되는 문제는 연계기관 목록에서도 반복하여 나타난다.

〈표 II-10〉 성폭력 피해 상담소 (2020년 12월 기준, 167개소)

지역	시설명
서울 (22)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벨엘성가족상담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꿈과희망상담센터, 북한이탈여성 성폭력피해상담소, 휴쉼통합상담센터,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늘푸른상담협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행복드림가정상담센터,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꿈터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여성성폭력상담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가족과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 성폭력상담소, 꿈누리여성장애여성상담소
부산 (7)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한국성폭력예방협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기장열린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부산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대구 (4)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인천 (5)	인천광역시 지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인천가족상담소,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광주 (7)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참사랑성폭력상담소, 여등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인권상담소
대전 (4)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위드유성 성인권 상담센터,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울산 (4)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 남구 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세종 (2)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경기 (31)	성폭력상담소함께, 연천행복돌상담소, 공감심리상담소, 양주성폭력상담소, 고양성폭력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용인성폭력상담소, 포천가족성상담센터,

18) 권인숙 의원 경찰청 요구자료 답변서(자료 담당: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지역	시설명
	한마음가족상담센터,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경기북부가정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맘톡상담센터,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이천가정성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의왕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한국장애인성폭력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부천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알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원선복지회부설 평택성폭력상담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부설 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성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새남심리상담연구원 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강원 (10)	정선아라리가족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성폭력상담소,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행북만들기가정폭력 성폭력통합상담소, 원주성폭력·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세이, 원주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충북 (8)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영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충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ywca통합상담소,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단양한스심리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충남 (17)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금산성폭력상담센터,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천가족통합상담센터, 부여성폭력상담소, 계룡시성폭력상담소, 아산가정성상담지원센터, 서천군성폭력상담소, 로템나무상담지원센터, 당진가족성통합상담센터, 예산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금산성가폭통합상담소, 아산늘품상담지원센터,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전북 (7)	남원YWCA통합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전남 (9)	여수성폭력상담소, 담양인권지원상담소,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무안여성상담센터, 목포여성상담센터
경북 (11)	한마음부설한마음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상담소, 문경열린종합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경산로템성폭력상담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경남 (15)	창원여성의전화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진해성폭력상담소, 양산성가족상담소, 밀양성가족상담소, 진주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 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제주 (4)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주여성상담소,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표 II-11〉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1년 11월 기준, 18개소)

지역	시설명
중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서울	십대여성인권센터
부산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대구	대구여성회
인천	인권희망강강술래
광주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전	여성인권티움
울산	울산여성의전화
경기	수원여성인권 돈음
강원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충북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충남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전북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남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경북	포항여성인권지원센터
경남	사회복지법인 범숙(범숙학교)
제주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기타	평화의샘 (지적장애 또는 인지능력이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표 II-12〉 해바라기센터 (2021년 11월 기준, 39개소)

지역	시설명
서울	경찰병원,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연세의료원
부산	부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대구	대구의료원, 경북대병원(아동형 센터)
인천	인천의료원, 인천성모병원, 가천대길병원(아동형 센터)
광주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울산	울산병원
경기	아주대병원, 안산단원병원, 부천순천향대병원, 의정부병원, 명지병원, 분당차병원(아동형 센터)
강원	강릉동인병원, 강원대병원, 원주기독병원
충북	청주의료원, 건국대충주병원(아동형 센터)
충남	단국대병원
전북	전북대병원(아동형 센터 포함), 원광대병원

지역	시설명
전남	영광기독병원, 성가톨릭병원
경북	안동의료원 포항성모병원, 김천제일병원
경남	마산의료원, 진주경상대병원
제주	한라병원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및 수사기관, 피해자 변호사 등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수범죄 피해아동·청소년에 적합한 상담 및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디지털 성범죄특화프로그램을 연계하며,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¹⁹⁾

〈표 II-13〉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유관기관의 협력 방법과 내용

협력기관	협력방안	협력내용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 핫라인 구축 • 간담회 개최 등	• 피해자 지원(삭제지원 및 모니터링 제공 ↔ 수사·법률지원 및 심리치유 제공) • 지원 사례 공유 및 대응 방안 논의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 사안별 지원 연계	• 피해자 지원(삭제지원 및 모니터링 제공 ↔ 수사·법률지원 및 심리치유 제공)
수사기관	• 핫라인 구축 • 시스템 연계 등	• 피해자 지원(삭제지원 및 모니터링 제공 ↔ 경찰 신고 안내 등) • 불법사이트 수사의뢰 및 수사 협조
피해자 변호사	• 사안별 지원 연계 • 성폭력상담소 등 지원기관 경유	• 피해자 지원(삭제지원 및 모니터링 제공 ↔ 수사·법률지원) • 참고자료 제공(채증자료·지원사실확인서 등)

19) 권인숙 의원 여성가족부 요구자료 답변서(자료 담당: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

3.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제 및 정책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제

(1) 개요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성착취 범죄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라는 점은 분명하다.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제10조)”를 천명하였고, 모든 형태의 위험과 착취적 상황에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으로 명확히 확인되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참조). 법 앞에 평등할 권리는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성착취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아야 할 사회안전망을 전제하며(제11조 제1항),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국가의 구조를 받을 권리도 인정한다(제30조).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할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는 특별히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도 있다(제34조 제1항, 제4항). 헌법재판소가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결정).”라고 결정하였듯,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기본권 주체성은 명확하다. 즉, 성착취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은 그들의 고유한 존엄성과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지켜지도록 요구할 수 있고, 피해구제 및 회복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성착취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기존에 성매매청소년들도 윤락여성이라는 범주에 포함되어 처벌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것에서, 규율의 주안점이 ‘성을 파는 청소년’이 아니라 ‘성을 사는 구매자’에게 옮겨가고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인식의 전환을 기반으로 제정되었다.”라고 판시하기도 했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결정). 이는 모든 형태의 성착취 범죄의 책임을 성인과 우리 사회에 묻고, 아동·청소년의 피해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특히 디지털성착취와 관련한 법률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범죄를 규율하는 일반법인 「형법」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규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시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법령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방지, 피해자보호 등을 위한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이 1991년 11월 비준하여 헌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은 ‘IV.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국제법규 및 해외사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관련 법령

가. 형법

2020년 5월 「형법」(이하 ‘형법’)이 개정되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되었고 강간 등의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 의제강간죄 연령 상향으로 인해 16세 미만의 성착취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법적인 피해자로 인정받고 구제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한편, 형법은 제287조부터 제296조의2에 이르기까지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를 규율하고 있다. 2013년 4월 개정되면서 포괄적 인신매매죄를 신설한 것이다. 그 외에도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제287조)가 있으며, 성매매와 성적 착취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을 처벌하는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등의 죄(제288조)가 있다. 또한 성매매와 성적 착취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을 처벌하는 인신매매죄(제289조) 또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제290조),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치사죄(제291조),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의 죄(제292조) 등이 있다.

앞서 살펴본 형법 규정이 보호하는 대상에는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 역시 포함된다. 그러나 2013년 4월 인신매매죄나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또는 유인’하는 구성요건이 추가된 형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규정을 적용해 현장에서 수사, 기소되어 처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법원은 친권자인 모가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후 13개월된 자녀를 주거지에서 데리고 나와 베트남에 입국한 사례에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따른 상대적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라는 관점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을 알선한 자에게는 형법상 인신매매죄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 목적의 약취·유인죄가 적극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²⁰⁾

20) 강정은·김희진(2019), “아동인권 관점에서 바라본 국내 아동 성착취 제도 개선 과제”, 『이화젠더법학』 제11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50-251면 참조.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기화로 2020년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성매매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들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여 사실상 처벌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성매수범죄에 이용당한 모든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분명히 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범죄는 열악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지위를 악용한 성착취라는 관점을 분명히 한 개정으로, 아동 권리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개정이라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성매수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자발적으로 성매매범죄에 가담했다고 해석하여 범죄자로 의율하고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수사 내지 소년부 송치, 나아가 보호처분을 부과하던 규정은 전부 삭제되었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2020년 6월에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광고, 소개, 시청, 구입행위까지 처벌대상에 포함하여 처벌범위를 보다 확대하였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예비·음모죄가 신설되었다. 2020년 12월 개정에는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한편, 2021년 9월 시행된 개정사항으로는, 흔히 ‘온라인 그루밍’ 규정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 목적 등의 대화 등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었고(제15조의2), ‘신분비공개수사’ 혹은 ‘신분위장수사’ 등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규정 또한 대대적으로 신설되었다(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9까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제13조),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제8조의2)의 법정형 또한 상향되었다.

여기서,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에서 정의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제11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제15조의2)의 죄와 ②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죄(제14조 제2항), 그리고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²¹⁾의 정보통신망을 이용

2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하여 제14조 제2항의 죄(제14조 제3항)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중략)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제13조 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6의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란 피해아동·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제14조·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디지털(온라인) 환경 관련 법령

디지털 혹은 온라인 환경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예방하고 불법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디지털 환경 관련 법령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개정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2020년 6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이하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책무를 구체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22조의5). 즉,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폐업이나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함께 신설되었다.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 ③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6. 9.>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6. 9.〉
- ⑥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4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

[본조신설 2018. 12. 24.]

나.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여기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이며, “이용자”란 이러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아동·청소년은 ‘이용자’의 지위에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성착취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 때 성착취 관련 불법정보 혹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은 ‘불법정보’로서 누구든지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관련 불법정보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44조의7).

정보통신망법은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제41조), 청

소년유해매체물을 표시하고(제42조) 광고를 금지하며(제42조의2),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제42조의3),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에 관한 사항(제4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2018년 12월 개정(2019년 6월 시행)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제44조의7제3항제1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 또한 신설하였다(제44조의8).

이후, 2020년 6월 개정(2020년 12월 시행)시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신설하였다(제44조의9, 제64조의5). 또한,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하고(제47조의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를 대응하도록 하고(제48조의5),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하였다(제48조의6).

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에 대한 안내문 등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저작권법」 제2조제30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콘텐츠로서, 컴퓨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이용되는 웹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8.3.13] [[시행일 2018.9.14]]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내용
 2.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 따른 신고 포상금에 대한 안내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보상금에 대한 안내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게시물의 내용, 크기, 게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자율규제조치를 요구하거나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하고 불이행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삭제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정보인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방지, 피해자보호 관련 법률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정하는 “성폭력범죄”에는 형법상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2호). 또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제14조) 또한 의율하고 있다.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 등을 처벌하는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관한 규정도 2020년 3월 신설되었다(제14조의2).

2020년 5월 개정 당시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범죄의 법정형을 전반적으로 상향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한 자를 처벌대상에 포함하고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제14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 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또한 새롭게 마련되었다(제14조의3).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제3호). 특히, 불법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7조의3). 이에 근거하여 설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경우 주로 피해영상을 삭제하는 것을 지원하고, 수사 및 기타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지원을 ‘연계’하는 것일 뿐, 직접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지원 등 법률지원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²²⁾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2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d4u.stop.or.kr/>(검색일: 2021. 7. 19.).

한다)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촬영물등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④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⑤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불법촬영물등 삭제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9., 2021. 7. 13.>

1. 촬영물등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2. 촬영물등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의 수집 및 보관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촬영물등 삭제 요청 및 확인·점검
 4. 그 밖에 촬영물등 삭제 지원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촬영물등 삭제 지원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9.>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

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3.>

1.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원 대상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신설 2021. 7. 13.>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구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10년
 3. 그 밖에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 5년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의 수집 및 보관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3.>
-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5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성폭력 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게 구상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 7. 13.>
-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 7. 13.>

[본조신설 2018. 9. 13.]

[제목개정 2020. 4. 29.]

2)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관련 정책 현황

(1)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2017년 9월)²³⁾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은 불법촬영을 수단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영상물 유포 등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인식하며, 디지털 성범죄 전 과정에 걸쳐 총 22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한 범정부 종합대책이다.

이 종합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이하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하는 FAST TRACK(정보통신망법 개정, ‘17.12)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사업자의 자율규제로 우선 차단할 수 있게 하고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 또는 차단(종전 10.8일 소요)할 예정이라고 제시하였다.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7.12)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등 기계장치 설치를 금지(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개정, ‘17.12)하고, 민간시설 소유주 등이 화장실에 대한 몰래카메라 점검을 요청하면 이를 지원하며, 숙박업자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직접 촬영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조치(공중위생법 개정, ‘18.6)도 계획하였다.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간 불법촬영물 정보 공유를 위한 불법 정보공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영상물 유포를 최소화하고, 경찰 내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지정·운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 대응 및 수사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

23)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7.9.27.),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제작 등의 계획도 찾아볼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도 대폭 강화하고자 하였다. 연인 간 복수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만으로 처벌(벌금형 불가)토록 하고, 그동안 처벌하지 못했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한다. 그밖에 개인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외 용도 이용, 유출 등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 ‘18.6),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공공장소에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 유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동종 전과가 있거나 유포한 자 등에 대해서는 정식기소, 불법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및 불법 성범죄 기록물을 보관한 하드디스크, USB 등 저장매체를 압수·몰수,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직에서 완전배제(파면, 해임 처분)할 계획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창구(gateway)로 운영하고, 신고 즉시 피해자 종합서비스(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지원(18년부터 시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전문상담, 의료비 및 보호시설 입소 지원, 무료 법률서비스 등)와 연계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개정, ‘17.12)하고, 필요한 경우 무료법률서비스(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와 생계비 지원 계획도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통해 정부가 피해자 대신 삭제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가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7.12)한다는 내용도 있다.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2018년 4월)²⁴⁾

2018년 4월 30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소송지원, 사후모니터링(점검) 등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는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採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을 지원한다. 또한, 무료법률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한다. 피해자는 전화(02-735-8994), 비공개 온라인게시판(www.women1366.kr/stopds)을 통해 상담 접수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부모 등 법적 보호자 동의 없이, 피해당사자의 피해 촬영물이 확보되면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다.²⁵⁾ 다만, 이때에도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한계가 있다.

한편, 2017년 9월에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화장실·목욕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각종 영상기기 설치·촬영을 금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8년 4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신속 대응을 위한 긴급심의제도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편집·변형된 불법영상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DNA필터링 기술을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관련해서는 경찰청 ‘사이버수사전략팀’ 내에 ‘사이버성폭력전담반’,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각각 신설해 수사에 전문성을 강화했다.

24)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8.4.26.),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제 국가가 도와드립니다”.

25) 여성신문(2020.5.27.), “디지털 성범죄, 초기 대응이 핵심... 망설이지 말고 도움 청하세요”,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414>.

(3) 디지털 성착취 범죄 근절과 피해 구제를 위한 범정부 협력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중요성을 감안하며, 2018년 10월부터 종전의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주재 여가부 차관)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와 통합돼 여성가족부장관 주재로 격상되었다.²⁶⁾ 협의회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통신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인사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참여한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핵심 기구로 활동한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협의회’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2019. 12. 25.)으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제10조)’로 통합된 변화도 있다. 향후 법적 근거를 가지고 보다 안정적으로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등의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과제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019년 11월에는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이 있었다. 위 협약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월 1일부터 기존의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불법촬영물 통합관리 DB’를 활용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 차단하는 디지털 성범죄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되었다.²⁷⁾

(4)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대상 성매매 집중단속 실시 (2019년 2월)²⁸⁾

2019년 2월 7일, 여성가족부는 2019년도 여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점검·단속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성매매 등 여성폭력 현장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하고 맞춤형 피해보호지원을 통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단속 내용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와 몸캠피싱·스쿨 미투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 ▲화장실·탈의실·지하철에서 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마사지업소·

26)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8.10.17.),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 점검체계 여성가족부 장관 주재로 격상”.

27)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9.11.11.), “4개 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해 협력 강화한다”.

28)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9.2.7.),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성매매·성착취 집중단속”.

성매매집결지 등에서의 영업성 성매매 불법행위, ▲외국인전용유흥업소 여성종사자나 이주여성 등 외국인 여성대상 성착취, ▲성매매강요·감금 등 피해여성 긴급구호 등 5대 분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추진계획이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대상 성매매 집중단속 실시’였다. 여성가족부 주관 단속에서 적발된 디지털 성착취 피해 청소년 추이를 보면,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2017년 2,778건에서 2018년 1,600건으로 집계되었으며(경찰청 자료), 몸캠피싱 적발사례도 2015년 102건, 2016년 1,193건, 2017년 1,234건으로 증가했다(2018년 7월 기준 대검찰청 자료). 익명성과 휘발성이라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징을 고려할 때, 파악되지 않은 범죄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피해청소년을 위한 심리안정 지원, 조력 지원(전문상담사·보호시설 연계 및 수사 동석·동행 등), 사후관리(회복프로그램 서비스 안내·정보제공 등) 등의 지원사항도 안내하여, 범죄 단속과 함께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공공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위기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 강화

2020년 4월,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통계청·경찰청 청장, 중소기업 ombudsman 참석)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하였다. 정부에서도 그간 2차례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17.9)」과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19.1)을 추진해 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범죄수법이 빠르게 진화하고, 폐쇄적인 해외 플랫폼 사용이 활성화되는 등 신종범죄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상당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아동·청소년은 디지털 환경에서 특별히 더 취약한 상황에 있다. 이에 새롭게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은 신종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①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② 합성·편집물(딥페이크 등),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협박,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 포함), ④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고, 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②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③ 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④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위 대책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수요자 유인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SNS·인터넷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자도 신상공개 대상자에 추가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상향, 잠입수사(위장수사)와 신고포급제 도입 등 아동·청소년 보호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여느 때보다 분명히 표명하였다. 성매수범죄에 연루된 아동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던 것을 ‘피해자’로 변경하여 처벌 대신 보호를 제공하고, 야간 시대에도 피해영상물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가동하며,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와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모든 인터넷 사업자에게 적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무도 강화한 것도 주목할 수 있다.²⁹⁾

2020년 6월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 강화 예산(875백만원)과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온라인상담 예산(218백만원)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삭제 지원 및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지원이 보다 강화되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유포된 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 서비스에서 나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피해촬영물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24시간 상시 상담(02-735-8994)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었다. 사전 추적 기능을 통한 선제적 대응과 24시간 종합지원 강화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20.4.23)’에도 포함된 것이다. 또한, 신종 COVID-19 상황에서 성범죄에 노출되거나 비행·범죄 유입 우려가 있는 가출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공적 보호체계로 유입하기 위하여 인터넷 카페,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종사자도 증원(47명→67명)하였다.³⁰⁾ 인터넷 접근성이 높고 디지털 활용에 익숙한 아동·청소년기의 특성을 이해하며, 범죄를 사전에

29)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4.23.), “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30)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6.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청소년 사이버 상담 강화 예산 증액”.

차단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6)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전담센터 운영

2021년 1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이하 ‘특화상담소’) 운영이 시작되었다(경남1366, 경북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대구성폭력피해상담소, 부산성폭력피해상담소, 전북성폭력피해상담소, 제주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충남1366, 이상 전국 7개소). 특화상담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여성폭력 피해 상담 경력을 갖춘 전문 상담사를 배치(개소당 2명)하여, 지역사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심층 상담과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특화상담소는 불법촬영물 삭제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고,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다른 플랫폼의 유포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관리, 나아가 피해자들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심리 상담서비스와 트라우마 치료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특화상담소를 중심으로 교육기관, 수사기관,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인식개선 활동도 지원한다.³¹⁾

또한, 2021년에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20.11월 시행)에 따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이 시작되었다.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성착취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청소년을 찾아 상담 및 의료·법률, 치료·회복 등 아동·청소년에게 특화된 일련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2021년 5월을 기준으로, 중앙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외 전국 17개소 지역전담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했으며, 지원센터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진로·진학 및 자립·자활 교육 등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전문 멘토와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또한, 성착취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에게 일시적 생활 유지를 위한 숙박비와 식비 등 긴급구조지원비(1회당 5만 원)도 제공한다.³²⁾

31)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12.11.),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7개소 운영”.

디지털을 통한 성매매 유입률이 높은 실태를 고려하며, 아동·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특화 상담소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유의미한 활동을 기대해볼 수 있다.

3)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등

(1)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2016)

성착취 범죄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은 가정에서 탈출, 즉 ‘가출’하여 가정 밖 청소년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가출’을 지위비행으로 보아,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 중 가출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소위 ‘우범소년’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많은 경우 ‘가출’이 가정폭력, 학대 등의 가족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청소년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가출’ 그 자체를 ‘반사회적 행동’으로 낙인찍는 것이며, ‘가출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이들이 사회에서 배제되고 나아가 범죄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밝혔다. 이 권고는, 성착취 범죄에 이용당한 아동·청소년이 곧 가정 밖 청소년, 보호대상아동 내지 지원대상아동, 위기청소년일 수 있으며, 국가가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에 따라 2021년 3월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가출 이후 “가정 밖”이라는 위험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제2조제5호),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관리를 위한 지자체 전담기구 설치(제9조의2)와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제12조

32)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21.2.25.),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종합지원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 본격 운영”.

의2)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동·청소년을 중심에 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예방과 피해구제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와 함께 이들의 삶을 지지하는 지역사회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한 방향성을 알 수 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7)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김삼화의원, 남인순의원이 각 2017. 2., 2016. 8. 대표발의한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였다. 주요 골자는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여 이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할 것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전문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근거규정을 신설할 것이었다.

(3) 국회 계류 중인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019)

2019년에는 당시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성명 발표도 있었다.³³⁾ 이 성명은 2017년 7월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여 이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정부의 입장에 문제제기하며 국회의 전향적인 역할을 요구한 것이다.

당시 법무부는 “자발적·상습적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모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었다. 또한, 2019년 1월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며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33) 보도자료(2019. 9. 9.), “국회 계류 중인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촉구」국가인권위원장 성명”,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4511&menuid=001004002001>(검색일: 2021. 7. 19.).

의 공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도입되었지만(제 8조의2), 사실상 피해자가 공박한 상황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와 16세 이상인 아동·청소년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는 문제가 있었다.

위 의견표명은 긴 시간 관계부처에 수용되지 않았으나, 2019년 말 웰컴투 비디오 사건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비로소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2020년 4월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모두 반영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나 의견표명을 받은 관계기관은 이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장의 2019년 9월 성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행조치가 없는 국회의 불이행을 공표하며, 정책 권고와 의견표명으로 나타나는 독립인권기구의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4.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주요 판결

1) 개요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하여 규율하는 법률은 청소년성보호법을 들 수 있다. 여기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³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강요범죄 등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도 포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주요 판결문을 분석하고 사법부의 관점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주요 판결문 분석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의미

가.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통)]

34)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판시사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의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3. 9. 27. 선고 2013노20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 772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청법’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제2조 제1호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5호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8조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청법의 관련 규정 및 입법취지 등을 앞에서 본 형벌법규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청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아동·청소년’과 대등한 개념으로서 그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당 음란물의 내용과 함께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 및 제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이 사건 동영상의 파일명은 ‘Japan school girl.mpg’이고, 이 사건 동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사진들에는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 등이 나타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사진 속에 등장하는 여성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위 여성을 아청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동영상에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동영상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아청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와 다른 전제 아래,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아청법에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원심판결 중 아청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구)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규정하였으나, 현행³⁵⁾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항 제5호의 ‘-중략-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이하생략-’ 규정으로 전부 개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되기 전부터 ‘명백하게’라는 해석을 덧붙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좁게 해석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해석은 청소년성보호법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전면 개정때 ‘명백하게’라는 규정을 넣어 더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포섭되는 범위가 더 엄격해졌다고 할 것이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가.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50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35) 청소년성보호법[시행 2021. 6. 9.][법률 제1764호, 2020. 12. 8. 일부개정]

【판시사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5호, 제8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5호, 제8조 제1항의 문언 및 법정형 그 밖에 위 규정들의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들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아동·청소년 등이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거나 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위 판결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고합162판결로 사실관계는 ‘성기 노출 및 자위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한 주체는 피고인이라는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필름 또는 동영상 역시 모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부근에서 그들 몰래 본인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거나 또는 자위 행위를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1심 판결에서 ‘아동·청소년등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제작한 필름 또는 동영상이 위 법률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규정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문상에는 “아동·청소년 등이”라는 내용은 없으나,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등이 제4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다.

(3)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도 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 등

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

【판시사항】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 및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와 그 기수 시기(=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 및 이러한 법리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위 판결은 음란물제작을 처벌하는 이유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또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에 현재 문제되는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개인방송에 있어서도 촬영하여 재생

가능한 형태로 될 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것이다.

(4)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이미 성매매의사 가지고 있었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는 판결

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판시사항】

[1]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자를 물색하고 있던 청소년 갑과 성매매 장소, 대가 등에 관하여 구체적 합의에 이른 다음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갑에게 전화로 요구 사항을 지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 행위를 할 자를 물색하고 있던 청소년 갑(여, 16세)과 성매매 장소, 대가, 연락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다음,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갑에게 전화를 걸어 ‘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지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나. 위 판결에 대하여

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위의 대법원 판결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이미 성매매의사를 가지고 있던 청소년에 대해서도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으로써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의 인정 범위를 넓혔다고 할 것이다.

(5)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가.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

【판시사항】

-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 강제추행죄가 ‘자수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

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2]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위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나체나 속옷만 입은 상태가 되게 하여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거나,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자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였던 사안’에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으로, 강제추행죄는 자수범³⁶⁾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았을 때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위 사안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들의 신체를 이용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그 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6) 자수범이란 행위자가 자신이 직접 실행해야 범할 수 있는 범죄, 즉 구성요건의 자수(自手)에 의한 직접적 실현에 의해서만 범죄의 특수한 행위반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총론, 이재상 66면).

(6)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에 따라 취득한 추가자료들과 이에 기초하여 취득한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가.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320, 2019전노2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대상판결】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 11. 선고 2018고합143, 2018전고11(병합)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피고사건 부분
- 주1) 법리오해
-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 4항)

수사기관이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긴급압수한 뒤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은, 피해자 공소의 1 에 대한 범행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따라서 위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에 따라 취득한 자료들 중 피해자 공소의 2 , 공소의 3 (가명), 공소의 4 와 관련된 자료들(이하 ‘이 사건 추가 자료들’이라 한다)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수집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추가 자료들을 기초로 획득한 피고인 및 피해자 공소의 2 , 공소의 3 , 공소의 4 의 진술도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2차 증거로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추가 자료들 및 위 2차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여 이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중략-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중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에 대하여

-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착수된 경위,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되고 그에 대하여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위와 그 영장의 내용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해자 공소의 2 , 공소의 3 , 공소의 4 에 대한 간음유인, 간음유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각 범행(이하 ‘이 사건 각 추가 범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혐의사실인 **피해자 공소의 1 에 대한 간음유인죄 및 위 영장의 혐의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피해자 공소의 1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그 죄명, 적용 법령,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도구가 모두 동일하고, 범행 대상이 미성년자들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여, 동종·유사 범행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인 피해자 공소의 1 에 대한 위 각 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주관적으로 ‘간음할 목적(형법 제288조 제1항)’ 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13조)이 있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추가 자료들은 이를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추가 범행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구체적이고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이 사건 추가 자료들을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추가 자료들이 적법하게 압수된 이상 이를 압수의 전제가 된 범죄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대한 증거로도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이나 이 사건 각 추가 범행 외에도 피해자 공소의 2 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피해자 공소의 3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의 증거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원심은 이 사건 추가 자료들과 이에 기초하여 취득한 피고인 및 피해자 공소의 2 , 공소의 3 , 공소의 4 의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이 법원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원심 판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위 판결은 수사기관이 피해자 공소의 1에 대한 범행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긴급압수한 뒤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받은 후 디지털증거분석에 따라 취득한 자료들 중 추가자료들에 의해 이 사건 각 추가 범행 외에도 피해자 공소의 2 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피해자 공소의 3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의 증거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한 것이다. 이에 위 판결은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에 따라 나온 추가자료들에 의해 추가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한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할 것이다.

(7) 휴대폰 영상통화를 통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구체적인 판례

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11.11.선고 2011고합116 판결³⁷⁾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예비적죄명:강요)], [미간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를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개설된 ‘○○○○○’라는
카페(인터넷 주소 생략)에 가입하여 10대 여자 청소년들이 ‘△△△△△’ 게시판에
자신들의 프로필과 사진을 올려놓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친구를 구한다는 내용을

37)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2.2.선고 2011노3355 판결에서 ‘피고인은 1993. 5. 20.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아동·청소년
으로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당시에 이르러 만 19세에 도달하는
2012년의 1월 1일을 경과하여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에서 제외됨으로써 신상정보
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해당부분 피고사건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되어야 하며,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으로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에,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게재한 것을 보고 그들이 소위 ‘얼짱’에 관심이 많고 폭력에 취약한 10대 여자 청소년 들인 점에 착안하여 마치 피고인이 ‘얼짱’인 것처럼 가명으로 접근하여 여자 청소년 들을 유인한 다음 그들의 사진 배포를 통해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폭력행사 등을 고지 하는 방법으로 여자 청소년들을 겁먹게 하여 여자 청소년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영 상통화를 걸어 알몸을 보여주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게 하는 등의 행위를 시켜 이를 보면서 성적 흥분을 느끼고 이러한 영상통화 내용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동영상으로 저장하여 이를 재생하여 보면서 성적 흥분을 느끼기로 마음먹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피고인은 2010. 10. 1. 위 ‘○○○○○’ 카페의 ‘△△△△△’ 게시판에 접속하 여 피해자 공소외 1 (여, 16세)이 게재한 사진과 휴대폰 번호를 확인한 후 인터넷상의 얼짱 사진 2장과 함께 피고인을 공소외 2 라고 소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 여 피해자 공소외 1 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 00:50경 대전 동구 태 평동 (이하 생략) 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 공소외 1 에게 “친구들을 데려 가서 너 따먹는다. 찾아가서 걸레로 만들어주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약 44회에 걸쳐 보내 겁을 먹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공소외 1 로 하여금 휴대폰의 카메라를 통하여 촬영되는 영상이 전송되는 영상통화를 피고인에게 걸게 한 후 가슴 을 보여주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1 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고인은 2010. 10. 4. 01:3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1 에게 재차 약 1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먹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공소외 1 로 하여금 휴대폰의 카메라를 통하여 촬영되는 영상이 전송되는 영상통화를 피고인에게 걸게 한 후 관장약을 이용 하여 대변을 보는 장면을 전송하게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1 을 강제로 추행 하였다.

- 피고인은 2010. 10. 6. 01:0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1 에게 약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먹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공소외 1 로 하여금 휴대폰의 카메라를 통하여 촬영되는 영상이 전송되는 영상통화를 피고인에게 걸게 한 후 가슴을 보여주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1 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고인은 2011. 1. 5. 00:0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3 (여, 13세)에게 “너를 찾을 수 있겠다”, “원래 찾을 수 있음 다 찾아보는데ㅋㅋㅋ”, “내가 아는 후배 놈들 너 다니는 중 나왔는데.. 너 찾아보라고 얘기해보려고”, “개들 더럽게 놀아서 걸레 만들어ㅋㅋㅋ”, “토 나와ㅋㅋㅋ 진짜 개네들 너 한번 부탁해 볼까ㅎ” “사진만 주면 찾을 거 같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뭐 해줄래 말 안하면”, “사진 보낼게^^”, “뭐든지 다 한다면 봐줄게 네 얘기는 해 나서 진짜 사진만 주면 끝이다”, “하라는 대로만 하면 걸레될 일 없으니까 겁먹지 마”, “썸 야한 거 시키는 건 감수해라”, “영통으로 조금만 하면 된다. 그럼 걸레될 일 없어 후배들 안 시킬게”, “약간 야한 거 그럼 바로 사라져줄게”, “옷 좀 입으면 돼 영통 걸어”, “어 내가 말하는 거 영통 채팅 있잖아”, “걸어 나 맘 변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보내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 공소외 3 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공소외 3 으로 하여금 휴대폰의 카메라를 통하여 촬영되는 영상이 전송되는 영상통화를 피고인에게 걸게 한 후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3 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0. 12. 4.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공소외 4 (여, 13세)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어 휴대폰의 카메라를 통하여 촬영되는 영상이 전송되는 영상통화를 피고인에게 걸게 한 후 공소외 4 의 남동생이 공소외 4 의 알몸을 만지는 장면을 촬영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되어 온 영상통화 영상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접촉·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인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위 판결은 아동·청소년에 대상 디지털 성착취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 바, 휴대폰 영상통화를 통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성립 및 휴대폰으로 전송되어 온 영상통화 영상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이 성립되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8) 여성 청소년 6명과 함께 생활하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청소년들에게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을 인정한 사안³⁸⁾

가. 공소사실의 요지³⁹⁾

① 성매매합숙사건

㉮ 성매매 여성 청소년 ‘조건사냥’ 관련 : 피고인 1, 2, 3, 4

■ 피고인들의 공모 : 피고인 2, 3, 4는 성매매 영업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1에게 조언을 구한 뒤, 기존에 혼자서 조건만남을 해오던 여성들 중 관리가 용이한 가출 미성년자들을 유인하여 성매매를 시키기로 함.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피고인 1, 2, 3, 4는 2020.말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A와 성매매 약속을 잡은 뒤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성매매를 함.

38) 대법원 2021도5129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사건 보도자료(대법원 공보연구관실 02-3480-1451), 대법원 2021. 7. 29. 2021도5129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4. 7. 선고 2020노581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20고합73판결.

39) 위 보도자료에서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 12명, 죄명 21개, 범죄사실 약 40개로 구성되어 있음.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상고했다가 상고를 취하한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판결 선고를 받는 피고인들 4명에 대한 공소사실만 간략 기재함’이라고 적고 있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피고인 1의 위 성매매가 끝나자 피고인 2, 3, 4는 우연히 성매매 현장을 발견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차량에 다가가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들과 함께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 A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15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피고인들은 2020. 2.경 창원시 인근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B, C와 성매매 약속을 잡은 다음, 피고인 2, 3, 4는 모텔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1은 피해자들을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피고인 1은 위 성매매가 끝난 후 피해자 B, C에게 자신과 함께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 피고인 2, 3, 4를 모텔로 불러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3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

④ 성매매 합숙소 운영 관련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 피고인 2, 3, 4
피고인 2, 3, 4 등은 2020. 1.경부터 2020. 3.경까지 청소년인 A 등 6 명과 함께 창원시 내에 마련한 합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위 청소년들에게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교부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20. 1.경 피고인 2, 3, 4에게 조건만남 영업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피고인 2, 3, 4와 함께 ‘조건사냥’을 하여 청소년 A 등 3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함.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 피고인 2, 3, 4

피고인 2, 3, 4는 2020. 3.경 부산시 일대 노상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D를 차량에 태운 후, 조건만남을 하는 것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창원시 합숙소로 데려가 창원시 합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납을 모집하여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성매매 대금 중 21만 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음.

㉔ 탈출 성매매 여성 추적 관련 : 피고인 3, 4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피고인 3, 4는 2020. 3.경 울산 시내 모텔에서 도망간 피해자들을 불러 내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1시간 15분 동안 감금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피고인 3, 4는 위와 같이 집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지품을 모두 차량에 둔 채 몸만 내리도록 하여 카디건 1벌,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 화장품 세트 등을 갈취.

② 그 밖의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피고인 2, 3, 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피고인 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피고인 2, 4 등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피고인 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 피고인 3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피고인 3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피고인 3, 4 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피고인 3, 4 등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피고인 2(낮은 등급 신용자도 대출이 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

■ 사기: 피고인 3(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헤어드라이어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려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9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

나. 소송경과

■ 제1심과 원심 모두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

피고인	제1심(울산지법)	원심(부산고법)
1	징역 7년	징역 7년
2	징역 15년	징역 12년
3	징역 11년(성매매 합숙 사건 A) + 징역 7년(나머지)	징역 10년(성매매 합숙 사건 ①) + 징역 6년(나머지)
4	징역 16년	징역 14년

■ 피고인들 상고

다. 대법원의 판단

① 판결결과 ■ 상고 기각

② 판단 근거

■ 피고인 1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 피고인 2, 3, 4 :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라.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2021도51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 행위]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내면서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 7. 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이 여성 청소년 6명과 함께 생활하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위 청소년들에게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 하였음(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5129 판결)’이라고 하고 있다.

위 사건의 1심 판결(울산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20고합73판결) 범죄사실에 서는 ‘피고인 1이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에서 성매수남 역할을 하면서 미성년 여성을 만나 성행위를 한 후 피고인 2, 3, 4를 불러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한다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거나, 피고인 2, 3, 4이 성행위를 하는 현장을 잡자기 덮쳐 경찰에 제보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을 위협하면서 ‘혼자서 성매매를 하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닥칠 수 있지만 피고인들과 함께 성매매를 하면 안전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인하는 방식으로 일명 “조건사냥(성매매 여성을 확보하는 수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위 사건은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건사냥 관련하여 성매수, 공동공갈,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합숙소 운영관련하여 알선영업행위, 성매매강요등, 탈출성매매여성추적 관련하여 공동감금, 공동공갈까지 이루어져 조직적으로 피해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성착취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이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아동청소년들을 유인 성매수, 공동공갈, 합숙으로 이어지고, 이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선영업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빠져나온 피해아동청소년을 불러내 감금까지 이루어지는 전형적이고 잔혹한 디지털성착취행위라고 할 것이다.

5. 소결

전반적인 통계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결과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피해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청소년 피해자 대부분 여성이기는 하나 남성 피해자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어린 연령에서 성별 격차가 다소간 줄어드는 결과도 주목할 수 있다. 성범죄 관련 통계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는 그 비율이 커지고 있는데, 성매수범죄의 유입경로도 대부분 온라인을 매개하였다는 통계에 비추어, 온라인·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성을 알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에 대한 통계는 소위 ‘그루밍 범죄’를 규율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한편, 전반적으로 손쉽게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잠재적 위험성을 보여준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 피해자 관련 연계기관 현황자료는 범죄의 전후 맥락에서 디지털환경이 폭넓게 이용되는 현재, 피해자 지원체계에 있어 성매매와 성폭력에 차등을 두지 않고, 다만 각각의 사안에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성적 착취’로 해석하는 사법 판단과 관계부처의 정책이 누적될 필요와 함께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통계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앞으로 남겨진 주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제에 있어 특히 2020년 5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성매매에 관여한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실상 이들을 범죄자와 다름없이 처벌하던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을 삭제하였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범죄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성착취라는 관점을 분명히 한 개정으로, 아동 권리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였다.

2020년 6월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개정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광고, 소개, 시청, 구입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하여 처벌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진전도 있었다. 이후 2021년 9월에는 ‘온라인그루밍’ 규정이라고 불리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

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 목적 등의 대화 등을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신분비공개수사’ 혹은 ‘신분위장 수사’ 등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규정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온라인환경과 관련된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부가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책무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등 기업의 책무도 보다 가시화되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2017년 9월 법무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이후, 2018년 4월 30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하였다. 2020년 4월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하였으며, 2021년 1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 운영도 시작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그에 관련된 다양하고 다각적인 정책이 마련되고 보완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20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7), 국회에 계류 중이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2019)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중심에 둔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죄 예방과 피해구제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환기하는 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법원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개념을 명료화하고, 긍정적 변화를 만드는 의미있는 기여를 하였다. 2013도12607 판결은 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소 좁게 해석한 한계가 있으나, 이후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2018도9340 판결),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강제추행죄를 범할 수 있다고 보아(2016도17733 판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범위를 넓혔다.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아동·청소년들을 조직적으로 유인하고 성매매합숙소를 운영하였으며,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알선영업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합숙소를 빠져나온 피해아동·청소년을 불러내 감금하는 등 전형적이고 잔혹한 디지털 성착취 행위에 대한 사건에 있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된 대법원 판결(2021도5129 판결)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남긴다.

III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분석

1. 조사 설계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당사자 조사
3.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계 종사자 조사
4.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학계 전문가 조사
5.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정책 담당자 조사
6. 소결

1. 조사 설계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심층면접조사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아동·청소년과 관계 종사자, 그리고 학계 전문가 및 정부부처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피해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은 당사자의 경험을 통해 범죄 발생 직후부터 구제에 이르는 각각의 단계가 아동·청소년의 사회복귀와 일상 회복을 위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특별히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필요한 권리보장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하고, 아동 중심적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권리구제와 일상회복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종사자 대상 심층면접은 이들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정도, 어려움과 문제의식을 확인하여 아동권리에 기반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학계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은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 실태와 예방 및 구제에 대한 정책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제II장에서 실시한 정량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은 총 15명에 대한 개별면접을 실시하였고, 관계 종사자는 개별 면접과 초점집단 면접(FGI)을 병행하여 종사업무의 특성과 직무별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관계 종사자 대상 심층면접조사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 관계자(경찰청, 검찰청, 법원), 현행법상 성착취(성범죄, 성매매, 성착취물 등) 관련 상담과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 종사자(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아동·청소년의 보편적 권리 옹호 활동을 진행하는 시민단체 종사자 총 20명이 참여하여 각 분야의 경험을 보고하였다. 학계전문가 집단면접조사의 경우, 디지털 성착취 범죄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연구와 조사를 수행한 교수 및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5명을 섭외하여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구체적인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정부부처 관계자 10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Ⅲ-1〉 개별면접과 초점집단면접 조사 대상

구분	규모	구성
아동·청소년	15명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관련 지원시설을 통해 심층면접 참여자 추천, 1:1 면접 진행
관계 종사자	20명	관계기관 공문 발송을 통해 소속 기관과 직무를 고려해 심층면접 참여자 추천, 1:1 면접 또는 FGI 진행(대면/온라인)
학계 전문가	5명	교수 및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FGI 진행(대면/온라인)
정부 관계자	10명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정부 부처 종사자 조사 진행(서면)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당사자 조사

1) 참여자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 참여자는 디지털 매체와 환경을 매개로 성착취 범죄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피해 당시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는 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⁴⁰⁾이면서 현재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 특성상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며, 지속적인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연령까지를 조사 대상으로 섭외한 것이다.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은 모두 여성으로, 연령은 만 14세부터 만 22세였다. 참여자의 거주지역은 서울, 인천, 대전, 전북 등이었고,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경험한 지역과 현재 거주지역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다만, 참여자 대부분이 가정해체와 학대 등으로 탈가정 상황을 경험한 배경과 물리적 공간에 한정되지 않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범죄가 발생한 지역은 본 연구보고서에 따로 적시하지 않았다. 또한, 참여자 모두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성착취 관련 지원기관과 계속하여 연계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이에 지원 내용의 장점과 보완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참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I-2〉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현황

참여자 번호	성별	연령 (만) ⁴¹⁾	지원기관	신뢰관계인 동석	심층면접 조사일
1	여	18	십대여성인권센터	O	2021.06.01.
2	여	17	십대여성인권센터	O	2021.06.01.
3	여	17	십대여성인권센터	O	2021.06.02.
4	여	14	십대여성인권센터	O	2021.06.04.
5	여	14	십대여성인권센터	O	2021.06.04.

40)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가 발생했던 당시 19세 미만이면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41) 심층면접조사 일시 기준.

참여자 번호	성별	연령 (만) ⁴¹⁾	지원기관	신뢰관계인 동석	심층면접 조사일
6	여	18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나우센터'	X	2021.07.26.
7	여	21	다시함께상담센터	X	2021.07.26.
8	여	22	마인하우스	X	2021.08.01.
9	여	21	마인하우스	X	2021.08.01.
10	여	18	사단법인 여성인권티움 부설 '그냥공방'	X	2021.08.04.
11	여	18	인권희망강강술래 부설 '잇다'	X	2021.08.20.
12	여	17	인권희망강강술래 부설 '잇다'	X	2021.08.28.
13	여	18	인권희망강강술래 부설 '잇다'	X	2021.08.28.
14	여	18	인권희망강강술래 부설 '잇다'	X	2021.09.07.
15	여	18	인권희망강강술래 부설 '잇다'	X	2021.09.24.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조사에 참여한 총 15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심층면접조사 시작 전 연구목적과 연구 방법, 그리고 개인정보 비밀보장을 안내하고 동의서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진 2명이 동행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의 연령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지원기관의 종사자(사무국장, 상담사 등)가 면접조사 현장에 참석하여 조사과정을 조력하였다. 조사는 1회당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동안 진행하였으며, 조사 장소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와 관련된 지원기관 상담실 또는 아동·청소년의 거주지 인근에 있는 독립된 회의공간을 대관하여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의 물리적 접근성을 확보하고, 긴장감과 부담감을 낮추며, 조사내용의 비밀유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조사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녹음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2021년 6월부터 2021년 9월 중순까지 진행하였으며, 참여자는 전국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청소년성보호법 제47조의2), 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제9조, 제10조)과 성매매피해상담소(제17조) 등의 추천을 받았다.

그리고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추천을 받았다. 가능한 경우, 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을 통해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사람들을 소개받아 조사하는 “눈덩이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3) 조사내용

본 연구의 모든 심층면접조사에 공통질문으로 반영한 참여자의 기본사항(나이, 성별, 거주지역), 디지털 성착취 범죄 인식, 처벌 및 피해구제와 예방에 대한 질문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이 경험한 피해 현황을 확인하였고,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되 수사 및 재판과 피해자 지원체계라는 공통의 틀을 유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사 및 재판 항목에서는 수사 기관의 사건 인지 경위, 수사 과정에서 보호자의 알 권리, 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알 권리, 재판 과정에서 보호자의 알 권리, 2차 피해 경험을 질의하였고, 피해자 지원체계 항목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정보접근권, 보호자의 알 권리, 피해회복과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였다.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실제 경험과 경험에 기반한 의견을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청취권이 어떻게 보장되고 실천되는지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피해 예방과 그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구제방안은 당사자의 권리 인식과 그에 따른 의견청취의 경험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심층면접조사에 활용한 질문 내용은 [별첨 1] ‘아동·청소년 면접조사 조사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III-3〉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 질문 구성

순번	항목	세부 항목
1	디지털 성착취 범죄 인식	①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개념 ②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실태
2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 경험	① 범죄 발생 경로 ② 범죄의 내용
3	수사 및 재판 현황	① 사건 인지 경위 ②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의 권리 ③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보호자의 알 권리 ④ 2차 피해 경험
4	피해자 지원체계	① 아동·청소년의 정보접근권 ② 보호자의 정보접근권 ③ 관계기관 종사자의 역량과 전문성 ④ 피해회복과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5	처벌 및 피해 구제, 예방	① 처벌의 적정성 ② 지원기관의 역할 ③ 피해 구제를 위한 제언 ④ 피해 예방을 위한 제언

4) 조사 결과

(1) 디지털 성착취 범죄 인식

가.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개념

심층면접 도입이나 말미에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참여자 대부분 ‘온라인을 수단으로 발생하는 모든 성범죄’라고 말했다. 특히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하는 성범죄라고 설명하여, 연령과 발달적 특성 및 사회구조상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지위적 특성을 이용한 착취적 성격의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SNS나 앱 등에서 일어나는 성착취들. 미성년자 기준으로는 원하든 원하지 않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의 매개체로 보고 디지털 세상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참여자 1)

“남자들이 아동이나 여성에게 사진을 보여달라고 권유하는 것도 디지털 성착취인 것 같고, 아

동이나 어린 미성년자들이 남자에게 “사진을 보내줄까?” 이렇게 해도 그 남자께서 거절해야 하는데, 그것을 “보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성착취인 것 같아요.” (참여자 2)

“디지털 상에서, 남성이나 여성이 다른 누구에게 성 관련된 걸 구매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그 걸 이용해서 돈을 번다고 한다거나, 그런 모든 걸 포함하면 좋지 않을까.” (참여자 14)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범죄, 인격을 앗아가는 행위’라는 참여자들의 응답에서 알 수 있듯, 성매매를 포함한 성착취는 아동·청소년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범죄이다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결정 참조). 아동·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착취적 성격의 성범죄에 주목하며,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환경을 매개하는 모든 형태의 범죄를 광범위하게 아우르는 입법적·사법적 결단이 필요하다.

“저는 그 사건(유포)을 통해서 아직도 언급이 돼요, 제 몸에 대한 콤플렉스들이. 누구랑 인터넷에서 말싸움이 나면 계속 그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사진이 합성되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 때가 열다섯 살 때이고, 이제 8년이죠. 그러니까 8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건데. 저는 아직도 그걸 못 잊고 있죠. 지금이야 이런 얘기를 여러 센터를 거쳐가면서 많이 해서 멀쩡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옛날에는) 한 마디도 못 하고 엉엉 울었던 말이에요. 너무 무서웠었고 죽고 싶었고. 자살하려고, 소파에 그냥 누워있다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다가 엄마가 불려가지고. 아무튼 그랬었는데, 이거는 살인미수에 가까운 거죠. 사람 하나 자체를 망가지게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학교 자퇴도 하고 그렇게 된 건데.” (참여자 7)

“디지털로 제 인격을 앗아가는 행위? 사고파는 것 자체만이 아니라, 그냥 저를 뺏어가는 느낌이에요. 제가 없어지는 느낌.” (참여자 15)

나.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실태

디지털 환경은 오늘날의 아동·청소년의 삶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CRC/C/GC/25, para. 3).⁴²⁾ 아동의 일상과 분리할 수 없는 필수요건인 만큼,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참여자들도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물리적 경계가 한정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 크다고 인식

42)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 제25호에 참여한 아동은 디지털 기술이 현재의 삶과 미래에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아동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세계 곳곳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이 정체성 확립에 큰 도움이 되었다.”, “슬픔에 빠졌을 때, 인터넷은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CRC/C/GC/25, para. 1).

하고 있었다. 제Ⅱ장의 통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성착취 범죄 피해 연령이 초등학교
연령으로 낮아지는 실태도 보고되었다.

“워낙 디지털 세계가 넓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서 (디지털 성착취 범죄
는)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참여자 1)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에 사람 만나는 것도 온라인으로 너무 자주 만나고,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연인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좀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는 게 너무 쉬우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래서 오픈채팅방 같은 거 만들면 그거 하자
고 하면서 독기품고 들어오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아니고 제 친구가 최근에 오픈채
팅방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없앴대요, 그거 채팅방을. 막 섹
스하자고 하면서, 들어오자마자 “나 너 좋아해, 사귀자” 이라고.” (참여자 3)

“되게 심각해요. 친구가 소문 들은 건데, 저희 학교에도 어떤 애가 초등학교 때 막 조건만남을
했다, 이런 말이 좀 돌아서. 나쁜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런 경험이 있구나, 그런 거 생각
했어요.” (참여자 4)

“가장 접근하기 쉬운 범죄. 너무 삶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10)

(2)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 경험

가. 범죄 발생 경로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경험한 것으로 나
타났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와 SNS를 기반
으로 만들어진 오픈채팅방,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음성채팅 소프트웨어를 매개로 성
착취 범죄가 시도되었다. 면접조사 참여자들이 보고한 범죄 발생시점은 2013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다양했는데, 과거에 이용되던 디지털 매체는 지금도 여전히 이용되
고 있었고, 범죄의 수단이나 유형은 계속 진화하는 실태를 알 수 있었다.

“저는 **** 앱에서 성착취를 당했었는데, (…중략…) (가해자가 옮겨가라고 해서) ***에서
****으로 넘어갔어요.” (참여자 1)

“거의 앱 통해서 만났어요. 앱에서 간단한 인적사항 같은 거 남긴 다음에 거의 **이나 ** 쪽
으로 넘어갔어요. **이나 **으로 안 넘어가고 앱에서만 연락하는 사람들도 있었구요. (…중
략…) (**이나 **으로 옮겨가는 건) 그쪽에서 요청할 때도 있고, 제가 요청할 때도 있어요. 왜
냐하면 이게 앱으로 하긴 하지만, 알림이 안 떠서 답답하거든요.” (참여자 2)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낯상에서 연애를 하게 돼서 사귀게 되었는데, 제가 미성년자인

상태고 그 사람은 성인인 상태여서 저한테 약간 성적인 것을 좀 많이 요구했었어요.” (참여자 3)

“급하게 용돈이 필요해서 ***에다 알바를 찾아보다가, ***에 속옷 같은 거를 파는 글도 있어서 제가 그거를 보고 저도 똑같이 올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어떤 남자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참여자 4)

“뭔가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익명 채팅을 깔았어요. 저 혼자 <친구 만나는 앱> 그렇게 쳤는데 짝 나오더라고요. (…중략…) 그 익명 채팅에서 ** 아이디를 주고받고, 그리고 **을 깔아서 연락을 했었어요.” (참여자 5)

“저는 핸드폰 채팅 앱을 통해서 성매매를 경험한 게 있죠. 사실 채팅앱이라고 부르긴 조금 그렇지만, ***라는 SNS로, 네, 사용했어요.” (참여자 6)

“중학교 2학년 때 남자친구를 인터넷 **** 통해서 SNS로 만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당시에 사시였고, 몸도 굉장히 뚱뚱했었고, 그리고 가정폭력도 당했었고, 아무튼 친구가 생기기 힘든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밖에 친구를 못 만났었는데, 사람이 힘들 때는 금방 또 마음을 줄 수가 있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날 좋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나중에는 그게 험박처럼 돼서.” (참여자 7)

“고등학교 3학년, 19살 때, 채팅앱, 그런 걸로 했었죠. 아는 언니가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그 언니가 몇 시간 동안 설득을 하더라고요. 나도 하고 있고, 주위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면 나도 해볼까? 하다가, 그렇게 해서 유입이 된 거였어요. (…중략…) 앱은 한 4~5개? 하여튼 ** 치면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런 거 다운받아서 했던 것 같은데, 잘 기억 안 나요.” (참여자 8)

“** 오픈채팅이란, 컴퓨터에 ***이라고, 음성채팅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친구랑 심심하니까, 새벽에 나와서 피씨방 가고 하면 ‘OO사는 사람’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들어가 가지고 놀다보면 “만날래?” 이러면서, 그런 만남이 가끔 있었어요.” (참여자 10)

“***라는 채팅앱이 있어요, 얼굴 보면서 화상하는 그런 채팅. 그걸로 남자에 두 명을 알게 됐어요, 15살 때, 중 2 여름. 남자애들(알선자)이 ***, **, 이런 거로 남자를 구해요. ** 이런거로 공유를 해서 그 사람이 전화하자고 할 때마다 전화를 해요. (…중략…) 그냥 심심할 때마다 전화 좋아하니까, 그냥 만나는 사람들끼리 이것저것 얘기하는 게 재미있어서 (** 앱) 깔게 된 거예요.” (참여자 12)

“일단 ****을 보다가 앱이란 게 떠오. 랜덤채팅이란 게 뜨고, 소개팅이란 게 떠서 들어가 “아, 이게 성매매하는 앱이구나”해서 그 나이 때 처음 깔아서 시작하게 됐어요. **이라고, 대화만 하는 채팅앱이에요.” (참여자 13)

“작년 12월쯤에 **이라는 앱을 통해서 성매매를 원한다고 메시지를 받았고.” (참여자 14)

“****. 뭐가 없어요, 그냥 동의 누르면 바로 가입돼요. 그니까 성인인 양 ‘동의합니다’ 표시하는 거 있고, 동의하면 바로 가입돼요.” (참여자 15)

참여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본인이 직접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것은 아니지만, 주변의 강요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를 당했던 경우도 있었다. 당사자가 직접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성착취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2019년 2월에 핸드폰 앱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앱으로 했어요. 개네들이 앱으로 채팅하고, 저는 말로만 듣고. 어떻게 하라고 전달을 받았어요.” (참여자 9)
“그냥 앱에서 찾아서 (조건만남을) 한 거예요. 저는 그때 핸드폰이 없었고, 개가 지 핸드폰으로 찾아서 한 거예요.” (참여자 11)

관련하여,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를 이용한 성매매 인지 경위를 질문하였는데, 특별한 계기는 언급되지 않았다. 아동·청소년 대부분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고 접근 가능했다고 보고했으며, 특히 참여자 6은 청소년 범죄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를 예로 들며 누구나 자연스럽게 성착취 범죄 매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심층면접에서 제시한 2개의 영화 모두 “청소년관람불가”로 분류된 영화였다. 이러한 답변은 디지털 환경의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미흡한 실태를 보여준다.

“그때 친구들이랑 다 같이 앱으로 남자를, 그런 게 있었어요. 애들끼리 밥을 먹고 그 남자에게 연락해서 밥 좀 사주라 해가지고, 그 남성들한테 이제 돈을 내게끔 부르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앱을 알다가,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용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조금 돈이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알바로 하기에는 너무 안 구해지고. 그래서 저 혼자 뭐 보다가 사진 같은 것도 보내주고, 그러면 거의 남성분들께서 저에게 “조건할래? 만남 가질래? 용돈 받아갈래?”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중략…) 앱을 깔면 경고 같은 거는, 그냥 동의 같은 거? 메시지 할 때마다 위에, 경고는 떠요. 경고는 뜨는데, 별로 눈에 안 간다? 조그마해서,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요. 설치하고 가입하는 건 아무 어려움도 없었고, 전화번호 인증 같은 것만 한 번씩. 저 아이폰이라서 아이폰은 미성년자 인증 안 해도 돼요.” (참여자 2)

“사실 성매매라든지 그런 건, 요즘 최근에 나온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영화도 있고, 그게 약간 청소년의 범죄, 뭐 그런 걸 다룬 영화거든요. 그러면 혹시 ‘박화영’이라는 영화 그런 건 아시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청소년의 범죄를 다루는 영화라든지, 그걸 소재로 쓰인 드라마들이 상당히 있는 편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게 누구나 자연스럽게 정보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뜻 손이 가지 않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고,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아서 손을 대지 않는 것이지, 딱 누구한테 “너 조건이나 성매매라는 단어를 알아?”하면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정보를 알고 있다가 그렇게 된 거죠. (…중

락...) 저는 모든 이상한 범죄행위는 ***라는 SNS랑 연관이 되어 있다, 거기 들어가면 되게 그런 게 펼쳐진다는 걸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것밖에 몰라서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6)

“이게 사람을 찾으려면 다 채팅으로 찾아야 되니까. 아는 애들은 만나고, 같이 가는 애들은 채팅으로 해서 데려오고. 밥 주고 재워주고 돈 줄 테니까 와서 해라, 이러면 여자애들은 알겠더라고요. 또 그 채팅으로 애들이 다 (성구매자들) 구해서. 앱이 하나도 아니고 엄청 많으니까, 그 앱 다 돌리면 무조건 온단 말이에요. **, **, ****, 그리고 ****? 엄청 많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중략...) (가해자들) 찾아도 그냥 차단하고 나가버리면 그만이니까.” (참여자 12)

“사실 애들 사이에서 “재 조건만남한대”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소문?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게 뭔데?” 이런 식으로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랑 **이랑 써서 남자 만나는 거래” 이런 식으로 들은 얘기가 있었죠, 학교 친구들한테. 그때는 뭐 “아, 그래? 근데 왜 그런 걸 했대?” 이라고 그냥 말았는데, 불현듯 돈이 갑자기 급하게 필요하게 되니까, 그 조건만남을 찾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14)

나. 범죄 내용

참여자들의 보고한 범죄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의존성을 이용하는 범죄 수법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 인 관계나 촬영물 등을 요구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의 유포·협박을 수단으로 착취적 행위를 지속하였다.

“처음에는 사진이랑 동영상 같은 거를 찍으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얼굴 나오게. 거기서부터 피해자를 붙잡아 놓는 거고. 이제 가면 갈수록 약간 심각한 걸 시켰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피해를 당했거든요. 그게 하루 종일 핸드폰을 못 놓게, 그냥 하루 종일 일과를 보고하라는 그런 식으로 했었고. 그러면 밖에 나가거나 어디를 간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밖에 나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라,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리고 가해자는 제가 당하는 피해가 별 거 아니라는 듯이, 다른 피해자들 사진을 저한테 보내면서, “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 정도면 약한 거라고”, 이렇게 약간 세뇌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네가 도망가면 이렇게 애네들처럼 뿌릴 거라고, 애네들처럼 사진을 유포할 거라고 협박하면서. (...중략...) 약국 가서 관장약을 사오라고 해서, 그거를 몇 개씩 넣어라, 넣고 몇 분을 버티고. 또 항문에다가 뭘 넣고 그것을 찍어라, 이런 식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몸이 다치거나 멍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찍어서 보내라고 하고. 그러면 그걸 가해자가 보고 되게 웃어요.” (참여자 1)

“앱으로 메시지를 한 다음에 ****으로 넘어갔어요. 그렇게 연락을 하다가, 제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 이런 거 말했는데, 저도 계속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때마다 “다음에 알려줄게. 네가

43) 범죄 발생시점 2020년.

잘할 때 알려줄게” 그런 식으로 자꾸 피해갔죠. 그러다 서로 19금 얘기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으로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사진을 보내줄 때가 있고, 그 오빠가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4~5장 정도 보내줬고, 그 뒤부터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진 좀 찍어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찍어 보내줄 때도 있고, 그 전에 있던 사진을 보내줄 때도 있었어요. (...중략...) 그렇게 모여서 한 100장? 영상도 보내주고. 이제 제가 사진을 보내주기 싫다고 얘기하니까, 안 보내줄 거면 주변 사람이거나 아니면 인터넷에다가 네 알몸이나 영상같은 거 다 뿌리겠다, 그 사진들을 다 팔겠다, 그리고 제 사진이랑 몸 사진 이런 것들을 자기 ****에 올려서 저인 척 하거나 아니면 “보고싶은 사람 와라” 이런 식으로 ****에 올린 거죠? 그렇게 했고, 자기 말로는 앱에다가 저인 척 제 사진 올려놓고, “제 사진 보고싶은 사람 연락해라”, 이런 식으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⁴⁴⁾” (참여자 2)

“제가 그런 것(성적인 요구)을 다 해줄 수가 없어서 거절하다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았는지 그 사람이 “몸 사진 안 보내주면 헤어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저는 헤어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몸 사진 두 장을 보내주고. 보내주고 나서, 그 사람이랑 더 사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잘 지나가나 싶었는데, 4년 뒤에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로. 그래서 “나 누군데 기억나냐?” 이러면서 전화해서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 이거, 이 사진 나한테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어떻게 해결해보려고, “원하는 게 뭐냐”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계속 협박만 하고. 그러니까 곤란한 상황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여기(심대여성인권센터)를 알게 되고. (...중략...) 온라인에서만 (만났고), ****으로 메시지 주고받고. 너무 멀어서 만날 수가 없어서.⁴⁵⁾” (참여자 3)

“(****)에 속옷 파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그거를 보고서 자기가 사겠다고 어떤 남자가 연락해서, 알았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그거를 10만 원에 산다고 했어요. 저한테는 큰 돈이었잖아요. 그거에 좀 기대를 하고,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오는 데 막 2시간이 걸린다고, 갑자기 (***) 메시지로) 끝말잇기를 저한테 하세요. 진 사람이 소원을 들어줘야 된다, 그런 거를 했어요. (...중략...) 그래서 제가 졌어요. 근데 다섯 가지 사진을 자기한테 보내주래요. 거기서 네 개는 막 옷을 벗은 사진이나 그런 걸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전에,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 사람이 오기 전에 저한테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2시간을 왔는데 (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전번을 줬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사진을 달라고 하잖아요. 사진 안 주면 전화할까 봐, 전화해서 무슨 말 할까 봐, 그것 때문에 갑자기 무서워서 그냥 다 줬어요, 사진 네 개를. 근데 다섯 번째는 막 자기랑 영통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고 했는데, 계속 영통하자 해가지고, 사진 다 뿌려버릴까 봐 무서워서 (**으로) 영상통화를 해서, 그래서 그냥 다 벗은 몸을 보여주래요. 그 영통 한 20분 정도 하고 그 사람이 딱 끊었어요. 잠수를 탄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무서워서 싹 다 없애버리고 계정까지 지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당일 저녁인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반말로 이거 뿌려도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 전화받고 너무 무서워서 바로 끊었어요. 그걸

44) 범죄 발생시점 2020년.

45) 범죄 발생시점 2016년, 2020년.

차단하고 있었는데 다른 걸로,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중략...)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와서 협박할 때도 있고, 아니면 **으로 말할 때도 있었어요. (...중략...) 처음에는 한 2주에 한 번씩 연락이 계속 오다가, 그 다음에는 1~2달 지나서 오고 그랬어요.⁴⁶⁾ (참여자 4)

“(가해자가) 저희 집 데려다주고 그랬어가지고, 개가 “너희 집 어디인지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그게 어렸을 때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엄마한테 그거를 말하는 거 자체가. 별거 아닌데 그 당시에는 너무 무서워서 그냥 시키는대로 했어요. 그래서 자위 영상을 보내라, 네 몸 영상을 보내라, 얼굴이랑 다 보이게 찍어라, 이런 걸 찍었는데, 어느 순간 유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에다가. 그게 조금 늦게 됐어요. 15살 때 영상인데, 유포된 건 17살 때쯤이에요. 2년 뒤. 이게 처음에는 친구들한테 유포를 했는데, 친구들이 2차 유포를 한 거예요. ****에 너무 크게 퍼졌거든요, 그래서 서울 △△동에서 경기 □□□로 전학을 갔는데, 그 거리가 엄청 멀지가 않거든요. 거기서도 소문이 난 거예요. 너무 많이 영상이 퍼져서 이제 저희 친척이나 가족이나 아무튼 다 알거든요. 동네 가면 “어? 재 그거 퍼진 애다” 이래가지고.⁴⁷⁾ (참여자 7)

“채팅 (앱)에서 동갑짜리, 이제 연락하던 애들인데, “너 어떻게 생겼나” 이러면서 서로 사진을 공유하잖아요. 아예 애들, 채팅에서 만난 동갑 아니면 한 두 살 많거나. 나중에 자기 얘기 안 들어 준다고 사진 다 저장해 뒀으니까 나중에 다 뿌려버린다고 협박해 가지고 좀 그때 고생하긴 했는데. “너 사진 안 보낼 거야? 그럼 너 뿌린다, 뿌려? 만나자고, 안 만나? 뿌린다?” 이렇게요. 그냥 “니 마음대로 해라” 이라고 차단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⁴⁸⁾ (참여자 12)

탈가정 상황에서는 더욱 쉽게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노출되었다. 이들은 직·간접적인 폭력과 협박을 수단으로 참여자의 신체를 촬영했고, 거짓말로 유인하여 성추행,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같이 지내던 남자애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찍겠다고 했어요. “안 올릴 테니까 한 번만 찍어 달라”고 해서, “찍어” 이런 느낌. 자주 그러진 않았어요. 두세 번? (얼굴이 나왔는지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어요.” (참여자 9)

“처음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제가 집이 아니라 밖으로 방황을 많이 했는데, 그때 갈 곳이 없어서 친구 집 많이 돌아다니다가, **** 오픈채팅 같은 걸로 재워줄 수 있는 곳은 없는지 많이 찾았었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재워줄 수 있다, 돈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근데 그때는 어렸으니까 “어디든 가야겠다, 집은 들어가기 싫으니까” 하는 생각에 혹시 어디 다른 데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다 처음엔 잠만 자고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나면 항상 밤에, 밖에서, 어디 시장에서 모텔에 들어가거나. 제가 중학생이고 아직 힘도 약하고, 그런데 보통 남자분들이니까 절 제압하고. 처음엔 밖에서 스킨

46) 범죄 발생시점 2020년.

47) 범죄 발생시점 2013년, 2015년.

48) 범죄 발생시점 2019년.

십하려고 하다가, 제가 거부를 하니까 끌고 들어가서 강제로 추행하고 그러다가. 이제 전 새벽에 나와서 막 그냥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되고, 그때는 가솔보다는 돈이 없으니까, 데이트 해주면 용돈 주겠다고 해서, 많이들 모텔이나 자기 집 데려가려고도 하고, (...중략...) (**에서) 그냥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결국엔 술 먹으러 같이 가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자기들끼리 술을 시키면서 저희에게 먹이고, 취하니까 집에 못 가고, 모텔에서 자다가 추행도 당하고. 원하지 않았는데 취하고 정신도 없으니까 하게 되고. 그리고 일어나면은 방에 아무도 없고, 혼자 있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⁴⁹⁾ (참여자 10)

성매매피해 경험도 모두 채팅 애플리케이션 또는 온라인 SNS를 통해 이루어졌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는 성착취 범죄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앱 채팅에서 만난 남성을) 만나서 모텔로 갔는데, 그때 저에게 50만 원 액수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돈을 하고 나서 바로 주겠다.” 그리고 저에게 “너가 잘하면 그것보다 더 줄 수 있고, 끝나고 바로 통장으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관계를 했어요. 그 하고 난 뒤에, 남성이 이제 “입금하러 다녀올 테니까 여기 있어봐.” 하면서 도망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연락하려고 앱에 들어가서 연락을 했는데, 저를 차단했는지 안 떠서. 그대로 연락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아, 조금 이상한 개 버려지한테 잡혔구나’ 하고 무시했는데, 한 2~3개월 뒤에 다시 그 남성에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와서, “그때 돈 못 줬던 거 지금 주겠다, 만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나는 그 돈도 됐고, 너랑 만나기도 싫고, 다시는 그런 관계 안 할 거니까 연락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 남자께서 “너 알바 구하지? 내가 알바도 구해주고 돈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돈이 없어서 알바를 구하던 참이었는데, 그 남자께서 저에게 알바 구해줄 테니까 한 번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⁵⁰⁾ (참여자 2)

“처음에 익명 채팅앱을 깔았는데, 거기에서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오빠랑 만나자” 이런 내용과 “두 번 하면 20만 원”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 다음에는 그 남성이 저를 만나자고 하셔서 그래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만나자고 해서, 집 근처에 차를 갖고 와서 저를 태우시고, 그리고 갑자기 편의점에 가서 뭘 막 사오시더니, 그러면서 어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가서 성유사행위를 하였어요. (...중략...) 5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냥 집으로 갔어요. (먹을 것들도)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 뒤로 몇 차례 만났었어요. (...중략...)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한 번 보고 안 만났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만난 분 계셨어요, 그 분, 가해자 분이랑 비슷한 방법으로. (...중략...) 거의 30대, 20대라고 했는데, 직접 만났을 때는 그보다 많았을 때도 있었어요.⁵¹⁾ (참여자 5)

“***에 간단한 신체정보랑 금액, 대충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그렇게 금액을 정해놓고 올리면, 그걸 이제 남성이 선택을 하는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여름에 처음.⁵²⁾ (참여자 6)

49) 범죄 발생시점 2019년~2020년.

50) 범죄 발생시점 2019년.

51) 범죄 발생시점 2019년~2020년.

“돈이 없어서, **으로 성매매를 했다가,⁵³⁾” (참여자 7)

“채팅앱을 깔아놓게 되면 연락이 와요. 앱 안에 프로필이라는 게 있어요. 내 사진을 올려놓지 않아도 거기다 어디 사는 누구(가명), 이렇게 올려놓고. 남자분들이 연락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에 대한 걸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조건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 둘이 계속 연락하다가 “어디서 만날까요?”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분이 차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할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분이 “이제 어디쯤 왔어요.” 하면, “인상착의 어떻게 되세요?” 혹은 “차 색깔이나 번호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모텔을 가든지, 아니면 바로 모텔을 가든지, 그런 식으로. **** 이런 건 안 하고, 채팅앱로 하다가 (가해자가) 이게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 **이었나? 그걸 깔아가지고 연락을 해요. (...중략...) 그걸 프로필도 올리는 시간이 따로 있거든요. 올려놓으면 열댓명씩 (연락)오는 것 같아요.⁵⁴⁾”

“개네들(가해자)이 한 18살인가 19살이었을 거예요. 그때 만나지는 않고, 앱로 연락을 하다가, 자기 친구들, 여자애들 중에서 여자 목소리 내고 통장으로 해서 돈을 받아서 일주일에 한 20(만원) 정도를 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해보지 않을래? 그럼 네가 여자 목소리만 내줘” 그래서 알겠다고, 여자 목소리를 내서, 사람들에게 제 계좌 말고 그 남자에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고 해서, 한 2주간 40인가 벌었어요.⁵⁵⁾” (참여자 12)

“일단 시작했을 때가 15살 때부터 지금 나이까지 했었고. 조건 같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얼굴이 찍혀서 도용되거나, 돈을 아예 못 받거나 폭력을 받았던 적도 있어서.⁵⁶⁾” (참여자 13)

“제가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 달 관리비가 딱 30만 원 밀려 있었어요. 부동산이 관리업체를 변경하게 되면서, 뜻하지 않게 그동안 살았던 관리비 매달 10만 원씩 3개월, 30만 원을 납부하거나 아니면 나가라는 통보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급해서 **이라는 매체에서 남성을 만나게 되었고, 만나서 관계를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인 만남 요구를 해서, 만나고 싶지 않다, 지금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꾸준히 연락이 와서, “아, 이걸 진짜 안 되겠다. 얼굴 보고 그만 만나자고 얘기를 해야겠다”고. 그래서 “오빠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했더니,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자기는 경찰서 가서 벌금만 내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화가 나서 그렇게 돈이 많으면 돈 가져와보라고. 그런 실랑이가 오가던 중에 차안에서, 저한테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주면서 가지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그거로 지금 (소년)재판이 떨어진 상태예요.⁵⁷⁾” (참여자 14)

한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의 대상이 되었으나, 본인이 아니라 가해자(친구, 지인)들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참여자

52) 범죄 발생시점 2017년.

53) 범죄 발생시점 2014년.

54) 범죄 발생시점 2017년.

55) 범죄 발생시점 2017년.

56) 범죄 발생시점 2017년~2021년.

57) 범죄 발생시점 2020년.

9는 참여자가 직접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를 이용해 본 적은 없다고 보고했으며, 다른 참여자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알게 된 이후 직접 이용한 적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집에서 살다가 학교를 잘 안 갔고, (부모님한테) 혼나기 싫어서 집을 나왔는데(2018년 12월), 갈 데가 없고. 그냥 아는 애들, 같이 놀던 애들이 (앱으로 채팅하고) 시켜서 한 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가끔은 혼자 가고, 멀면 (알선자들이) 차로 데려다주고. (...중략...) 그전에도 시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집을 나와서) 친구 집에 같이 살았었어요. 그 친구가 아는 사람(성인 남성, 여성)이 시켜서, 그때 한 2번 정도였고.⁵⁸⁾” (참여자 9)

“중 3 겨울이었을 거예요, 아마. 가을에서 겨울 정도? 갑자기 저보고 친구가 그걸 하자 했어요. 조건만남이요. 그래서 처음에 싫다고 했는데 계속 억지로 시켜서. 한 번만 하고 그만둔다 했는데 계속 불러서 시키는 거예요, 저보고 돈 벌러 오라고. 지가 그 돈 다 쓰고, 또 다 쓰면 저를 불러서 시키고. 친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필요할 때만 가지고 노는 애 같았어요. 그 친구가 앱에서 찾아서 시킨 거예요, 조건만남 앱. 한 두달 정도 했어요.⁵⁹⁾” (참여자 11)

“놀고는 싶는데 돈이 없으니까, 제 친구가 “돈을 많이 벌지 않을래?” 이러길래 “그게 뭔데, 알겠다, 일단 연락하자” 이래가지고, 어떤 21살이랑 22살인 남녀가 있어요. 개네들이 무슨 일하는지 말은 안 듣고 만났는데, 조건이었어요. 여자가 (앱로 성구매자를) 구하고, 남자가 운전해서, 거기다 집어넣는 그런 거였어요. 저는 이제 잡혀가지고 핸드폰이고 뭐고 다 뺏겨가지고 뒤에 앉아만 있고, 돈 벌때까지. 그것도 갔다 오면 돈은 개네들이 다 가져가요, 주는 것도 아니고. 한 이틀 그러다가 너무 짜증나서 도망쳐 나왔어요. 근게 그거 가지고 막 “걸레년아, 인터넷상에다 니 사진이랑 얼굴 사진이랑 다 뿌려버린다”고, 조건 소개했던 여자애가. (...중략...) (질문자: 가해자들이 앱에 본인 사진을 올려서 채팅했어요?) 네, 개네가 그렇게 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죠. 핸드폰도 싹 뺏기고 물건까지 다 뺏겨 있는 상태에.⁶⁰⁾” (참여자 12)

온라인을 매개한 성매매는 그 자체로 범죄이자,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야기하는 시작이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범죄와 성매매 알선 범죄는 다른 성범죄와 높은 비율로 중첩되어 발생하였다(한민경, 2020). 국제사회가 “아동 성매매(child prostitu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성매매를 통한 아동 성착취(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 prostitution)”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며, “성매매 아동(child prostitute or child sex worker)”을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child who prostituted)” 또는 “성

58) 범죄 발생시점 2019년.

59) 범죄 발생시점 2018년.

60) 범죄 발생시점 2020년.

매매로 착취된 아동(child exploited in prostitution)”으로 대체하여 표현할 것을 권장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⁶¹⁾

“제일 무서웠던 건 아무래도 오로지 저 혼자서 이뤄지는 행동이었고, 그런 성매매를 한 당시에 저밖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나 혼자서 나가고 나 혼자 정리를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냥 나가서 남성한테 맞게 되거나, 제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당하게 되거나, 협박을 당하거나, 아니면 몰래카메라가 숨겨져 있을 것 같고, 저 가방에서 칼이 나올 것 같고. 아무래도 항상 불안하니까. 사실 남성을 일대일로 만났을 때, 또 다른 범죄가 나한테 일어날까 봐, 그런 게 가장 무서웠죠.” (참여자 6)

“저 그거 할 때마다요.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러면서 무섭고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했어요. **** 같은 데서 만나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냥 바로 집으로 도망쳤죠. 그 이후로 개 연락 다 무시하고.” (참여자 11)

“조건을 하다 보면, 제가 텔 생활을 했잖아요. 텔에 있다가 어떤 남자가 온다고 해요. 그럼 밖에 서 있다가 그 사람 차 타고 이동을 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제 인상착의를 말하고 서 있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얼굴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그때부터 얼굴이 성적으로 관련된 앱에 올라간 거예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 이라는 앱이 있나봐요, 남자들 사이에서. 거기서 제 얼굴 올려놓고 이상한 글을 써서 도용 당하고, 한 사람이 올리면 계속 퍼가서 쓰니까. (...중략...) 질 좀 안 좋은 남자들은 영상을 켜놓고 녹음을 해요. 왜냐면 저는 처음 타니까 카메라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쁜 사람들은 블랙박스 뒤편에 작은 카메라를 달고 관계하는 걸 찍어서 사이트에 올리거나 개인 소장하거나. 근데 돈을 다 못 받았는데 따지면, 그 거에 대한 걸로 공포를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삭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집 가서 지우겠다고 말만 하시고 그 뒤로 연락이 안 돼서. 연락을 끊어요, 그냥. 방을 나가거나. (...중략...) 원래 촬영을 하면 전에 대화를 하면서 “촬영해도 되냐, 개인소장 하고 싶다”고 사람들도 말하는 게 많은데, 그런 말 없이 만났다가 갑자기 그 남자가 씻으러 갔을 때 카메라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TV 쪽에. “혹시 이거 뭐예요?” 하니까 “찍으려 하는 거다.” “왜 찍어요?” 하니까 “그냥 갖고 있으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대뜸. 그래서 그냥 돈 안 받고 나왔죠. 일단 카메라가 있으면 무조건 안 해요. (...중략...) 녹음은 다 말없이 해요. 그래서 애초에 그 남자가 휴대폰 놓고 화장실 갔을 때 폰을 켜서, 이런 게 뜨잖아요. 카메라 기능이 켜 있거나 녹음이 됐을 때 뜨는 게 있는데, 그게 있으면 그냥 관계를 안 하고 무조건 나가버리거나, 다 확인해요.” (참여자 13)

“중학교 3학년 때쯤에, 그때 집 나와서 아는 선배가 자기 투룸 사는데 원룸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서 거기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알려준 오빠가 살게 해준 며칠 후에, “야, 너 돈 없으면 이렇게 해보면 돈 벌 수 있다, 내가 사람 불러주겠다”해서 불러줘서. 그 선배가 불러서 한 번 하고, 그 후에 제가 직접 (앱으로) 찾았을 때는 그땐 경찰이 왔거든요. 그렇게 해

61)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2019),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CRC/C/156, para. 55.

서 그때 바로 끝나고, 그 후에 집 들어가서 다시 하게 됐어요. (…중략…) 이번에 끊어낼 때는 협박을, 알린다? 약간 이런 거요. 개가 제 계좌도 알고, 이름도 알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다 SNS에 알리겠다고. 근데 ** 차단했을 때 어떻게 알았는지 제 **으로 연락이 온더라고요. 그래서 **도 차단했더니 이제 ***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 차단. (…중략…) 만나기 전에 얼굴 사진 보내달라, 그런 사람은 많았는데 보여준 건 없어요. 그 사람들 제 나이 다 알아요. 만나기 전에 몇 살이냐고 다 물어보니까.⁶²⁾ (참여자 15)

참여자들이 응답한 가장 불안하거나 무서웠던 경험은 유포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다. 유포에 대한 두려움은 곧 자신에게 발생한 범죄 피해를 지인이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또래관계가 중요하며,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활발하게 소통하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일상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에 번호를 치면 제가 나오거든요. (가해자가) 그거(번호)를 검색해서, 제 학교 친구들한테 막 친구 신청을 보낸 거예요. 제가 친구 한 명한테 이 일을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나도 이 사람한테 (친구 신청) 받았다고, 근데 다른 애도 친구더라. 그때가 좀 불안했었어요. 제가 그 일을 당하면서 제일 불안했던 게 유포니까. 그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유포되는 것보다, 아는 사람한테 그러는 게 더 불안하니까.” (참여자 1)

“일단 그냥 무섭죠. 제 사진이 노출된 것도 있는데. 근데 그건 아직 못 찾았으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찾기도 어렵고 모를 수도 있을 거니까. 너무 심하게 걱정하면 제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조금 내려놓고, 그냥 제 현재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참여자 2)

“4년 전에는, 그 사람이랑 연락을 하는데, 연애를 하기보다 뭔가, 이제 계속 요구해서 만나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그거 알면서도 그 사람을 전 진심으로 좋아했으니까. 계속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든 맞춰주려고 했던 것도 있고. 가장 무서웠던 건, 그렇게 끝났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 그걸로(몸 사진으로) 협박하는 게 가장 무서웠던 것 같아요.” (참여자 3)

“그 사진을 유포할까 봐, 아니면 엄마가 알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참여자 4)

“불안했던 건 이제 처음에 (****에 유포된 사진을) 봤을 때 이걸 엄마가 알게 될까? 이거랑, 제가 그때는 중학교였고, (주변에) 학교가 많았어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만 2개 있고, 되게 그런 상가였어서, 거기 사람들이 저를 보기 위해서 저희 반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안 되고, 다른 지역 가도 나를 알아보는 것 아닐까?” (참여자 7)

“일단 이상한 소문 돌까 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걸 누구한테 말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이런 거 말하면 제가 불량 청소년 되는 것 같고, 비행 청소년처럼 안 좋게 볼 것 같아서. 원해서 한 건 아니었는데, 뭔가 제가 이걸 말했을 때 아무도 제 편이 안 되어줄 것 같아서, 그게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참여자 10)

“가장 불안했던 건 아빠가 더 큰 충격을 받을까 봐? 사실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수사 진

62) 범죄 발생시점 2018년~2021년.

행 중에 아빠한테 피해가 갈까 봐 그게 가장 걱정됐던 것 같아요.” (참여자 14)
 “옴으로 그러거나, 만나서 좀 이상한 거 물어보는 사람 있거든요. 막 몇 살이나, 학교 어디 다니냐, 학교 이쪽 다니면은 이 학교겠네,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서.” (참여자 15)

특히 일대일로 만나고 폐쇄적인 공간을 이용하는 성매매범죄의 경우, 신변의 위협을 크게 느꼈다는 참여자들의 보고도 있었다.

“이 사람이 저한테 나쁜 짓을, 막 납치당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차에 탔을 때) 떨어졌어요.” (참여자 5)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게 조금 무서웠던 것 같아요. 폭력적인 사람이라거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참여자 8)
 “가장 불안한 건 채팅으로 모르는 사람 만났고, 관계를 하고 임신을 하면 또 그렇고, 성병 걸리는 것도...” (참여자 12)
 “첫 번째는 15살 조건 처음 하게 됐을 때는, 그땐 관계하는 것도 모르고, 스킨십으로 만났어요, 조건 일을. 근데 만났는데 관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 가둬놓고. 그때 너무 무서워서. 아는 것도 없고, 가출해서 신고도 못 하겠고, 도망가다가 남자한테 잡히고. (...중략...)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차타고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20km쯤 떨어진 골목 진 산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가다가 산에 내렸는데 여기서 하자는 거예요. 불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도로만 뚫린 곳에 차 세워 놓고.” (참여자 13)

(3) 수사 및 재판 현황

가. 수사기관의 사건 인지 경위

보호자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각적인 경찰 신고로 이어졌다. 다만, 참여자가 범죄 발생 즉시 자발적으로 보호자에게 어려움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가해자의 지속적인 협박이나 임신 등 외부적 요인을 계기로 보호자에게 공유되었다.

“폰 번호를, 그냥 너무 스팸 문자가 많이 온다고 해서 엄마한테 그렇게 (폰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그걸 보신 거예요. 뭐라고 해야하지, 눈치를 채셨다 해야 하나. 뭔가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아빠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나고 계속 캐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말을 했어요. 그때 다 알게 되셨어요. (...중략...) 당연히 신고를 하고 싶었는데

데, 그냥 그 전에는 엄마한테 말을 하고서 신고를 해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신고를 못한 거여서 바로 신고를 하자 결정했어요.” (참여자 4)

“제가 엄마한테 말을 한 거예요. 이미 들킨 거 그냥 솔직하게 말하자 하고. 그리고 생리도 안 해가지고. 테스트기 써 봤는데, 처음에는 한 줄 나왔다가 나중에는 두 줄 나와서. 병원가서 봤는데 임신했다 해서 바로 낙태시키고, 애들이랑 연락 싹 다 안 했어요. (…중략…) 처음에 친구가 엄마한테 말했어요. 절 협박했거든요, “니네 엄마한테 말한다”고. 그냥 이젠 저도 하기 싫으니까 “그럼 말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엄마가 이게 뭔 소리냐고 해서 다 얘기했죠. “애가 나를 이렇게 했다” 이러면서,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말 못 했다” 이런 식으로. (…중략…) 개네들 바로 신고하자 해서 경찰서 가서 저는 조사받고, 개들도 조사받았는데 저는 모르겠는데. 한 명은 그냥 가끔 있는 애고, 진짜 한 명은 저를 (성매매) 시키던 애였어요.” (참여자 11)

학교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학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경우도 있었지만, 성착취 아동·청소년 지원기관에 참여자를 연계하여 신고로 이어진 적도 있었다.

“학교 선생님이 십대여성인권센터를 소개해주셨어요. 십대여성인권센터 통해서 경찰에 신고한 거고요.” (참여자 3)

“학교에서 술을 마셨다가 보건실에 갔었는데, 보건실에서 제가 성매매를 했다는 걸 말해서,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랑 얘기하다가 신고된 것 같아요. 그냥 뭔가가, 뭔가 다 털어놓고 싶었어요. (…중략…) 집엔 안 알리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셨어요. (…중략…)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5)

“제가 교복이라든지 그런 것이 약간 노출이 되었었어요. 왜냐만 아마도 사진을 올릴 수 있는 SNS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 교복 사진이 걸려있으니까 학교에 1~2명쯤은 ***로 그런 걸 한 번 찾아보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때 사건이었으니까, 1학년 때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가 저를 발견해서 학교 선생님한테 말을 했고, 학교에서 경찰로 연락을 한 케이스였어요.” (참여자 5)

참여자가 스스로 성착취 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찾고, 그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험은 아동·청소년의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조사 등의 일련의 과정은 성인은 물론이거니와 아동·청소년에게도 불편하고 어려운 경험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지원기관에 대한 상담과 각종 지원은 범죄 신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인터넷에 채팅 상담? 그런 걸 찾아봤어요.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청소년 채팅 상담실을 발견해서 온라인으로 상담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심대여성인권센터를 소개해줘서 카톡으로 이쪽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겪은 내용을. 그리고 와서 상담받고요. (…중략…) 피해 입고 나서 일주일 뒤에, (경찰서에) 제 피해 내용을 신고하려고 갔어요. 가서 신고하려고. 아빠랑 여기(심대여성인권센터) 선생님 한 분이랑 같이 갔어요.” (참여자 1)

“저랑 같이 앱 쓰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여기(심대여성인권센터)를 소개시켜주면서 데리고 왔어요, 같이 가자고. 그때 제가 좀 ‘이게 맞나, 아닌가’ 저도 모르겠어서, 여기서 한 번 여쭙봐야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말씀드렸더니, 애(가해자)는 안 될 사람이라고, 잡아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다음날 바로 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셨어요.” (참여자 2)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의 경우, 경찰의 위장수사로 사실상 신고와 다른 없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그렇게 하다가 (성구매자로 위장한) 경찰한테 걸렸어요.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솔직히 좀 좋다고 해야 되나. (…중략…) 그만하겠다고 말을 한 번 했었는데 (알선자가) 좀 때리려고 했어요. 그때 맞긴 했어요.” (참여자 9)

“텔(모텔) 가서 지갑 가지고 도망치는 거 하자고, 그 사람 씻을 때 그냥 가지고 도망 나오면 된다고, 알겠다고 일단 만나자고 했는데, 2명을 불렀는데 그 중에 1명은 형사였고. (…중략…) 형사분이 먼저 도착해서, 일단 “여기 은행 가서 돈부터 같이 뽑자” 해서 같이 갔는데, 거기서 형사들이 잠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혀가지고. (그사이) 남자에 2명은 눈치를 깐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는데 하필이면 경찰차 앞쪽으로 해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잡혔어요.” (참여자 12)

15명에 대한 심층면접 중 2명은 직접 범죄 피해를 신고한 참여자였다. 참여자 7은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에 대응하고자 백방으로 고소와 고발 방법을 찾아 신고하였고, 참여자 14도 성구매자의 뻔뻔한 반응에 매우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인터넷에서 시키는 대로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사이버 수사대에 민원을 넣었고, 거의 여성청소년팀으로 넘어갔었고요. 직접 가서 제가 자료 뽑아서 제가 수치심 느꼈던 거 다 이렇게 밀줄 그어서 제출했어요.” (참여자 7)

“그 이후에도 만나자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거부를 해도 계속 연락을 하니, 보고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나간 자리였는데, 자기는 뭣뭣하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화가 나서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중략...) “제가 지금 성매매를 한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경찰서로 신고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로 오겠다고 했는데, 그 분이 차로 운전해서 자기가 직접 가겠다고...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다가 결국엔 경찰차가 뒤까지 와서 경찰서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참여자 14)

나.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의 권리

아동친화적 사법체계는 아동을 존중으로 대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이 접근하기 쉬워야 하고,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⁶³⁾ 그러나 수사기관 종사자의 태도, 위촉시키는 공간, 그리고 성인 조력자가 부재한 조사 등 수사 전반에 아동친화적인 절차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받을 때 크게 어렵거나 불편한 점은 없었다는 참여자 5의 응답도 조사 환경과 종사자의 태도가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아니요. 일단 (경찰서에) 갔을 때, 그 분위기가, 내가 그렇게 큰 일을 당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약간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참여자 1)

“경찰서 조사가, 저희같이 (성매매) 한 애들은 뭔가 찔림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찰서 상담 실이나 조사실 같은 데가 조금, 뭐라고 해야 하지? 위촉된다고 해야 하나? 취조 받는 기분이라서. 말씀을 좋게 해주셔서 다행이지만 취조 받는 그런 방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긴장하면서 말한 것 같아요. (...중략...) 다 허락받고 하는 거지만, CCTV가 저를 찍고 있다 보니까 조금 위촉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여자 2)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 받았을 때) 질문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지는 않았고, 안 불편했어요.” (참여자 5)

“저는 증거자료를 내기 위해서, 신체 일부가 그게 썸네일이라서, 그거를 뱉어야 하는데, (경찰서에) 남성분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열람하는데, 그걸 보여주는 것도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괜찮겠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는데 저는 당연히 거기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니까 괜찮다고 하죠. (...중략...) (경찰이) 조금 크게 얘기했던 거. 조금 작게 얘기해달라고 해도, 그때 혼자 단둘이 조사받는 게 아니라, 여러 명에서 있잖아요. 이런 사무실인데, 다른 경찰들도 다 들으시니까. 단둘이 해도 되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 (...중략...) 조사도 혼자 받았고요, 16살 때.” (참여자 7)

“부도님이 원래 오셔야 했었는데, 제가 할아버지랑 살고 고모들이 법정대리인이어서, 경찰서에 그냥 가족이랑 안 친하다고 얘기했는데, 경찰서에서 이제 잇다를 소개시켜줬죠. 그래서 밤 12시에 잇다 선생님을 만나서 풀려났어요.” (참여자 12)

63) 유럽평의회 각료회의의 아동친화적 사법체계에 대한 지침, 서문 중.

“따로 분리시켜줬었고, 경찰이 저한테 무슨 일이냐고, 여자 경찰하고 남성분이 와서 얘기를 드렸고, 또 반대쪽 가서 다른 분이 (성구매자한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중간에 좀 기다리는 시간에 “남성분이 저하고 얘기를 원한다, 원만한 합의를 하고 싶다” 이렇게 경찰분이 얘기를 전달하시더라고요. 제가 듣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형사님 같은 분이 어디서 두 분 들어오셔서, “그런데 저 분 신원도 알고, 사는 곳도 알고, 뭐 얘기를 다 자백을 해서 굳이 데려가서 진술을 받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저를 공갈 미수로 고소를 해서, 가서 진술을 받아야겠다고 해서 저는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넘어갔어요.” (참여자 14)

“그냥 그 당시에 너무 무서웠어서, (경찰의) 모든 행동이 좀 강압적으로 보인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있었어요.” (참여자 15)

디지털 성착취 범죄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낮은 인식 수준도 주요하게 지적되었다. 아동·청소년의 시각에서 필요한 정보와 상담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가해자를 잡기 어렵다거나 신고를 귀찮아하는 느낌을 보고한 참여자가 있었다. 참여자 1과 경찰 조사에 동석했던 십대여성인권센터 종사자에 따르면, 경찰이 참여자 1에게 직접 “이런 사건 가해자 못 잡는 거 알죠?”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기억을 상기했다.

“처음 경찰서에 갔을 때, 아빠랑 쌤이랑 (수사관과) 회의를 하시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 잡기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되게 큰 소리로 하셔가지고. 저한테까지 들리게. (...중략...)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그거를 옆에서 들으니까 좀. 이거 신고 하나마나인데, 내가 뭐 하러 온 건가.” (참여자 1)

“근데 지금까지 제 영상을 퍼트렸던 사람들 중에 처벌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중략...) 열 번 정도 (경찰서에) 갔는데, 고소 성공한 적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제가 개 신상을 알았으니까, 어디 부대인지랑 어디 사는지 알아서 개는 잡힐 수 있었는데, 다른 애들은 진짜 실명이랑 나이랑 번호를 모르니까, 그냥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연예인 악플러들은 어떻게 잡냐고. (...중략...) 그냥 자기네들끼리 “아, 또 ****으로 왔어? 또 이런 걸로 왔네, 이런 거 안 먹혀, 이틀 전에 개도 ****으로 오지 않았나?” 이런 걸로 큰소리로 얘기를 하니까.” (참여자 7)

“(경찰은) 귀찮아했어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진술서 쓰라고 했어요. 약간 저를 도와주고 싶다고보다는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느낌이었어요. (...중략...) 질문할 때 범죄자로 끌고 가려는 느낌이었어요.” (참여자 9)

“성매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엄청 따져 물으니까. 저는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만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자꾸, 형사분들이. 이걸로 한 30분은 싸웠어요.” (참여자 12)

참여자 1은 경찰에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알려줬고 검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알려줬다고 보고했으나, 심층면접에 참여한 아동·청소년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후 절차에 대한 안내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는 들은 적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호자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보호자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에서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 범죄 관련 기관이나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를 안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참여자 4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당시 경찰조서에 동석한 십대여성인권센터 종사자에 따르면 신변보호(스마트워치)에 대한 안내는 있었다고 한다.

또한, 참여자 대부분 수사 결과는 모르고 있었다. 예외적으로 참여자 7은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직접 고소 결과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자 11은 엄마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자신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모르며, 엄마도 모르는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⁶⁴⁾

“(경찰서에 갔을 때) 제 사진 유포죄랑 협박, 또 하나 있었나? 아무튼 제가 기억나는 것 두 가지 설명해주셨고, 이제 사진이 유포되었으니까 성범죄디지털 그쪽으로 가서 모니터링 문의해서 알아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중략…) 검찰에서는 피해자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심리상담이나 학자금 지원 같은 거 알려줬어요.” (참여자 2)

“성매매를 했다가 단속에 걸렸는데, 부모님이 못 오는 상황이어서. 근데 경찰서에서는 보호자한테 인계를 해줘야 되나 봐요. 그래서 형사님이 다시함께(상담센터) 선생님을 불러주신 거고, (선생님이) 자기는 이런 기관이니깐 한 번 연락해보라고 해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연락하고 있는 거예요. 열여섯 살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략…) 제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다 여기 기관(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만 들었지, 경찰서에서 들은 건 하나도 없어요.” (참여자 7)

“학교가 신고해서 경찰서에 가서 그냥 얘기했어요. 처음에 혼자 갔는데, 그래서 부모님 불러줄까 아니면 상담쌤을 불러줄까 하셔서, 상담쌤 불러달라고 했는데 잇다센터에서 쌤이 온 거예요.” (참여자 11)

“경찰서에서 연락처 다 적고 풀어주고 나서, 4개월인가 5개월인가 있다가, 저는 그 당시에는 열다섯 살이니까 너무 어리다고, 거기 (잇다)센터를 연계해주셔서 센터를 다니고 있었는데.” (참여자 12)

“경찰에서 학교밖청소년 상담 지원하는 게 있다고, 상담받으면 재판 갔을 때도 분명 유리하게

64) 「형사소송법」상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송부통지와 처분고지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거나(제245조의6),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제258조)에만 적용된다. 즉, 참여자들이 신고하거나 고소·고발한 사건 대부분 검찰에 송치되고 공소제기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도움이 될 거라고 안내해 주신 게 있고. 그리고 센터장 선생님께 들은 건데, 그 경찰분이 저를 만나고, 그때 한 번 아빠와 연락이 안 된 후로 계속 연락을 안 하게끔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니까, 센터장 선생님께 많이 얘기를 했었대요. 자기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 이런 걸 여쭙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참여자 14)

“그 후에 여기 (잇다)센터 연계됐어요. 경찰서에서 연계해주셔서. (…중략…) 경찰한테 안내는 못 받았고, 센터 선생님한테 연락 와서 “연계됐으니까 와라” 이렇게만 연락받았어요. 처음에 문자 받았는데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정해진 데로 오라고 하니까. 그리고 연락이 엄청 와요, 계속 오라고. 막 인신매매 당할 것 같고, 아니 들은 게 없는데 계속 오라고만 하니까. 그러다가 연락받고 한 2주만에 갔는데,” (참여자 15)

법원에서 재판 내용과 결과를 직접 고지받은 참여자도 없었으며, 지원기관의 조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통해 재판 경과를 안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참여자 2는 합의 이후 재판 결과는 모른다고 답했는데, 당시 심층면접에 동석했던 십대여성인권센터 종사자의 부연설명에 따르면 위 재판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가해자에 대한 소년재판이어서 결과를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처벌은, 합의가 됐다고만 알고 그 뒤로는 몰라요. 그 처벌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아니면 못 들었던 건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합의 뒤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참여자 2)

“센터에서 선생님이 (재판 진행 과정을) 다 알려주셨어요. 판결도 센터에서 (알려줬어요).” (참여자 4)

“아, (십대여성인권센터) 선생님이 자꾸 전화를 해서 (가해자에 대한 재판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참여자 5)

“센터(전북여성인권센터)를 통해서 증인을 서야 된다, 설 수 있냐고 얘기를 들어서 상담 선생님하고 갔었고, 그 사이에 아마 고등법원 때 법원 서류가 (집으로) 날아왔던 것 같아요. (…중략…) 그 뒤로 진행 과정도 아무래도 여기 담당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고, 판결도 센터 선생님한테 들었고요.” (참여자 6)

“제가 그 재판장에 가는 걸 조금 어렵다고 해서, (잇다센터) 선생님들이 대신 나가주셨어요. 가서서 판결을 듣고 저한테 전해주셨는데.” (참여자 14)

한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사실상 양육자 등)에게 성착취 범죄 피해를 알릴 수 없는 경우, 수사과정에서 보호자 외 성인의 조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참여자들의 응답이 있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선생님이 옆에 있어서) 훨씬 나왔어요. 처음에 조사받을 때는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내 옆에서 계속 괜찮다고 해주시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니

까.” (참여자 1)

“제가 부모님한테 말 안 하고 그렇게 있었으면 (가해자를) 만나서 당했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모님이랑) 같이 (경찰서에) 가면 뭐가 더 말 안 하고 싶어지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참여자 3)

“어린 친구들한테는 어른들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누군가는 알고 있으면 좀 안정이 되잖아요.” (참여자 4)

“일단 그렇게 된 계기, 갈등, 집이 못 산다든지 아니면 가정폭력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일단 이 사람이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성인 조력자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기관(다시함께상담센터)을 알아서, 그때부터는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참여자 7)

“부모님한테 나누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 아닌 다른 성인 조력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참여자 9)

“아무래도 특수한 상황이 있고, 부모님께 알려져 오히려 이 상황이 더 마이너스가 된다면, 굳이 꼭 부모님이 아닌 보호자라도, 보호자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혼자 조사를 받기에는 분명 힘든 부분도 있을 거고. 정말 아무나가 아닌,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보호기관이나 선생님들이 동행을 해 주는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14)

참여자 중 성착취 범죄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 보호자에게 알려질 것을 가장 염려하였다.

“만약에 경찰에 신고를 하면 부모님 연락이나 그런 것도 신경이 쓰이고, 아무래도 제가 학교를 다니는 입장이니까 학교에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냐는 얘길 할까 봐, 그래서 경찰한테 얘기를 못 했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더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계속 경찰에 다녀야 되고 그런 경험을 계속 얘기해야 하잖아요. 한 번만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그런 게 남을까 봐 걱정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당시에는 조금 꺼려졌어요. 근데 (신고) 안 한 게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참여자 10)

“저는 그냥 집에만 이야기만 안 들어가면 무조건 (신고) 했을 것 같아요. 잇다쌤한테 선생님이 보호자로 해서 해주시면 안 되냐고 하니까, 이거는 네가 소송거는 거기 때문에 알려야 된다고, 어쩔 수가 없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잘 설득해준다고 했는데, 그래도 설득을 아무리 해도 거기서 거기니까, 그래서 안 했죠.” (참여자 12)

“신고할 방법이 없는 게 앱으로 대화를 해서 아직 안 만났는데, 차에서만 찍고 가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차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밖에 서 있다가 얼굴 찍히고 호텔에 올라왔거든요. 처음에 무서워서 조건하는 친구들한테 뭐냐고 물어봤는데, 너 얼굴 찍어서 성매매 앱에 사진 올린다고, ‘창년아’ 이런 걸 글 써서 올린대요. (…중략…) 신고하면 아버지 귀에 들어갈 것 같아서. 지금도 모르시거든요. 이거 아시면 아마 반 죽지 않을까요? 맞아서.” (참여자 13)

“신고하면 또 부모님한테 연락 가니까.” (참여자 15)

성매매범죄의 경우, 성매매를 한 자신의 잘못이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그러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성매매를 통한 아동의 성착취는 성행위가 종종 경제적 생존 혹은 기회와 관련하여 현금, 재화 등의 대가로서 이뤄지는 관계를 포함하는데, 이때 아동이 성행위에 동의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한다(CRC/C/156, para. 58).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참여자 모두 성착취 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이용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될 필요를 알 수 있다.

“이게 편견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거 하는 애들은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그런 애들이 많지 않나요? 일단 그걸 하게 된 계기가, 용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학교를 도저히 다닐 수 없을 정도의,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그런데 그런 욕구가 전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물론 불법이긴 하지만, 잘못된 거긴 한데. 그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면...” (참여자 7)

“일을 할 때마다 생각이 드는데, 신고를 하기에는 제가 자초한 일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이 앱을 깔았고, 돈 벌려고 남자 만났고. 근데 그거에 대한 공포심을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할 말도 없고, 그냥.” (참여자 13)

“솔직히 먼저 만나자고 제안하고, 찾는 것도 저잖아요. 그냥 서로 동의하에 사고팔잖아요.” (참여자 15)

다.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보호자의 알 권리

수사·재판 과정을 보호자가 알게 된 경우는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알렸을 때였다. 원칙적으로 부모님께 알려야 한다고 답변한 참여자도 있었지만, 대부분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원하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중략...) 이런 일이 있어도 신고하면 부모님한테 연락 갈까 봐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도 좀 부모님 동의 없이 몰래 혼자 가서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4)

“물론 법적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있는 나이기 때문에 연락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다 다른 환경에 살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보호자한테 알림으로써 제가 보호자한테 보호를 받게 된 것도 아니고, 또 집이나 학교 이런 데서 2차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이 아이가 지금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굳이 친권자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그쪽을 통해서도, 아니면 보통 그런 친구들은 거의 상담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보호자를 해서 연락을 취하고 상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6)

피해아동·청소년이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수사기관의 재량으로 보호자 동석 없이 조사가 진행되거나 성착취 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가 동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참여자 2는 보호자에게 알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경찰 수사관이 보호자가 필요한 것 같다고 설득하여 연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당시 만 15세). 다만, 이때에도 가족들이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알고 난 뒤에 위로해주고 걱정해주었던 것은 보호자가 알게 된 장점이라고 언급하였다.

“저는 그것을 반반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필요한 가정이 있고, 안 필요한 가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필요한 가정은 그만큼 부모님이 더 도와주시고 말을 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필요 없는 가족들은, 그런 말을 해도 내 자식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마인드의 부모가 계셔가지고. 그거는 그 가정사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중략…) 저같은 피해자들한테 먼저 가족들에게, 부모님한테 말씀드려도 되는지 물어봐야 그 친구도 조금 안심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부모한테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말을 먼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참여자 2)

“(경찰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막 “나 여기서 죽어 버릴거야!” 그리고 뭐라 뭐라 소리 지르고 하다가, 그래도 부모님은 못 부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시함께상담센터 선생님을) 불러주셨어요.” (참여자 7)

“경찰서 형사님이 보호자와 연락이 되어야 조사가 가능하다, 미성년자라서 보호자 동행이 있어야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지문 먼저 찍고. 보호자 연락을 취하려고 하는데, 제가 계속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빠가 그때 치매를 앓고 계셨기도 했고, 그 충격에 더 힘드실까 봐. 그래도 해야 한다, 한다 해서 연락을 했는데, 아빠가 계속 전화를 못 받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경찰서에서 전화를 몇 번 해도 안 받아서 기다리다가. 저는 그날 부모님과 연락이 안 닿아서, 그날 저녁에 10-11시쯤 귀가조치를 했거든요. (…중략…) 집에 와서 검색을 좀 많이 했어요. 부모님한테 알리지 않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 이제 대리인이 참석을 하면 보호자에게 연락 안 해도 된다는 지식인 답변을 보고, 서울에 있는 십대여성인권센터에 연락을 드렸더니, 여기 가까운 이다센터에 연결을 해주셔서 센터장님과 상담을 나누고. 아빠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알리고 싶지 않은데 어떡할까 하다 방안을 찾은게, 제가 정당히 얘기할 만한 내용을 꾸러가지고 얘기하려고 설날에 내려가려고 했는데, 아빠가 (설날 전에) 먼저 가셔서... 경찰분이 그럼 센터장님과 같이 오라고. 결국엔 보호자가 없으니 대리인이 오셔서 수사 진행하는 거로 하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수사를 진행했어요.” (참여자 14)

반면, 아동·청소년 당사자와 무관하게 경찰에 신고되고 보호자에게 알려진 사례도 보고되었다.

“학교에서 그런 범죄행위를 알게 되면 학교 담당 경찰관한테 말을 하는 게 원칙이래요. 그래서 경찰서랑 저희 부모님까지 다 통화가 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전달이 되었죠. “지금 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니깐 경찰서 가. 도망가지 마라.”라고 말을 들었어요. 상담 선생님하고 보건 선생님하고, 두 분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중략…)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이 (아빠랑) 직접 통화를 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참여자 6)

“경찰서 가서, “엄마한테 말 안 할 테니까 말해라” 그래서 말했는데, 부모님 불러서.” (참여자 15)

라. 2차 피해 경험

디지털 성착취 범죄 사건이 수사기관에 인지되거나 지원기관이 알게 된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비밀유지는 잘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대부분 학교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주변에 노출된 경우는 우연히 들키거나 스스로 노출한 경우였다. 이때 참여자들은 주변의 시선에 크게 위축되었다고 밝혔다.

“그게 눈치를 췌 애가 한 명 있었는데, 이게 제가 티가 났던 게, 제가 그 조건을 했다고 남이 눈치를 췌을 때 아니라고 변명을 해야 하는데, 변명은 못 하고 제가 얼어버린 거예요, 너무 당황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그 뒤에 (…중략…) 언니들이 “너 성매매 했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욕이 나왔는데 매우 시선이 곱지 않더라고요. 남들 시선이 다는 아니지만, 그때만큼은 “아, 이래서 이런 일을 하면 욕을 먹는구나.” 하면서.”

“음, 제가 그걸 또, 제가 성매매 한 걸 친구들한테 말한 거예요. 말해버린 거예요. 말을 해버렸는데 여러 초등학교에 소문이 짝 퍼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너 몸 팔아?” 이러면서 막 괴롭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선생님한테 요즘 너무 힘들다고 했더니, “너 서울 가라” 하셔가지고 서울에 있는 쉼터에 왔어요. (…중략…) 그 전에도 쉼터를 소개해주셨는데, 그냥 그때 죽어도 안 가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좀 불편해지니까 “갈래요” 이렇게 했어요.” (참여자 5)

또래집단 뿐만 아니라 학교와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 경험도 보고되었다. 조사를 받는 피해아동·청소년 앞에서 가해자에게 전화하여, 참여자의 실명과 신고 사실을 언급한 경찰도 있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에 있어 필수적 이해관계자인 교직원과 수사기관 종사자의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실 저는 이게 알려졌..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을 때, 성매매를 다 중단하고 정리를 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계정이 남아있으니까, 그걸 친구가 본 거예요. 사실 저조차도 그렇게 남성들을 만나고 나서 트라우마가 생겼고, 그래서 다시는 꺼내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연락이 되어서, 사실 저는 2차 피해를 정말 심하게 느꼈어요. (…중략…) 학교 선생님들 시선, 말투, 언행들,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을 때 그 경찰관의 언행이나 태도가, 그 뒤로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그 뒤에 학교에서는 마주칠 때마다 “OO야, 너 지금은 안 그러지?” 그런 식으로 하였고. 제가 그 시기에 경찰서랑 다 갔다 오고 나서 남자친구가 생겼었어요. 근데 남자친구랑 손잡고 있는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로 했었는데, 저를 불러서 “너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 왜 한동안 그렇게 하고 다녔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게 없었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했더니, “아니 남자랑 찍은 사진을 그렇게 올려놓으면 애들이 오해하잖아.”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이상한 사진을 올린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되나요?”라고 했는데, “다른 애들은 그럴 수 있지만, 너는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씀을 하였고.” (참여자 6)

“그리고 경찰관분은, 사실 그냥 제가 그 당시에 너무 예민해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심하게 느꼈을지는 몰라도, 그게 당연한 태도였을지도 몰라도, 그냥 질문의 말투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러면 얼마 받고 했는데? 몇 시간을 했는데? 그러면 남자가 안에 쓴 거야? 콘돔은 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옆에 (학교) 상담 선생님 계셨는데도, A4용지에다가 제가 올렸던 글들하고 사진을 찍 펼쳐놓고, 선생님이 옆에 계신데도, “이게 네가 맞냐” 그러고 그 안에 있는 제 가명을 자꾸 부르면서 같은 질문도 수차례 하였고, “네가 키 몇에 몇 키로, 얼마, 이렇게 올린 게 맞냐, 그러면 몇 명이나 만났는데?” 약간 이런 식의, 그런 말들을 하셨죠. 모두가 저를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 같았어요.” (참여자 6)

“상담 선생님하고 가서 (가해자 3명 전화번호를) 적고 나서, 경찰관님이 그 자리에서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제 앞에서 “OOO 아시죠? OOO가 경찰서에 와 가지고, 세 명의 그런 걸로 해서 왔는데 한 번 오셔야겠어요?” 이 얘기 하셨어요.” (참여자 6)

재판과정의 2차 피해도 있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제165조의2). 이는 증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증언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구체적으로 법정 외의 증인지원실에 증인을 있게 하고 비디오 등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거나, 법정 내의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이동식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증인과 피고인이 서로 볼 수 없도록 한 뒤에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참여자 6의 경우 증인으로 출석한 법정 내에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경우였는데, 사실상 피고인이 자신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환경과 당시 재판에 출석한 다수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들을 수 있는 증인신문 내용이 불편했다고 밝혔다.

“그 가해자랑 만나지 않는 그런 재판이 이뤄졌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 공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사람 관련한 재판이고 제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 따로 법원이 이렇게 있으면 조그만 방에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몰랐는데 목소리를 들었어요. 작은 방 문이 열려있고, 여기가 이렇게 막혀있었죠. 그래서 사실 좀 당황스러웠죠. 아무래도 제가 증언하는 걸 다 듣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나 질문들이, 기분 나쁘고 쓸데없는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중략…) 어이없는 질문이 딱 2개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그게 상대가 너한테 성인용품을 사주겠다, 아니면 옷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검사가) 저한테 “딜도가 필요하셨나요? 왜 딜도를 사달라고 하셨죠?” 그러셔서, 너무 수치스러웠죠. 그 옆에 선생님이 계시고, 다른 분들도 계시고, 그 질문이 굳이 필요한 질문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참여자 6)

(4) 피해자 지원체계

가. 아동·청소년의 정보접근권

참여자 2는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의 상담을 받았고, 참여자 3은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를 통해 십대여성인권센터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 대부분 은밀하게 발생하고 그루밍 등으로 종속적 관계가 시작되기 쉬운 특성상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일단 여기(십대여성인권센터) 선생님과 같이 경찰서 가기 전에, 제가 따로 경찰서 안에 여성 경찰... 이런 성매매 여성 피해자 지원받는, 경찰서 안에 그런 곳(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이 있어요. 거기에서다가 연락을 드려서 무슨 사건으로 협박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건 어디로 가면 되는지랑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런 질문 같은 거 통해서 혼자 찾아보겠다고 하고. (…중략…)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그리고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야겠다고,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오셔서 얘기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최대한 빨리 오셔서 얘기를 하자고 하셔서. 그때 남성이 얘기해주셔서, 알겠다고 이러면서.” (참여자 2)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엄마가 알기 전에, 혼자 감당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인터넷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인터넷 지식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글을 올렸는데, 십대여성인권센터가 그 답글을 쓰셔서 처음에 페메로 연락했다가 카톡으로 옮겨서, 그래서 만나게 됐고.” (참여자 4)

나. 보호자의 정보접근권

참여자 1은 자신의 보호자가 자녀(참여자 1)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알고 난 뒤에 관련해서 정보를 찾아본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보호자 대부분 사전에 성착취

범죄를 충분히 알고 관련된 정보에 접근 가능했던 경험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가족 상담을 거부한 보호자도 있었다. 한편, 참여자들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지만, 참여자 1과 참여자 4의 신뢰관계인으로 심층면접에 동석했던 십대여성인권센터 종사자에 따르면, 상담 전문가가 참여자의 부모 또는 모와 직접 방문상담이나 통화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님이) 십대여성인권센터에 한 번 오셨었어요. (…중략…) 처음에는 (부모님이 범죄 피해를 알게 된 것이) 조금 불편하긴 했어요. 지금은 저도 괜찮고, 부모님도 조금 괜찮으시니까, 지금은 편하고요. 제가 좀 안정을 찾으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불안하면 부모님도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고. (…중략…) (아버지가 상담을 받고 더 나아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여자 1)

“(엄마가) 여기(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상담을 한 1년 정도. (…중략…) 처음에 엄마가 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저를 아예 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다투기도 하고, 뭔 일이 일어나면 약간 제 잘못부터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 상담을 받은 뒤로부터는 조금 여유도 생기고 그러면서 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러면서 제 기분도 들어주고 공감도 해주고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참여자 3)

“저는 하고 싶었어요, 가족끼리 상담을. 근데 안 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그거예요. 왜 자기 얘기를 남들한테 했어? 왜 내 얘기를 그렇게 나쁘게 해? 막 이런 식으로? 조금 저를 이상한 애로 만들어요. 그거 네 이상한 기억이야, 너 그거 정신병이야, 이렇게.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가스라이팅 있잖아요. (…중략…) 일단 다시함께센터에서 가족상담 같은 걸 받아보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권유를 해 봤어요. 근데 당연히 저는 이상한 사람 취급 받고.” (참여자 7)

다. 관계기관 종사자의 역량과 전문성

학교는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이며, 이는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직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제10조). 초·중등 의무 교육시기의 10대 아동·청소년이 학교에서 보내는 상당한 시간 동안 교사는 학생의 신체적·정신적·심리적·정서적 발달을 민감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학교에서 적절한 지원이 제공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상담교사가 2차 가해를 야기한 경험도 보고되었다.

“사건이 있는 후에 좀 힘들어서 학교에 상담을 요청했었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상담을 받는 건지, 혼나는 건지... 학교 담당 위클래스에서.” (참여자 3)

“처음에 조사를 가는 차 속에서도 “살다 살다 막 교직생활 20년 하면서 이런 일로 경찰서 가는 거 처음이다. 나는 너무 교사로서 수치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경찰 조사에) 누가 가야 하는데 제 보호자가 그럴 상황이 안 되니까, 그냥 의무처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신경을 쓰셨다기보다 학교에서 정해진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참여자 6)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이미 관계한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 청소년복지지원체계 등도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위클래스,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쉼터 등 성착취 범죄피해 대책 및 예방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사실상 범죄피해가 방치되는 실태가 아쉬웠다.

“(가출하던 때) 학교 상담실로 많이 갔어요. 위클래스 같은 곳에 상담쌤 계시잖아요. 거기 제가 좀 자주 찾아갔어요, 조퇴하고. 제가 조금 말이 많아가지고, 그런 데 가면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 그런 경험들을 친구들에게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학교 친구들은 많이 봤자 1년인데, 근데 상담쌤은 어느 정도 자격을 갖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 데가 조금 말하기 편해서 자발적으로 갔어요. 얘기하니까 좀, 어디다 풀 데가 없었는데 말이라도 하니까 좋았어요. (…중략…) 그런 걸 한 적은 있다는 얘기까진 했는데 자세히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학교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얘기하면 선생님 귀에 들어갈 것 같고, 선생님 귀에 들어가면 부모님한테도 연락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10)

“일단 중장기쉼터는 제가 2020년 6월에 들어가서 2021년 3월에 나왔어요. 두 번째가 잇다쉼터예요. 그리고 잇다쉼터 바로 퇴소하기 전에, OOOO라고 남녀 공용 쉼터(일시쉼터)더라고요. 거기서는 최대가 일주일이라고 해서 일주일 있다가 다시 텔로 가서 텔 생활을 하다가, 너무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집에 들어왔어요. OOOO 쉼터에서는 모르고, 잇다쉼터에만 얘기를 했어요. 성매매 관련된 쉼터니까 그쪽으로 괜찮으실 것 같아서.” (참여자 13)

라. 피해회복과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은 일상의 다양한 트라우마를 보고했다. 디지털을 매개하는 범죄의 특성상 언제든 재유포와 확산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2차 가해”와 관련된 질문의 답변으로 제시되었다. 성착취 범죄 피해 구제와 대응에 있어, 지속적인 심리·정서적 지원과 성착취물 삭제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제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 휴대폰을 맨날 무음으로 해놓고 있어요. 아니면 소리가 나거나 진동이 울리면 너무 깜짝깜짝 놀라요. 이게 그 사람일까 봐. 그때부터, 그것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무음으로 맨날 꺼놓고 있고. 어찌다가 한 번씩 진동으로 해 놓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막 누구한테 연락이 오면 진동이 땡 울리잖아요. 그때 막 심장이 쿵. 그리고 며칠 전? 몇 주 전? 모르는 사람한테 **으로 “저기요”, “야”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나서 진짜 머리가 하얘지면서 엄청 심장 빨리 뛰고, 막 숨쉬기가 가쁘고, 손발이 엄청 저리고 떨리고 그랬었던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요즘 심리상담을 다시 받으려고 했어요.” (참여자 4)

“중학교 2학년 때 성매매 경험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만났던 근육질의 남성을 한 번 길에서 만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실 그전에는 막 그렇게 트라우마가 계속 지속되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역명)이 되게 작잖아요. 시내도 다 작고, 사람들도 시내 나가면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 정도로 인구수도 별로 없고. 근데 그 상황에서 딱 마주치게 되었을 때 너무 공포감이 심한 거예요. 그 시선, 마주쳤을 때 받는 시선하고. “내가 □□ 바닥 좁다고 했잖아, 우리가 안 마주치게 될 줄 알았어?” 이런 식의 말들.⁶⁵⁾” (참여자 6)

“한 번은 조건만남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이 있었는데, 계속 집 앞에 와서 문 두드리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집을 찾아내 가지고. 헤어지고 나서 따라다녔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어요, 스토킹 당하는 것 같다고. (…중략…) 아직도 혼자 있으면, 집에 혼자 있으면 불안하기는 해요. 밖에 누가 걸어나다니면 무섭고, 발소리 들리면 무섭고. 3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은 조금 그게 있더라고요.” (참여자 8)

참여자마다 답변 내용은 달랐지만, 법률지원, 정서지원, 의료지원 등이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성착취 범죄 피해 지원에 있어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및 아동·청소년의 개별적 상황에 따른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일단 그 상황에서 너무 불안하니까, 그 불안함 때문에 또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니까, 그러니까 정서지원이 제일. (…중략…) 의료지원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받고 나서 몸에 이상이 있는 걸 확인을 하니까, 아 진짜 (의료지원) 받은 게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법률지원 이런 것보다도 일단 제가 우선이니까. 정서 지원이랑 의료지원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1)

“1차 피해 받고 여기(십대여성인권센터)서 쉼터를 연계해주셨는데, 그때 우울증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조금 많이 우울하고 그냥 많이 죽고 싶고. (…중략…) 쉼터에 있으니까 정서가 조금 안정된다고 해야 하나? 집에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엄청 많거든요. 가족들이 있어도 저는 제 방 안에만 있고, 가족들이랑 소통된다는 기분이 아예 없어서. 쉼터에 갔는데 그때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나 다 편하게 생각해주시고, 친하게 잘 지내면서 있었고. 그게 도움이 됐고, 또 그

65) 참여자는 경찰에 신고 당시 연락처를 알고 있는 사람만 적었고, 위 가해자의 연락처는 몰라서 신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면서 정서 지원이 된 것 같아요.” (참여자 2)

“심리상담을 1년 정도 지원받고, 캠프도 참여하고, 법률지원도 받고, 병원에는 안 가봤어요. 캠프를 참여하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게 안 좋은 건지, 이런 거를 배웠었는데, 그 다음에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긴 것 같고. 이런 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심리상담 하면서는 좀 많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그런 게 좀 정리가 되고 제 스스로 주체가 좀 선 것 같아요.” (참여자 3)

“법률지원. 피해가 회복되는 거는 상담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쨌든 그 일을 해결해야 하니까.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합의를 하든 뭘 하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3)

“역시 법률지원.” (참여자 4)

“일단 그 사람 심리 이런 것들, 정서적인 지원 같은 거. 같이 대화해 줄 사람이 필요하죠.” (참여자 7)

“일단 돈도 돈인데, 사람들에게 얻는 에너지, 그런 것도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들이나 여기 다니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 인연을 만들면서 좋은 에너지를 받고. 그리고 뭔가 할 일이 생겼다는 게 좀 컸어요. 좀 규칙적이게 됐어요. 맨날 새벽에 돌아다니다 어디 들어가서 자고, 친구 집 가고, 밖 돌아다니고 했는데, 갈 데고 생기고 해야 할 것들이 생기니까. (공방에서) 전에는 수세미도 뒀고요, 매듭공예도 했고요, 지금은 공예활동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찾아서 하는 거 있는데, 저는 그림 색칠하는 거 해요. 하루에 2시부터 6시까지, 수요일이랑 주말 빼고.” (참여자 10)

“좋았던 점은, 이제 성에 대해서 병 같은 거, 이런 것도 배우고, 아니면 성에 대해서 아무튼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요. 막 이것저것 배우기도 하고. 또 관계할 때 성병 같은 거 걸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 것도 배우니까 더 신경 쓰게 되고. 애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몇 명 모아서 놀러가기도 하고, 애들한테 화장품 선물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니까, 되게 좋아요.” (참여자 12)

“뭔가 좀 망했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약간 나중에 아무것도 못 하겠다? 뭔가 혼자 걸려서 그랬는데, 저처럼 똑같이 하였던 어른이신 분(성매매피해여성)들도 오셔서 그렇게 얘기해주시니까 좀 안심됐던 것 같아요.” (참여자 15)

지원기관을 통해 제공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도움이 되었지만, 참여자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조건 등은 아쉬움으로 제시되었다.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의료지원, 법률지원, 정서지원, 심리지원. 저는 다 괜찮긴 했는데, 심리상담을,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텅이 좀 길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 불안한 거에 비해서. 이게 갈수록은 괜찮았는데, 처음에는 너무 불안감이 큰데, 일주일 동안 제가 막 생각하는 것도 많고 느끼는 것도 많은데. 근데 중간부터는 좀 괜찮아졌어요.” (참여자 1)

“(쉼터에서) 처음엔 프로그램을 다 강제로 들었어야 해서, 알바 시간도 거기에 다 맞춰야 했어요.” (참여자 7)

(5) 처벌 및 피해 구제, 예방

가. 처벌의 적정성

참여자 모두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 14의 경우, 특히 성착취 범죄에 대해 ‘돈’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형벌은 부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금 막 뉴스에서 나오는, 징역 10년, 15년 나오는 건 너무 가볍다고 생각을 해요. 피해자 징역으로도 완화된 수 없으니까 솔직히 무기징역을 받아도 가볍다고 생각을 해요. (...중략...) 피해자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거고, 피해자들의 피해에 비해서 너무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1)

“저는 한 8년 정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두려워하지 않을까. 하는 사람은 또 하겠지만요.” (참여자 2)

“적어도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더 많이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교도소에서) 나올 때는 아마 제가 19살일 걸요? 그럼 그때도 미성년자잖아요. 그때 저한테 또 연락이 오면 어떡해요. 그때도 아직 미성년자니까 무서울 텐데.” (참여자 4)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1년 6개월. 이 남성분이 자기가 죄를 인정했으니 형량을 줄여달라, 죄를 적게 달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초범인 걸 감안해서 벌금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벌금보다는 집행유예가 높은 거라서.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판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으로 메우는 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돈이면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닌 거로. 교육 60시간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4)

나. 지원기관의 역할

참여자들의 응답과 더불어 외로움을 느끼는 아동들이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이라 더 많이 이야기한다는 연구에서도 나타나듯(Bonetti, Campbell & Gilmore, 2010), 성착취 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의 피해회복과 범죄 재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은 아동·청소년을 중심에 둔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 종사자의 인권역량은 아동·청소년이 긍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처음 여기(십대여성인권센터)에 왔을 때, **쌤이랑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저희 아빠 차를 타고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아빠한테 말을 안 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쌤이 휴대폰으로 저한테 물어볼 내용을 적어서, 직접 말로 안 하고, 아빠한테 들릴까 봐. 그래서 그렇게 배려해주셨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불안했었는데, 그렇게 배려해주신 게.” (참여자 1)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 (십대여성인권센터) 선생님이 여기서 이런 걸로 수사를 많이 도와주는 팀이 있어서, 네가 혼자 경찰서 가는 것보다는 여기 선생님이랑 같이 가서 도움을 주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럼 제가 너무 감사할 것 같다고. 흔쾌히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때가 경찰(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 전화하고 2~3일? 하루, 이틀 고민하고 경찰서 가야겠다 마음먹고 있었는데, 그 전에 선생님이 말씀해주셔서.” (참여자 2)

“조사를 할 때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할 때나, 이거는 비밀보장이 된다,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그런 면에서 좀 안정이 된다?” (참여자 4)

“되게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의견을 물어보시고, 꼼꼼하게,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애초에 되게 조심스러우세요. (…중략…)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어른이 나를 인정하고, 그냥 나를 나로서 바라봐 준다는 것 자체가, 그게 참 안정이 되고.” (참여자 6)

“한 번은 제가 놀고 싶어서, (미용)학원을 빼먹고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같이 살던 동생이랑. 근데 이제 집 들어가면 혼나겠다 싶었는데, 선생님들이 답답했냐고, 놀고 싶었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러면 너무 답답하고, 학원가기 싫고, 놀고 싶을 때, 차라리 선생님한테 이야기라도 해주고 가라고, 그래야 선생님이 걱정을 덜 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달래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잘 나갔죠, 탈선을 안 하고.” (참여자 8)

관련하여, 각 지역에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기관이 확충되고, 보다 촘촘한 지원이 연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언이 있었다.

“사실 전북에도 여성, 그러니까 성매매피해여성을 다루는 기관이 일단 여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거든요. 전북여성인권센터가 저에게 그렇게 확실한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됐는데, 이런 시설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눠주는 성매매피해여성, 청소년을 다루는 그런 기관들을 지역별로 안내하는 종이를 보면, 이렇게 작은 2면 중 한 페이지에 다 적을 수 있는 만큼밖에 없거든요. 경기도에도 2~3개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거리가 멀고, 다른 지역이면 다니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청소년이기도 하고. 그런 기관이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참여자 6)

다. 피해 구제를 위한 제언

참여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는 아동·청소년들의 피해 구제에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지지체계가 형성되려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범죄를 바라보는 대중의 인식 전환도 필수적이다. “규율의 주안점이 ‘성을 파는 청소년’이 아니라 ‘성을 사는 구매자’에게 옮겨가고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인식의 전환”을 밝힌 청소년성보호법 제정 이유를 상기해야 한다.

“사실 저는 성매매피해여성이라는 단어를 여기 센터(전북여성인권센터)에 와서 처음 들었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당연히 범죄자, 그러니까 가해자랑 같이 범죄를 일으킨 사람으로 바라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뤄진 게 아니라, 그건 네가 더러운 선택을 한 거고, 네가 범죄행위를 일으킨 거지, 왜 그렇게 합리화를 하려고 하나. 이런 얘기를 듣다가 여기 와서 성매매피해여성, “너는 피해자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곳이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중략...) 성매매를 알고도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해준 곳이었고, 거기서 플러스로 저한테 피해자라고 해줬고, 네 잘못이 아니라고 해줬고, 그래서 되게 안정이 많이 됐죠. 사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보다 밖에서 안 좋게 얘기를 더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만큼의 힘을 가지고 그 작은 말들이 이 큰 말들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힘이 됐는데,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는 잘못된 사람이 아니고 잘못하지 않았어. 너를 그렇게 만든 사회의 잘못이야”라는 말을 듣고, 내가 그 정도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지했을 때, 이렇게 믿어주는 어른에 대한 배신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되게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6)

“이런 문제가 일어나도 (너를)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불안해서 아무한테도 얘길 못 했잖아요. 그래서 너를 도와줄 수 있고, 너에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이런 걸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10)

2020년 11월,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피해자 지원체계가 정비되었다. 다만, 이러한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도, 여전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은 가출과 음주, 흡연 등을 이유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참여자 14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매개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었고, 성매매 범죄도 2020년 11월 20일 이후 발생했으나,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감

호위탁), 제2호(수강명령), 제4호(단기 보호관찰) 보호처분을 받았다.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취지에 부합하여 진정 아동·청소년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제로 개편되는 과정에 우범소년 폐지는 필수 과제라 할 수 있다.

“제가 19살 때 소년원에 한 번 갔다 왔어요. 10호였는데 항소해서 9호로 처분이 변경되고, 6개월 있다가 왔어요. 성매매랑 특수폭행 공범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때린 것도 없어요. 그냥 개랑 성매매하고, 저는 도망치고.” (참여자 7)

“경찰서 갔다 와서 4개월 뒤에 그 남자애가 억울하다고 소송을 건 거예요. (…중략…) 그래가지고 (법원에) 그때 그냥 애들이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나간 것뿐이고,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는데, 거기서는 또 “너 여기 왜 왔나? 너 여기 올 애 아닌데?” 이러면서 집에서 교육받는 그런 거로 빠져나왔는데, 남자애들은 모르겠어요. (질문자가 보호처분을 받은 거냐고 확인하자) 네, 보호처분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참여자 12)

“바로 같은 날이에요. (성구매자가) 경찰서에 가서 바로 절 공갈미수로 고소했어요. (…중략…) 보호관찰 1년 받았어요. 그때 제가 엄청 울었거든요, 너무 억울해서. 그랬는데, 재판장에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돈을 달라고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물어보고 더 이상의 얘거나 그런 발언권 하나도 안 줘서.” (참여자 14)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기술적 문제도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참여자 6은 성적 목적의 게시글이 신고되면서 계정 자체가 정지되었다고 했는데, 해당 계정의 모든 게시 글이 영구히 삭제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참여자 7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었으나, 유포와 재유포가 계속되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상 완전한 삭제는 불가능한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계정이 *** 측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 계정이 정지가 돼요. 정지되면 탈퇴도 안 되고, 그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다시 들어가 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원래 그렇게 신고가 되면 정지가 돼요, 계정이. (…중략…) (몸 사진 같은 게)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들어가려고 해도 안 들어가져요. 아무것도 삭제나 이런 게 안 되고.” (참여자 6)

“나중에 제가 디지털 무슨 센터, 삭제 지원해주는, 거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지워서, 어떤 삭제가 있었는지 보면 여러 사이트에 퍼져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 있는 사이트 같은 거는 삭제 요청을 해서 다 삭제가 되기는 하는데, **** 이런 데는 해외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삭제가 안 되나봐요, 아무리 아동이라도. 아동이라는 증명도 없고. 아직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말로는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5년이 지났거든요.” (참여자 7)

66) 범죄 발생시점 2013년, 2015년.

라. 피해 예방을 위한 제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조항과 관련된 문제가 교육 시스템의 모든 수준에서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야 하고,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의 위험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아동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적절한 자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도 배제하지 않는다(CRC/C/156, para. 28). 특별히 참여자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공통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솔직히 학교나 그런 데서 하는 교육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안 알려주는 것 같거든요. 약간 알려줘 봤자 앱 조심해라 이런 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조심하라 한다고 다 조심하는 것도 아니고, 호기심이 생기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뒷일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참여자 1)

“성범죄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어떤 피해 여성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일단 강의로 해주셔서. 현재 인구에서 어느 정도의 여성이 성매매를 하며, 나도 모르게 피해를 받고 있는지, 어떤 수사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강의하면. 이런 강의를 있다면 저는 계속 질문할 것 같아요.” (참여자 2)

“조건만남을 하거나 속옷을 판매하거나, 그런 게시물을 통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거를 알려주면.” (참여자 4)

“익명 채팅앱은 나쁜 것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더라면, “아 나쁜 것이구나” 하고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5)

“경찰서에서도 그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을 먼저, 피해자가 오면 그럴 거를 얘기해주도록. (...중략...) 이걸 범죄라는 걸 인식하고, 너도 그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지식? 그리고 고소하는 방법.” (참여자 7)

“이런 피해가 있다는 걸, 신고를 받았다면,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이런 데(십대여성인권센터, 이다센터)를 많이 연결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친구들이 발견되면 조사할 때 상담 선생님을 불러주거나. 사실 눈앞에 선생님이 있지 않는 이상, 아무리 명함을 주고 찾아가라고 해도 안 갈 것 같거든요.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다가간다면 상처가 있으니까 마음을 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참여자 14)

관련하여, 가상 프로그램과 가해자 대상 함정수사를 언급한 참여자들의 발언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상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질 수 없는 범죄 트라우마를 유추하게 하며, 한 사람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성착취 범죄의 문제를 지적한다. 또한, 가해자 대상 함정수사는 수사의 초점을 가해자로 분명히 하며, 성착취 범죄의 시작 단계부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저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피해를 좀 가상으로라도 똑같이 받아보면... 그러면 좀 피해자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러면 너무 그러니까,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어서.” (참여자 3)

“구매하는 사람처럼 경찰이 오잖아요. 근데 남자들한테도 갔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15)

아동·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무조건적인 현금성 지원이 아닌, 필요한 경우 적절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욕구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산업사회에서 성착취 산업이 유지되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도 필요한 부분이다.

“성인은 대부분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당장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성매매 피해청소년은 (경제적 지원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요? 청소년쉼터도 있지만, 그 안에서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지는 않으니깐요. 그리고 수도권은 청소년 알바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갖추어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정말 없거든요, 하나도.” (참여자 6)

“돈이 있었으면. (성매매를 시켜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참여자 9)

“일단 제가 돈이 필요하니까 성매매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잇다 센터) 선생님이 다 듣고 도움을 주시거든요. 잇다쉼터 갔을 때, 제가 그때 번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알바 지원도 못 하고. “선생님, 알바를 하고 싶는데 구할 방법이 없다. 조건밖에 못 하겠다.” 하니까 선생님이 다른 알바 자리 구해줄 테니까 거기서 일하라고 해서. 비즈 같은 거? 한 시간 하면 몇 만 원 버는 거 있어요.” (참여자 13)

“솔직히 지금 알바 할 데도 별로 없는데, 근데 돈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약간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15)

참여자들은 가해자들의 범죄행위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강력한 처벌’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참여자의 개인적 경험에 의해서든, 언론에 의해서든, 현실에 나타나는 성착취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형량이 너무 낮기 때문에 범죄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참여자 14의 지적처럼, 법정형은 상당히 높아졌지만, 양형기준에 따

른 선고형이 낮은 문제는 계속 지적되었던 사항이다(김한균, 2020). 2020년 12월 최종 의결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의 실질적인 적용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최고의 좋은 방법은 법 강화죠. 왜냐하면 처벌이 미약하니까 더 만만하게 보지 않을까. 너무 센 벌들은 웬만하면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합의금 최대 몇 백 주고 그냥, 며칠 경고장 이런 거? 이런 것만 하고 끝낸 사람들도 있고. 너무 처벌이 미약한 것 같아요.” (참여자 2)

“저는 (처벌이) 조금 더 세지면 좋겠어요. 뉴스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보면 그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할 때도 있고, 인정 안 할 때도 있지만, 그러고 나서 똑같이 그 행동을 또 반복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알고, 뭐가 잘못된 건지도 더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참여자 3)

“법이 무섭다는 걸 알려줘야.” (참여자 5)

“일단 이렇게 유포를 하면 이만큼 처벌받는다, 이런 거를 언론에서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7)

“지금 어떻게 보면 법으로 형량은 좀 높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형량은 아니잖아요. 정말 제대로 된 형량, 제대로 된 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커야 아예 저지를 생각도 안 하지 않을까.” (참여자 14)

채팅 애플리케이션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개인 간 대화 내용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에게 성범죄 관련 정보관리의무를 부과하기가 어렵다(원혜옥 외, 2020). 그러나 참여자들의 제언에서 참고할 수 있듯, 익명성과 정보의 휘발성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급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에 적절하여 대응하려면, 관련 기업의 의무를 강화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입법적·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일단 어떤 걸 해도 그걸(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확실히 예방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디지털 성범죄고, 솔직히 잡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럼 앱이나 SNS, 거기서 협조를 받는 게 그나마... (범죄자들은) 이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혹시 걸릴 수도 있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참여자 1)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둘 중 한 명은 “나 이 전화번호인데, 네가 나한테 연락을 해줘라” 하고 전화번호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애초에 앱 자체 안에서 전화번호가, 그러니까 통화나 전화나 메시지 한 번 주고받았으면, 그 밑에 인적사항에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참여자 2)

“익명성이 조금 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익명이 필요한 것은 있기가 하겠죠, 근데 **** 이런 건 너무 빨리 퍼지니까요.” (참여자 7)

“애들은 어떻게든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성인인증을 더 빡세게 하면 많이 줄지 않을까. 채팅을 보면 다 성인인증도 없고, 그냥 번호인증도 해봤자 쓸 필요가 없으니까.” (참여자 12)

“그 앱에 자기 신상을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은 뭐고, 나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이런 개인정보가 조금이라도 나와 있으면, 저한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런 정보를 보고 신고를 하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남자들은 익명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 본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여자한테. 근데 앱에 자기 신상이 조금이라도 잘 나와 있으면 안 그러지 않을까.” (참여자 13)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은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제3조 제4호, 제5호),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제2조 제4호 및 제5호)과 다르지 않다. 참여자 중에는 아동학대, 부모 빈곤 및 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등으로 가정해체를 경험하거나, 가정 내 갈등과 위기 상황에서 탈가정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다수 있었다.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적절히 지켜졌다면, 이들에 대한 성착취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아동보호체제와 청소년복지 지원체제, 교육제도에서 성착취 범죄피해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로 신속하게 연계되었다면, 보다 조기에 범죄에 대처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동·청소년을 중심에 두지 않고,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의 공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저는 청소년이 성매매를 접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가정의 부모가 제대로 양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조차도 그랬고. 그런 부모가 애초에 애를 그렇게 방임을 했는데, (…중략…) “그 자녀 잘못 아니니까 혼내라고 하지 마세요. 부모 잘못이 더 커요” 라는 말이 저는 진짜 그게 필요했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애착 피해를 당했으니까. (…중략…) 저조차도 성매매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게 범죄행위라는 것도 알았고, 처벌이 올 수도 있다는 것도 아는 상태에서 성매매에 접근을 하게 된 건데, 아무래도 가정환경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참여자 6)

“일단은 그 원인이, 그렇게 된 계기가 뭔가 대부분 어딘가에 결핍이 되어 있는 애들이잖아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학업 문제나 친구 문제나 가족 문제나. 그 보호자들이 조금 더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7)

“그 언니는 성폭력 피해 여성들 쉼터였는데, 거기서 알게 된 언니였어요. 그 언니가 이제 (채팅앱을) 알려줘서 했죠. (…중략…) 거기는 중3 때부터 고2 때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법원에서 상담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아빠가 이래서 도저히 아바랑 살기 힘

들 것 같아요”라고 얘기해서, 선생님이 법원에 제출을 해가지고. 처음에 6호 시설 갔다가, 거기 시설에서 그 지원센터를 연계를 시켜주셔가지고, 거기서 가서 살았어요.” (참여자 8)

“제가 아빠가 친아빠고 엄마가 새엄마분이신데, 엄마랑 아빠랑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데, 그러다 보니까 아빠랑도 세대 차이가 나는데 엄마랑은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소통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앞에선 말을 세게 하고, 뒤에선 저를 챙겨주시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갈등이 엄청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기 싫어서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땐 아빠가 바쁘셔서 저랑 얘기도 많이 못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엄마 편 들어주는 것 같고. 엄마아빠 둘 다 싫다면서 나왔었어요.” (참여자 10)

“일단 아버지한테 폭력을 받아서 가출은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일할 것도 없고. 혼자 가출을 하다 보니까 도움 받을 수도 없고. 친구 집도 가기 힘든 상황이어서 일단은 친언니가 자취를 했었어요. 그래서 언니 집에 있으면서 언니 몰래 조건 앱을 하게 됐고. (…중략…) 언니 집에 있다가 이제 학교도 못 가니까 아빠 집에 다시 들어가서 그때는 앱을 안 하고, 또 가출했을 때마다 한 것 같아요. (…중략…)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많이 당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그냥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지도하다가 폭력을 썼다고, 그렇게.” (참여자 13)

5) 소결

(1) 한계

첫째,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는 전국 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 가급적 지역별 표본을 구성하려고 하였으나, 제한된 인력과 자원 속에 바쁜 업무가 지속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의 특성상 일부 지역에서만 참여자 섭외가 이루어졌다. 15명의 참여자 중 86.7%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며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지역 격차 등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둘째, 2020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밝힌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여성이 81.4%, 남성이 18.6%였고, 여성 피해자의 46.2%가 10대와 20대였고(전체 여성 피해자 중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는 44.4%), 남성 피해자의 41.7%가 10대와 20대였다(전체 남성 피해자 중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는 39.6%). 그러나 심층면접에 참여한 15명의 아동·청소년은 모두 여성이었고, 조사에서도 특별히 성착취 범죄 피해자의 성별에 대한 언급은 제시되지 않았다.

셋째, 최근 2020년 중순부터 2021년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와

관련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과 성폭력방지법 등 다양한 법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법 시행 시점이 얼마 지나지 않은 현재, 심층면접을 통해 개정된 법조항이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되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참여자가 보고한 성착취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나 처벌 규정의 한계 중 일부는 개정된 법으로 해소 가능한 지점도 있었다.

(2) 시사점

본 심층면접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 지원과 예방 체계 전반에서 개별 아동·청소년이 느끼고 경험한 내용을 청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법·제도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 참여자들이 사용한 표현방법과 단어 등의 표면적 내용 이면에 자리한 이들의 진정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도 계속하였다. 특별히 심층면접 참여자들의 범죄 피해내용을 상세히 제시한 이유는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일상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맥락상 놓치지 않기 위함이었음을 밝힌다. 참여자들이 보고한 범죄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의존성을 이용하는 범죄 수법을 알 수 있었다.

심층면접 결과, 일상에서 흔하게 쓰이는 SNS와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오픈채팅방 등에서 악질적인 범죄가 발생하고 지속되고 있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성착취 범죄 피해 연령도 10대 초반으로 낮아지는 경험을 참여자들의 응답에서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성착취 범죄 피해는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에게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성착취 범죄를 성범죄, 성폭력, 성매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으로 구분하지만, 참여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모두 아동·청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발생한 착취적 범죄였으며, 범죄의 유형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로 중첩되어 발생하였다.

수사 및 재판 현황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경찰 신고로 이어졌다. 다만, 아동·청소년이 범죄 발생 즉시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성착취 피해자 지원기관과 연계된 경우도 범죄 신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자발적으로 범죄 피해를 신고한 참여자는 15명 중 2명

에 불과했다.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자신의 인격적 존엄성과 주체성을 회복하는 데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 구제의 중요한 측면인데, 고소·고발 등으로 범죄 신고에 적극적으로 나아간 참여자는 많지 않았다. 신고한 경우, 지원기관이 수사와 재판경과를 모니터링하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보전달과 설명, 의사표현을 중개하며 아동·청소년의 정보접근권과 사법절차 접근권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부 참여자는 지원기관을 통해 수사와 재판결과만 안내받았거나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아동·청소년을 조력하는 지원기관이 역할과 더불어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 지원체계의 틀에서 아동·청소년을 배제하지 않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리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환경(절차와 조사 공간 포함), 비밀이 유지되는 안전한 신고 방법, 수사기관 법원의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역별로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지원기관 확충 등이 준비되어야 하며,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일상유지와 가정환경 지원을 위한 보호자 대상 의무적 상담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사례에서는 보호자에게 알려지길 원치 않으면서도 원칙적으로는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던 참여자들의 응답은 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며, 피해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관점이 변화될 필요를 시사한다.

관계기관 종사자의 역량과 전문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들에 대한 성범죄,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이 의무교육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주제에 따른 법령과 제도에 대한 설명 이전에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실천을 도모할 수 있는 실천적인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이는 곧 성착취에 대한 현장과 대중의 인식 변화를 진전시키고, 지원기관을 찾는 피해아동·청소년의 긍정적 변화인자로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만 18세 미만으로 정의되는 아동, 「청소년기본법」의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연 19세 미만으로 정의되는 청소년, 그리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부 정책 등이 나뉘어지는 정책의 분절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아동·청소년의 삶의 모습은 이들의 특정 연령이나 이들이 머무르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아동·청소년은 계속적으로 발달하는 연속적 시간에서 경험을 반복하며 나름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나간다. 다만, 아동·청소년이 그들이 태어나는 부모와 가정, 지역과 국가를 선택할 수 없듯, 아동·청소년

년이 마주치는 어떠한 환경에서든 그들의 기본적 권리가 지켜지는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학교와 위클래스,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의 상담 선생님을 각각 만났지만, 가정문제와 성착취 범죄가 따로 다루어졌던 참여자들의 경험은 범죄를 조기에 막아내지 못한 우리 법·제도의 현실이다.

무엇보다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의 안정적 시행, 개편된 양형기준을 실천하는 처벌강화가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며, 나아가 성구매자 대상 함정수사 제언과 기업의 책무성 강화 및 국가의 관리·감독, “성착취 범죄”에 대한 개념 정의 등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아우를 수 있는 형사법령 개정도 계속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3.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계 종사자 조사

1) 참여자 및 조사 목적

관계 종사자 면접조사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당사자와 비교해, 성착취 아동·청소년을 위해 일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의 욕구와 경험을 파악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였다.

관계 종사자 대상 심층면접조사에는 직역, 활동지역, 성별, 경력 등을 고려해 총 20명이 참여하였으며, 참여자 중 여성이 14명, 남성이 6명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근무지역은 서울이 12명(6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상도가 4명(20%), 경기도가 2명(10%), 인천이 1명(5%), 전라도가 1명(5%)이었다. 직종 경력 기간은 평균 11년이었으며, 그 중 디지털 성착취 혹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된 경력 기간은 평균 5.2년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구성은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i) 먼저 실제 아동·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과 검사,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법률조력을 하는 변호사 그룹을 제시할 수 있다. (ii) 다음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을 상담하고 법률지원 외에도 의료·심리·정서지원 뿐만 아니라 관련 영상물 등을 삭제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관 및 단체 그룹이다. (iii)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성착취에 국한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4〉 관계 종사자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참여자 번호	분류	소속기관	비고
1	수사 및 재판 관련기관	경찰	여성청소년범죄 담당
2			사이버수사 담당
3			사이버수사 담당
4		검사	성범죄 수사 담당
5			성범죄 수사 담당
6		판사	소년보호재판 담당
7			형사재판(성폭력전담) 담당
8		변호사	국선 피해자 변호사
9			아동·청소년성매매 지원기관 법률지원
10			아동·청소년성매매 지원기관 법률지원
11	피해자 지원기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라도
12			수도권
13			수도권
14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경상도
15			경상도
1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17			삭제지원
18	시민단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수도권)
19			아동보호전문기관(경상도)
20			아동청소년성폭력 담당

2)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관계 종사자는 개별면접과 초점집단면접(FGI)을 병행하여 종사업무의 특성과 직무별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2021년 7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약 2개월 15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관계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소속 기관과 직무를 고려해 심층면접 참여자를 추천받아 조사를 진행하였다. 우선 관계 종사자에게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방법,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연구 참여로 인해 예상되는 어려움 및 그에 따른 심리상담 등 지원, 자발적 참여와 참여 거부 및 철회의 자유 등에 관해 구체적

으로 안내하고 동의서를 받은 뒤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진 2명이 동행하여 함께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는 1회당 1인 기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동안 진행하였다. 조사 장소는 관계 종사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연구진이 방문하거나 COVID-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줌 회의를 통해 진행하기도 하였다. 조사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조사내용

종사자의 경우, 조사내용은 우선 공통질문으로 성별, 관련 업무 경력 등의 기본사항, 디지털 성착취 범죄 인식, 피해 현황, 처벌과 피해구제, 종사자 교육·훈련(전문성), 유관기관 협력 현황과 한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또한, 관계 종사자를 (i) 수사기관(경찰, 검사) 및 판사, 변호사 그룹과 (ii) 현장지원기관 및 시민단체 그룹 등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질문에 대한 공통의 틀은 ‘수사·재판과 피해자지원체계’로 유지하되, 직역별로 실제 수행하는 업무에 기반해 답변할 수 있도록 문항을 조금 달리 구성하였다.

관계 종사자 설문지의 틀은 아동·청소년 피해 당사자와 동일하게 구성하되, 아동·청소년 피해 당사자와 달리 관계 종사자에게는, 교육·훈련 현황(전문성), 유관기관 협력 현황과 한계, 보호자와의 관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추가로 질의하였다. 그 밖에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별첨 2] ‘종사자 면접조사 조사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계 종사자 공통문항과 직역별 문항을 종합해 볼 때, 문항은 다음과 같이 크게 7가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Ⅲ-5〉 관계 종사자 설문 분석

순번	항목	세부 항목	아동·청소년 당사자 설문문항 유무
1	디지털 성착취 범죄 인식	-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정의 -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	○
2	성착취 피해 현황	- 유입 경로, 피해 유형과 내용 등	○
3	수사 및 재판 현황	① 사건 인지 경위 ② 보호자와의 관계 ③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알 권리 ④ 수사 방법 등 수사 과정 ⑤ 재판 과정 ⑥ 2차 피해 대응	○ (보호자와의 관계, 수사 과정, 재판 과정을 제외하고는 동일)
4	처벌 및 피해 구제, 예방	- 처벌의 적정성 - 가장 필요한 자원 -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준비	○
5	피해자 지원체계	① 아동·청소년의 정보접근권 ② 피해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
6	종사자 교육·훈련 현황	- 아동권리 교육 현황 - 성착취 범죄 관련 교육 현황	×
7	유관기관 협력 현황	- 협력하는 유관기관 - 소통과 협력의 내용 - 더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

4) 조사 결과

직종별로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경찰

가. 디지털 성착취 범죄 인식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호기심이 많고 성인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쉽게 유인할 수 있는 아

동·청소년의 특성을 이용한 범죄라는 점을 지적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꼭 촬영 등을 하지 않더라도 성적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대화를 나누는 것 또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라고 생각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일단은 지금 보통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때 호기심 있잖아요. (중략) 어떻게 보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고 좋은 말로 계속 유혹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1)

대신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불명확한 특징도 여러 참여자가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것도 아동·청소년 범죄의 특징인 것 같아요. 가해자들이 이를 오히려 이용하기도 합니다.” (중략) 근데 그때(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로는 잡아보면 그니까 특정해서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근데 또 피해 학생도 본인이 스스로가 하인이라고 칭하고 가해학생도 주인, 그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단 신고를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뉘어지는 거지, 학생들끼리의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 부분에 대해선 이게 형사적으로 절차는 진행이 되지만 아마 처벌을 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대화내용을 보면은. 과연 이 아이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그 아이를 뭐 그루밍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과연.” (참여자 1)

나. 피해 현황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최근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 다만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언론에 부각이 된 것뿐이며, 이미 관련 범죄는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심각하죠, 당연히. 오랫동안 있었고. 작년에 있었던 박사방이나 n번방 사건으로 사회 문제로 부각된 것은 맞지만 사실 그런 류의 범죄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십여 년 전부터 있었고요. 그것 중에 작년에 굉장히 부각이 됐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있고 이게 공론화되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SNS나 사이버가 발달하니까 당연히 많은 사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수사관이 느끼기엔 심각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2)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그 영향으로 신고가 더 많아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보통 처음에는 일반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SNS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을 한 다음 이후 유포 등을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로 이동하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느 특정 매체만 이용된다기보다는 모든 매체가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매개 및 유통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부분 SNS죠. 작년에 문제 됐던 게 보통 ****, ****, 최근에는 ****까지도 매개체가 되고요. 처음에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루트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범죄로 넘어가면 ****이나 **** 이쪽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범행을 시작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나 ****에서 시작을 하고요. 유포는 ****과 ****와 같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자 2)

피해가 일어나는 매체의 경우, 성인 가해자의 경우에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사 협조를 받기 어려운 외국에서 운영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반면, 아동·청소년 가해자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는 하지 못하고 주로 게임 애플리케이션이나 대중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 등을 이용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과거에는 웹하드가 유통의 주된 매개였다면, 이제는 클라우드 등 외국에서 운영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온상이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성착취 범죄가 온라인에서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오게 되는 피해양상도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오프라인에서 원래 사귀다가 지인 관계였다가 온라인으로 가서 유포 협박하고 이런 케이스는 좀 있는데, 그 반대 케이스는 작년에 박사방에서 시켜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하는 케이스도 있었는데 거의 드물죠. 피의자들이 자기 신원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나갔을 때 검거가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중략)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범행도 있겠쥬. 있긴 있겠지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경험해본 적은 없어요. 반대는 많아요. sns로 알게 돼서 만나서 어느 정도 지인 관계가 됐다가 여자가 회피하니까 협박하고 유포하는 이런 사건은 이런 범죄 중에서는 흔한 사건이에요.” (참여자 2)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경우 경로가 되는 매체들이 빠르게 발달하고 변화하고 있어, 이런 매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 혹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의 경우 대부분 기업의 규모가 큰 곳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 처벌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온라인 매체는 실명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라는 게 발달하는 매체들이 너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매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플 같은 것도, 저희도 하루 자고 일어나면 다른 어플이 또 생겨나고 하거든요. 10대들은 그런 새로운 걸 많이 접해보고 하니까 그것도 비실명제로 운영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한을 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자 2)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의 경우,⁶⁷⁾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에 비해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더 큰 범죄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고, 게임 아이템 등을 대가로 오프라인 성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자 연령)13세 미만이 그 이상 연령과 비교할 때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그 이후 아이들은 오히려 본인이 성 관련 인식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부한다는 거?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아니면은 뭐 그런 음란 메시지를 보면 보는 즉시 바로 신고한다든가 그니까 본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기 전에. 그런데 13세 미만 아이들은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친하게 대해주고 하니까 휩쓸려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참여자 1)

“일단은 애초에 처음부터 피해학생을 만날 의향으로 했으면 애초에 그런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짧게 이루어지고 만남으로 바로 성폭행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이렇게 발전하는 경우에는 뭐 용돈 줄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준성매매죠. 실질적인 성매매라고 보기엔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을 아이한테, 2만원, 3만원? 근데 아이는 그것도 큰돈이고 게임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기한테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쉽게 성폭력과 이어지는.” (참여자 1)

아동·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받은 피해의 정도와 심각성을 당시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아, 장기적인 관점으로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도 많은 곳에 유포가 가능하는 등 피해의 확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67) 13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수사를 전담하는 종사자의 답변이다.

“일단 당시 아동들이 그걸 보낼 때도 (중략) 이걸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 속에서 계속 부추기니까 보내는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보호자의 보호나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받는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를 본인이 잘 극복을 할 수 있을지 분명히 기억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워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두려운 건 그런 영상들이 나중에 돌아다닐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요. 이후가 훨씬 더 큰 피해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엔 아이들이 본인이 정확히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를 몰라요. 그냥 ‘굉장히 나쁜 일이다.’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할 뿐이지.” (중략) 어떻게 보면 채팅하는 거 진짜 불과 1분? 1분 만에 영상을 보내면 진짜 많이 보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엄청. 그러면 근데 되게 짧은 시간인데, 그것을 이제 살아가는 동안 본인이 계속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심각한 것 같아요.” (참여자 1)

디지털 성착취 피해가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디지털 환경이 가지는 위험 등에 대한 교육이 미비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가 잘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결국에는 우리도 계속 이제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그 휴대폰이라든가 그런 거를 멀리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한다든가 또는 그 아이 말고 케어해야 될 형제자매들이 많다든가. 그리고 또 요즘엔 최근에 계속 사이버수업을 했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안가고. 그러면 계속 어쩔 수 없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휴대폰이라든가 뭐 탭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럼 자연스럽게 계속 사이사이에 하게 되고.” (참여자 1)

올해 9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명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인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대해서도 실행의 착수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성적 목적의 대화가 있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공백을 좀 더 메울 수 있는 유의미한 개정이라는 평가가 여럿 있었다.

“범죄는 이런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화가 모든 범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이렇게 피해아동한테 접근을 해서 한 단계 진척이 돼서 사진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아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단계까지만 해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의미하죠. 처음에는 대화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사진을 받는다거나 성착취물 제작하는 과정이 공감대를 쌓아서 어떤 식으로든 받잖아요. 그 다음엔 이제 협박으로 넘어가거든요. 대화 그리고 제작. 제작 단계는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사진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걸 빌미로 해서 협박이 되는 거죠. 이게 대화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2)

다. 수사 현황

① 사건 인지 경위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는 제일 먼저 신고, 그 다음으로는 수사과정에서의 인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며 그 외에는 시민단체와 유관기관에 의한 신고라고 답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신고는 대부분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특징도 있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일어나다보니 한 사건에 피의자는 한 명인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발견해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부모한테 얘기를 해서 부모가 신고를 하죠. 아동·청소년이 직접 경찰서에 신고를 하진 않죠. 거의 다 부모들이 다 신고를 하고요. 신고가 안 된 경우도 진행 중인 사건인 경우도 보통 피의자 한 명이 여러 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검거됐을 때 여죄 측면에서 역으로 우리(경찰)가 찾아서 연락을 취해서 입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여자 2)

중·고등학생의 연령의 경우 유관 시민단체나 기관에 가서 상담을 하다가 관련 기관 종사자와 함께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한 반면, 학교를 통한 신고는 생각보다 없다는 답변도 있었다.

“대부분은 보통 자기 부모한테 얘기해서 신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제일 많고. 아까 말한 중·고등학교나 나이 있는 애들이 고민하다가 유관 시민단체에 가서 상담 하러 가서 상담하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고. 학교? 학교에서는 성범죄 관련 부분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2)

청소년성보호법상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삭제 등으로 인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현장도 더 긍정적으로 힘을 받는다는 평가도 있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피해자의 죄를 찾아야 하는 것 또한 부담인데, 오히려 모두 피해자라는 관점으로 법이 개정되어, 수사현장은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법개정 방향에 동의했다.

“저희가 피해자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안이나 그런 마땅히 해야 하는 사안 아니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죄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아동에 대

해서는 적극적으로 막 ‘너도 성매매했으니까 처벌 받아야지’ 하지는 않습니다. (중략) 예전에는 취지가 성폭력 피해자 아동들이 성매매나 이런 피해사실이 있어도 처벌하거나 이런 게 있어도 지금 오히려 개를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더 일 처리하기가 편하죠. 왜냐면은 범인만 잡아서 빨리 송치하고 우린 할 일이 그게 주목적인데 누가 피해자까지 찾아서 죄를 찾고 싶겠어요. 그런 게 있으면 오히려 더 과감하게 안 할 수 있는 거죠. (중략) 그때그때 틀린데 어쨌든 그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형사들이 과감하게 수사하고 범인 잡는 게 목적이지만, 쓸데없이 피해자 여죄 캐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규정이 있으면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여자 2)

“(법 개정으로 현장도) 달라졌어요. 왜냐면 일단 법 자체에서 저희도 솔직히 아이들 소년부 송치를 한다는 거 자체가 좀 그 성매매 그니까 아청법 성매매를 처벌하는 건 피의자를 처벌함이 주된 목적인데 그거를 한 아이까지 처벌한다는 거 자체가, 사건처리하면서 좀 이질적이라고 느꼈었는데요. 이제 명백하게 그게 되니까 아이들에게도 훨씬 더 좋을 거고. 그리고 아이들도 훨씬 수사 협조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있고요.” (참여자 1)

② 보호자와의 관계

수사가 진행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이고 보호자가 성학대 행위자인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보호자에게 알린다고 했다. 피해자가 이후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지지가 필요하고, 보호자가 지지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피해아동·청소년이 관련 사건을 보호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기관과 함께 신고를 진행하거나 단체·기관 종사자가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 방식으로 수사는 신뢰관계인 등이 동석하도록 한 다음 조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 보호자에게 관련 상황을 설명하기도 한다고 진술했다.

“어쨌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중략) 여성단체나 상담 오시는 분이 피해 아동을 직접 데려와서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중략) 대부분 그런 케이스는 아동들이, 여기서 아동이라고 말하면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겠죠. 부모한테 알리기 싫어서 ****(기관) 같은데서 상담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신고 의무가 있잖아요. 데리고 와서 신고를 하고 그 여자애는 당연히 부모한테 얘기하면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일단은 좋다고 얘기하면서 진술은 다 받고 사실은 연락을 해야죠. 연락을 안 할 순 없는 거니까. 결국은 연락을 다 합니다.” (참여자 2)

보호자가 가해자인 경우의 어려움 또한 제시되었다. 특히 장애아동·청소년이 보호자로부터 성착취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청소년을 분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데, 피해아동·청소년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서 입소를 거부하는 등 피해아동·청소년이 갈 수 있는 시설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이었다. 피해아동·청소년이 장애가 있을 경우 세심하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비장애아동·청소년보다 더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보통 가해자가 보호자인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사이버 성폭력은 가해자가 보호자인 경우엔 아직 한 번도 없었는데 만약 있는 경우 일단 바로 현장에서 현장경찰관들이 일단 분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장애인이면 장애인단체 시설에 입소를 하고, 아동이면 아동시설에 입소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시설 부분이 되게 어려운 게, 물론 이거는 이제 일반 국가에서 보조금을 드리긴 하지만 국가시설은 아니거든요. 일단 다 민간단체에서 지원받아서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작고 그리고 장애인도 유형에 따라서 안 받는 유형이 있어요. 단순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 수용이 잘 되는데 정신장애, 흔히 조현병? 이거는 위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받질 않아요.” (참여자 1)

수사과정에서 보호자에게는 반드시 연락을 한다고 답하였다. 아동·청소년이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을 경우에는 현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장과 소통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보호자와 연락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혹은 단체에 연계하고, 그 기관·단체와 소통을 한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③ 수사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알 권리

대부분 해바라기센터에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직접 만나 소통하는 부분은 해바라기센터 소속 전문수사관이 담당하며, 막상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피해아동·청소년과 소통을 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답변이 있었다. 해바라기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찰은 피해자와의 소통이 본인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야 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하기보다는 보호자 혹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진술도 있었다.

“아동들한테는 사실 직접 안내 안 해요. 부모들한테 얘기를 하죠. (중략) 사실 케어나 이런 부분들은 역할이 나눠져 있거든요.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심리지원 해주는 유관 기관에

연결을 해줘요. 그쪽에서 심리지원을 받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저희가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절차 설명해주고 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필요도 없고 그렇게 잘 안 하죠. 좀 나눠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범인 검거, 수사하는 파트랑 그 이후에 아동에 대한 케어나 아가 말한 연계되는 단체가 따로 있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2)

부모 등 보호자의 조사 참여나 속기록 확인 등을 피해아동·청소년의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에 아동·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 절차를 진행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에게 관련 정보가 잘 제공이 되고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잘 살피고, 표명된 의견을 실제 절차에 반영하는 노력들이 더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음 일단 아이 조사할 때 해바라기센터에 가보고 부모님이 입회할지는 아이한테 먼저 물어보고 아이가 하겠다고 하면 입회를 하고요. 그러니까 안에는 못 들어가시고 부득이한 경우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보통 모니터실에서 모니터하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속기록도 아이에게 부모님이 봐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이한테 먼저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한다고 하면 (부모님에게도) 보여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아동만 보거나 (중략) (부모님은 조사 입회를 원하는데 아이가 부모 조사 입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 입회를 안 시켰던 것 같아요.” (참여자 1)

④ 수사 방법 등 수사 과정에서의 어려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범주는 경찰 내에서 사이버수사와 여성청소년범죄 수사 담당이 나뉘면서 생기는 아쉬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18년부터 지방청의 경우 ‘사이버 성폭력 전담수사팀’이 있지만, 최전선에서 접수를 받는 경찰서에서는 사이버와 성폭력을 같이 담당하는 팀이 없다. 대개 ‘유포’를 기준으로 담당이 정해지기는 하지만 그 판단이 애매한 경우도 많다는 것이었다. 결국 예산과 인력의 부족이라는 지적이었다.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사이버수사팀 각각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나아가 전문성을 강화해 사이버와 성범죄를 함께 수사하는 팀이 경찰서까지 확대되는 방안이 검토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또한 경찰 내에서 아동학대 담당과 디지털 성착취 등 성범죄 담당이 구분되는데, 실제 사안의 경우 친족 관련 성학대거나 학대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팀, 친족이 아닌 사람에 의한 성학대이고 신체 접촉이 있는 등 학대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성범죄 수사팀에서 담당한다는 진술도 있었다.

“인원이 더 늘어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2배 이상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서까지 만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디지털 성범죄) 비율도 적고요. 인원만 늘리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무공간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쉽지는 않죠. 이게 다 국가예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특징이 한 사람만 잡으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을 잡으면 이 사람이 만든 성착취물이 있을 것이고, 유통도 또 있습니다. 소지한 사람만 잡으면 유통한 사람, 제작한 사람 모두를 연관시켜 수사해야 하니 수사에 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죠. 피해자 보호도 또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수사 외적으로도 담당자가 어려움이 많지 않나 싶어요.” (참여자 3)

“경찰청에서 다 이송을 해요. 이송을 해서 판단을 해서 유포되거나 이런 건 지방청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이거 니네 사건이다, 우리 사건이다’ 싸우는 경우도 많고요. 왜냐하면 사건이 케바케이기 때문에 자르듯이 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대부분 사이버로 오는 경향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추적 기술 측면에서 사이버가 추적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합쳐서 어느 한 부서에서 다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중략)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일 좋은 거는 다 특화하면 제일 좋은데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참여자 2)

디지털 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가해자 특징이 어려운 등 수사의 어려움이 여러 번 강조되었다. 수사 협조가 되지 않는 외국에 서버를 둔 매체의 경우 원천적으로 경찰이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수사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었다. 결국 국가 간 공조, 외교의 문제이기도 해서 디지털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해 국가의 경계를 넘은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사이버수사의 영역에서는 국경의 문제도 큼니다. (중략) 외국에서는 우리(경찰)가 지원달라고 하거나 협조해달라고 하면 자기네 나라에서는 문제가 아니므로 안 지원합니다. (중략) 서버가 제3국에 있는 사이트는 연락도 안 되고요. 무슨 섬나라의 페이퍼컴퍼니에 서버를 둔 사이트 같은 경우 (중략) 삭제 차단은 경찰이 쫓아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커니즘 하에서, 제도나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중략) 그래서 국가의 문제고 외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이 사이버범죄협약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오려면 우리가 줘야 하고, 그 영역 외의 문제가 또 생겨요. 풍선효과로 더 커지고 범치는 더 은밀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사가 어렵습니다.” (참여자 3)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원가입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어려움도 제기되었다. 실명으로 가입을 해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정을 투명화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본인 인증을 가입의 필수 절차로 마련하는 등 애플리케이션 사업자 등에

대한 책무가 요청되어야 하는 대목이다. 임시계정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경우에도 가해자 특징이 어려운 점이 지적되었다.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공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계정 주인인 가해자로 특정된 사람이 실제 범죄를 한 가해자가 아닌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일단 애플리케이션이 엄청 정말 많은데 여기가, (중략) 인증절차 없이 그냥 뭐 이 사람은 *톡에서 이미 인증을 받았다, 그래서 ‘*톡에서 넘어왔습니다.’ 그 정도의 인증만 받고 회원가입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영장을 해서 개인정보를 요청을 해도 거기서 끊어지거든요. 그냥 이 사람은 ***톡으로 온 사람. 근데 ***톡 어떤 계정으로 왔는지도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영장 집행해도 더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중략) 일단 가입절차에서 개인정보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게 마련이 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참여자 1)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존재하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져, 피해자가 있을 경우 처벌이 강해지지만, 막상 피해자를 찾기도 어렵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피해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 매우 어렵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피해자를 찾는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피해자에 따라 죄명이 달라져요. 피해자가 없는 영상의 경우 정보통신 관련 범죄로 파악되는데, 그런 경우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불법촬영물인데 이걸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판단될 때 답답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자를 찾아서 피해 내용을 진술로 받아서 더 센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피해자들은 본인의 피해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많고요.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의사가 있어야 가해자도 강한 처벌을 받는데 수사 협조 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피해자가 있으면 해소될 문제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거죠.” (참여자 3)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겪은 아동·청소년은 스스로 자책감, 죄책감 등으로 수사기관에게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거나 연락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를 위해 피해아동·청소년을 설득해가는 과정 또한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처음에는 당황해서 연락을 끊는 경우도 많고, 그런 형태들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피해자가 노예-주인 관계를 했다는 것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는 스스로 찍어서 보내는 경우도 많아서 자책감, 죄책감도 있어요. (중략) 디지털 성범죄는 본인이 죄책감을 가져서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잠수 타는 것도 있어요. 피해자를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부모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주위에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예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애매한 것 같아요.” (참여자 3)

보호자가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발견했을 때, 피해아동·청소년 또한 잘못을 했다는 전제로 다그치거나 벌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들이 피해자라는 정체성이 흔들려, 중요한 증거인 애플리케이션 등을 삭제하거나 피해 진술도 잘 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성범죄에 이용당한 아동·청소년은 모두 피해자라는 관점이 가정과 사회에서 잘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또한 마주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아이들 같은 경우 일단 부모님들이 그걸 발견하면 아이를 혼내요. 그럼 아이가 대부분 다 지워요 내용을. 만약 혼나고 엄마가 휴대폰을 뺏기 전에 재빨리 다 지워요. 어플을 아예 그냥 삭제해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를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그거를 처음에 그렇게 인식이 확 돼버리면 아이들이 나중에 진술할 때도 본인이 어떤 자발적으로 행동한 부분도 숨기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참여자 1)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 잠재적인 피의자들이 범죄를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러한 신분비공개수사 혹은 신분위장수사로 인해 피의자가 불능미수 등으로 대응할 수 있어, 기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설계하고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이 수사관이 아동·청소년으로 가장해 성인 상대방으로부터 성착취 목적 대화를 취득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불능미수(불능범)로 귀결돼 처벌에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와 같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⁶⁸⁾ 또한,

68) 권인숙 의원 경찰청 요구자료 답변서(자료 담당: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위의 글(주 13). 참고로, 경찰청은 답변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해외사례를 언급하였다.

* (미국)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대화 등 범죄도 처벌한다.
(독일) 아동에 대한 범행이라고 오신하여 실패한 경우 미수를 별한다.

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수사관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범인을 검거하는 측면에서는 건별로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으로 더 수사가 위축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표명하였다. 입법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잘 빠르게 잡으라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인데, 오히려 남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수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보다 ‘통제’적 관점으로 더 수사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합정수사에 있어 범의유발형과 기회제공형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신분비공개수사로 확보한 증거가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추가 입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진술도 했다. 신분위장수사의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필요한 수사기법이라는 하지만, 흔치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막상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디지털 환경의 특성상 대화 내용이 삭제되는 등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명백히 동의한다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영장 없이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검토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개인 간 일대일 대화 녹음이 불법이 아닌 것과 같이 일대일 채팅방 또한 대화로 해석해 좀 더 쉽게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제안되었다.

“피해자가 본인 어쨌든 우리가 통화 같은 경우에도 녹음을 하면 개인 사인이 2명에서 녹음하는 걸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에 불법이 전혀 아니잖아요.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런 것처럼 어쨌든 본인이 대화하고 있는 본인 1:1 대화방에 있는 대화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대화했던 그 사람과의 어떤 계정 정보라든가, 이 사람의 일방의 동의가 있으면 이 사람과 대화한 사람들의 정보를 얻는 게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참여자 1)

⑤ 2차 피해 대응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아동·청소년이 추가로 수사기관 혹은 법원에서 진술을 하지 않도록 1회 조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진술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속기록 또한 피고인들이 재판과정에서 보게 되는데, 추후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의 빌미가 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진술

(호주) 수신인이 가공의 인물이라도 처벌할 수 있다.

관련 기록 공개의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근 가명 조사가 정착된 점도 2차 피해를 많이 예방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오히려, 이 조사나 혹은 재판 과정에서 여러 번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불편해하고 어려워 할 것 같아요. 이게 또 2차 피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최대한 1회 조사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략) 아이가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만으로, 간혹 아이들이 그런 경우 있어요. 자기가 20살이다. 실제 나이는 12살이거든요. 누가 봐도요. 가해자들은 근데 피의자들은 그거를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나 애 20살이라고 해서 만났고, 그러면 피해자들을 법정에 세울 수밖에 없죠.” (참여자 1)

라. 처벌과 피해 구제, 예방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좀 더 피해자와 현장의 관점을 고려해 성착취물에 대한 적극적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피해자 관점보다는 법리적인 판단에 입각해서 엄격하게 판단하고, 문헌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법도 따라가야 할 것 같은데, 하급심 판결이지만 (중략) 토렌트 파일이 성착취 정보는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고, 음란한 파일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중략) 하급심 판결인데, 문헌적으로 맞는데 아쉽더라고요. 똑같은 파일인데, 그 파일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로는 판단이 되는데, 성폭력처벌법상의 음란물(메타정보는 직접 촬영이 아니라는 취지)이 아니라는 판결, 그게 최종 판결로 가버리고 할 때마다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자 3)

초범인 사정이 재판에서 많이 고려가 되는 것 같은데,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고려되기 보다는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범죄에 응한 처벌을 받는 것이 결국 재범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점 또한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사를 하고 송치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경우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집행유예? 초범이고, 초범이면 거의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 근데 이게 어쨌든 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양형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대부분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시키고 이런 경우들도 초범이란 이유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나중에 나와서 재범을 안 할 것인가? 처벌이 좀 약하지 않을까. 물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알고 범행을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처벌이 실질적으로 중하게 된다는 걸 알면 더.” (참여자 1)

대중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범 죄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렇게 처벌이 아까 제각각 가장 형벌이 높는데 그거에 준할 정도의 어떤 처벌 조항이 생기고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한다면 일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줄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소지’야 뭐 처벌 조항이 없었는데 아동은 ‘소지’만 해도 처벌이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애초에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것도 확 준 것처럼요. 저희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참여자 1)

수사를 하다보면 아동·청소년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성착취가 어떤 범죄인지에 관한 교육이 가정, 학교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경찰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지역사회가 모두 나서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거나 일방적으로 교육을 받는 형태가 아닌 역할극 등 좀 더 능동적으로 교육 내용을 체득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피해자 보호영역도 경찰이 해야 하는 업무이긴 한데, 경찰은 범인을 잡고 피해자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략) 경찰 단독으로 범죄에 맞서서 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관기관이나 지역사회가 모두 나서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도 개선해야 하고요. 의외로 법이 개정된 것도 모르고, 본인들이 하는 일이 범죄라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누구도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는 것 같고요. 아동에게도 가치관 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지 경찰이 나서서 수사하고 하루아침에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략) 학교 교육, 가정 교육이 중요하고요. ‘이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여자 3)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많죠. 성별만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 똑같거든요, 비슷하거든요. 음란채팅으로 여자인 척 접근해서 남자애들한테 화상으로 음란채팅하고 성기 보고 녹화해서 팔고 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피해자가 수백 명이라고 들었어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자도 똑같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교육이 한 번씩 경찰 수사본부에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들어가든지 개념을 애들한테 심어줘야 되지 않냐. 그걸 작년과 올해 청소년들을 많이 입건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애들 보면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런 차이 없어요. 명문대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중략) 진짜 우리가 예방 목적이고 그렇다면 디지털 성범죄

를 주제로 한 옛날에 성교육 거기에 아마 지금도 있을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좀 수사기관에서 나와서 하든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여자한테는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하겠고, 남자한테는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보면 보는 것 자체로 전과가 생기는 것에 대한 무서움을 각인 시켜주자.” (참여자 2)

마. 피해자 지원체계

① 아동·청소년의 정보접근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었다. 대신 보호자가 아닌 아동·청소년에게 적합하고 친화적인 방식과 내용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었다.

② 피해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피해아동·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과 도움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관련 성착취물의 유포를 막는 것과 삭제 지원을 꼽았다.

갈 곳 없는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쉼터 등이 많이 발굴되고 수사기관과 잘 연계되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조사를 받은 이후 피해아동·청소년이 집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기관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보통 경찰서와 가까운 청소년쉼터에 연계를 하는데, 이 또한 구조적 지원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역량에 내맡기고 있는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1, 2학년만 돼도 보호자가 있어도 “나 집에 안 가요.” 하면 억지로 집에 돌려보낼 수도 없고. 저희도 (연계)하는 게 쉼터인데요. 쉼터에 인계하고 그때그때 다르죠. 근데 딱히 쉼터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중략) 이런 경우가 진짜 머리가 아파요. 수사하는 것보다 피해자 관련해서 이런 게 진짜. 경찰관이 피해자랑 연락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해주고. (중략) 새벽에도 계속 연락이 와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중략) 사실상 다 큰 앤데 집에 아빠가 있는데도 안 가요. 아빠는 가출 신고하고요. 자기는 친구 집 가서 잔다고 하고. “연락이라도 잘 받아라.” 이 방법밖에 없어요. 쉼터에 데려다주려고 하면 “쉼터 안 가요.” 하면. (중략) 이런 걸 사실 정책적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참여자 2)

또한, 수사 이후 피해자를 위한 지원 안내에 대해서는 피해아동·청소년에게 해바라기센터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안내해 주는 역할까지 하고, 각 센터에서 피해자 지원을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 지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답변도 있었다.

바. 종사자 교육·훈련 현황

COVID-19로 인해 2년 가까이 오프라인 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온라인 교육만 진행되며, 아동에 관한 교육은 ‘범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아동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추가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동... 아동 자체에 대한 거는 뭐 범죄에 국한해서 수업을 들었던 것 같고. 아동의 특성?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워낙 아이들이 2차 성징도 빨라지고 해서 그 나이 때 아이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 그런 것을 알면 훨씬 저희가 가해자 혐의점을 증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참여자 1)

사. 유관기관 협력 현황

경찰의 경우, 외부기관으로 가장 협조를 많이 하는 기관으로는 공통적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꼽았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전에는 삭제, 유포 차단 등도 경찰에서 진행해서 업무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업무가 분업화가 되어 훨씬 시스템이 나아지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삭제 심의 등 역할을 이행하고 있고 심의 기간이 많이 단축되었다고 했다. 대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유포 방지에 관한 요청을 하는 경우 유포 여부에 관한 정보를 피해아동·청소년과 수사기관에 좀 더 긴밀하게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저희가 유포방지 요청을 하면, 만약에 유포가 되면 연락을 주시긴 하거든요? 근데 ‘유포가 안 됐다.’라는 것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 것도 좋긴 한데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언제까지 확인해보면 유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안내가 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항상 (피해자에게) 전화하면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유포 됐어요?’, ‘유포 됐나요?’ 저희한테 아동들은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번 더 확인하고 알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센터에서도, 아니면 이쪽 센터에서 저희 쪽으로 한 번에 일괄적으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의뢰하신 내용은 유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든가 뭐. 건 당 해주는 너무 바쁘니까. 그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참여자 1)

경찰 참여자 모두 협력하는 기관으로 해바라기센터 또한 언급했다. 특히 해바라기센터가 예산 등의 문제로 없어지게 되기도 하는데,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더 많은 해바라기센터가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국선 피해자 변호사도 많이 언급되었다. 피해아동·청소년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 준다는 것이었다. 한편 피해자 변호사는 경찰과 협력하는 주체라기보다는 피해아동·청소년을 조력하는 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경찰과는 사건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정도라는 의견도 있었다.

사이버수사를 담당하는 조사 참여자의 경우, 협력하는 기관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와 유관 기관을 언급하기도 했다. 여성청소년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우 아동보호를 담당하는 구청, 장애아동을 보호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나 센터도 협력하는 기관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심하지 않은 지적장애아동의 경우 보호할 시설 혹은 기관을 찾기 어려운 현실도 마주할 수 있었다.

“만약에 **센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진짜 장애가 있다, 그러면 안 받으시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아동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 해서. 또 장애아동을 받는 곳에서는 정말 신체가 거의 대소변을 못 가릴 정도의 장애아동? 우리는 그 친구들만 케어하는 거지 지적장애나 경미한 장애 아이들을 시설이 없어 부족해서 할 수 없다. 그니까 지적장애 아동들은 약간 사각지대에 있어요. 부모가 케어하거나 다른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케어하지 않는 이상은.” (참여자 1)

결국, 형사단계를 넘어 피해자지원체계가 실효적으로 잘 작동되어야 추가적인 피해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동을 만약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담을 하지 않으면, 근데 부모도 일을 해야 되거나 따르 자녀 케어 때문에, 한번 신고가 되었던 친구가 몇 개월 있다가 또 신고를 하는 걸 보면 참, 네. 수사하는 의미가 있나 그 친구한테 우리가. 정말 그런 경우에 이 친구가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약 이 친구가 성인이 되면 만약 가해자가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요. 저희가 근데 또 수사가 끝나고 그 친구를 쫓아다니면서 상담을 할 수는 없어서요.” (참여자 1)

(2) 검사

가. 디지털 성착취 범죄 인식

‘디지털 성착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거에는 크게 성폭력, 성매매, 음란물 이 세 가지로 나누어 규율했던 것을 피해자 중심으로 디지털 기기 혹은 IT 기술을 이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일체라고 답변했다. 한편 ‘디지털 성착취’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 또한 있었다. 비접촉(사람 간에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범죄는 모두 디지털 범주에 넣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성착취는 되게 개념이 넓은 것 같은 게 말씀하신 대로 입법의 의미를 추적해보면 단순히 성매매를 벗어나서 옛날에는 성폭력, 성매매, 음란물 이렇게 세 개로 나뉘서 법이 규율하고 있었다면 그건 사실은 이제 발생한 범죄에 포커스를 맞췄던 좀 옛날식 사고방식인데 이젠 그게 아니라 어떤 형식이든 성매매든 성폭력이든 아니면 음란물이든. 사실 음란물도 주인공이 아동이거나 또 동의없이 찍으면 똑같은 것처럼 피해자 중심의 생각을 했을 때 그 의사랑 상관없이 벌어지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든 사실. 이게 뭐라 해야 하나요. 성착취라고 하면 범죄뿐만이 아니고 이런 거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성착취라고 볼 수 있고, 디지털 성착취는 범인의 입장, 그러니까 피의자, 범인 입장에서 이걸 이용해서 했을 때 결과는 오프라인에서 발생해도 되고.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5)

“일단 디지털 성착취 범죄란 용어 자체가 너무 모호해서요. 전혀 와 닿지가 않고요. 실무에 있어서도. 어디까지 성착취로 볼 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성범죄, 성폭력 범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을 그거로 한 것. 근데 굳이 디지털로 나누자면 비접촉 성범죄를 다 디지털 범주에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넷이라든가 카메라 촬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에 반해서 접촉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추행, 강간 등이 접촉 범죄인 거구요. 비접촉성이면 다 디지털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성착취란 단어는 너무 모호해서 어디까지 이건 저도 실무에 있지만 개념이 확 와 닿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전 설문지 주신 걸 미리 보고 성매매도 디지털 성착취 범주로 들어간다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은 그 외 성범죄와 완전 카테고리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참여자 4)

죄의식 없이 광범위하게 저질러지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하며, 수사를 할수록 이러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만연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무력감을 느낄 만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는 심각하다고 진술했다.

한편,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성인과 아동·청소년을 구분하는 시각도 발견할 수 있었다. 성매매는 스스로 직접 선택한 경우가 많아 성착취와 범주가 다른데, 대

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달리 보아 착취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성착취피해를 입는 아동·청소년은 가출을 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의 열악한 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은 현실도 지적했다.

“오피스텔 성매매같이 요즘 대다수의 성매매는 자발적으로 직업 혹은 아르바이트 식으로 본인들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신 거고 수입도 상당하고. 그래서 저는 성착취 범죄의 범주에는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예요. (중략) 아동·청소년은 다르게 봐야죠. 개들은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잘 몰라서 순간적으로 용돈이 필요하거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인 성매매 여성. 아동·청소년들은 개념도 서있지 않고 아직은 완전한 가치 판단이 확실히 서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성착취가 맞죠. 잘 모르는 학생들 상대로 성인 남성들이 주로 꼬드기는 거요.” (참여자 4)

“일단 아동·청소년은 스스로가 진정한 자의가 아니라요, 집을 가출했거나 부모가 있긴 하지만 제대로 된 보호를 못 받아서 본인이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친구들이 하니까 충동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혹은 못된 애들이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네가 이렇게 성매매해서 같이 나눠 쓰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본인이 겪는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성매수자들이 대부분이 성인 남성인 경우가 많은데 주고받은 메시지 이런 걸 보면 ‘착취’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네요. 본인이 그 돈을 온전히 쓰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참여자 4)

나. 피해 현황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는 음란물 유포에서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범죄가 발생하는 주요한 온라인 매체로 일반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오픈채팅과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이라고 답했다. 또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란, 새롭게 생겨난 범죄가 아니라 원래 이러한 범죄들은 있었는데, 디지털이라는 매체가 생기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철저한 성인범들은 법의 그물 사이로 다 빠져나가지만 소년범 등 우연한 호기심에 진입했다가 관련 영상물을 잘 삭제하지 않다가 기소되는 경우들을 마주했을 때 어렵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년 전에도, 디지털이 없었던 30년 전에도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피의자들이 있었을 텐데 디지털이라는 매체가 들어오면서 이게 확 넓어진 것이지 이게 새로 생긴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략) 이거는 저지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장벽이 없는 거예요. 뭔가의 행위를 했지만 내 머릿속에는 “내가 형사처벌이 될 행위를 했

어.”, “큰일났네. 혹시 걸릴까?”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이 너무 쉽게 벌어지니까 오히려 큰 일로 느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진입이 되게 자유로워진 거죠. 넓어졌고. 계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도 조금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 조금 그런 것이 되게 많은 사건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2학년 쯤 된 남학생 하나가 맨날 커뮤니티하고 이걸 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잘 가는 커뮤니티에 게시물 하나 올라왔는데 여기에 ‘n번방 여자애들이 있어요.’ ‘이쁜 미소녀를 클릭해보세요.’ 라고 하면 사실 이 애 머릿속에는 이걸 클릭하면 범죄가 되겠구나라고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어른들도. 클릭을 할 것이고, (중략) 그러면 증거가 없으니까 추적을 못하는데 순진한 애들이 오히려 컴퓨터에 박아놨다가 추적하니까 걸려서 하드디스크에 있고 그러면 양형은 무지막지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한 범인들은 그물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참여자 5)

피해아동·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교육을 잘 받았더라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성인과 달리 쉽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그루밍, 협박이 통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을 범죄자들이 적극적으로 악용한다는 것이었다. 피해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초등학생 연령의 피해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이 어릴수록 본인이 당한 피해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진술했다.

“일탈계를 운영하는데, 벗은 사진을 올렸는데 이제 갑자기 ‘경찰입니다’해서 음란물을 이렇게 올린 거에 대해서 조사받으셔야 하는데 인적사항부터 밝히시라고 하면 애들은 놀라가지고 ‘저 누구인데요.’ 이렇게. 그러면 인적사항 나오고 주민번호 나오고 주소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너 이거 다 뿌리겠다.’ 해서 하기 싫으면 나체 사진을 보내라 이렇게 하고 이게 너무 쉬워지니까 피해자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피해자들은 이제 저희가 전문가들이랑 이야기해보고 그랬을 때 일반적인 성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게 친구들이 초반에 거절을 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점이 많았는데 그걸 다 지나가서 이제 진짜 그루밍, 지배의 관계에까지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참여자 5)

또한, 검사 참여자는 공통적으로 인터넷에서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되어 실제 오프라인 성범죄 피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오프라인 범죄에서 유포 등 온라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답했다. 또래 가해자들이 성매매를 강요, 알선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형이 정말 많죠. 일단 대부분 인터넷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인터넷이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보통은 인터넷으로 알게 되거든요. 각종 채팅이나 온갖 것들 있잖아요. 채팅으로 알게 되어서

연락하면서 사진 보내봐라 든가 만나서 성관계, 성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성매매 알선 같은 경우는 같이 몰려다니는 남자 소년들이 여자애들을 알선을 시켜요. 자기들이 채팅 같은 걸 해서 성매수남을 물색해서 여자애를 그쪽에 데려다 주고 그 여자애가 성매매로 받는 대가를 나눠 쓰는 그런 구조거든요. 청소년들이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경로는 요즘 애들은 자기네들이 인터넷으로 즉석에서 서로 알게 되거든요. 가출하는 애들은 가출팸 같은 사이트도 많은 것 같고. 그렇게 같은 학교도 아니고 원래 접점도 없던 애들이 순식간에 만나서 그런 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범행 피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략) 실제로 만나는 것(오프라인 성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적진 않은 것 같습니다.” (참여자 4)

또한, 결국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문제는 결국 아동·청소년의 문제이며, 아동이 자라나는 가정환경, 아동보호시스템과 같은 구조의 문제를 함께 보아야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 문제는 진짜 가정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성폭행 문제도 하지만 성매매 알선 문제도 하고 아동학대, 가정폭력과 소년 문제 모두 다 저희 부이거든요. 보통은 이 다섯 개를 같은 부서에 전담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시작은 가정. 원만하지 못한 가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게 해서 소년범이 되는 거고요. 혹은 자신이 소년범이 아니라 아동학대 피해자가 돼서 그런... 이게 더 나아가서 성범죄 피해까지 이런 구역이 사실상 세트예요. 아동이 성매매 알선까지 나아가는 경우 멀쩡하게 학교 정상적으로 다니는 그런 애들은 없었어요, 사실. 옛날부터 생각했던 게 범죄율을 줄이는 거는 이 사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면 범죄율도 자연히 줄어들 텐데. 이게 참 시스템 문제가 많이 안타까워요. 아무튼 많이 고민을 해봐야 하고 시스템 쪽으로도 고민을 해봐야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참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기록들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른 기관들이나 국회에서 많이들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4)

다. 수사 및 재판 현황

① 사건 인지 경위

대부분 보호자에 의한 신고가 가장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들이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가해자 관련 정보를 알아낸 뒤 사건을 수사하게 되기도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매매 여부를 질문하고 관련 가해자 정보를 취득하는 방식은 아동·청소년에게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보통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나 고소를 하고요. 아니면 아동 성매매 같은 경우는 경찰들이 애들이 성매매 할 남자를 구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보면서 성매매 할 남자 구하는 것 같은 애가 있으면 말을 걸어서 만나기로 하고 가서 본인이 경찰인데 오늘 이전에 혹시 성매매를 했었는지 묻고, 했다면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주기를 권고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애가 성매매를 한 적은 더 많다고 해도 보통 그 직전에 한두 번 밖에 못 잡아요. 왜냐하면 애도 그 남자(가해자) 연락처를 삭제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근데 보통 좀 크게 보는 사건들은 신고로 오게 됩니다. 보통은 부모가 아이 휴대폰 같은 거를 보거나 해서 신고나 고소를 하시는 게 많아요.” (참여자 4)

최근 ‘온라인 그루밍’ 규정도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오프라인 성범죄까지 이어지지 않고 온라인, 디지털 환경에서의 그루밍에 머무른 경우에는 그 단계에서 대부분 피해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고가 잘 되어야 실효적으로 개정된 법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제는 저희한테 수사기관에 신고되는 경우가 보통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메시지로 꼬드쳤다고 했을 때 그걸 사실 신고를 해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당사자가 그 단계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구성요건 상으로는 실제 안 만나도 그 규정으로 다 할 수는 있는데, 보통은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실제 성관계까지 이루어졌을 때 그때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혹은 부모가 신고를 해서 그때서야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고요. (중략) 처벌을 기대할 순 있는데 문제는 수사기관이 그런 일이 있다는 걸 포착을 하고 증거가 있어야 처벌을 하잖아요. 당사자들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출 청소년들이나 혹은 부모님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스스로 이런 걸 신고를 잘 안 하고요. 결국엔 이걸 얼마나 신고가 되어서 수사기관이 인지를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4)

② 보호자와의 관계

아동·청소년이 성착취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잘못된 것 같다는 죄책감 때문에 부모에게 혼이 날까 두려워 제대로 진술을 못하게 되거나 보호자가 조사에 동석하지 못할 경우 국선 피해자 변호사 등이 함께 조사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했다.

“웬만한 기록에서는 경찰들이 보호자에게 다 알리긴 알리더라구요. 근데 진술할 때 동석할 때는 아이의 의사에 따라서 국선변호사나 진술조력인이 있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부모님 앞에서 말하기 민망한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애들의 특징은 또 뭐냐 하면, 본인이 피해를 입었는데 뭔가 ‘나도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말을 제대로 못하

는 경우가 있어서 아이의 의사에 따라서 부모님을 동석시키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는데, 부모님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참여자 4)

③ 수사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알 권리

아동·청소년에게 진행 중인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것 또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처한 상황에 따라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통적인 피해자 권리로 했을 때 오히려 2차 가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제가 저번달에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 검찰은 가급적 아동은 2차 조사를 안 하는데 저 쪽에서 부인하고, 초기 수사가 부실한 경우 저희가 하는데 (중략) 부모님하고도 면담하고 이게 안내가 너무너무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몰랐다면 차라리, 그 나이대의 여자애였다면 차라리 그냥 부모님한테 ‘저 아저씨가 나쁜 일을 했어. 저거는 처벌을 받는 거야. 어른들이 알아서 할게.’ 하고 끝내야하는데 이거를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하면 권리가 보장되기는 커녕 애는 그 나이에는 알아서는 안 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버리고 고민하게 되고 정서적으로는 더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보니까 어른들이 하듯이 몸으로 보거든요. 용어도 함부로 못 쓰고 ‘그 아저씨는 진짜 나쁜 아저씨야. 그 아저씨가 어떻게 했어?’ 대답 못하면 못 하는대로 끝을 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부모님에게 대신 안내를 할 것이냐 그것도 결국 아까 돌아가는 것이죠. 부모가 가해자면 어떡하나.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동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대리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참여자 5)

피해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신고를 했는데 보호자에 관한 정보가 없거나 혹은 아동·청소년이 부모에게 연락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혹은 수사기관에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의 어려움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럴 경우 결국 아동·청소년이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사람과 소통해도 아동·청소년이 수사 진행을 원하지 않거나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 아동·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실 실무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 (중략) 본인(피해아동·청소년)이 싫다고 하면 안 하는게 나을 수도 있는데 애의 말을 안 들으면 체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으면 수사기관은 본능적으로 이 놈 잡는 게 우선시되거든요. 뭐가 맞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겠지만 인권침해가 다소 발생해도 이 놈을 잡아서 다른 피해를 줄이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반대로 다 놓쳐도 이 아이를 보호해주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은 가치문제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수사기관의 입

장에서는 사실 이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애를 설득을 하려고 한다든가 어떻게 든 부모님께 연락을 취하려고 한다든가 피치 못할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애는 싫어 죽겠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가해자를) 잡든지 말든지 거든요. '나한테 연락하지마. 나는 모르는 일이야.'라고 하는 애한테 저희가 전화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여가지고. 그런 건 애하고 교감이 형성된 한 가지 컨택 포인트하고만. 여기서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포기를 해야만 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가 그 분을 설득하거나 애를 묶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여자 5)

④ 수사 과정에서의 어려움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있어서 가해자 특성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답변했다. 유포 차단을 위한 좀 더 선제적인 대응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통 디지털 성착취 관련 증거는 신고가 되면 가해자들이 대부분 삭제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압수에서 한 걸음 나아가, 드라이브 등을 통한 추가 유포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압수해 드라이브 등 추가 유포가 된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저장된 불법촬영물이 있을 경우 삭제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원이 관련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아 어렵다는 것이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영장으로도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없는 어려움도 진술했다.

“피고인을 구속수사 하면 모르겠지만, 만약 이 사람이 구속까지 될 사람이 아니고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할 때에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기사에도 나왔던 사건인데, 수사 받던 와중에 자신이 찍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자살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그니까 압수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걱정이 돼요. 저도 이제 직접 이제 압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잠이 안 와요. 만약 갔는데 휴대폰에는 당연히 삭제를 했겠죠. 신고를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혹시라도 양심을 품고 어딘가에 파일을 숨겨 두었다가 퍼뜨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장을 할 때 저희는 좀 넣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참여자 4)

“그렇지만 클라우드나 이메일 그런 곳에서 저장되는 것에 비해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서요. 혹시라도 이 사람이 감방에 들어갔다가 저장해 놔다가 몇 년 뒤에 퍼뜨리면 어떡해요. 항상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개인의 사생활도 좋지만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전방위적으로 영장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거를 하는 것은 잘라내기식 압수 수색이라고 해서요. 그 안에서 파일을 삭제하고 별도의 CD 같은 곳에 저장해서 증거를 내고. 거기에는 이제 안 남기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 사람이 설령 감옥에 간다고 해도 평생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나와서라도 퍼뜨릴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사람이 아니라도 정말 운이 안 좋으면 해킹 당해서도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위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하여 뭔가 돼야하지 않을까.” (참여자 5)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영장 집행이 어려운 클라우드 기반 메신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경을 넘어 국가적 차원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차라리 텔레그램이라든가 국가 대 국가로 협정을 맺어서 우리가 영장 집행을 받아주게 한다던가. 뭔가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했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진짜 좀 걱정이예요.” (참여자 4)

최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상 ‘신분위장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위장수사를 하러 들어갔는지 아니면 진짜 범죄를 하러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정당한 목적을 위한 수단 또한 적정해야 하는데 만약 이 수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부패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까지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사 참여자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행위태양 가운데 ‘시청’, ‘소지’에 대해서도 목격자가 없는 한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결국 디지털포렌식 기술이 더 발전하거나 진술 밖에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공소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질 것이라는 어려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포’의 경우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세명, 혹은 가족에게만 전달된 경우에도 유포라고 보아야 할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진술했다.

“요즘 문제 되는 건 ‘소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입증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휴대폰에 있는 자료를 다 지웠으니까요. 지금 소지 입증도 어려운데 ‘시청’을 대체 어떻게 입증할 건지... 그리고 사실 소지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그런 걸 만들어 유통하는 사람이 없어야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자꾸 돈을 주고 사든 뭘 하든 좋아하니까 그런 게 자꾸 생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소지에 대해서 입증 할 방법이 참 넉넉하지 않은 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중략) 근데 이 사람이 경찰 피신이든 검찰 피신이든 법적인 내용이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뭔가를 다운받았다 근데 이게 아동 성착취물인 것 같다. 그렇지만 휴대폰에는 남아 있지 않고 이 사람은 다운 받지 않았으며 아동성착취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소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소 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겠죠.” (참여자 4)

⑤ 2차 피해 대응

2차 피해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과정 자체와 범인이나 지인 등에 의한 피해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피해 진술을 최소화하는 취지는 좋으나, 이러한 규제 혹은 제한의 방식이 결국 피해 구제를 막기도 해서, 온라인 조사 등 좀 더 세심하게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차별금지법 제정 등 근본적인 국민들의 사고와 인식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2021년에 저희는 아직도 도장 찍고 있고 사람을 대면해서 말을 받아적이고 있고. 무수히 많은 대체 수단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도 대질 조사를 하려고 해도 사실 좀 켜놓고 하면 되잖아요.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구현되어있는데 너무 전통적으로 머물러있으니까 다양한 대체수단을 활용해가지고 보호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하지 않나. 그니까 저희도 예를 들어 ‘대질조사도 하지마’, ‘피해자도 부르지마’ 이게 전통적인 규제 방식인데 이런 걸(2차 피해 등) 막기 위해서 이래버리면 저희가 기소를 이제 못 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기소할 수는 없으니까. 이 쪽 조사를 못하면 기소를 못하게 되어버리니까요. 결국에는 더 나쁜 결과로 가다보니 이런 것들은 너무 막기만 하면 안 되고 세심하게 보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이제 다른 2차 가해는 피의자 쪽 말고 주변이나 완전히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퍼져서 2차 가해가 발생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 지인이나 이런 경우는 사실 법이나 제도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교육 밖에 답이 없는 그런 거죠. ‘그런 게 문제가 되면 처벌하겠다.’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은 양형이나 처벌법이 아니고 차별금지법을 빨리 만드는 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5)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되도록 경찰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있지만 피고인(가해자)이 많이 다투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피해아동·청소년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어렵다고 답했다.

“정말 예외적으로 출석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쉽게 말해서 쉬운 사건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피고인이 많이 다투고 있기도 하고 그럴 땐 가급적 국선 변호사 통해서 하고 국선 변호사님이 좀 출석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독력을 해주시죠. 아동·청소년이 증인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간혹 영상 녹화물이 있어도 판사님들 중에는 ‘내가 직접 들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증거능력이 있는데 왜 꼭 직접 들어가야 되겠냐 하지만. 그런 사건은 솔직히 판사가 의뢰 심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왕왕 있긴 하거든요. 쉬운 사건이 아니기도 하고요. 아무튼 아동·청소년은 어렵습니다.” (참여자 4)

라. 처벌과 피해 구제, 예방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변수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지인과 비지인,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최근 디지털 환경에만 집중하다보니 양형 기준이 온라인만 높아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있었다. 오프라인에서 유형력으로 벌어지는 범죄 또한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성착취 범죄 또한 함께 양형을 높이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프라인에서 일어난 성착취 범죄가 유포 등 온라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조금 그런 게 요새 디지털 아동 성착취에 집중하다보니까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아무리 결과적 피해가 크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오프라인에서 유형력으로 벌어지는 게 저는 더 피해가 크다고 보거든요. (중략) 그리고 지금 자기는 육체적인 피해가 있는 상황도 있는데 너무 좁은 의미의 네트워크를 중요시하다보니까 오히려 양형 기준이 온라인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기(오프라인)는 따라오지 못하고. 제가 봤을 때 양형을 높이는 건 오케이인데 그러면 여기(오프라인)도 높여야하는데 여기는 못 따라오는 괴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 5)

다른 범죄에 비해 디지털 성착취 범죄 법정형이 낮지 않으며, 오히려 법원에서는 법정형이 높으니 증거를 까다롭게 보는 등 입증이 더 힘든 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우선 법원의 양형이 낮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살인 사건도 했고 사기, 횡령 이런 것들도 10년 동안 다 했지만, 사실 성범죄가 다른 죄에 비하면 지금도 법정형 자체가 지나치게 낮아요. 그래서 이게 성범죄 같은 경우가 더 입증이 힘든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판사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최종 판단을 하는데 이 사람이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고 직업도 멀쩡하고 가정도 있는 상황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5년 이상이다 이러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더욱더 증거를 까다롭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이 있고 또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기소를 했던 살인 사건에서 최고로 형이 많이 나왔던 게 17년인가 18년입니다. 그것도 당연히 유족과 합의도 안 했고 정말 잔인하게 죽였던 사건인데 그거에 비하면 성범죄는 조주빈 같은 경우도 45년 나왔잖아요.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관해 처벌이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게 무조건 법정형만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참여자 4)

한편,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아동·청소년 개인의 탓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구형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 고2한테 5년 이상? 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적인 국민의, 물론 인터넷 커뮤니티 보면 ‘죽여라’ 라고 하겠지만 그건 정말 무책임한 말들이고 애한테 책임이 있는 어른들이 봤을 때는 애가 징역 5년 이상? 진짜 아닌 것 같은데 하면 공소 제기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데 어려운 거죠. 그니까 차라리 중간 것이 있으면 ‘너 벌금 100만원’ 이렇게 할 텐데 5년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요. 기소 유예,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갭을 만들어 버리는.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를 못하게 하는 효과가 생겨가지고.” (참여자 5)

오히려, 피해자를 위한 구제수단으로는 처벌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실효적인 구제가 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분담하게 한다거나 피해자가 심리 치료나 이사 등의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꼭 민사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형사판결 과정에서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배상명령은 재산 범죄 같은 경우에서 명확히 피해액이 형사 판결 자체만으로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여야 되거든요.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에 삭제비용이 얼마가 될지도 정확히 알 수 없고 어떤 피해 내용에 따라 이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도, 병원 치료가 필요하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형사판결에서는 함께 할 수도 없고 성범죄는 재산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명령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할 수 있으면 형사판결에서 판사가 한방에 해서, 피해자가 좀 더 빠르고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고, 가해자 입장에서 단순히 징역은 몸으로 때우고 나오는 거고 집행유예는 소위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공짜 판결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피해자가 입은 피해만큼 자기도 경제적인 뭐든 부수적인 것이 나가면 그때서야 자기의 행동을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여자 4)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삭제’라고 답했다. 디지털 환경의 특성상 완전한 삭제까지 달지는 못하더라도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삭제에 이르려면 삭제를 위한 기술이 더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삭제이죠. 삭제.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인터넷 공간이 진짜 무한정이거든요. 저희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다 삭제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게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고 도대체 ‘다크웹’이라는 이제 드러나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사이트 같은 곳까지 찾아서 하니까 정말 쉽지도 않고요. 피해자들 입장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내 사진이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을 것이다. 정말 그 삭제를 위한 기술력의 발전이 일단 확실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적어도 인터넷의 특성상 전체 삭제가 안 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을 만큼의 삭제가 이루어지는 작업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은 조금 속도라던가 양의 면에서는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여자 4)

결국 인식 개선과 예방을 위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이러한 범죄가 척결되지는 않으며,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온라인의 어떤 곳에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매체는 차단하는 방향 또한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국가, 부모, 학교, 사법기관 등 모두가 함께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해 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인식 개선, 교육을 펼친다면 좀 더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선 행정기관 인력과 예산을 투여해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잘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예를 들면 지금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공짜로 받는 게 당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달라졌는가. 이게 저작권에 대한 강한 처벌 때문이었는가, 사실 아니거든요. 아무리 처벌이 올라가도 처벌이 올라갈수록 음지로 숨고 그러지만 이건 국민 전체적인 인식이 ‘아 저거는 돈 주고 다운을 받아야하는구나’라는 인식이 생겼는데 이건 교육이든, 어느 사소한 처벌이든, 누군가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가든 경찰이든 선생님이든 부모든. 그 느낌을 계속 받으면 자제를 하게 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안 할 게 아니거든요. 그걸로 안 할 거였으면 진작에 안 했겠죠.” (참여자 5)

“일단은 학생들을 상대로 초등학교 때부터. 특히 요즘은 피해 학생이 초등학교 일 때도 많더라고요. 이 애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모르고 그냥 인터넷으로 알고 지내던 오빠가 ‘야 너 한번 벗어 볼래?’ 이런다고 벗고 그 오빠는 그걸 사진을 찍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니까 남자 여자 불문하고 어린애들 때부터 본인한테 그런 걸 시키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걸 시킨다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교육을 해야하고 그런 것을 요구 했을 때 감옥에 간다는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진짜 어린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뭔지도 몰라요. 본인이 당한 것이 어떤 피해인지도 몰라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우연히 휴대폰을 보거나 해서 신고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교육이 될 필요가 있어요.” (참여자 4)

마. 피해자 지원체계

① 아동·청소년의 정보접근권

수사 및 재판 이후 피해자를 보호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안내 등에 관해서는 답을 듣기 어려웠다.

② 피해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검찰 조사 참여자 모두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 로드맵(roadmap)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원기관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피해아동·청소년’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피해아동·청소년을 조력하는 중심 기관은 하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여러 기관을 거치는 과정 또한 아동·청소년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각 기관 간 지원이 연계되지 못하고 지원체계나 내용이 잘 공유되거나 소통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를 위한 통합적으로 컨트롤함으로써 지원이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하고, 각자가 가진 시스템의 강점을 공유하고 보완해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은 제도를 디테일하게 운용만 잘해도 기관 간 연계를 잘하고 운영만 잘해도 잘 될 텐데, 항상 그런 것들은 자기 성과가 아니니까 뒤로 밀리고 내가 제목 뽑을 수 있는 제도 만들었다가 사라지고, 저는 사실 있는 것만 잘해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사건의 피해자가 한 몇 십 명 이상인데 피해자의 90% 정도가 연락이 안 돼요. 전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전화를 받는 사람들은 ‘검찰청인데요.’ 하면 애가 검찰인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고 난데없는 2차 가해만 발생하잖아요. 거기에서 대고 결국은 부모님 설득해가지고 ‘저희가 ~해드릴게요.’ 하는 게 과연 진짜 지원일까. 차라리 그냥 내버려두라고 한 사람은 그대로 두고 안내를 해서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일 년이라도 할 수 있게 사람의 마음을 케어해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참여자 5)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검찰에서 하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이고요, 경찰에도 또 있어요. 경찰도 저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하기도 하지만 별도의 여러 기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법무부는 인식은 하고 있을 겁니다. 피해자 관련한 지원기관이 중구난방 난리가 되어 있다는 걸요. 그래서 이것 통일적으로 컨트롤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피해자들 중에는 경찰에 해주는 심리 상담, 검찰에서 해주는 심리 상담, 막 중구난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혜택을 엄청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그니까 이런 식

이예요. 이거를 국가에서 제대로 관리해서 통합 컨트롤을 해서 중복된 피해 지원을 하지 않고 난립되는 피해자 지원기관들 중에서는 사실상 전문가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이 계시는 곳도 많거든요.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몇 년 전부터 실무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이니까 이야기를 또 하게 되네요. 이게 분명히 있어야 해요. (중략) 그때는 시민 단체가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죠. 기관이 너무 많으니까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국가 기관에서 시민 단체에 부탁하는 것도 뭔가... 그리고 저희는 모든 게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뭔가 컨트롤타워 있으면 검찰청에서 시민 단체에 지원 의뢰 하는 건 규정에 없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에서 ‘아 이런 사항이 있구나’, ‘이런 단체에서 하면 되겠네’라고 해주면 딱딱 맞게 굴러갈 텐데요.” (참여자 4)

“피해아동 입장에서 정말 여러 단계에 걸쳐서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고 끝나도 마찬가지인거죠. 이게 범죄 피해자 지원이라는 거는 물질적으로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처음 들어와서 자기의 사건이 끝날 때까지 통합해서 한 기관이든 한 선생님이든 애를 쪽 관리해주고 이거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다 안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지정하는 것도 검찰단계에서 그 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 국선변호사를 메인으로 내세워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조치해라. 물론 그러면 국선변호사의 한계를 극복해야하는, 급여가 적으니까 의욕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또 생기겠지만. 또 어찌됐던 간에 좀 통합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여자 5)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대검찰청에서 직접 삭제 지원을 하거나 검찰청에 소속된 심리상담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상담지원을 한다고 답하였다. 그 밖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센터 등을 연계해 치료비, 주거비 등의 지원, 심리상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었다. 다만, 신변 보호 등을 위해 주거보증금을 요청했으나 지원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심리상담 또한 피해자들의 욕구와 사정 등을 고려해 방문 상담, 주말 상담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상담지원 제공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피해자의 실효성 있는 신변보호 또한 결국 인력과 예산이 확충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작년에도 피해자가 가해자가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고 찾아 온 적도 있고 그래서 주거를 옮기고 싶다고 그랬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보증금은 어떻게 안되더라구요. 법무부에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규정상 안 된다고 결국 안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보증금은 법무부 보증금은 이런 걸 파악하고 잘 찾아가면 되잖아요. 돈 떼일 위험은 없잖아요. 근데 법무부는 규정도 없고 돈도 없는 거예요. 이런 조금 실효성 있는 것들이 결국엔 돈과 많이 엮이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 4)

바. 종사자 교육·훈련 현황

검찰 내에서는 전담 검사나 전담 수사관에게 아동의 특성, 피해아동 보호, 성범죄 특화 교육뿐만 아니라 성평등 차원의 교육까지 교육프로그램은 잘 마련되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아동, 성범죄,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교육이 많이 진행되기는 하지만, 결국 그 교육을 ‘제공’하느냐보다 그 교육을 잘 ‘숙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답변도 있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와 같이 특별한 주제에 관한 교육은 제공되지 않는 것 같다고도 했다.

“저희는 공무원 조직이라서 의무적으로 온갖 온라인 교육이 있거든요. 너무 많아서.. (중략) 아동에 대한 것도 있고 성착취에 대한 것도 있고 개인정보도 있고.. 온갖 것에 대한 교육을 받기는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숙지하느냐 이 말이지요.” (참여자 4)

결국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구조도 중요한데, 검찰의 경우 부서 배치에 관해 당사자의 의견이 잘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떤 분야이든 가리지 않고 두루 잘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전담부서가 있더라도 언제까지 일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시스템이 마련되기 어려운 구조로 보인다.

“있기 싫은 부서에 계속 있을 수도 있고, 있고 싶은 부서에도 반년 만에 옮겨야 될 수도 있고요. 저희 의사가 개입되는 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도 언제까지 이 곳에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범죄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건에서 사건을 하면서 각자 알아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해가는 거지 어떤 교육을 받는다고 될 수도 없고 형사부에 있으면 온갖 유형의 사건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한쪽만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모든 분야에서 두루두루 잘 알아야 되는 거지 하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 부에도 딱히 수사관이나 검사들을 상대로 어떤 교육이 제공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참여자 4)

사. 유관기관 협력 현황

협력하는 유관기관으로는 경찰, 보호관찰소, 피해자 변호사 등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 처리를 위해 협력하는 기관을 주로 언급하였다. 정부기관이나 지역전문가(자문위원)를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처의 기관이나 관련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례는 보기 어려

왔는데, 사건의 공정성 등의 문제로 특정 시민단체와 협력할 때,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민간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이랑은 연계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수사나 재판의 특성상 예를 들면 저희가 정책 관련에서는 ** 지역의 여성 단체 분들과 만나고 싶지만 사건이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래서 주로 저희는 국가 공공기관하고 연결된 시스템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자 5)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협력한다고 답했다. 아동학대 사건 중에 디지털 성착취 범죄로 규율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하였는데, 보호자의 경우 매일 접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오프라인에서 성학대가 이루어진다고 답했다.

“보호자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접촉성 범죄자죠. 처음부터. 어차피 같이 대면하는, 매일 보는 사이에서는 굳이 인터넷이나 메신저 그런 걸 찾아보는 건 없고 그냥 아예 접촉하는 강간이나 성폭력 같은 접촉 범죄로 분류해요.” (참여자 4)

결국 사건에 따라 개입하게 되는 기관들이 달라지는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같이 규모가 큰 사건의 경우에는 유관기관 간 간담회를 한다고 답변했다.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국선 피해자 변호사를 모두 선정을 하는데, 수사기관과 달리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정도만 볼 수 있어 한정된 정보로 피해자를 조력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전담과 달리 전담 국선 피해자 변호사의 경우 피해자의 만족도가 높다고 진술했다. 결국 전담으로 피해자를 조력하는 변호사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판사

가. 디지털 성착취 범죄 인식

디지털 성착취 범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판사는 디지털 기기(스마트폰 등)와 SNS, 온라인 등과 같은 디지털 환경, 성매수범죄로 인한 수익을

알선자에게 모두 착취당하는 특성이 있는 성착취, 유혹과 유인 등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지적했다. 온라인 등을 이용해 사이버 공간에 그 내용 등을 유포하고 나아가 협박, 강요하는 것까지 디지털 성착취 범죄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몸캠피싱’(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의 성적행위를 유도한 뒤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 등 최근 등장하는 다양한 범죄 형태도 디지털 성범죄로 규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법률이나 판례에 비추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제시되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해당하는 죄명이 불분명하다보니, 관련 통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근에 조건만남 사건들을 계속 보면서 형을 선고하고 있었는데. (중략) 그 정도 액수를 받아서 여자가 다 갖는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 남자애들(알선자 등)이 절반 이상을 뜯어가는 경우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디지털 성범죄가 아닐까요.” (참여자 7)

“디지털 성착취물을 가지고 후속적으로 협박하고 강요하는 사건까지도 진전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유포해서 이용하는 범죄도 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로 봐야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6)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조사 참여자의 재판부 자료(비공식)에 따르면, 소년보호재판에 접수되는 사건 가운데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도 파악할 수 있었다.⁶⁹⁾

나. 성착취 피해 현황

피해 유형으로는 크게 ㉠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 ㉡ 배포와 판매, ㉢ 시청, 소지, ㉣ 디지털 성착취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작에는 디지털 기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진에 음란한 사진, 영상 등을 편집·가공·복제하여 허위의 사진, 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69) **가정법원 특정재판부 자료(비공식)

기간	전체접수(건)	성범죄(건)	디지털성범죄(건)
2020. 5.~2020. 7.	419	19 (4.5%)	9 (2.1%)
2021. 5.~2021. 7.	273*	32 (11.7%)	16 (5.9%)

*법원 내 소년보호 담당 재판부가 늘어남에 따라 특정재판부에 배당된 접수 건수가 감소함.

등을 제작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인터넷 환경에 기반한 확대 재생산이 된다는 점과 동시에 상업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지금이 이렇게 심각해진 것은, n번방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낀 것인데, 하나의 돈벌이로 사 용한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중략) 그러기 때문에 훨씬 심각해졌고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건 계속해서 재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참여자 7)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발생하는 경로나 유입 경로에 대해서는 게임 채팅방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이와 같은 온라인 환경에서 처음 만나 채팅을 통해 일명 ‘노예 놀이’ 등 역할 놀이 혹은 교제 등의 외연을 갖추어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이었다. 또한 성착취 범죄가 발생하는 디지털 환경은 이러한 게임 채팅방에서부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메신저, 온라인 마켓이나 학습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제한이 없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채팅방의 주요한 특징이 ‘익명성’이라는 점도 강조하였다.

“디지털 성착취물 같은 경우에 최초의 대상 물색과 최초의 연락은 제가 보았을 때는 주로 게임 채팅방입니다. (중략) 하여튼 다양한 종류의 게임 채팅방 내에서 ‘나랑 이야기 할 사람’, ‘성적인 사진 주고 받을 사람’, 이런 것들을 모집을 해서 주로 아이들을 거기서 물색을 하고 최초로 연락을 취한 다음에는 주로 ***톡 오픈채팅방이나, ****채팅방, ****채팅방 등에서 후속 대화를 이어가며 범죄를 개시하고요. 이러한 채팅방의 주요한 특징이 익명성입니다. 디지털 성착취물의 배포와 판매 등도 ****, ****채팅방 등을 통해 접촉이 이루어지고요. (중략) 주로 클라우드 개념으로 링크 주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유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음란한 영상, 문언 등의 단순 전파는 ***톡 단체채팅방, **** 메신저, ****게시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최근에는 **마켓이나 학습질문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그런 범죄행위가 일어나더라고요.” (참여자 6)

가해자들은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협박하고 있었다. 그 루밍과 협박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더 큰 피해로 확산되는 특징도 제시되었다.

“학교 게시판에 올리겠다, 너희 엄마에게 알려겠다(라며) 단순히 영상만 가지고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특히, 게임 채팅방. 이런 곳에서 서로 야한 이야기 할 사람, 음란한 이야기 할 사람을 모아서 ‘네가 이야기했던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엄마에게 보낼 거다’, ‘초등학교 5학년이

나 6학년이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냐'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경우도 많고요. 협박의 유형은 참 다양합니다. (중략) 기억난 사건 중에 하나는 (중략) 얼마나 애(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를 협박을 했는지 애가 야외에서 학교에서 당장 찍어 보내라고 하니까 야외에서 옷을 다 벗고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참여자 6) `

“성관계를 해서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중략)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하면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쉽게 넘어가요. (중략) ‘그렇다면 내가 너의 외모를 알아야 소위 말하는 거를 해줄 거 아니냐’ 하면서 찍게 해요. 찍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협박을 시작하는 거예요. (중략) 아동들은 전부 다 그런 식이었어요.” (참여자 7)

성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취약성을 악용해 오히려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부추기고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하는 문제도 발견되었다.

“제가 기록에서 봤던 사건 중에서는 아이가 먼저 그쪽 n번방 세력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같은 반 전 여친인데 나 애에 대해서 답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만들어 달라고 **** 같은 곳에 띄워요. 그러면 개 사진이랑 인적 사항이랑 네 사진 인적 사항을 보내라고 하고 보내면 그 순간 협박이 들어가는 거죠. ‘네 학교에 알리고 신고할 거야. 돈을 내놔. 돈이 없어? 그러면 너 누구한테 시켜서 영상물 받아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더라고요.” (참여자 6)

가해자들이 이러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지인능욕(지인에게 모욕감을 준다)’이라는 이름으로 촬영물·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는 범죄태양도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범죄를 다른 사람에게 뽐내는 수단, 재미 등으로 가볍게 여기는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오프라인상의 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온라인에서 범죄가 끝나는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특징도 제시되었다.

“(중략) 그런데 그게 죄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략) 재미로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놀랐어요. 하나의 놀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페이크 그것을 하는 것을, 물론 걸린 다음에는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데, 할 당시에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는 게 보여요. 친구들끼리 왔다 갔다 했던 내용을 보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이니까.” (참여자 7)

온라인의 경우 유입경로가 되는 매체로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메신저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이 언급되었다.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는 기업(국내·외 불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처벌과 피해 구제가 근본적으로 어려워지는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최근에 계속해서 성착취물이 나오는 게 클라우드거든요. ****에 본사를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디지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는 제공을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물에 관해서는 바로 제공을 해줘요. (중략) 근데 ****은 아직도 전혀 관심이 없고. (중략) 방법이 없죠.” (참여자 7)

성매매 사건의 경우, 가해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인 경우도 발견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역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성인가해자와 달리 봐야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지털 사건은 아니고, 주로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건들은 여학생들도 많거든요. 근데 (중략) 주로 성매매 피해를 봤던 친구들입니다. 다른 어떤 상급생들에 의해서 그런 피해를 보았고 자신도 후배들에게 비슷한 형태로 가해행위를 대물림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참여자 6)

다. 재판 현황⁷⁰⁾

① 재판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알 권리

재판 과정에서 법원과 아동·청소년과의 소통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피해아동·청소년의 의견 등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청취한다고 답했다. 다만, 가해자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경우,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 등 소년보호재판의 목적과 소년보호재판 심리 비공개 원칙(소년법 제24조 제2항 등)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의 처분 결과 또한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안내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년보호재판 자체가 응보적 처벌이 아니라 교화와 재비행 예방의 목적이구요. (중략) 결국 소년보호재판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소년의 특성을, 그 소년의 어떤 성행 개선이나 비행, 재비행 예방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중략) 결국 피해자 보호에 대한 역할들은 가정법원이 아닌 별도의 단체나 국가기관 등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참여자 6)

수사 이후 마주한 재판이 어떤 것이고, 가해자의 처벌과 나의 피해 구제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선

70) 판사의 경우, 수사 단계에 관한 질문은 제외하고 재판 단계 중심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택을 하게 될 경우 그 선택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등이 아동·청소년에게 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방법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재판에서 증언을 하게 될 경우 그 재판 환경 또한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조사 참여자에게 법원의 역할과 고민에 관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

② 재판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 피해아동·청소년이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는 일이 되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피해아동·청소년의 연령이 낮으면 피고인(가해자)이 범죄사실을 다투는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이 법원에서 증언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이 부분이 매우 어렵고 힘들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으로 법원이 진술분석가, 전문심리위원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다투는 경우는 정말 힘듭니다. 제가 악몽이라는 표현까지도 썼는데, 그건 정말 악몽입니다. 왜냐하면 아동 진술이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유를 하고 계속 해왔던 것이 소위 말하는 아동·청소년 사건에서 다투고 있는데 우리가 CD만 가지고 봐야 할 경우에는 (중략) 반드시 진술분석가들이 계시잖아요. 법원에는 전문심리위원이라는 게 있고. (중략) 반드시 고명한 진술 분석가를 직권으로 불러라. (중략) 의뢰를 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전문가들의 시선에서 아동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게 과연 오염의 소지는 없나. (중략) 그게 실은 판단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참여자 7)

국선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 피해아동·청소년의 피해 정도와 현재의 상황, 처벌 의사, 피해 회복 여부 등 법원이 필수적으로 살펴야 할 내용에 관해 법원에 잘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인 재범 예방과 회복, 사회복귀를 위해 피해아동·청소년과의 회복적 절차도 필요한데, 특히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경우 소년법상 화해권고 등 회복적 절차를 이행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다른 범죄도 그렇겠지만 재비행 예방과 소년의 성행 개선에서 보면 정확하게 자신이 한 행동을 알고 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경찰 단계에서 성범죄 피해자에 연락하지 마세요, 성범죄 피해자 연락처를 못 가르치게 되어 있잖아요. (중략) 소년법은 화해권고 제도가 또 있거든요. 피해자 측에서 피해자든 보호자든 어느 한 명이라도 화해권고를 못하겠다고 하면 진행할 수가 없어서 이런 제도가 있긴 하지만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들에게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참여자 6)

최근 개정되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 상 ‘신분비공개수사’나 ‘신분위장수사’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성상 필요한 수사 기법일 수 있지만,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가 향후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③ 2차 피해 대응

재판 과정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신분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의 신분 비공개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갈등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재판부마다 생각이 다르기도 해서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예를 들어, 피고인 측이 증거로 제시된 피해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CD를 복사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등이다.

라. 처벌과 피해 구제, 예방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처벌된다는 점에 대해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대중에게 널리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이러한 점을 널리 알려,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다운로드 받는 순간에, 대부분은 몰랐다고 하는데 모를 수가 없는 게 ‘교복, **고등학교 누구 뭐.’ (중략) 특히 소지를 할 때 1년 이상 처벌로 바뀌었다는 거를 널리 알려줘야 합니다. 이걸 정말 홍보가 필요해요. 특히 어린 애들, 중고등학생 애들. 개네들은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진짜로 그래요.” (참여자 7)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범죄의 책임을 아동·청소년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법을 위반해 소년 보호재판을 받았던 아동·청소년이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고 재범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 또한 마주할 수 있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나 가정에서의 성 관련 교육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 피고인들을 보면 대부분 소년범들 특징이긴 합니다만 가정환경이 너무 불행하고. 과연 애들이 이렇게 빠지게 된 데에 우리에겐 책임이 없을까? 사회엔 책임이 없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중략) 결국 7년을 선고로 했는데 7년을 선고 받고도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속으로 재는 7년 선고받고도 뭐가 고맙냐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애네들이 정말 고맙구나. 누군가 어른이 자기 부모들은 관심도 없어요. 부모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그 누가 됐든 간에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한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얘기를 해주고 (중략) 하지만 누군가는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때려죽일 놈을 이것밖에 안 해?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기록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피고인 나름 가정환경이나 이런 게 너무 보이니까. 그래서 저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18세, 19세, 20세 정도까지 되면 꼭 양형조사를 합니다.” (참여자 6)

디지털 성착취 범죄로 아동·청소년이 가해자로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경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호처분 가운데 특히 ‘수강명령 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이 중요한데, 현재 수강명령 처분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기관의 수가 적어서, 수탁기관의 업무가 과중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또한 성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고려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지 또한 확인하기 어려웠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아동·청소년을 위해서는 결국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에 관한 내용과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착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가 강조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결국 자기 존중. 자아 존중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아이들이 반성문으로 그런 걸 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성폭력 예방의 시작이 나를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몰랐다. 너무 인상 깊었다.’ 이런 내용의 반성문을 쓰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단순히 특정한 성 비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또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런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들이, 인성 교육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고 아마 현재 수감기관들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병행하고 계신다고 생각 합니다. (중략) 특히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느낌이 약한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주로 가정 내에서 피해나 학대 경험들이 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남학생들은 지나치게 타인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것들이 범행과 비행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중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핑계나 변명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보내줘서 동의하에 갖는 성적인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경각심이 약합니다. 사실상 동의하더라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든지, 동의하는 것도 사실상 애매한 점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개가 보내 준 건데’, ‘제가 보낼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보내 주던데요’, ‘그게 뭐 잘못된가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성착취 비행의 유형이라든지, 그런 동의 여부에 대한 범죄 성립에 대한 명확한 설명들도 포함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참여자 6)

피해아동·청소년이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관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어떤 피해자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학대를 해요. 내가 왜 그때 그 술자리에 갔을까. 내가 왜 그때 술에 취했을까. 내가 왜 그때 바로 집에 안 갔을까. 근데 그런 피해자들은 정말로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제가 느낀 거는 특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는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그게 소위 말하는 PTSD를 예방 내지는 덜하게 하는 게 아닌가. (중략)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애들이 굉장히 거기에 “너 왜 부모님께 얘기 못 했니, 선생님께 얘기 안하고 친한 친구들한테 얘기 안했니?” 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맨 처음에 알려줘서 나의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부모님에게 알려지는 게 싫었어요. (중략) 저는 보면서 그게 가장 안타까웠어요.” (참여자 7)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부과하는 경우,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 혹은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 지시를 따를 것’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부가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마. 피해자 지원체계

① 아동·청소년의 정보접근권

재판 이후 법원이 범죄 피해로부터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안내와 프로그램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② 피해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공통적으로 심리·상담 지원을 꼽았다. 피해아동·청소년이 원하는 경우 기간 제한 없이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을 해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성착취 범죄로 인한 피해를 치유하고 온전히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필수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심리 상담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판 끝난 이후라도 끊임없이 심리 상담을, (중략) 그때만 반짝하고 문제될 때만 와 달려들어서 해줄 게 아니라 얘기를 해서 원하는 애들에 한해서는 1년이고 2년이고 심리 상담을 해서 트라우마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포되지 않게 삭제하는 거야 뭐 기본인 거죠. 너무 기본인데 그거는 지금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한번 퍼지면 어떻게 찾아봐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설령 나중에 된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게. 그 이겨낼 수 있는 심리 상담이 됐든 정신적 조언이 됐든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이들이 무너지지 않게. (중략) 적어도 심리적, 정신적으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상담이 됐든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사건을 하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7)

“피해자의 심적 원조, 정신적 치료나 심리 상담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어느 기관이 담당할 수 있을지 현재 입법의 공백이 아닌가 싶어요. (중략) 사실상 이건 피해자 부모의 개인적인 역량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더불어 국선 상담사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붙인다고 하면 그것도 좀 의미가 있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상담 지원을 붙여주는 거죠.” (참여자 6)

피해자 지원체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디지털 성착취물이 이미 다수에 유포된 경우 그에 관한 삭제, 회수를 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라는 것이었다. 법원 또한 압수된 휴대전화도 몰수를 하고 판사도 특별히 다루는 경우가 아닌 한 개봉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바. 종사자 교육·훈련 현황

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아동 권리 혹은 성착취 범죄의 특수성에 관한 교육이 제공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동이나 성범죄 재판을 전담으로 맡게 되는 경우 직무 연수 과정에 아동이나 소년 등 피해자들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강연과 아동성범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사조사관 등과 함께 세미나 혹은 간담회 등으로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과정 또한 의미가 크다고 진술했다. 절차와 아동의 특성 등을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각 사건마다 달리 판단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교육으로 메울 수 없는 범위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까지는, 사실상 절차에 대한 부분들과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을 다 저희들이 배우지만, 모든 사건이 다 다르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도. 같은 아이가 재범해도, 3번째 비행, 4번째 비행을 해도 다 각각의 사건마다 조금씩 동기나 상황이나 후속 조치 등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으로 이 부분을 더 메꾸어 줬으면 하는데.’라고까지 딱히 생각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참여자 6)

사. 유관기관 협력 현황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경우 협력하는 유관기관으로 전문심리위원, 진술분석가, 양형조사관 등 법원 안에서 소통하는 전문가를 꼽은 반면, 소년보호재판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유관기관과 소통하는 것으로 보였다. 보호처분을 이행하기 위해 위탁된 기관, 상담복지센터, 처분 전 상담 등을 진행하는 진단전문가 등이 언급되었다.

하지만 수강명령 수탁기관 등 결국 함께 할 기관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결국 관련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지역적 접근성과 개별적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상담과 처분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관이 발굴되고 연계·협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법원에서 연계된 경우 상담 혹은 치료하기 어려운 아동·청

소년이 대부분인데 비용도 적게 받으니 훌륭한 인적 구성을 가진 기관은 법원의 요청에 외면하는 것이다. 결국 국가의 예산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지점이다.

“수감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정말 부족해서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중략) 근데 법원 사건 되게 힘들어하세요. 대학병원이나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해결이 안 되고, 학교에서 해결이 안 되고, 이런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오는 곳이 법원인데요. (중략) 기관들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고요. (중략) 결국에는 비용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로서는 한 시간에 만 원 정도씩 시급을 드리고 있거든요. 법원에서는, 상당히 적은 돈이죠. 다른 일반 상담사님들의 시급에 비하면요. (중략) 이번에 예산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원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 6)

(4) 변호사

가. 디지털 성착취 범죄 인식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인식과 관련한 질문에 조사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일제히 현행법에 ‘성착취’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청소년성보호법 등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정의 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성착취 그 자체에 대한 정의가 없다 보니 현장에서 수사기관, 법원 등은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동의, 자발성 여부를 고려해서는 안 되며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모든 성착취 범죄와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하여 일어나는 범죄를 모두 망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온라인이라는 공간의 특성 상 공개 범위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자발성’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성착취는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설령 피해자가 처음에는 경제적인 수익을 얻을 생각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피해자가 처음에 생각했던 범위에서만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는 피해자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범위에서 다른 사람이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이 돼요. (중략) 피해자가 더 이상 동의하지 않고 더 이상 제한을 둘 수 없는 영역까지 퍼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성착취라는 용어는 적어도 디지털 상에서는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10)

나. 피해 현황

디지털 성착취는 특히 인터넷 환경에 기반하여 재생산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 뿐 아니라 피해가 국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외로까지 확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디지털 성착취에 있어서 사실상 완전한 피해 회복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상대방이) 성관계 영상을 한 세 군데에 올렸다고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하루 좀 지나고 바로 삭제를 했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했고, 피해자가 바로 신고를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경찰이 발견한 게 22개 사이트에서 유포되고 있었어요. (중략) 디지털 성착취 범죄라는 게 디지털 상에서의 영상이 있다면 피해는 검잡을 수 없어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는 미성년자 때 촬영한 성착취 영상이 8년 후에 발견되어 신고한 사건도 있었어요.” (참여자 8)

범죄 유형으로는 온라인, 또는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만남을 시작하여 친근하게 대화하다 만나서 강간하거나 다른 실마리를 잡아 위협하는 유형의 범죄도 언급되었다. 이 때 변호사들은 이러한 행위는 오프라인 상의 성폭력 범죄로만 처벌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가해자들이 처음에는 친근하게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 즉 ‘그루밍’은 몸 사진의 교환, 자위 영상 등으로 이어져 협박·강요의 수단이 되기도 하며, 자발적으로 SNS 등에 올린 개인정보를 편집하여 협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그루밍’ 상황의 피해 아동·청소년은 본인이 가해자와 대화한 것으로 인해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여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었다.

“‘일탈계’라고 해서 ****의 계정에다가 피해자들이 먼저 자기 사진을 올린 것을 빌미로 가해자가 인적사항을 추적하고, 협박을 시작하는 사례 등 큰 틀에서는 비슷한 형태로 발현되더라고요. 그런데 피해 아동이 일탈계를 왜 시작했는지부터 시작하면, 수사기관도 그렇고 성인, 부모들은 ‘애들이 잘못해서’로 인식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자기가 일탈계를 운영한 것에 대해 죄의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중략) 아동·청소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탈계를 운영해 사진을 한 번 올리면 바로 하루 몇 백 명으로부터 디엠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보내는 사람이 우습기도 하고, 자기도 주목받는 것이 재밌어서 하다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참여자 9)

“초기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경우, 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왜 이렇게 피해자들이 쉽게 굴하게 되는지 잘 이해를 못 했어요. (중략)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들도 그렇게 변론을 했어요. ‘내가 상대방을 죽이겠다 한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온라인상의 범죄만으로 이런 걸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피해자들이 자발적인 거다.’라는 식의 변론을 펼쳤거든요. 그런데 저도 여러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게, 피해자에게 심각한 협박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나는 너의 개인정보를 부리겠다. 너는 그러면 성적으로 (문란한) 이미지가 형성돼서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거다. 그러면 한국에서 못 살고 차라리 죽고 말겠지. 그러니 내가 이 정보를 안 부리도록 내 말을 들어라.’ 성인에게도 그렇지만 아동에게는 이게 너무나 두려운 말이었어요. ‘부모님에게 알려졌다.’ 이 말이면 거의 끝인 거예요.” (참여자 10)

한편, 인터넷 사용이 능숙한 아동·청소년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워 처음에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례도 다수 확인되며, 성인이 도리어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을 부추기거나 협박해 더 큰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에 남자 청소년을 상대로 ‘지인 능욕’ 사진 해준다고. 그러면 궁금해서 연락을 해 보잖아요. 의뢰인이 좋아하는 여자친구 사진을 합성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은 이것을 캡처해가지고 ‘너 지금 n번방 사건으로 세상이 시끄러운데 아직도 이런 짓을 하냐’고 갑자기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 겁을 탁 먹고. 이제 걱정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이 선생님에게, 부모님에게 알려지면 어떡할까 해서. 그러면 (가해자가) 이제 인적사항을 보내라고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해요. 반성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주로 쓰는 아이디 다 있어요. 이런 개인정보를 다 보낸단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아동은 가해자의 노예가 된 거예요.” (참여자 8)

피해자가 피해를 가늠하지 못하고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에 비해 가해는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제적 지원, 아르바이트 주선 등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빌미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수하여 협박하는 행위가 유형화·조직화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에서 일어난 사건은 범죄단체의 조직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법원에서 양태가 조직적이었다고 판단했어요. 하나의 대화방 공간,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공간에 들어온 이용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전시한 후 성착취물을 소비하고, 소비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강요하거든요. (중략) 거기 노출된 피해자의 정보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다든지, 피해자의 SNS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그 개인정보를 또 다른 곳에 유포한다든지 하는 양상도 굉장히 많이, 조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참여자 10)

다. 수사·재판 현황

① 보호자와의 관계

변호사들은 사건 진행에 있어서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많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부모로부터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 등 보호자가 조금이라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잘못이 있다는 인식을 준다면 피해자가 신고조차 꺼리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이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사건을 진행할 수 없다고 안내해, 사건이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도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누구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중략) 사건을 하면서 느낀 것은, 결국은 때가 되면 부모님한테, 보호자에게 정확하게든 뭉뚱그려서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아이들에게 부모님한테 모든 이야기를 다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다고 안내를 하는 일이 많아요. 범죄 수사 규칙에 따르면 고소인이 원하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일선 수사기관들이 부모님한테 고지하지 않으면 진행하지 못한다고 안내해요. (중략) 피해자가 너무 어려서 부모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다 알리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참여자 9)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이 적절하게 지원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에 대한 지원 및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보호자 역시 아동·청소년의 피해에 큰 충격을 받아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많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지 몰라서 의도와 다른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성범죄 피해자는 특히 내가 빌미를 제공했다, 내가 동의를 제공했다고 보일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굉장히 과장 해석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중략) 동의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 동의인 것이지 ‘예스’라고 했다고 다 동의가 아닌데. 이런 것을 부모님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8)

“부모님도 사실 대응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힘들다 보면 하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때도 있고. (중략) 그래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는 순전히 가해자의 잘못이다.’라는 생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도 같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죠.” (참여자 10)

② 수사·재판 과정

사건을 진행하면서 수사기관의 성인지 감수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특히 성착취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지 않는 사례가 확인된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성인지 감수성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변호사님, 이거 성매매잖아요. 자기가 동의한 거잖아요.’ 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초한 것이라고. 아이가 두 번 조사 받았는데 매일 울었어요. (중략) 다행히 검사님은 성인지 감수성이 좋은 분이셔서 좋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가해자가 하라는 대로 했냐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막 울면서. (중략) ‘엄마한테 이 얘길 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우울증이 심해서 나까지 엄마에게 고통을 줄 수 없어서 나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참여자 8)

특히 경찰과 검사, 판사의 태도는 피해아동·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성인지 감수성과 공감의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수사기관에 신고했는데 신고를 안 받아준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텔레그램이 뭔지 모른다,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한계라 하더라도 ‘그게 왜 범죄가 되냐’, ‘동의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게 왜 협박이냐’, 특히 ‘못 잡는다’는 말을 들었다는 분들은 정말 많았어요.” (참여자 10)

한편,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2021년 9월부터 시행되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해 현장의 변호사들은 큰 우려를 표했다. 특히 가해자와 연락하기 위해 피해자를 이용하는 등 피해자를 통한 함정수사는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성상 유포시에는 피해가 단 건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 피해가 이어지는데, 유포로 인한 추가 피해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그러한 점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공유되었다. 피해자가 아동일 때 출

영된 영상이었다고 주장할 때에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피해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인 음란물이라 판단하는 사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등이 제시되었다.

③ 2차 피해 대응

수사·재판 과정에서 디지털 성착취 증거의 보관, 열람과 등사에 대한 대책 및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성착취 증거물에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만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특정이 안 되어 법원이 열람을 허가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법원의 열람·등사실은 개인 공간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 날 마침 저 말고도 열람·등사하러 온 분들이 옆에 있었고, 저한테 그냥 노트북이랑 기록, 거기에 같이 포함된 USB 같은 디지털 증거를 주고 알아서 보라고 하더라고요. 몇몇 사진에는 심지어 피해자 얼굴도 나와 있거든요. 저는 피해자 변호사니까 문제라고 느꼈지만 피고인 변호사님들은 문제라고 안 느꼈을 것 같아요. 오픈된 공간에서 변호사들이 피해자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보셨을 거예요.” (참여자 10)

피해아동·청소년은 신분을 절대 밝히고 싶지 않아 모든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이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못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피해자 측은) 목소리도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재판부는 이목이 쏠린 사건에서 피고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중략) 목소리는 전례가 없다고 해서 안 됐는데, 저희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안 넘어간 거의 유일한 개인정보가 목소리였거든요. 목소리를 너무 보호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변조한다거나 하는 방식이라도 원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해본 적이 없다고.” (참여자 10)

라. 처벌과 피해 구제, 예방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루밍’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해를 통한 적절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특히 아동·청소년은 ‘그루밍’에서 시작되어 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 피해를 숨기고자 하는 경향이 확인되는데 ‘그루밍’의

유형과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피해 구제로 이어질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짜고짜 몸 사진을 달라고 하진 않아요. 내 비밀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나를 위로해주거나, 같은 생각을 공유한다거나 하는 단계를 거쳐 범죄로 나아가니까 피해자는 이게 범죄 피해인지 친구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구분이 모호해지는 거죠. 이런 특수성에 대해 수사기관들이 잘 교육을 받고,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야 해요.” (참여자 8)

“초창기에 막을 수 있었을 범죄들을 많이 봤어요. 그루밍 단계에서 막는 방법도 있고, 성착취 영상 제작을 요구했을 때 아동이 주위 사람들에게 두려움 없이 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 이런 지원의 하나로 예방 교육을 한다거나, 학교나 가정, 수사기관에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피해 아동이 성에 눈을 일찍 뜬 되바라진 아동이라는 인식이 아닌, 위험한 상황에 처한 아동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예방의 가장 기초인 것 같아요.” (참여자 9)

마. 피해자 지원체계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이미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심리, 주거, 삭제 등에 대해 각각 지원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안내도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수사기관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이 제공되거나 피해자에게 제공이 가능한 지원을 지침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검사들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류의 지원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른대요. 그렇지만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달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임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사 비용, 정신과 치료, 심리 치료 이런 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서 받고 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권한이 있는 담당 검사님 또는 어떤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면 피해자가 직접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8)

“학자금 지원도 있다고 들었는데, 고등학생 피해자도 많거든요. 재판 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잘 모르니까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통합이 되고,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각 지원들이 없지는 않는데 종합적으로 뭐가 있는지 정리가 필요하고, 피해자가 어느 단계에 있든 제대로 안내가 될 수 있게.” (참여자 9)

바. 종사자 교육·훈련 현황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으로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은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되어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도 이러한 점이 제대로 교육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교육에 아동 인권, 아동·청소년의 특수성,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올해 (국선변호사) 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제공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성매매는 빠져있어요. 성매매는 지원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사실상 없고, 그냥 변호사들이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면 안 되는 주의사항이나 이런 교육을 하고 있죠.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에 참여하는 변호사를 상대로 교육 자료를 만들자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인식이 안 바뀌거든요. 아직도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디지털 성착취)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고,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은 전무하다고 보시면 돼요.” (참여자 8)

(5) 피해아동·청소년 지원기관(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가. 디지털 성착취 범죄 인식

디지털 성착취 범죄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와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이하 ‘상담소’) 종사자들은 모두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디지털이라는 매개를 통해 벌어진다고 해서 가상공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해의 유형은 모두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시작된 공간에 따라 분리됨에 따라 사례마다 처벌 조항이 다르고 형량이 달라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법에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더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수사기관이 성착취 범죄를 가볍거나 좁게 해석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사이버 상에서 몸 조금 보여주고 협박당하고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피해자 앞에서도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디에 가느냐, 담당자의 경력과 관

심도에 따라 굉장히 다르고 사실 거의 몰라요. 앞에서 아이들 면전에 대고 ‘이거 안 될 텐데’, ‘못 잡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해서 아이가 막 평평 울고. 수사기관도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경향이 있고요.” (참여자 12)

“디지털 상에서 시작되는 모든 성과 관련 범죄가 다 성착취로 불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것도 범죄 행위고, 열려 있는 장을 운영하는 것이나 이용하는 것도 범죄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루밍, 처음 만나는 대화, 성과 관련이 없더라도 (가해자가) 조금이라도 (아동을 착취할) 마음이 있는 채로 접속을 하는 행동 자체도 범죄라고 규정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13)

일반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디지털 기반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 성범죄 사건에 비해 죄질을 가볍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2019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의하면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여성 응답자 중 60.6%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이는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추행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경험(58.1%)보다 높은 수치였다.⁷¹⁾ 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해 경험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나. 피해 현황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지원센터 종사자들은 피해자의 저연령화에 대해 우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전에는 피해자의 대다수가 10대 후반 또는 고등학생이었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중학교 저학년 뿐 아니라 초등학생도 다수 발견된다는 것이다. 특히 COVID-19로 인하여 비대면 수업이 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피해자의 저연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초등학교 6학년을 만나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이를 지원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무료하니까 그냥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연령이 더 어려진 거예요. 올해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많이 만났는데 또 달라요. 피해자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표현 방법도 다르고, 집중력도 다르고.” (참여자 12)

71)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2020. 5. 21.),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sSn=708312 (검색일: 2021. 10. 29.): 면접조사에 참여한 지원기관 종사자(참여자 14)가 인용한 자료임.

가해자는 디지털 환경과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을 이용해 더욱 교묘하게 범죄를 구성하고 있었다. 법이 개정되고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성 구매자들 역시 피해자의 성을 착취하며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교묘하게 채팅 내용에 경제적으로 압박을 주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남기게 하는 방법(참여자 13 공유),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도록 나이, 직업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르게 말하는 방법(참여자 14 공유)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픈 채팅이나 채팅 어플에서 이야기할 때 (가해자) 본인이 힘들다고, 자기가 자살 시도도 많이 했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사귀자고 하고, 중간에 그 루밍 과정은 약간씩 다른데 결국은 친밀한 관계가 됐을 때 매뉴얼처럼 또 몸을 보여달라는 애길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거절하거나 어렵다고 하면 아이한테 그러면 나 죽을거라고. 성인이려면 죽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할 것을 아이는 정말로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을까봐. 그래서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피해가 점점 심해져요. 이런 사례가 적지 않게 상담이 들어오고 있어요.” (참여자 11)

“이벤트에 참여하면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참여하고 기프티콘을 받으면 촬영물을 보내라고 하는 사례도 요새 자주 보여요. ‘너네 반에 있는 친구 얼굴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청소년이 이렇게 가해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참여자 12)

최근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유해매체로 지정되는 등의 규제가 있었으나 디지털 플랫폼의 운영자 역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채팅앱 가입하는 과정에서 거주 지역, 가족과 거주 여부 등을 묻는 사례도 있었다.

“채팅앱 가입할 때 인적사항을 물어보지는 않는데 단계를 클릭하면서 어느 지역에 있는지, 좋아하는 건 무언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앱 자체에서 성범죄를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11)

유입 경로가 되는 매체로는 SNS와 애플리케이션이 언급되었으나 새로운 시스템이 계속 개발됨에 따라 경로를 한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전통적인 유입 경로인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소셜 네트워크, 오픈 채팅 뿐 아니라 최근에는 유튜브, 클라우드에서 기반된 메신저 프로그램부터 메타버스까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온라인 공간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있었다.

“****가 많은 편인데 사실 너무 다양해요. 게임에서 채팅하다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성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성적 대화나 욕설을 쓰다가 일대일로 대화하기도 하고. 오픈채팅이나 랜덤채팅도 있고, SNS의 DM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다못해 레이싱 게임을 하더라도 대화방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 피해가 발생해요.” (참여자 15)

다. 수사 및 재판 현황

① 사건 인지 경위

피해 아동·청소년이 지원기관에 유입되는 경로는 매우 다양했다. 해바라기센터 또는 수사기관을 통해 유입되는 사례도 있으나 많은 경우 보호자 또는 학교를 통해 기관을 알게 되어 이용하고 있었다. 아동·청소년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보호자가 자녀와의 대화, 핸드폰을 검사하는 과정 등을 통해 발견하여 아동·청소년 당사자보다 먼저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확인되었다.

② 보호자와의 관계

아동·청소년은 사건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권리가 제한되어 아동·청소년 본인이 합의를 원하지 않을 때에도 부모가 결정하는 사례도 있다는 문제가 공유되었다.

“아이들은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거나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엄마나 가족한테 이야기를 하면 엄마도 네 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도와줄게, 엄마도 상담해볼게 하면서 역할 분담을 하곤 해요. 그리고 일련의 사건을 거치다 보면 경찰이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숨기려 해도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서, 아동하고 미리 얘기하죠. 그러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여자 11)

또한, 피해자 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상담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피해아동·청소년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같은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부모 교육 및 심리 상담 등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피해 사건을 인지했을 때 부모로서, 사실 그렇게만 있어주면 되는데 부모님이 수사관도 되려고 하시면서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알고 나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랑 주로 이야기하고 아이한테는 물어보지 마시라는 이야기부터 부모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본인도 너무 힘드니까 아이들에게 심한 말도 하시게 돼요.” (참여자 13)

③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알 권리

아동·청소년 역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상황,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지원 등에 대해서도 알 권리가 있지만 이러한 알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수사기관이 이에 대해 고지하여야 하지만 사건이 지원기관을 통해 관리되고 있을 때에는 피해자가 이미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 짐작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당사자 뿐 아니라 부모, 학교 등에서도 지원기관에 의지하게 된다.

한편, 지원센터와 상담소 모두 필요한 경우 신뢰관계인으로서 조사 참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재판 과정을 기록해,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알리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었다. 점차 증가하는 범죄와 피해자 수에 비하여 상근 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지원기관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상담사 등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임금 뿐 아니라 트라우마 회복, 소진 방지 프로그램 등의 도입이 시급하며, 인력 충원 역시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④ 수사 방법 등 수사 과정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 이후에도 현장에서 법 개정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여 피해아동·청소년이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어 명단이 공유되는 사례, 수사기관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을 성매매 피의자로 입건하는 사례 등 수사기관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수사기관이 디지털 환경에서 벌어지는 성착취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다는 인식에서 수사를 시작하는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거나 2차 피해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었다.

“법이 개정되었는데 피해자를 성매매처벌법으로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제기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현장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 지원센터의 어떤 선생님은 대상아동·청소년 명단을 받으셨대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역 경찰이랑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루신다고 했는데 법이 바뀌었지만 바뀐 법을 모르니까.” (참여자 12)

“일단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 청소년들이 어느 부분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그 인식이 너무 크고, 그래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닌가. 현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참여자 14)

또한,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서는 관할 경찰서가 디지털 성착취의 대응 경험이 부족하고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시급한 상황에도 수사기관이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서울은 조금 다르다 들었는데 **에서는 사건을 관할 경찰서가 처음 알아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구속 수사나 압수수색을 요청 드리는데도 수사기관에서 굳이 필요하지 모르겠다고 하시기도 하고, 유포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더디게 진행돼서 답답할 때도 많고요. 그리고 여성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전담부서가 있다 보니 2차 가해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얘기해주시는데, 사이버 수사대는 성폭력 전담 기관이 아니다 보니 ‘촬영되는지 진짜 몰랐나’ 같은 2차 가해적 발언이나 피해자분들을 탓하는 말을 하셔서 저희가 계속 항의하기도 하고요.” (참여자 15)

“성착취 사건에서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이런 사실을 안내해주지 않아서 나중에 (지원기관에) 오셨을 때 변호사에 대한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뒤늦게 요청하거나 저희 법률구조를 통해 진행하기도 해요.” (참여자 14)

⑤ 재판 과정

최근에는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고려하며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는데 법원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사실관계 그 자체만을 따져 가해자가 처벌을 피한 사례도 있었다.

“피해아동·청소년이 공갈 미수로 소년재판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를 제안하고 만남을 제안하는 남성에게 ‘나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너 그렇게 만남 요구할거면 500만원 가져와.’라고 말한 것 하나 때문에 공갈미수로 처분받은 사례가 있어요. 저희는 이 청소년이 평소에 성실하게 살고 있는 청소년이라는 것을 어필했는데 법원에서는 그냥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판단해서 공갈미수로 1년을 보호관찰을 내렸더라고 요.” (참여자 13)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이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문제도 있었다.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이 법정에서 진술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의 잘못도 있다고 주장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도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재판은 어떻게 보면 국가와 가해자의 싸움이다 보니까 가해자를 위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중략) 법정 모니터링을 가면 꼬박꼬박 체크하는 게 혹시라도 상대방 측 변호사가 2차 가해적인 질문을 하지는 않는지, 판사가 피해자를 탓하거나 피해자 신분이 노출되는 발언을 하지 않는지. 이런 것을 체크하고 법정에 항의하는 것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14, 15)

라. 처벌과 피해 구제, 예방

가해자의 처벌에 대해 지원기관 종사자는 모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해 수사가 더 빨라졌고,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이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개선이 있었지만 가해자는 여전히 적절히 처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실형이 잘 안 나오고 뭐만 하면 집행유예 나와요. 그리고 실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피해자 연령대가 더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실형이 선고가 돼서 다 살고 나와도 피해자가 아동일 수도 있어요. 출소할 때가 되면 피해자가 다시 연락이 오거든요. 혹시 나왔냐, 이러면서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참여자 11)

일부 지역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법 개정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 이후에도 ‘대상아동·청소년 명단’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유되기도 하며, 피해아동·청소년을 성매매처벌법상 피의자로 조사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여전히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피해자라고 보지 않아요. 어느 순간 내가 피의자가 되고 또 성매매로 입건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 법률적인 용어를 잘 모르니. 나는 피해자 진술을 했는데 경찰들이 성매매 피의로 입건을 동시에 해 버린대요. 피해자가 있으면 기관으로 연결을 해 줘야 하잖아요. 그래야 최소한 방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 일선에서는 생각하지 않는거죠.” (참여자 13)

마. 피해자 지원체계

① 아동·청소년의 정보접근권

피해자는 유포 여부에 대해 알고 싶고, 유포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지원이 부재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범죄가 이미 발생하고 유포가 된 이후에는 삭제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유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안함에 대해 상담조차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으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아동·청소년의 경험은 가볍게 다뤄진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② 피해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디지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지원에는 삭제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았다. 상담소에서는 직접 삭제 지원이 가능해 인터넷 포털 등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 이미지 검색 등을 통해 직접 삭제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나 유포된 영상물을 모두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디지털 성착취와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때 주로 수사 또는 처벌이 이야기되는데, 그 뿐 아니라 전 연령층이 디지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피해 상황을 대중에게 잘 알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만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기관, 양육자, 학교 등 이해관계자와 유관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성범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정말 언제든지 이 사회에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디에 가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하고요. 가장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참여자 14)

바. 유관기관 협력 현황

유관기관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지원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 현황, 유형 및 규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같은 피해 진술을 여러 기관에 걸쳐 여러 번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적절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기도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우리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에 있는 아이인데 왜 우리한테 연락했지? 이런 건 괜찮은데 아이 입장에서는 1차 기관에 한번 이야기를 하고 소개받은 저희에게 또 얘기하고. 저희가 일단 만나야 될 것 같고, 친구 혼자 대응할 부분이 아니라 전문기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는 **에 있어 라는 얘기를 하면 앤 또 좌절하고. 지원센터가 있는데 찾고 또 찾아야 해요.” (참여자 12)

유관기관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은 피해 사실을 수차례 반복해 전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원 요청을 포기하게 되기도 한다. 학교 상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학교에서도 전문기관을 제대로 파악하고, 사례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지역별로 네트워크 간담회 등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기반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 현재는 교류하고 현황을 공유하는 정도로만 진행이 될 뿐이라고 하였다.

“아직도 아동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고, 아이들이 굉장한, 큰 탈선을 해서라고. 학교에서 상담을 요청해서 가면 ‘애가 돈 맛을 너무 많이 봐서’, ‘사치를 부리고 싶어서 그런 거에 접속하려 한다.’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인식이 부족한 분들이 많아서 대비나 교육이 진짜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13)

특히 청소년 기관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착취 피해 사례가 점점 더 많이 발견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프로세스 또는 협력을 위한 사례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공유되었다.

“청소년 상담기관이나 유관기관에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해서 성 관련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 모두 똑같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디지털 성착취 피해 지원은 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유관기관마다 특성도 다르고, 같은 상담 복지센터나 상담소라 하더라도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다르기도 해서 맞춰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참여자 15)

(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가. 디지털 성착취 범죄 인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을 “디지털 기기 및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정의했다. 그 예로, 촬영물을 기반으로 한 동의 없는 신체 촬영, 촬영물을 유포·협박·합성·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성적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을 들었다. 종사자는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협박이 더욱 용이한 만큼, 자발성 및 동의에 대해 성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착취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피해 현황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접하는 피해에는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나 가장 흔하게 접하는 유형으로는 불법 촬영 및 유포였다. 그 외에도 ‘사이버 불링(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 온라인에서 발견한 나체 사진과의 합성, 유포 협박 등 다양한 사례가 파악되었다. 피해가 발생하는 플랫폼 역시 특징이 불가할 정도로 다양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큰 문제가 되자 불법 성인 사이트보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대형 커뮤니티에서의 유포 사례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성인 사이트에 유포가 되기도 하고, 요즘에는 소셜 미디어에 가해자가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계정을 만들어 촬영물을 판매한다거나, SNS를 통해 유포되고, 커뮤니티에도 불법 촬영물 화면을 캡처해 게시하기도 하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플랫폼을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예요.” (참여자 16)

“사전추적에 한해서만 말씀드리자면, 문화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걸로 시작해 협박을 당해서 본인들이 나체를 찍어서 올리는 방식으로 유포가 되기도 해요. 작년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성인 사이트 같은 불법 사이트는 오히려 소폭 감소했어요. 더 문제인 것은 오히려 커뮤니티나 검색 엔진, 그런 합법적인 대형 사이트에서 더 많이 유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특히 커뮤니티에서는 개인정보까지 많이 유포돼서 피해자 성명, 직업, 학교나 그런 키워드랑 같이 유포되고 있어요.” (참여자 17)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징상 유포된 모든 성착취물의 삭제를 통한 사례 종결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례가 계속 누적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온라인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유포가 발생하잖아요. 한국 사이트 뿐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태국, 이런 다양한 키워드로 그 나라 언어로 바뀌어 업로드 되고 있으니까. 영원한 삭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참여자 16)

한편, 최근에는 남성 피해자 역시 확인되며, 남성의 경우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전송했다가 협박을 받는 이른바 ‘몸캠 피싱’ 사례가 가장 흔하게 확인되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2020년 발간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및 연계 매뉴얼」에 의하면 센터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상담과 삭제 지원을 포함하여 총 235,767건의 피해를 지원했다고 한다.

다. 피해자 지원체계

① 삭제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2017. 9. 26.)」 발표에 따라 상담 및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고, 특정 사이트에 피해자의 촬영물이 게시된 것이 확인되면 사이트 측에 피해 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삭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삭제를 요청하는 것일 뿐 직접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이트 운영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센터가 법적으로 의무는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권한은 없어요. ‘삭제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너희가 뭔데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욕설 섞인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법에는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피해 제보가 들어와도 이게 아동이라는 게 확인이 되지 않는 한 저희가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삭제 요청 자체도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계를 느껴요.” (참여자 17)

“문구상의 요청이 아니라 ‘경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수사기관 만큼 강력한 권한은 필요 없지만 적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도의 경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16)

삭제가 필요한 내용에는 촬영물도 있지만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피해도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키워드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텍스트를 통해서도 피해가 가중되는데 관련법이 ‘촬영물’ 삭제에 한정되어 있으면 지원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영상은 피해자가 아닌데 키워드는 피해자의 성명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방심위에 넣으면 방심위에서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방심위는 철저히 법에 근거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중략) 커뮤니티에 개인정보가 유포되어 있는데 이름도 있고 거주지, 학교 그런 개인정보를 포함해서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텍스트가 있어요. 이런 것도 모두 디지털 성범죄로 인식되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참여자 16)

사실상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한 만큼 삭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지만 가해자 체포 및 사이트 폐쇄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삭제 요청에 대한 반응은 사이트별, 사례별로 차이가 커 일반화할 수 없으나 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삭제 확인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삭제 결과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센터의 업무에는 피해자들과 소통하는 상담 업무도 있는데, 피해자 수가 점점 누적됨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직원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② 피해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삭제 지원을 하는 만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삭제 지원이라는 점이 공통적으로 강조되었다. 피해자와 소통하다 보면 피해아동·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본인을 검색했을 때 피해 촬영물이 검색되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하지만 피해가 지속되다 보면 본인의 생활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피해자가 많아 상담과 경제적 지원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되었다.

“아무래도 피해가 끊이지 않잖아요. 본인이 개인 생활을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성폭력 관련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그게 아동이라면 정서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상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서 당연히 경제적으로 먼저 지원이 들어가면서 같이 병행해서 상담 지원이

필요해요. (중략) 정서가 회복되어야 다시 사회 복귀도 할 수 있으니까 경제, 심리·상담 지원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실무자로서 생각했어요.” (참여자 17)

“가장 필요한 것은 삭제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중략) 피해자 분들 중에는 수사 지원, 경찰 수사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심리 상담을 통한 회복도 필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16)

이어서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마련되어 피해자가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제도적인 부분 외 인식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컨트롤타워의 마련에 있어서 기관 간 연계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라. 처벌과 피해 구제, 예방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수사지원 및 법률지원, 의료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상담소와 해바라기 센터 등으로 연계하고 있어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자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처벌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침투하는 범죄라는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유포 행위 횟수와 관계없이 피해자는 지속적인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러한 점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포한 가해자들이 초범이라고 감형되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유포하는 행위를 한 번 했어도 유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해를 입는 것이잖아요. 물리적인 폭력이라면 그 가해자를 피해서 이사를 가든지 외국을 가면 어떻게든 해결될 수도 있는데 이건 아무도 모르는 외국으로 간다 해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 나라의 사이트에 버젓이 있는 내 착취물을 보면 너무 좌절하지 않을까.” (참여자 17)

마. 유관기관 협력 현황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수사기관, 정부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 사업자와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군대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연계를 위해 국방부와도 협력하고 있으며, 삭제 지원을 위해 활용하는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도 협력하고 있다. 또한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답했다.

(7) 시민단체

시민단체의 경우, 아동권리 옹호 활동을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체로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직접 지원하는 기관 혹은 소속 단체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가. 디지털 성착취 범죄 인식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경우 디지털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진술했다. 아동학대 사례 관리는 가정을 중심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성매매(성착취)의 경우 가해자가 가정 밖에 있고, 가정 내 학대로 인해 가출을 해서 생계 등의 이유로 성착취 피해를 입게 되고, 그 아동이 다시 가정으로 복귀해서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를 받게 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아동학대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법률이 아닌 경우에는 각 기관의 역량, 부딪히는 사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이라고 진술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삭제 등 최근 법 개정에 관한 내용이 아동 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게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도 발견되었다. 또한, 성착취 범죄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은 모두 피해자로 의율한다는 관점이 현장에서 이행되지 못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이 저희 쪽에서 학대 피해 관련해서 사례관리를 받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쪽 상담소와 저희가 어떤 상담인지, 어떤 상황인지 알고자 연락드렸는데, 처음에는 한 두 번은 협조적으로 말씀해주시다가, 이후에 이 아이가 성매매 관련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쪽 상담소에서 저희가 더 이상의 정보를 얻게 되면 이 아이를 신고할지 몰라서 더 이상의 상담 자료에 대한 공유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라서 저희

가 그것을 신고할 리는 만무하다고 설명 드려도 이 아이 또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상담 내용 공유는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알아봐서 직원들하고 공유하는 정도 이지, 전문적으로 교육받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참여자 19)

학대피해아동이 성착취 가해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사례도 보고되었다. 결국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온라인을 매개로 발생하는 것이지만 디지털 환경은 매개일 뿐 관련 범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특징도 제시되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나. 피해 현황

아동학대로 인해 가정 내 보호·양육체계가 미흡한 경우 더 디지털 성착취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동학대로 인해서 그 가정 내에서 보호체계가 미흡한 아이들은 온라인 음란물, 사진, 자기의 어떤 사진을 공유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보호체계가 미약한 가정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포커스로 맞춰서 개입을 한다기보다, 가정 내 보호체계, 보호자 역할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개입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 18)

또한 부모가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도리어 아동·청소년에게 학대를 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실제로 성매매나 성착취 피해아동들이 구타를 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보호자들로부터. 보호자들이 모텔에서 아이를 발견했거나 이럴 경우 아버님들이 굉장히 폭력으로 대응하거나 어머님들이 욕설로 대응하거나 이런 경우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부모님들이 저희에게 그러면 성매매하는 딸과 아들을 봤을 때 상담사님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고 했을 때 저희도 말문이 막히는 해요. 이론상으로 가르쳐 드리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부모님들이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교육은 전혀 없어서. 저희에게 역으로 질문하셨을 때도 저희 또한 명확하게 가이드를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19)

디지털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상담하는 기관의 경우,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일어나는 온라인 매체에 대해,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작년 12월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실명 인증, 대화저장, 신고 기능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19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메타버스 기반의 로블록스 등 가상세계에서의 성착취 문제도 조금씩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다. 수사 및 재판 현황

① 보호자와의 관계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성상 부모에게 알리기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부모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부모님께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고가 안 되다 보면 범죄 피해가 더 커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하나요?’라고 아이들이 재차 확인을 해요. 이런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서의 권한이라고 할까요.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아이들을 더 수월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 20)

② 2차 피해 대응

피해아동·청소년이 해바라기센터, 경찰, 성착취 관련 센터 등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반복된 피해진술을 하는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저희가 가서 또 상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복적으로 아이가 계속 진술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경찰에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해바라기로 바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중복적으로 진술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참여자 18)

아동·청소년 대상 성학대의 경우, 법정에서 증인 출석을 요청받을 경우 2차 피해를 고려해 판사님과 면담을 하거나 피해자 변호사와 소통해 되도록 피해아동·청소년이 증언을 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활동도 한다고 답했다.

라. 처벌과 피해 구제, 예방

더 큰 피해를 막고 조기에 피해로부터 구출할 수 있도록 조기 개입 혹은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지적되었다. 결국 아동보호전문기관 또한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개입하게 되는데, 결국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범죄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등과 협력해 학교에서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던 좋겠다고 제안했다. 교육의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부모와의 관계를 포함한 사람과의 관계맺음 등에 관한 것을 언급되었다.

마. 피해자 지원체계

① 아동·청소년의 정보접근권

학대피해아동이 성착취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아동의 연령이 낮지 않고 그 성착취 피해사실을 부모에게 고지했을 때 아동의 추가 학대가 예상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아동의 의사를 고려해 부모에게 그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했다.

② 피해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물론 아동학대에 성학대도 다루고 있지만, 특별히 성학대에 집중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지는 않은 것 같다는 답변도 있었다.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담당팀으로 아동학대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찰에서 성착취 피해아동을 아동학대로 판단을 해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착취를 아동학대로 판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최근 성학대 사건이 줄어들고 있어, 성착취와 아동학대 시스템이 구분되어 절차가 진행되는 것 같다는 진술도 있었다.

“현재는 시스템상 경찰에서 아동학대 코드를 찍어서 내려주는 사례에 한해서만 저희가 받다 보니, 사실 해바라기센터로 직접적으로 가는 성착취 피해아동들까지 아동학대 코드를 찍어서 내려주는지는 의문이에요. 최근에는 성학대 범죄 피해아동을 저희가 현장에서 크게 만난 경험 이 없긴 하거든요. (중략) 아마 경찰에서 분류를 할 때 성학대 아동들, 성착취 피해 아동들과

아동학대 코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참여자 19)

“그래서 보통 그 피해 아동들이 상담기관을 통해서 상담을 하다가 이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우나 성착취 피해 아동이 된 경우를 조사하다 보면, 대부분의 아동들이 가정에서 방임을 당한 다든지, 학대를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들이 맞췄다면, 그 기관에서 이제 신고의무자인 경우에는, 그때 피해아동으로 다시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러면 만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사실 극소수인 것 같고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성착취 피해 아동을 저희한테 다이렉트로 맡기는 상황은 아닙니다.” (참여자 20)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또한 자라날 가정이 해체되거나 양육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보호시스템에서 함께 지원하는 것에 대해 질문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성착취 피해에 관한 특수성 등을 고려한 전문성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갖추기 어렵다는 점, 여러 지원기관이 아동·청소년에게 질문했을 때 진술이 오염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각자 전문성이 있는 기관 간 연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성피해 아이들은 특수성이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말 좀 더 전문적으로 그것에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접근하는 게 아이들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전에는 성피해 아동들 상담할 때 저희가 어차피 해바라기에서 질문할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묻지는 않거든요. 진술이 오염될 수 있다든지,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 위키나 부담을 갖는 부분들이 있어 조금 더 해바라기센터에 진술을 의뢰한다든지, 상담을 연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동학대의 범주에서 뺀다기보다 조금 더 심도 있게 각각의 콘텐츠 별로 전문성 있게 접근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여자 18)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여러 지원체계에서 거절 당해 결국 민간기관으로 오게 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결국 성착취 피해아동이 아동보호체계 혹은 성폭력지원체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희도 의뢰받을 때 여러 기관에서 의뢰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통합이 되지 않다 보니, 개인적으로 내담자나 피해 대상을 토스하는 느낌인 거예요. 여기서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 연락드렸더니 안 되어서, 1388에 연락했더니 저희 기관으로 오는 경우, 해바라기센터에 연락했는데 신고 건이 안 되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기관으로 연계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사방팔방에서 아이들이 연계되어 오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정도 통합이 되어 지원체계가 마련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사례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여자 20)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 지원기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이 원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만, 성착취 지원 기관의 경우 아동이 가정 밖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연락이 끊기는 등의 사유로 좀 더 지속적인 사례 개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제 그 센터들과 저희(아동보호전문기관)가 다른 점은, 아보전은 학대 피해로 신고가 되면 그 아동이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례 관리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아동의 안전이나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반면에, 성착취 범죄 피해 관련해서 여러 기능들이 있는 센터들은 사실 피해자가 그 지원을 원치 않으면 강제적으로 어떤 개입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조금 한계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중략) 그래서 아이가 나타났을 때 일시적으로 받고 싶은 서비스를 추적해서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 아이가 원치 않고 가출을 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면 계속된 지원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참여자 19)

바. 종사자 교육·훈련 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운영 법인에서 아동권리 교육이 진행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아동 안전 보호 정책’이 있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상황에서 아동 안전 보호 정책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단체도 있었다.

사. 유관기관 협력 현황

학대피해아동이 사례 관리를 하던 중에 성착취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처음 아동과 라포를 형성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 사례관리 기관이 되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기관은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경우 연계하게 되는데, 그 아동이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주된 사례기관이 된다고 답했다.

성학대 피해아동의 경우 성범죄피해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서비스대상자가 중복된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아동에 관한 정보 공유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서로 경계하기보다 각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연계,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사실은 피해아동을 중심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사실 모든 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하나의 서비스로 대상자에게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마치 실적이나 여타 사업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 성학대에 대해 개입을 하려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경계를 하시는 관련 기관들이 있는 부분을 보고, 조금 안타깝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민감 정보이다 보니까 정보공유가 같은 기관들끼리도 상이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스크리닝을 다시 해야 된다는지, 불필요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서 결과적으로 피해 아동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성학대 피해 아동들과 함께하다보면 한 번씩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19)

아동이 성매매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해바라기센터에 연계해 의료적 지원이나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진술이 있었다. 다만 심리·상담 지원이 해바라기센터에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원한다고 답했다. 만약 아동이 가정에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 보호자의 보호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등 지원을 하게 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성착취 피해아동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답했다. 성학대 피해아동의 경우 국선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법률지원이 진행된다고 답변했다.

5) 소결

(1) 한계

종사자 대상 면접조사의 경우 각 직종별 참여 인원수가 적어 과대대표될 가능성이 있고 모든 직종이 포함되지 못하는 등 참여자들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응답자의 근무 지역의 경우 수도권이 약 75%에 달해 지역 별 의견을 고루 청취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다. 종사자 조사는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 등 수사 및 재판 관련 기관, 피해자 지원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분해 진행되었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동보호체계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착취 이슈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범주를 넓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사는 2021년 7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되었다. 청소년성보호법 ‘온

라인 그루밍’ 관련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및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관련 규정이 9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사 기간 당시 관련 규정들이 시행 전이거나 시행 직후였기 때문에 관련 개정 법률의 운영 실패를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자기가 스스로 행하는 업무에 관한 답변이라는 점에서 스스로 겪은 경험 등에 의존하고, 소속 기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향후에는 조사의 객관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 직역 간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상호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조사를 설계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시사점

이하는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 아동·청소년성매매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시민단체 종사자들의 응답을 종합해 조사 설문 항목별로 비교·분석했다.

가. 디지털 성착취 범죄 인식

우선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관계 종사자들이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또한 모색해 보고자 했다. 판사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해당하는 죄명이 불분명하다보니, 관련 통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진술했다. 변호사의 경우 현행법상 ‘성착취’에 대한 정의가 부재해, 결국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성착취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경찰은 호기심이 많고 쉽게 유인되는 등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악용한 범죄라고 답했다. 대신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 성인 가해자와 다른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경우, 과거 성폭력과 성매매, 음란물로 나누어 규율했던 것에서 벗어나, 디지털 환경을 이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일체라고 답한 참여자가 있었다. 반면 성착취라는 용어가 모호하며 성착취와 성매매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도 있었는데, 이 참여자의 경우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착취로 보아야 한다고 답변해 성매수

범죄에 이용당한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는 관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판사의 경우,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개념에 대해 디지털 기기(스마트폰 등)와 SNS, 온라인 등과 같은 ① 디지털 환경, 성매수범죄로 인한 수익을 알선자에게 대부분 착취당하는 ② 착취의 특성, 유혹과 유인 등에 취약한 ③ 아동·청소년의 특성,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 그 내용을 유포하고 협박, 강요하는 ④ 그 후속 행위 태양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변호사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동의, 자발성 여부를 고려해서는 안 되며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모든 성착취 범죄와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하여 일어나는 범죄를 모두 망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동·청소년성매매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와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이하 ‘상담소’) 종사자들은 온라인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인식되어서는 안 되며, 현행법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더욱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이 성매매를 성착취로 접근하지 않고 가벼운 범죄로 간주하거나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기기 및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 침해행위’라고 정의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자발성 및 동의에 대해 성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착취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디지털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만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청소년성보호법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성착취 범죄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은 모두 피해자로 의율한다는 관점이 현장에서 이행되지 못하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나. 피해 현황

경찰의 경우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공론화되었을 뿐 이미 이전부터 관련 사건은 존재해왔다고 했으며, 검사 또한 새로 생긴 범죄라기보다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상 죄책감 없이 좀 더 진입이 자유로워진 특징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판사의 경우 범죄를 다른 사람에게 뱉내는 수단, 놀이, 재미 등으로 가볍게 여기는 문제 또한 심각하며, 익명성 등 인터넷 환경에

기반해 확대 재생산이 된다는 점과 상업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경향성을 이야기했다. 변호사는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재생산을 예측할 수 없고 피해가 국외로까지 확산될 수 있어 사실상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원센터와 상담소는 피해자의 연령이 저연령화되는 경향이 발견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한 범죄의 특징상 완전한 삭제는 사실상 불가능해 사례가 계속 누적되는 특징을 언급했다.

판사는 피해 유형을 크게 ㉠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 ㉡ 배포와 판매, ㉢ 시청, 소지, ㉣ 디지털 성착취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변호사는 피해자가 피해를 가늠하지 못하는 사이 가해자는 조직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수하여 협박한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가장 흔한 피해유형으로 불법 촬영 및 유포를 꼽았다.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대해서는, 종사자들 모두 성인과 달리 쉽게 유혹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더 쉽게 노출하고 일명 ‘그루밍’, 협박에 약한 취약한 특성을 강조했다. 경찰과 검사는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신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더욱 심각하다고 진술했다. 변호사 또한 ‘그루밍’ 상황의 아동·청소년이 ‘일탈계’를 운영한 것에 대한 죄의식 등 본인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입경로가 되는 매체의 경우, 경찰은 처음에는 일반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SNS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한 다음 유포 등을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한다는 응답이 있었으며, 사실상 모든 매체가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매개 및 유통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유통은 클라우드 등 외국에서 운영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주된 매개라고 답했다. 검사의 경우 일반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오픈채팅과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언급했다. 판사 또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메신저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을 이야기했다.

지원센터와 상담소의 경우에도 유입 경로가 되는 매체로는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이 언급되었으나 새로운 시스템이 계속 개발됨에 따라 경로를 한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전통적인 유입 경로인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소셜 네트워크, 오픈 채팅 뿐 아니라 최근에는 유튜브, 클라우드에 기반한 메신저 프로그램부터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에 이르기까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온라인 공간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원센터와 상담소는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 역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제시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한 피해가 발생하는 플랫폼이 특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하며, 최근에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대형 사이트, 커뮤니티에서의 유포 사례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의 성별이 남성인 경우 ‘몸캠 피싱’의 비율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이 성착취 가해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사례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가정 내 보호·양육환경이 미흡한 경우 더욱 디지털 성착취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또한 제시했다. 결국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와 같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또한 자라날 가정이 해체되거나 양육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보호시스템에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했는데, 각자의 전문성을 고려해볼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성착취 범죄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피해 양상에 대해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경찰과 검찰은 공통적으로 오프라인 범죄에서 유포 등 온라인으로 넘어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사는 범죄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이어지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고 진술했다. 변호사 또한 성착취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시민단체의 경우에도 디지털 환경은 어디까지나 매개일 뿐 온라인과 오프라인 범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특징을 제시했다.

그 밖에도 지원센터와 상담소는 성구매자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 직업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르게 말하는 등 교묘한 방법을 고안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찰의 경우 피해를 막기 위해 다변화되는 매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 온라인에서 실명제를 강화하는 방안 또한 제안했다.

다. 수사 및 재판 현황

① 사건 인지 경위

경찰과 검찰 모두 보호자에 의해 신고 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경우 사건이 기관으로 유입되는 경로 또한 학교 등 다양하지만 보호자에 의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시민단체나 유관기관에서 상담을 받다가 종사자와 함께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한 사건에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먼저 발견하기도 한다고 진술했다. 검사는 경우에 따라서 경찰들이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가해자 관련 정보를 알아낸 뒤 사건을 수사하게 되기도 한다고 답했는데, 이와 같이 피해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수사방식은 아동·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삭제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는,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 보호 관점에 집중할 수 있어 현장의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변호사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여전히 피해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지 않는 사례가 확인된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의 성인지 감수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지원센터와 상담소 또한 변호사와 같은 의견이었다.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도 경찰이 “대상아동·청소년” 명단을 기관으로 보내는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을 성매매처벌법상 피의자로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 지위로 조사에 참여했는데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서 피해자의 잘못도 있다는 전제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피해아동·청소년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례를 지적했다.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② 보호자와의 관계

경찰과 검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보호자에 관한 정보가 없거나 피해아동·청소년이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수사기관이 연락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진술했다. 지원센터나 상담소의 경우에는 합의나 경찰 조사 참여 등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의 의사가 다른 경우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고려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검사는 아동·청소년이 성착취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잘못한 것 같다는 죄책감 때문에 부모에게 혼이 날까 두려워 제대로 진술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보호자가 조사에 동석하지 못할 경우 국선 피해자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학대가해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고, 아동·청소년이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관련 지원기관 종사자가 조사에 동석하도록 하되, 추후 보호자에게 안내한다고 답변했다. 보호자가 성착취 범죄 가해자인 경우 아동·청소년과 분리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동·청소년이 장애를 가진 경우 보호할 시설을 찾지 못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점 또한 지적했다. 즉, 아동·청소년이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보호자가 적절히 개입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지원기관 혹은 국선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변호사 또한 아동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보호자가 조금이라도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잘못이 있다는 인식을 주게 될 경우 아동·청소년이 신고를 꺼리기도 하며, 많은 피해아동·청소년들이 피해사실을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했다. 수사기관이 이러한 상황에도 부모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안내해, 결국 사건이 진행되지 않은 사례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변호사와 지원센터, 상담소의 경우 오히려 아동·청소년이 적절하게 지원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에 대한 지원 및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보호자 역시 아동·청소년의 피해에 큰 충격을 받아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많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지 알지 못해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2차 피해에 노출시키는 등 의도와 다른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모가 자녀가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도리어 아동·청소년에게 학대를 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 또한 여러 사례를 통해 지적했다.

③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알 권리

전반적으로 관계종사자들은 아동·청소년의 알 권리에 대해 형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이 마주하게 되는 조사와 재판이 어떤 것이고 가해자의 처벌과 나의 피해 구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형사절차

과정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경우 그 선택에 따른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아동·청소년에게 잘 안내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 역할에 관해 고민하는 관계종사자 또한 찾기 어려웠다.

지원센터와 상담소 또한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알 권리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진술했다. 오히려 아동·청소년의 곁에 그를 지원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부분을 지원기관에 모두 떠맡기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원센터와 상담소는 피해자를 대신해 재판 모니터링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경찰의 경우 보호자의 조사 참여 등을 할 때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먼저 확인하고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진술도 있었다. 하지만 해바라기센터 수사관이 아닌 한 피해자가 직접 소통하지 않으며, 아동·청소년과의 소통과 보호는 수사관의 역할이 아니라는 답변도 있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알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다.

검사의 경우 결국 아동·청소년이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고, 아동·청소년이 수사 진행을 원하지 않거나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 아동·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동·청소년에게 진행 중인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것 또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처한 상황에 따라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답했다.

판사의 경우 보통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피해아동·청소년의 의견과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으며, 가해자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경우 소년보호재판의 심리 비공개 원칙 등에 따라 처분 결과 또한 피해자에게 안내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④ 수사 방법 등 수사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경찰과 검사의 경우 디지털 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가해자 특징이 어려운 점 등 수사의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강조되었다. 또한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영장 집행이 어려운 메신저 프로그램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사이버범죄 협약 등 국경을 넘은 국가적 차원의 수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다.

경찰의 경우 실명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애플리케이션 사업자 등에 대한 책무가 요
청되어야 하며, 일대일 대화 녹음이 불법이 아닌 것과 같이, 일대일 채팅방 또한 대화
로 해석해 좀 더 쉽게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제시되었다. 검사
또한 추가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영장 발부 등 선제적인 대응 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지방청의 경우 사이버와 성폭력을 함께 담당하는 ‘사이버 성폭력 전담수사팀’이 있
지만 최전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경우 사이버수사팀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
팀이 나뉘어진 점 또한 확인되었다. 결국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사이버와 성폭력을 함
께 수사하는 팀이 경찰서까지 확대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지
원센터와 상담소는 사이버 수사 담당 수사관의 경우 성범죄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
해, 피해자를 탓하는 등 피해아동·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사
를 진행한 사례를 공유하며, 결국 수사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점
을 강조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조사를 할 때 국선 피해자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
다는 사실을 잘 안내하지 않는 경우 또한 발견되었다.

경찰은 피해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자책감, 죄책감을 가짐에 따라 수사기관의 연락
에 응하지 않거나 보호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을 다그쳐 피해자 스스로 중요한 증거인
애플리케이션 등을 삭제하거나 피해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를 진술하기도 했다. 성범
죄에 이용당한 아동·청소년은 모두 피해자라는 관점이 가정과 사회에서 잘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다. 검사는 현행법상 행위태양 중 ‘시청’, ‘소지’와 같은
경우에는 목격자가 없는 한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다는 점 또한 제시했다.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경찰의 경우,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으로 수사가 더욱 위축될 수 있으며, 증거로 인정되지
않거나 불능미수 등으로 실제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등 관련 규정이 실효적
으로 작동하기 위해 규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진술했다. 검사의 경우, 경찰이 위
장수사를 하러 들어갔는지 아니면 진짜 범죄를 하러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정당한 목적을 위한 수단 또한 적정해야 하는데 만약 이 수사로 인해 피해
가 발생할 경우 등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부패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까
지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사 참여자 모두가 지적했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가해
자와 연락하기 위해 피해자를 이용하는 등 피해아동·청소년을 통한 함정수사를 시도

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다.

변호사의 경우, 특히 경찰과 검사, 판사의 태도는 피해아동·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성인지 감수성과 공감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⑤ 재판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판사는 피해아동·청소년의 연령이 낮음에도 피고인(가해자)이 범죄사실을 다투는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이 법원에서 증언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매우 어렵고 힘들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으로 법원이 진술분석가, 전문심리위원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원센터와 상담소의 경우, 성매수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이 성매수남을 공갈했다는 범죄사실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공유했다. 법원의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범죄자로 취급되거나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⑥ 2차 피해 대응

경찰의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의 조사 참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고, 피해자 진술이 기재된 속기록의 열람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검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진술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결국 피해 구제(처벌)로 가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 온라인 환경을 활용한 수사기법이 보완되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판사는 피해아동·청소년의 신분 비공개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의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이기도 한 성착취 증거물에 관한 보관과 열람, 등사에 관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및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아 피해아동·청소년의 목소리 변조 방식 등을 요청했는데 고려되지 않았던 사례 또한 제시했다.

지원센터와 상담소는 피해아동·청소년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경우, 피해자 변호인으

로부터 2차 가해에 노출되는 상황 또한 제시하며, 이러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활동을 한다고 진술했다. 또한 지원센터와 시민단체 모두 피해아동·청소년이 해바라기센터, 경찰, 성착취 관련 센터 등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반복된 피해 진술을 하는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에 신속하게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검사의 경우 지인 등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차별 금지법 제정 등 보다 근본적인 국민의 인식과 사고가 변화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라. 처벌과 피해 구제, 예방

경찰의 경우, 피해자가 존재하는 지에 따라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는데, 피해아동·청소년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대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점이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법원에서 선고할 때 초범인 사정이 고려되거나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에 비해 문리적 혹은 법리적 해석에 따라 낮은 형으로 선고될 때의 아쉬움 또한 제시되었다. 좀 더 적극적인 법원의 해석과 법 적용을 요청하고 있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역시 가해자를 처벌할 때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침투하며, 유포 행위 횟수에 관계없이 유포 자체로 피해자가 지속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에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진술했다.

검사는 최근 디지털 환경에만 집중하다보니 양형 기준이 온라인만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오프라인에서 유형력으로 벌어지는 범죄 또한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성착취 범죄 또한 함께 양형을 높이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살인죄 등 다른 범죄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 양형이 낮지 않은데 오히려 법정형이 높다보니 법원이 증거를 까다롭게 보게 되면서 입증이 어려워지는 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변호사들은 처벌과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징, ‘그루밍’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기관에게 더욱 전문성이 요청된다는 것이었다.

종사자들은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관한 고민 또한 많았다. 경찰의 경우,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특성을 언급했다. 검사는 우연한 호기심 등으로 범죄에 진입했다가 성인과 달리 관련 영상물을 잘

삭제하지 않는 등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하다가 오히려 성인들은 달아나고 아동·청소년이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아동·청소년 개인의 탓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구형하기 어렵다는 문제 또한 진술했다. 변호사와 판사 모두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성인들이 도리어 아동·청소년의 취약성을 악용해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아동·청소년에게 부추기고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지원센터와 상담소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에게 기프트콘 등을 보내고 ‘너네 반에 있는 친구 얼굴 사진을 보내라’와 같이 범죄를 강요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판사의 경우 가해아동·청소년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인 경우가 있으며, 그 역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성인 가해자와는 달리 봐야하는 지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인 재범 예방과 회복, 사회복귀의 목적, 회복적 사법의 가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범죄의 책임을 아동·청소년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수강명령 처분’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화된 보호처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변호사의 경우, 유포로 인한 추가 피해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그러한 점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피해자가 아동일 때 촬영된 영상이었다고 주장할 때에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피해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인 음란물이라 판단하는 사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등이 제시되었다.

일명 ‘온라인 그루밍’ 규정인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에 대해서는 모든 종사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검사의 경우 온라인 공간에서의 ‘그루밍’에 머무른 경우에는 그 단계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직접 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규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좀 더 피해자에게 실효적이고 궁극적인 구제수단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있었다. 검사의 경우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이나 피해자의 심리 치료나 이사 비용

등을 분담시킬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가 디지털 성착취 범죄까지 확대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예방’과 관련해서는, 모든 종사자들이 공통적으로 ‘교육’을 강조했다. 누구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므로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종사자들이 강조했다.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 개입 혹은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여러 종사자들이 강조했다.

경찰은 ‘대중’을 상대로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진술했다. 검사의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러한 범죄를 척결할 수는 없으며 국가와 부모, 학교, 사법기관 등 모두가 함께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해 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결국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문제는 아동·청소년의 문제이며, 아동이 자라나는 가정환경, 아동보호시스템과 같은 구조의 문제를 함께 보아야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판사의 경우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에게 결국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처벌된다는 점에 대해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대중에게 널리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판사는 피해아동·청소년이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관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사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에 눈을 일찍 뜬 되바라진 아동’이 아닌 ‘위험한 상황에 처한 아동’이라는 인식이 전제되는 것이야말로 예방의 기초라는 것이다. 지원센터와 상담소 또한 전 연령층에게 디지털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고 피해 상황을 잘 알려,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누구에게나 손을 내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마. 피해자 지원체계

① 아동·청소년의 정보접근권

경찰의 경우, 다양한 지원내용을 안내하고 있었지만, 보호자가 아닌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안내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아동·청소년에게 적합하고 친화적인 방식과 내용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없었다. 재판 이후 법원에서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는 절차 등이 있는지 또한 확인할 수 없었다. 지원센터와 상담소의 경우, ‘유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유포 차단 등을 위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관련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② 피해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피해아동·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종사자 모두 한 목소리로 ‘삭제 지원’을 꼽았다. 검사의 경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의 삭제에 이르기 위해서는 기술이 더 발전되어야 한다고 진술했다.

모든 종사자들이 언급한 삭제 지원을 하는 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온라인 사이트 폐쇄 등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운영자 등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삭제 권한이 없어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라는 한계,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이 확인이 되지 않는 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등 실무상 어려움도 제시했다. 오히려 관련 매체에 ‘경고’할 수 있는 권한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주어지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최근에는 영상물이 아닌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삭제 지원의 대상이 이러한 ‘텍스트’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결국 피해자가 일상에서 회복해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담과 경제적 지원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현재 피해자를 위한 지원서비스가 쪼개져 있어,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검사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서비스 공급자 관점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 중심의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 로드맵(roadmap)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각자가 가진 시스템의 강점을 공유하고 상호 보완해 피해자 지

원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은 변호사도 지적했는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미 제공되고 있음에도 피해자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없어, 피해자에게 종합적으로 안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한 피해자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경우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동보호체계나 성폭력지원체계 등에서 보호받지 못해 민간 기관을 찾게 되는 사례를 제시했다. 결국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동보호체계 혹은 성폭력지원체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보호되기 위해서는 통합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의 경우, 갈 곳 없는 피해아동·청소년이 발생할 경우, 보호할 수 있는 기관으로 아동·청소년을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지역적으로 가까운 주변 청소년쉼터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했다. 판사는 공통적으로 피해아동·청소년이 궁극적으로 성착취 범죄로 인한 피해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심리·상담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결국 예산과 인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범죄는 성학대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체계에서도 성학대에 특화된 지원체계가 미흡하다고 답변했다. 아동학대시스템의 개편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찰이 성학대로 판단을 해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게 되는데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성착취와 아동학대 시스템이 분절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바. 종사자 교육·훈련 현황

사법기관의 경우, 전담부서가 있더라도 결국 순환 보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훈련에 관한 시스템이 마련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경우 ‘범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아동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추가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검사의 경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잘 마련되어 있는데, 결국 그 교육을 어떻게 ‘제공’하느냐보다 그 교육을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잘 ‘숙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답변도 있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와 같이 특별한 주제에 관한 교육은 제공되지 않는 것 같다고도 했다. 판사는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각 사

건마다 달리 판단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결국 교육으로 메울 수 없는 훈련의 영역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호사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으로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은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되어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도 이러한 점이 제대로 교육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교육에 아동 인권, 아동·청소년의 특수성,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사. 유관기관 협력 현황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형사절차를 넘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하지만 형사절차 관련 기관의 경우, 협력하는 유관기관은 업무절차에 따라 필수적으로 연계되는 기관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검사의 경우 사건의 공정성 등의 문제로 특정 시민단체 등과 협력할 때,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하기도 했다.

경찰의 경우 협력기관으로 공통적으로 해바라기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선 피해자 변호사를 언급했다. 다만,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아동보호를 담당하는 구청, 분리보호 이후 아동을 보호할 시설 등을 언급한 경찰 참여자의 경우, 형사단계 이후 상담 등 피해자를 지원하는 체계가 실효적으로 작동되어야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구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검사의 경우 협력기관으로 범죄피해지원센터, 상담센터, 국선 피해자 변호사 등을 언급했는데, 피해자의 욕구와 개별적 특성 등을 고려한 신변보호, 심리 상담을 위해서는 결국 인력과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아쉬움도 발견할 수 있었다.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현재의 상황, 처벌의사, 피해회복 여부 등 필수적으로 살펴야 할 내용이 있는데, 국선 피해자 변호사가 이에 관한 내용을 법원에 잘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소년보호재판을 담당하는 경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유관기관과 소통하고 있었는데, 예산 지원이 열악하다 보니 결국 수강명령 등을 함께 할 기관을 발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지원센터와 상담소는 수사기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디지털 환

경에서의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경우, 다른 기관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같은 내용의 피해사실을 여러 번 진술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술했다. 교육청 등과 연계해 학교에서도 성착취피해자를 지원하는 관련 기관에 대해 잘 숙지하고, 피해학생을 발견할 경우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잘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수사기관, 정부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었다. 심지어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 사업자와도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민단체는 서로 기관 간 연계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정보 공유를 꺼리거나 경계하기보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일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각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연계,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4.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학계 전문가 조사

1) 조사 목적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현황 및 현행법제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의 취지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명확한 개념 및 포섭범위 확인을 통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둘째,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실태 및 현행 법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제도의 개선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형법, 형사정책, 젠더법, 피해자학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고자 하였다.

2) 참여자

조사 대상은 형법, 형사정책, 피해자학, 젠더법 분야의 전문가들로, 대학 및 국책연구기관, 관련 학회 등에서 활동하는 5명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디지털 성착취 범죄 관련 선행연구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

조사방법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COVID-19와 관련한 상황으로 대면접촉이 용이치 않은 경우가 있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일부 전환하여 융통성 있게 진행하였다.

〈표 Ⅲ-6〉 학계전문가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현황

구분	소속	방법	일시
참여자 1	법학전문대학원	비대면	2021.10.06.(수)
참여자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비대면	2021.10.06.(수)
참여자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비대면	2021.10.06.(수)
참여자 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대면	2021.10.08.(금)
참여자 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면	2021.10.08.(금)

3) 조사 내용

학계 전문가 심층면접조사의 내용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항목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개념 및 특성에 관한 학계 전문가의 진단이다.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성착취’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근래에 개정된 법률에서도 ‘성적 착취’ 또는 ‘성착취’라는 용어가 다양한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통일된 이해나 공식화된 정의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의 포섭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취지의 조사이다.

두 번째 항목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현황 진단에 관한 것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실태의 심각성에 대한 학계 전문가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된 대응책들이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등에 대한 학계의 진단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는 현행 법제에 대한 평가 항목이다. 이른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최근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이 개정되었는데,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현행 법제의 실효성을 분석·평가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근래에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규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규정,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 잠입수사특례 규정 등의 정당성과 효과성 등에 관하여 학계 전문가들의 평가 의견을 조사하였다.

네 번째 항목에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의 처벌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학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다섯 번째에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제도와 관련한 의견을 논의하였다.

〈표 Ⅲ-7〉 학계전문가 심층면접조사 내용

	항목	조사내용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개념 및 특성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정의 및 포섭범위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성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현황 진단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현황의 심각성 • 최근 추진되고 있는 강력한 대응조치들 이후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진단
3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대응 법제에 대한 실효성 평가	• 아동·청소년 성매매 대응 법제에 대한 평가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대응 법제에 대한 평가 •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 도입에 대한 평가 • 잠입수사 특례규정 도입에 대한 평가
4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처벌과 예방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의 적정성 • 처벌을 넘어서 새로운 예방전략 모색
5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 디지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자원과 도움 •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방안 • 디지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4) 학계전문가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의 개념 및 특성

가. 성착취의 개념

‘성착취’ 혹은 ‘성적 착취’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법률 용어는 아니며, 국제인권규범에서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국내법에 진입하게 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형법의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서는 ‘성적 착취의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무엇이 성적 착취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밝히고 있지 않다. 청소년성보호법 역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규정도 있으나, ‘성적 착취’ 또는 ‘성착취’의 의미를 재차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형법 제298조 제2항 ‘성적 착취 목적의 약취·유인죄’의 해석과 관련하여 형법교과서는 성적 착취란 매춘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략히 서술하고 있을 뿐이며,⁷²⁾ 성착취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하여 규범적 확인이 명확하지 않다. 사회의 일반적 이해에 의하면 성착취란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강제로 하게 하거나 또는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함’으로 해석되기도 한다.⁷³⁾

그러나 면접조사에 참여했던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성착취는 ‘대상의 취약성’을 핵심적 개념요소로 한다. UN이 성착취(Sexual Exploitation)란 ‘성적 목적(Sexual Purposes)을 위해서 타인의 신뢰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가해자가 이를 통해 금전적·사회적·정치적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과 동일한 취지이다.

성착취라는 개념이 법에 도입되고 보니, 어느 범위까지를 성착취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있기는 하다. 성적 침해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은 성착취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 자기방어력이나 자기존중감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착취의 개념이 성인의 경우보다는 넓게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여자 1)

성착취라는 개념이 국내 법률에 도입된 취지는 각각의 입법안에서 설명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취약성에 초점을 맞춰 일반적인 성범죄와 구별하여 개념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성착취는 피해자, 즉 대상자의 취약성에 초점이 두어진 용어로 이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성인을 대상으로는 ‘성착취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시간이 지나고 사회적 논의가 더 진행된 후에는 디지털 성범죄 결과물들을 모두 성착취물로 개념짓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아직까지는 적어도 ‘성착취물’이라는 용어는 아동·청소년에 한정해서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참여자 2)

국제사회의 인식을 참고하건대, 성착취란 성적 목적을 위해 타인의 신뢰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구조로 이해되며, 즉 일종의 지위불균형에서 발생하는 성적인 침해로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참여자 3)

요컨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란 취약한 지위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들을 포함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적 표현이나 행위를 성인과 동등한 선상에서 논의하면 피해자의 취약성이나 가해자의 범죄성이 명확히 드러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72) 이재상·장영민·강동범(2021), 『형법각론』, 박영사.

73) 우리말샘,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우리말 사전(<https://opendict.korean.go.kr/main?target=pc&view=main>, 검색일: 2021. 10. 30.).

나.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의 포섭 범위

인터넷 환경의 발전 및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더불어 SNS 등을 통한 초고속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 현실은 종래 우리사회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성폭력들을 출현시키고 있으며, 그 대상이 저연령의 아동·청소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에 대응하는 법제·정책을 모색하는 논의에서는 성착취의 개념이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하지만, 그 다음으로는 성적 침해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규제의 포섭범위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학계전문가들은 오늘날 디지털 성착취 규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초창기 사이버 성범죄의 개념보다 그 범위를 확장시켜야 한데 이견이 없었다. 즉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성착취는 그 행위나 행위의 결과가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든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든 불문하고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로 포섭하고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았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디지털 성범죄로 명시되지 않은 행위들, 예컨대 아동·청소년 성매매나 그 밖의 성폭력범죄도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행해지는 경우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에 포함하여 통합적인 대응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디지털 성범죄 개념은 종래의 초창기 사이버 성범죄 개념과는 달라졌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뿐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발생하는 성범죄가 모두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된다. 예컨대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포하거나 이를 시청하는 행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촬영물을 이용해서 강요하는 행위 등이 모두 이에 포섭될 수 있다. 일련의 범죄들이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자체가 굉장히 넓은 범주를 포섭하고 있다. (참여자 2)

디지털 성착취라는 개념은 성착취의 방식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다거나, 행위의 결과물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 이용되는 경우들을 포괄한다. (참여자 3)

현재 온라인 공간, 혹은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한 범죄에는 성폭력처벌법상의 불법촬영, 친밀한 관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의 고의를 가지고 대량으로 불법촬영물을 제작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배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앞의 두 가지 범죄는 성착취의 개념과는 구별되나, 다른 영상물을 얻기 위한 폭행·협박 등이 수반될 때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요컨대,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아동·청소년 성착

취물의 제작·배포·유포협박, 구입·소지·시청, 범죄수익창출, 사전 범행모의, 오프라인 범행연계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또는 오프라인 범죄까지 광범위하게 디지털 성착취 범죄개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참여자 5)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현황 진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 공간은 예전에 미처 상상하지 못한 정도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범죄의 수단과 방법도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이른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착취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다시 한 번 확산되었는데, 온라인 기반 성착취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오늘날 세계 각국의 공통된 현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독일의 경우만 해도 우리나라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비교할만한 대규모 온라인 성착취 범죄가 적발되면서 최근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진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이 개정되고,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대응책이 다각도로 모색되었다. 이번 면접조사에 참여하였던 학계 전문가들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취약한 지위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된 범죄’로 규정짓고, 불법적 미디어의 소비, 생산, 유통의 경계가 붕괴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또한 가해자들이 성착취물을 유폐화하여 범죄수익을 창출하였을 뿐 아니라 다수가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수행함으로써 마치 기업과도 같이 움직였던 특성을 지적하였다.

면접조사 참여자들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엄격한 규제를 위한 법개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일응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범죄 유형들이 간과된 점,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연령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리고 기술적 진보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는 점 등이 아쉽다고 평가하였다.

최근의 기사를 보니,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지난 4년간 최대 동의를 얻었던 사례가 바로 n번방 처벌에 관한 것이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건이다. 사건 자체는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이를 통해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하는 일련의 법제들이 마련되고 정책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특

히, 과거 미디어 매체에서 이른바 “아동 순재” 등의 표현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범죄자가 코믹하고 정겨운 옆집 아저씨 이미지로 포장되었던 것에 비해, 이제는 이러한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실히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다만, 근래에 추진된 일련의 법 개정에서는 누락되고 간과된 문제들이 몇가지 있어서 아쉽다. 특히, 친족에 의한 영유아 대상 성착취물에 대한 대책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피해자의 연령대에 따라 피해양상과 대응책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히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는 하나의 범주로 다룰 경우 섬세한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 향후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다. (참여자 2)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디지털 기술 또는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하는 수법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번의 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도 일정부분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친족에 의한 영유아 대상 디지털 성착취 대응에 특별한 고려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참여자 1)

n번방 사건이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낸 점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계기로 진행되고 있는 법제 개선에 대해서는 일응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피해자의 연령대에 따른 섬세한 고려가 행해지지 못한 점에 대한 지적에 동의한다. 덧붙여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대응 법제의 논의에서 가해자의 연령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확인되었지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10대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참여자 3)

최근 일련의 법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강화, 구성요건 확대, 용어의 개선, 온라인 그루밍 등의 처벌 도입, 신분비공개수사·위장수사의 도입 등이 이루어졌고, 이로써 디지털 성범죄 규제의 사각지대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을 통해 양형의 통일성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더 나아가 디지털 성착취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해자의 저연령화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세대들 사이에서 디지털 성착취의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최근의 법개정으로 현재의 범죄상황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만, 기술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양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법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성착취 예방교육의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가자 5)

(3)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대응 법제에 대한 실효성 평가

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대응 법제에 대한 평가

최근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성보호법은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을 보여주었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권유·유인하는 경우의 법정형을 상향하였으며,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이러한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면접조사 참여자 대부분이 1차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특히,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던 종래의 법률은 문제점이 컸다는데 인식을 공유한다. 피해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의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신고를 꺼리게 되고,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이러한 심리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였기 때문이다.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보호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피해자로 인식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했다는 평가이다.

이번 면접조사에 참여했던 학계 전문가들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센터’와 관련하여서는, 성매매 피해자의 종합지원을 위한 전담센터의 설립취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우선, 기관의 명칭 자체가 성매매라는 표현을 외부로 적시하고 있어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입장에서는 ‘보호처분’의 경우와 다를 바 없이 심적인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참여자 1), 센터의 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참여자 5). 그리고 학계 전문가 대다수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언급된 것은 피해자 지원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부분이었다. 수행기관 선정 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계 전문가의 진술에 의하면, 심사에 지원한 단체들 중에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포함한 복합적 지원과 관련하여 충분한 전문적 역량을 갖춘 경우가 드물었고, 과거 성매매여성들의 자활을 지원하던 단체 혹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년에 특화되지 않은)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단체 등이 많았다고 한다. 충분한 준비 없이 제도가 시행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며, 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격요건,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원센터의 업무 효율성 및 연계성 등에 대한 후속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대응법제에 대한 평가

청소년성보호법은 종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로 표현되던 용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의 형량을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소개하거나 구입·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다.

면접조사에 참여했던 학계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규제의 사각지역에 있으면서 성착취 범죄를 조장하던 광고·소개, 구입·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한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의 근절을 위해 필요한 법개정이었다고 평가하였다(참여자 5). 그러면서도 현행의 처벌규정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였는데(참여자 2),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과 애니메이션 또는 아바타 형태의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지적이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까지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과거 헌법재판소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유포·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하여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명확히 밝히 바 있다.⁷⁴⁾ 그런데 종래에 비해 법정형이 급격히 상향조정된 현 시점에서는,⁷⁵⁾ 실존 아

74) 헌법재판소 2015. 6. 25, 2013헌가17.

75) 아동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의 법정형이 종래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었는데, 형의 상한이 30년으로 상향된 것이다. 형법의 촉탁승낙 살인죄(제252조)나 중상해죄(제258조), 인신매매죄(제289조)와 비교하여도 법정형이 더 높다.

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과 가상 애니메이션 형태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종래에는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와 가상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처벌하였으나, 아동 성착취물 소지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과 가상의 표현물을 구분하고, 각각의 법정형을 설정함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을 고려했던 것을 참고할 만하다.

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 도입에 대한 평가

청소년성보호법은 성착취 범죄의 예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디지털 성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더 나아가 잠입수사 특례가 허용되도록 명시하였다.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개정내용의 실효성과 정당성에 대해 질문했을 때, 온라인 그루밍의 처벌이 필요하다는데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다만, 실무상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의 예비·음모죄와의 적용관계가 명확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오프라인 방식의 그루밍에 대한 처벌이 누락된 것에 대한 지적의견도 있었다.

입법안 발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에는 온라인 한정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행해지는 그루밍에 대한 처벌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루밍 피해 실태를 조사해보면 80~90% 정도가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확인되다 보니, 법에는 온라인 그루밍에 한정되어 처벌규정이 들어오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여전히 전통적인 오프라인 방식으로 행해지는 그루밍도 많기 때문에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여자 3)

라. 잠입수사 특례규정 도입에 대한 평가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온라인 사이트나 SNS 등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적발 및 수사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수사특례규정을 마련하여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면접조사 참여자들은 잠입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수사관 면책규정의 내용과 형

식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으며(참여자 1, 참여자 3), 위법한 함정수사로 전개되지 않도록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며, 잠입수사 기법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전문성 향상 교육, 윤리적 지침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참여자 5). 한편,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발생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잠입수사와 오프라인 잠입수사가 유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일반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참여자 2).

잠입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관 보호규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현행법의 조문을 보면 굉장히 생경하다. 징계도 할 수 없고, 형사처벌도 어렵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고의·중과실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보이는 것이다. 사실 기존의 법체계에서 해석상으로도 가능한 내용들이기는 하다. 그러나 현행법의 면책규정은 수사관을 강력하게 보호한다는 취지를 넘어 ‘언터처블’의 느낌까지 갖게 하는 측면이 있다. 면책규정 삭제논의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규정을 좀 더 세련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자 3)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온라인에 한정하여 개념정의 할 수 없는 것이고, 온라인 잠입수사가 입법화 되었다면 이제는 범주를 넓혀서 오프라인 상에서도 잠입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온·오프라인 수사가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덧붙여 온라인 수색 규정도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참여자 2)

(4)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처벌 및 예방

가.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기술적 진보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하는 범죄유형에 대해 법률이 완벽히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추진된 일련의 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대응법제가 어느 정도 정비되었고, 대체로 상당한 정도의 법정형이 마련되었으며,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또한 제시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면접조사에서는 특히 메타버스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성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들에 대한 우려가 추가적으로 제기되었다. 텔레그램 다크웹을 통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와 같이 메타버스도 얼마든지 신종 성범죄의 매개체로 발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메타버스를 통해 종래와는 또다른 양상의 성착취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예컨대, 아바타를 이용하여 가상공간에서 아바타에게 성폭행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처벌과 더불어 사업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사업운영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나 그루밍 등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경우 경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신고제의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 (참여자 4)

나. 교육 강화 및 새로운 보안처분의 모색

디지털 성폭력은 대체로 전통적인 성폭력에 비해 가해자의 연령이 낮으며, 심각한 죄의식 및 가해인식 없이 행해지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엄중한 처벌을 넘어서는 새로운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학계 전문가의 의견이 공통된다. 특히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재범위험성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데이터 검색 등 새로운 보안처분의 모색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가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소년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교육의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인터넷 발전 속도에 비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였다. 초등학교, 더 나아가 유치원에서부터 교육이 시작되어야 하며, 그 교육은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자 1)

처벌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는 지점이다. 예방교육이 중시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성폭력예방교육의 초점이 ‘피해자가 되지 않는 법’에 있었다면, 이제는 가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단순히 ‘아동’을 보고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의식의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여자 3)

디지털 성범죄들에게 특화된 새로운 보안처분에 대한 논의도 가능할 것 같다. 그들에게 새로운 전자발지를 채우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채팅앱, 채팅 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한다든지 그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영상에 접근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조치들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최근 애플이 AI를 이용하여 아이클라우드에 등록된 아동 성착취 관련 이미지들을 걸러내겠다고 발표해서 미국 전역에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전력이 있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불특정시기에 이러한 데이터 검색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고려해 볼만 하다. 이는 온라인 수색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다. (참여자 2)

(5)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과 도움은 불법영상물의 삭제와 상담지원이라는 것이 면접조사 참여자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피해자 상담지원, 그리고 디지털 성착취물의 삭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역량 강화 및 기관간의 협업시스템 정비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에 수반하여 이들 기관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성폭력예방 교육에 덧붙여 디지털 성착취예방 교육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에도 모두가 동의하였다.

디지털 성착취 예방교육에 있어서,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교사 등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도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부모를 상대로 한 상담 및 교육도 매우 필요하다. 부모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자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그리고 현재 상담소 종사자 등의 경우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이해나 정보가 부족한 현실이므로, 상담소 등에 종사하는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 4)

피해자 상담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의 상담이어야 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한 상담이 병행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기지원을 위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참여자 4)

5) 시사점

면접조사에 참여한 학계 전문가들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및 이를 계기로 근래에 추진된 일련의 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초적인 법제가 정비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행 법제의 구체적인 항목과 관련해서는 실효성 및 정당성에 우려를 표하며 개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학계 전문가가 FGI 분석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제·정책의 구체적 개선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중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 법제 마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사이버공간 확장에 따라 범죄의 수단과 방법도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 법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사후 처방 방식으로 행해지는 입법을 넘어,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초연결사회의 특성을 이해하여 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한 법·제도를 면밀한 검토 하에 마련하여야 한다. 지금 당장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는 메타버스를 이용한 성착취 유형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다. 여러 통계 조사에 의하면 메타버스의 주요 이용자는 10대 여성이며,⁷⁶⁾ 메타버스를 이용해 여성인 아동·청소년을 노리는 성착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⁷⁷⁾ 그러나 메타버스를 규제하는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보니, 아동·청소년 대상 메타버스 내 성착취 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메타버스를 포함하여, 끝없이 진화하는 신중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법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불법과 책임에 비례하는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규제의 사각 지역에 있던 광고·소개, 구입·시청행위에 대한 처벌

76) 2021년 1월 발표한 닐슨코리아 조사 결과를 보면, 메타버스 서비스 가운데 제페토의 이용자 비중은 7~12세 50.4%, 13~18세 20.6%를 차지했으며, 10대 이용자 비중이 60~7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77%, 남성이 23%였다고 한다. 또 다른 메타버스 서비스인 로블록스도 상황은 비슷해서, 7~12세 49.4%, 13~18세 12.9%이고, 여성 이용자가 55%였다고 한다.

；여성신문(2021. 10. 22.), “[국감] ‘신중’ 메타버스 10대 성착취 피해 잇따라... 텔레그램 사건과 유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938>.

77) 2021년 10월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2021년에 들어 피해청소년 지원단체에 한 달에 4~5건 정도 ‘메타버스를 이용한 성착취’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날 제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 가해자가 메타버스 내 대화방에 10대 피해자를 초대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며, 지난 4~5월에도 가해자가 메타버스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특정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주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며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이 확인된다.

규정을 도입한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의 엄격한 규제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 아동이 아닌 가상의 아동이 등장하는 표현물에 대해서까지 급격히 상향조정된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아야 한다. 물론 5년 전 헌법재판소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실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배포 등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법정형이 대폭 상향된 현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충격적인 범죄사건을 계기로 조성된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형벌의 비례성을 도외시한 채 신속하게 법정형을 상향한 입법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의 경우에도 불법과 책임에 비례하는 처벌이어야 한다.

(3)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 규제 범위의 확대

아동이나 청소년을 온라인 대화로 유인해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이 현행 법제에 포함되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범죄에서 그루밍은 피해자들과 신뢰를 형성하여 성적 학대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범죄상황이 외부로 노출될 위험을 낮추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또한 그루밍이 지속되어 이미 성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성적인 의도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단계부터 차단해야 사실상 무한대인 피해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루밍 행위의 처벌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성착취 범죄의 예비단계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그루밍 행위가 반드시 온라인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오프라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그루밍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루밍 성범죄에 대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이를 처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4)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한 수사법제 정비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온라인 사이트나 SNS 등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적발이 용이하지 않다. 익명성에 철저히 숨어서 아동·청소년을 성

적으로 약탈하는 가해자들을 찾아내고 처벌하기 위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수사특례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더하여,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착취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온라인 수색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온라인 수색이란 국가가 타인의 정보기술시스템에 동의 없이 혹은 비밀리에 접근하여 저장된 기록을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며, 쉽게 설명하자면 국가에 의한 해킹행위라고 하겠다. 다만 잠입수사 기법이나 온라인 수색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할 우려를 내포하므로, 그 요건과 절차를 정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5) 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피해 영상물의 삭제 지원이다. 현재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차단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다. 이 지원센터는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 대책(2017. 9. 26.)」에 따라 2018년 설치된 이래로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을 위한 기술적인 시스템과 채증·수사 지원, 검색, 추적, 삭제 지원, 유포현황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성폭력상담소 등 다른 피해자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수사·법률·의료 등에 관하여도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자 등이 신고하거나 제보한 불법정보에 대해 심의하고 해당 정보에 대해 직접 삭제를 요구하거나 접속차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엄밀히 살펴보자면, 현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불법정보와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권한이 없고, 피해자의 요청, 신고에 따라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하거나, 경찰청에 채증 자료를 작성하여 제보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된다. 이로 인해 디지털 성착취물의 신속한 삭제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차단조치의 신속성, 효율성,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시스템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6) 기타

온라인 매체 등에 익숙하고 인터넷을 통한 활동이 활발한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고 즐기는 잘못된 문화와 관행에 젖어들지 않도록, 안전하고 성평등한 디지털 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초·중·고 학교교육에 편입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업무종사자(예컨대, 교사, 피해아동기관 종사자 등) 및 보호자를 위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을 수행할 기관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디지털 성착취의 경우 그 범죄수단의 특성으로 인해 범죄내용과 결과가 중합은 부인할 수 없지만, 종래의 형법원칙을 왜곡할 정도의 과도한 처벌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전통적인 형벌 이외에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새로운 보안처분의 개발 및 도입은 검토될 수는 있다. 예컨대, 재범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팅 애플리케이션, 채팅 사이트의 접속내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한다든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영상에 접근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조치들을 모색해 볼 수 있다.

5.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정책 담당자 조사

1) 조사 목적

정부가 추진 중인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대응정책과 관련하여 부처별 이행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정책 담당자 10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의 목적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각 부처 정책 담당자가 인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의 개념 및 현황을 파악하여 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둘째,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대응정책과 관련하여 주요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과 각 부처 간 협업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제도의 개선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정책 담당자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제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2) 참여자 및 조사방법

조사 대상은 경찰청,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담당자 등이다. 조사방법은 정책간담회를 겸한 대면조사를 계획하였으나, COVID-19 상황으로 대면접촉이 용이치 않아 서면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서면질문지는 각 부처별 업무현황에 따라 별도로 작성·제공하였으며, 충분한 검토 및 내부 논의를 거쳐 답변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여유 있게 설정하였다. 조사는 2021년 11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되었다.

〈표 III-8〉 정책 담당자 서면조사 참여자 현황

구분	소속
참여자 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참여자 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
참여자 3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참여자 4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참여자 5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참여자 6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참여자 7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참여자 8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권익침해방지과
참여자 9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참여자 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심의지원단 확산방지팀

3) 정책 담당자 서면조사 결과 분석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개념에 대한 인식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범죄’의 개념 및 포섭범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일부 부처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만 집중하여 ‘성착취물 범죄’로 한정시켜 파악하는 듯한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사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정책 담당자들은 현행 법률에 ‘성착취’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음을 지적하면서도, 각 부처가 ‘성착취’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응답을 하였다. 경찰청의 경우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란사로테 협약에 근거하여 성착취란 ‘성학대,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성인에 대해서라고 하더라도 협박·강요·유인 등에 의해 성착취 영상물 또는 성학대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 등은 성착취 범죄로 파악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답변을 주었다. 또한 경찰청은 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한 범죄 뿐 아니라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도 성착취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에서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란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의 몸과 마음의 결정권을 침해하

는 범죄'로 이해하면서, 현실이 아닌 가상공간에서만 피해자와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 디지털 성착취 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한편, 조사에 참여했던 정책 담당자 중 일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자기촬영물의 심각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일선 경찰 및 대중의 시선을 지적하기도 했다. 예컨대 '섹계' 혹은 '일탈계'의 운영자가 교복을 입은 자기촬영물을 업로드하는 등의 사례에서 이들이 스스로 자신을 촬영하거나 또는 스스로 촬영대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하여 디지털 성범죄로 보지 않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성착취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하여 규범적 확인이 명확하지 않은데서 비롯되는 혼선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에 대응하는 법제·정책을 모색하는 논의에서는 성착취의 개념이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하며, 이에 기초한 올바른 관점의 정립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현황에 대한 진단

각 부처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파악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현황은 어떠한지 질문했을 때, 근래에 와서 관련사건 처리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그리고 오늘날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다양한 양태로 벌어지고 있으나, 큰 틀에서 보면 협박 혹은 온라인 그루밍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진단이었다. 즉,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목적을 갖고 고의적으로 온라인에서 접근하여 신뢰를 쌓아가다가, 성구매, 성적 영상물 제작 강요, 기망을 통한 성관계 요구(가해자와 연인 사이라고 믿게 한 뒤, 자신을 위해 제3자와 성행위를 할 것을 요구 등), 노출 사진 촬영 강요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그 이후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유포를 빌미로 신고를 막고 가해행위를 지속하거나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범죄가 진행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진단이 있었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여러 유형의 가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는 특성에서 '거대한 생태계'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즉 특정한 개인이 전체 범죄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각 가해자들이 서로 제작자, 유포자, 참여자 및 소비자를 자처하며 디지털 성착취 범죄라는 큰 퍼즐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각 유형 가해자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집단적 성폭력’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COVID-19의 영향 등으로 디지털 환경이 아동·청소년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가는 만큼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훨씬 증가하였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조사 참여자의 다수 응답에서 확인되었다.

(3)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대응 정책의 이행 현황

2017년 9월 범정부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이 발표된 이후, 2018년 4월 30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하였고, 2020년 4월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이 심의·확정되었으며, 2021년 1월부터는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 운영도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데, 관련부처에서의 정책 이행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었다. 주요 부처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대응 업무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서면답변을 받은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경찰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죄 수사업무 분장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경찰은 온라인상의 유포범죄⁷⁸⁾인가 오프라인상의 성폭력인가를 기준으로 사이버성폭력수사대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의 업무를 구분한다고 한다. 각 시·도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담당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유포 범죄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여성청소년범죄 수사담당은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성폭력 범죄를 중심으로 수사하되, 수사진행과정에서 온·오프라인 성폭력 사건이 추가로 밝혀지는 경우에도 사건 접수당시를 기준으로 한 업무분장 체계에 따라 해당부서가 계속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8년

78)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①불법촬영물(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3항), ②아동성착취물(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③불법합성물(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④ 불법성영상물(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등을 유포하는 범죄

3월 이후 전국 시·도경찰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의 규모는 현재 18개청 21개팀 102명이라고 한다. 한편 경찰청은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2019. 11. 12.),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보호·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지원기관들과 연계하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피해가 중대하거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민간 상담소와 함께 피해자 지원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생계비, 의료비, 학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2020년 12월 8일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3조의2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2022년 예비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 본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조사관련 세부 내용으로서 주기, 방법 및 내용은 예비연구 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시책

정보통신망법 제41조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정규모의 사업자를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 유해정보 접근제한 조치의무를 점검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및 유해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사이버안심존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과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스마트안심드림 애플리케이션을 각급 학교 및 학부모·학생들에게 보급하고, 인터넷개인방송이나 랜덤채팅 등 신유형 서비스의 역기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사업자의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업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9년 9월부터 디지털성범죄 전담조직인 ‘디지털성범죄심 의지원단’을 신설하여 디지털성범죄정보를 24시간 이내 처리하고 있으며, 경찰청과의 ‘불법정보공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실시간 업무연락을 통해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조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에 대한 처리명령(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에 명령 현황 을 묻는 질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 24시간 이내 삭제 등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긴 시간(7일 이내 심의)을 필요로 하 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정보 ‘거부·정지 또는 제한’처분이 이루어진 사례 는 없다는 설명을 하였다.⁷⁹⁾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 성가족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심의 지원단’ 및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신설 이후, 2019년 11월 여성가족부, 경찰 청, 방송통신위원회와 4개 유관기관 간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여, ▲디지털성범죄 상시 협력체계 구축, ▲협력체계 현황 점검 및 추진·협조 사항 논의를 위한 분기별 협의체 운영,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 물 재유통 방지를 위한 통합 특징값(DNA) DB ‘공공 DNA DB’ 구축 등 협력하고 있 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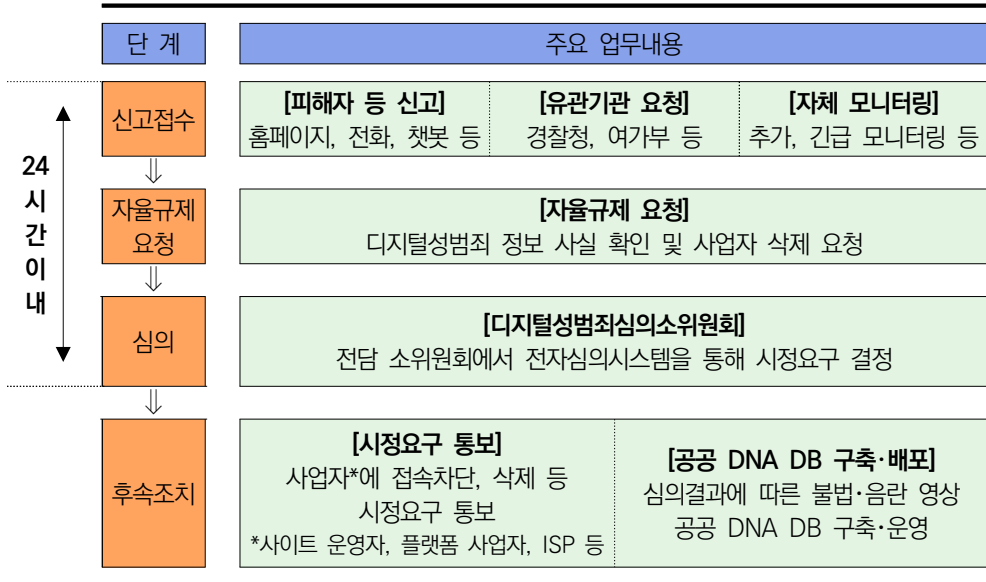
79) <표 III-9>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구분	심의	시정요구 (단위 :건)			
		계	이용해지	삭제	접속차단
2018년	17,486	17,371	0	123	17,248
2019년	25,992	25,900	0	4	25,896
2020년	35,603	35,550	2	22	35,526
2021년(~10월)	18,690	18,589	0	27	18,562

<표 III-1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구분	심의	시정요구 (단위 : 건)			
		계	이용해지	삭제	접속차단
2018년	71	52	2	10	40
2019년	134	128	2	2	124
2020년	182	182	7	2	173
2021년(~10월)	86	85	2	0	83

〈표 Ⅲ-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 인지 및 처리절차



마. 교육부의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교육부는 각종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는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공동체의 양성평등한 환경 조성을 통해 학교 현장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고도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내용을 법적 의무 교육에 반드시 포함하여, 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내용을 담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 요령에 대한 콘텐츠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제공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성인지 역량 향상을 통한 인식 개선이 중요함에 따라 학교급별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과 교과과정 및 범교과 교육과정에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거나,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지 않도록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정책사업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과 소규모 학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관련 콘텐츠 아카이브 활용으로 학교 내 교육에서 콘텐츠 접근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통해 학교 내 교육적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

(4) 법제 개선 논의에 대한 각 부처의 검토의견

정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서면조사에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대응 법제의 개선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광범위한 내용들에 대해 검토의견을 요청하였다. 처벌흡결에 대한 입법적 보완, 디지털 성착취 범죄 수사법제 정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도입, 예방교육 강화, 각 부처 피해자 지원체계의 연계·협력 강화, 아동·청소년 권리기반 접근을 통한 회복적 사법의 실천, 범정부 디지털 성착취 대책 전담기구 설치, 디지털 성착취 관련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화 등에 대한 정당성 및 실효성 평가를 요청하였을 때, 참여자들은 각 부처의 공식의견으로 명시하지는 않으면서도 부처 현장의 입장을 담은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처벌 흡결에 대한 입법적 보완 논의에 대한 의견

(가) 신종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 종래 SNS와 게임에서 제공되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최근 급속히 확산되면서,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장소가 메타버스로 이동·진화하고 있는 징후가 포착되는 것과 관련하여, 끝없이 진화하는 신종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입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다. 이러한 논의에 일부 응답자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만으로는 온라인상 아바타를 상대로 이뤄지는 강제추행 등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에 공감하는 의견을 덧붙였다. 지난 10년간 아동·청소년의 플랫폼 사용 변천사를 살펴봤을 때, 2010년대 초반에는 ‘카카오톡’, 2010년 중후반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그 중심에 있었고, 2020년 경 부터는 ‘틱톡’이 새롭게 부각되었는데, 최근에는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플랫폼에 청소년들이 모여들고 있는 특성을 지적하면서, 특히 ‘아바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낯선 사람에 대한 심리적 경계를 한층 더 약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가해자들이 아바타를 여성 혹은 피해자의 또래 등으로 스스로 꾸미고 설정할 수 있어 범죄가 더욱 용이해진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응답자는 지난 10월 27일 SNS에서 수개월 동안 ‘중학생 언니’ 행세를 하며 초등학생에게 접근, 범행 목적으로 유인해 만난 20대 남성이 검거된 사례⁸⁰⁾를 제시하

며, 자신의 신분과 성별, 사회적 위치 등을 고의로 숨기거나 왜곡하는 수법은 성착취 가해자들이 빈번히 사용하는 방법이며,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를 이용할 때 가해자들이 스스로를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더욱 용이해지는 점에 대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종래부터 오프라인 상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던 범죄행위들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여러 디지털 성범죄 유형들을 파생시켰고, 이제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으로 디지털 공간이 확장됨에 따라 성착취의 가능성이 더욱 다양해지고 용이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메타버스를 통해 성착취가 진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착취가 변질 수 있는 플랫폼의 수가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성착취는 결국 유형 및 가해 수법이 텔레그램 내 성착취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메타버스라는 ‘신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착취가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메타버스가 기성세대 혹은 연구자들에게 분류되고 명명되기 훨씬 이전부터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가상공간 속에서 관계를 맺고 ‘제 2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거리낌 없었으며, 해당 기술들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10대 혹은 그 이하 아동·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 가해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주목한다면 대응입법의 범주에 「소년법」 등을 별도의 섹션으로 추가하는 방법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 전반에 대한 논의 및 입법개선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의 감소를 도모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그루밍행위의 규제강화와 관련하여 - 그루밍행위 자체는 성적 행위가 아닐 수 있지만, 성인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아동과 친밀해지기 위해 접근하고, 그 이후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성착취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랫동안 있어왔으며, 이에 청소년성보호법은 일정한 그루밍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다만 성착취 범죄의 예비단계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그루밍행위가 오프라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그루밍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보완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일부 정책 담당자들은 이러한 개

80) 박윤주 (2021. 10. 27), “[Pick] SNS로 ‘중학생 언니’인 척... 초등생 유인한 20대 男 구속”, SBS, retrieved from: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12430.

선의견에 찬성하였을 뿐 아니라 현행 그루밍처벌규정의 또 다른 한계점들을 지적하며 추가적인 개선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우선, 현행의 청소년성보호법상 그루밍처벌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 등을 지속할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연령이 낮아지는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하였다. 미성년의 아동·청소년이 자신보다 어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루밍 범죄를 범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인 것이다. 아동·청소년이 아동·청소년을 그루밍하여 성착취를 행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음을 입증하는 예로 2020년 4월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건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에 의하면, 해외에 거주하던 한국인 고등학생이 그루밍 수법을 통해 중학생 피해자를 1년여 기간 동안 성적으로 착취하였다.⁸¹⁾ 그리고 그루밍처벌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것은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이라고 오인하고 그루밍을 시도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온라인 그루밍범죄에 대해서는 신분비공개 수사가 가능하지만, 성인인 수사관을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고 그루밍을 시도한 사람들에게는 애초에 결과발생이 가능하지 않은 불능범이 되어 처벌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다. 미국에서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대화도 범죄로 처벌하고, 독일에서는 아동에 대한 범행이라고 오인하고 행한 그루밍도 미수범으로 처벌하며, 호주 역시 수신인이 가공의 인물이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나. 디지털 성착취 수사법제의 정비 논의에 대한 의견

(가) 잠입수사 특례규정과 관련하여 - 익명성에 철저히 숨어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약탈하는 가해자들을 찾아내고 처벌하기 위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규정을 신설한 것과 관련하여, 서면조사 응답자들은 이 제도의 도입 자체만으로도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심적 부담을 주며 범죄 예방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다만, 수사관이 잠입수사 활동을 위해

81) 이화진(2020. 4. 28.), “[단독] ‘일가족 성착취’한 또다른 n번방…가해자는 고등학생”,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21377&ref=A>.

범죄자들에게 일응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시선은 존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응답자는 위장수사를 위해 영상물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인물을 담은 영상물을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다만 경찰청에서는 위장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장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수사방법, 절차, 한계사항 등을 명시한 매뉴얼을 마련하였고, 수사관 대상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을 덧붙였다. 한편, 일부 응답자는 잠입수사 규정의 또 다른 한계점에 대한 지적을 하였는데, 현행의 제도에서 경찰은 고소·고발 또는 112신고 접수 등을 통해 범죄혐의를 인지한 상태에서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는 경우에만 신분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이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하여 온라인 채팅방을 검색하는 등의 신분비공개 수사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 온라인 수색제도의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 성범죄의 무대가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이동함에 따라 점차 더 많은 유형의 범죄정보들이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예방 또는 수사를 위해서도 디지털 기술의 역할이 커졌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온라인 수색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자는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도 진지하게 시작되고 있다. 이번 서면조사 참여자들 중 다수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일부 응답자들은 긍정적인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회복적 사법의 실천 논의에 대한 의견

디지털 성폭력은 대체로 전통적인 성폭력에 비해 가해자의 연령이 낮다는 특성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넘어서는 새로운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 즉, 처벌강화 또는 응보적 관점을 엄격히 적용하기 보다는 이들 역시 국가적 보호의 대상인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 참여했던 응답자 중 일부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오히려 우리 사회에는 가해 아동·청소년들에게 과도하게 관대한 시선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피해아동·청소년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최근의 사례 중에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영상 전화로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고,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강간 장면을 불법촬영한 뒤 유포 협박을 하여 50만원의 금전을 취득함으로써 ‘미성년자 추행, 강간, 불법촬영, 공갈, 협박’의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나, 결국 소년부로 송치되어 2년의 보호처분을 받은 바, 이 사례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5만 4,260명이 동의하였다는 사실이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⁸²⁾ 가해 아동·청소년이 아직 성인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권리가 과도히 침해되거나, 혹은 피해자가 성인이라는 이유로 가해 아동·청소년이 과도하게 감형 혹은 선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정비와 관련한 의견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과 도움은 불법영상물의 삭제와 상담지원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피해자 상담지원, 그리고 디지털 성착취물의 삭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역량 강화 및 기관간의 협업시스템 정비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에 수반하여 이들 기관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응답을 하였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국가적 책임이고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법률에서 정한 소관 직무의 범위 안에서 유기적인 연계를 하여야 하며, 여러 개별법에 산재·중복되어 있는 관련제도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각 부처는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업무분장 시스템에서 적절한 연계 및 협업을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다소 방어적인 답변을 하였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등은 사업목적, 대상, 사업내용에 각기 차이가 있으나, 긴급구조, 치료·회복, 교육, 자립·자활 프로그램 및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요청·수사지원 등의 과정에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 의사가 확인될 경우 연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자료⁸³⁾에 의

82) 청와대 청원(2020. 3. 20.),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찍은 불법촬영물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여 인생을 망가뜨린 고등학생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78>.

하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예산과 인력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으나, 현장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정규직보다 계약직에 의존하고 있는 등의 문제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범정부로 아우르는 컨트롤은 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소관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서 체계를 마련하고 일관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제안도 있다. 더불어 기관의 업무 위탁을 통해 시민단체들이 상담이나 회복지원 등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범정부적인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시민단체도 부처와 함께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도 있었다.

83)

〈표 III-1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예산 및 인력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		740	1,662	1,857	2,403
인력 (정원)	정규직	-	-	17	17
	계약직	16(12개월)	26(12개월)	50(4개월)	22(8개월)

〈표 III-13〉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예산 및 인력 현황

연번	시도	종사자 (명)	예산액 (백만원)	
			'21년 예산	'22년 정부안
1	서울	3	62	62
2	부산	3	62	62
3	대구	3	62	62
4	인천	3	62	62
5	광주	3	62	62
6	대전	3	62	62
7	울산	3	47	62
8	경기	3	62	62
9	강원	3	62	62
10	충북	3	47	62
11	충남	3	47	62
12	전북	3	62	62
13	전남	3	47	62
14	경북	3	47	62
15	경남	3	47	62
16	제주	3	47	62
17	서울(특성화센터)	3	62	62

마. 관계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화에 대한 의견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현장전문가, 활동가 등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논의와 관련하여,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일부 응답자들은 특히 피해자지원기관의 경우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절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업무역량강화 교육을 기관 자체적 해결에 맡길 적이 아니라, 주관 부처에서 1년의 교육 계획 하에 교육 프로그램 등을 미리 공지하여 담당기관의 업무 담당자의 업무 기간 등을 고려한 세분화 전문화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각 응답자들은 부처의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아동권리 및 성착취범죄의 특수성에 관한 교육 이수 현황을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경찰의 경우, 경찰수사연수원과 인재개발원에서 여청수사관과 지역경찰관서 근무 경찰관을 상대로 기초, 심화 등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시·도 경찰청에 있는 교육센터에서도 수사기법 및 수사과정상의 유의사항에 대해 입교 또는 화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교육부 직속 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을 통해서도 아동·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전담수사를 위해 전국 해바라기센터(총 39개소 중 수사관은 33개소에 162명 배치)에서 배치된 수사관은 동국대학교에서 인지심리학을 기반으로 개발된 아동장애인 피해조사기법 수준별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는, 국선 피해자변호사에 대한 아동권리교육전문화교육(권역별)이 1년 1회 총 12시간(2021년 기준), 성폭력 관련 ‘경찰수사 현장실무’, ‘아동보호기관 현장실무’(각 1시간) 실시되고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교육부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교원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여성가족부의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이 실시하되, 여성가족부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여성가족부는 관계기관 종사자 대상 아동권리 및 성착취 범죄의 특수성에 관한 교육 실적자료를 보내왔는데,⁸⁴⁾ 이에 의하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 해바라기센터 상담·동행 직군을 대상으로 지원실무교육 이외에도

현안 쟁점 및 사례분석,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피해자 보호제도 및 지원전략, 청소년의 성, 권리로 접근하기, 사이버 플랫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 등에 대한 교육이 연 1-2회, 6-8시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 디지털 성착취 피해 예방교육의 강화에 대한 의견

전통적인 성폭력예방 교육에 덧붙여 디지털 성착취예방 교육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에는 모든 응답자가 동의하였다. 다만, 현행 4대 폭력 예방교육 안에 디지털범죄 관련 내용을 넣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4대 폭력 예방교육은 교육 대상에 따라 의무 사항이 다르고 각각의 개별법에 각각의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통합교육을 권장하고 있으며 주무부

84) <표 III-14> 관계기관 종사자 대상 아동권리 및 성착취 범죄의 특수성에 관한 교육현황

번호	과정명	대상	방식	내용	시수(주기)
1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상담지원 I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화상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상담 • 성착취 범죄 특성 및 지원체계	8h, (연 1회)
2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상담지원 II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	화상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상담 • 온라인 아웃리치 실무	8h, (연 1회)
3	법률지원 역량강화 (성매매 관련법의 이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화상	• 성매매 피해자 법률지원 • 현안, 쟁점 및 사례 분석	6h, (연 1회)
4	법률지원 역량강화 (아동·청소년 관련법의 이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화상	•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 피해자 보호제도 및 지원전략	6h, (연 1회)
5	성매매 법률지원 역량강화 (법률문서 작성)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	화상	• 성매매 관련 법률, 사건처리절차 • 법률문서 작성 실습	8h, (연 1회)
6	성매매 피해자 상담 지원과정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	화상	• 인신매매 피해자 법률지원 • 성매매 피해자 정신건강 지원	8h, (연 3회)
7	해바라기센터 상담·동행직군 역량강화 과정	해바라기센터 상담·동행 직군	화상	• 아동·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상담지원	6h, (연 1회)
8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교육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	화상	• 청소년의 성, 권리로 접근하기·사이버 플랫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 사례분석 및 지원 실무	9h, (연 2회)

<표 III-15> 관계기관 종사자 대상 워크숍 등 현황

번호	행사명	대상	방식	내용	주기
1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지원 센터	화상	센터 역할과 기능(지원센터 사업 개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지원센터 사례지원 모델) 등	연 2회.
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권역별 컨설팅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지원 센터	화상	센터 업무,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방안 관련 토론 등	권역별 1회 총 4회

처에서도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강제한다면 관련 법 정비 없이 어느 법에 포함시킬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교육이 어떻게 실시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책무성을 무겁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기도 하다.

사.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도입에 대한 의견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의 고통을 고려한다면 신속한 삭제·차단 등의 긴급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공감하였고, 이를 위한 국가 수사기능의 역할 및 필요성도 인정하였다. 다만 응급조치의 내용으로 논의되는 사업자를 통한 경고문구 현출과 접속차단 방식은 현재의 방식과 차이가 없으며, VPN을 이용한 우회접속과 도메인 수시변경 등으로 인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만일 응급조치를 도입한다면 선관위의 삭제명령권과 유사한 형태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제안도 있었다.

한편, 응급조치의 도입으로 수사기관에게 직접 삭제 및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도 있었다.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독립적으로 인터넷 내용규제를 수행하는 합의제 형식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소속 독임제 형식의 수사기관에게 인터넷 내용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수사기관에 삭제, 차단의 권한을 부여하는 응급조치의 도입에 원칙적으로 반대의 입장이지만, 만일 이러한 조치를 제도화한다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 기타

디지털성착취 범죄의 경우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그 전파력이나 지속력으로 인해 영구적·불가역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법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온

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게 된다면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요청이 사실상 실효성을 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의 해결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덧붙여지기도 했다.

그밖에 성범죄 보도 준칙 준수를 위한 윤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성범죄 등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기자협회 발표 「성폭력범죄보도 세부권고기준」(‘12.12.),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18.10. 여가부 협업) 등이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언론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피해사실을 희화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피해자를 특정하는 등 2차 가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통합된 성범죄 보도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현재 보다 엄중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시사점

서면조사에 참여한 주요부처 정책 담당자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범죄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오프라인의 경계없이 다양한 양상으로 확산되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및 이를 계기로 근래에 추진된 일련의 법·제도 개선 내용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을 부처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성착취범죄의 피해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이나 그들을 지원하는 관계종사자들의 증언과는 달리, 현행의 시스템 안에서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가 분절적으로 중첩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의 보호라고 하는 국가적 책무를 이행하는 각 부처에는 형식적으로만 확인되는 연계·협업을 넘어 실질적으로 피해당사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제도 안에서 큰 과오 없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이 아닌가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적극적인 법제 개선 논의와 관련하여서도 법적 근거 및 현실적 제약 등을 이유로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의 권리 인식에 기반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6. 소결

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관한 명확한 관점 정립과 법제 정비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성착취 범죄를 성범죄, 성폭력범죄,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으로 구분하고 ‘신분비공개수사’나 ‘신분위장수사’가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 종사자와 학계 전문가, 정책 담당자 대부분 ‘성착취’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책 담당자 가운데에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한정해 좁게 파악하고 있는 참여자도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경험에 따르면, 모두 아동·청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발생한 착취적 범죄였으며, 범죄의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로 중첩되어 발생하였다.

성매매범죄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은 모두 피해자라는 관점이 정립되고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피해자’라는 정체성을 사회 전체가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삭제 등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성매매와 성착취를 구분하고, 성착취 범죄를 아동·청소년의 타, 비행, 범죄로 간주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마주할 수 있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이용당한 아동·청소년이 죄책감을 갖거나 가정에서 이로 인한 또 다른 폭력에 노출되기도 했다.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은 성매매를 한 자신의 잘못이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었다는 답을 하기도 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이 성행위에 동의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은 어디까지나 매개일 뿐, 성착취 범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아동을 유인·강요하거나 성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는 관점 또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조사에서도 참여자 대부분 ‘디지털 성착취 범죄’란 온라인을 수단으로 발생하는 모든 성범죄로서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지위적 특성을 이용한 착취적

성격의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환경을 매개하는 모든 형태의 범죄를 아우르는 입법적·사법적 결단 또한 필요하다. 학계 전문가는 성착취의 핵심적 개념요소로 ‘대상의 취약성’을 꼽았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취지에 부합하여 진정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제로 개편되는 과정에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⁸⁵⁾ 폐지는 필수 과제라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에서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폐지 이후에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가출과 음주, 흡연 등을 이유로 혹은 성매수납을 공갈했다는 범죄사실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았던 사례가 확인되었다.

2)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사법·지원체계 마련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 결과, 수사 전반에 아동친화적인 절차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없이 아동·청소년 홀로 조사에 참여하거나 아동·청소년 의사에 반해 경찰에 신고되고 보호자에게 알려졌으며, 조사를 받는 피해아동·청소년 앞에서 가해자에게 전화하여, 참여자의 실명과 신고 사실을 언급한 경찰도 있었다. 아동·청소년이 피해를 입은 즉시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보다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수사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밀이 유지되는 안전한 신고방법 또한 모색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의 당사자는 아동·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묻고 직접 소통하는 기관을 찾기 어려웠다. 수사기관에서 아동·청소년과 소

85)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통하는 사람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 때 한 번 만나는 경찰이라는 응답이 있었으며, 피해자 변호사가 있지만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신고 단계에서부터 재판, 이후 사후 지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발달단계, 처한 개별적 상황과 특성이 고려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에게 관련 상황을 각자에게 맞는 언어로 안내되어야 하며, 표명된 의견은 실제로 절차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학계 전문가는 최근 법제 개선에서 피해자의 연령에 따른 섬세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 대부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후 절차에 대한 안내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는 들은 적이 없으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참여자 대부분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특히 보호자에게 성착취 범죄 피해를 알릴 수 없는 경우, 수사과정에서 보호자 외 성인의 조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아동·청소년 참여자들의 응답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수사방법 또한 아동·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관계 종사자 조사에서 경찰들이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가해자 정보를 알아낸 뒤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변호사는 이와 같이 피해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수사방식은 지양되어야 함을 지적했으며, 아동·청소년 조사 참여자 또한 합정수사는 수사의 초점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 담당자 또한 수사관이 위장수사 등으로 잠입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아동·청소년의 개별적 욕구와 연령 등의 상황을 고려한 전문화된 지원체계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 또한 각 지역에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기관이 확충되고, 보다 촘촘한 지원이 연계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3) 범부처 컨트롤타워 조성 및 통합적인 대책 마련

아동·청소년이 마주치는 어떠한 환경에서든 그들의 기본적 권리가 지켜지는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통합적인 정책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다. 관계 종사자들은 분절되고 중복되는 피해자지원체계

를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에서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이미 관계를 맺은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 청소년복지지원체계 등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교육부가 운영하는 위클래스,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쉼터 등 성착취 범죄피해 대책 및 예방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사실상 범죄피해가 방지되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관계 종사자들은 각 기관 간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지원 또한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된 내용, 피해아동·청소년에 관한 정보 등이 공유되지 않아 각자 지원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반면, 정책 담당자의 경우 현재 각 부처 간 적절한 연계 및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으며, 부처 간 협력 또한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일부 부처끼리만 논의되고 있는 현실 또한 할 수 있었다.

모든 지원체계의 중심은 공급자인 기관이 아닌 ‘아동·청소년’이어야 한다. 관계 종사자들은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 로드맵(roadmap)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 담당자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는 소관 업무를 넘어 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 소속 위원회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범정부적인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시민단체도 부처와 함께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법원행정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마련된 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두가 함께 모니터링해야 한다.

4) 디지털 매체(온라인 플랫폼) 관련 기업에 대한 책무 부과 및 관련 법제 정비

아동·청소년 당사자, 관계 종사자, 학계 전문가가 제시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유입되고 발생하는 매체는 굉장히 다양했다. 조사 참여자들은 모두 이러한 성착취 범죄가 특정 매체에 국한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범죄의 수단이나 유형은 계속 진화하는 대신 이를 수사하는 데에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점 또한 제시되었다. 수사기관은 해외에 서버를 두는 등을 이유로 디지털 매체에 대한 영장 집행이 어려운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매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국가협정 등 부처를 넘어선 근본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책무를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계 전문가 또한 불법적 미디어의 소비, 생산, 유통의 경계가 붕괴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혹은 관련 사업 운영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메타버스 등 끝없이 진화하는 신종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온라인 사이트 폐쇄 등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조사에 따르더라도, 익명성과 정보의 휘발성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급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관련 기업의 의무를 강화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입법적·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5)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대부분 은밀하게 발생하고 그루밍 등으로 종속적 관계가 시작되기 쉬운 특성상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아웃리치 활동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서 더 큰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은 성착취 범죄 매개 정보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정책 담당자 조사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는 여러 유형의 가해자들이 유기적·적극적으로 협업해 ‘거대한 생태계’의 특성을 가진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계 전문가 또한 가해자들이 성착취물을 유료화하여 범죄수익을 창출하였을 뿐 아니라 다수가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수행하는 특성을 지적하면서, 재범 예방을 위한 새로운 보안처분의 개발 및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예컨대, 재범가능성이 있

는 경우 채팅 애플리케이션, 채팅 사이트의 접속내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한다든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영상에 접근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조치들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6) 디지털 환경에 국한하지 않는 오프라인 범죄를 고려한 종합적 대응

대부분의 관계 종사자들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 디지털 환경에서 일어나는 행위태양에 관한 처벌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성착취 범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 모두에서 넘나들며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오프라인에서 성착취 범죄로 시작되었지만 관련 성착취물 유포 등 온라인 범죄까지 이어지는 사례 또한 많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디지털 환경을 매개로 한 성착취 범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다는 점은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에서도 나타났다. 학계 전문가도 또한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성착취는 그 행위나 행위의 결과가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을 불문하고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로 포섭하고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았다.

7) 삭제 지원, 지속적인 심리·정서 지원 등 실효적 지원체계 마련

디지털 성착취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필요한 지원과 도움으로 관계 종사자와 학계 전문가 모두 ‘삭제 지원’이 공통된 견해였다. 정책 담당자의 경우에도 삭제 지원과 심리·정서 지원이 중요한데,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역량 강화와 기관 간 협업, 관련 기관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진술이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 또한 모두 유포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진술하였다. 완전한 삭제까지는 어렵더라도 피해자가 만족할 수준의 삭제 지원을 위해서는 좀 더 기술적인 보완과 발전과 함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검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삭제 지원 관련 기관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센터에게 관련 매체에 ‘경고’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학계 전문가 또한 현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 센터는 디지털 불법정보와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권한이 없고, 피해자의 요청, 신고에 따라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하거나, 경찰청에 채증 자료를 작성하여 제보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한계를 제시하며, 디지털 성착취물의 신속한 삭제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차단조치의 신속성, 효율성,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시스템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이어야 한다. 민사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이 입은 정신적 피해, 삭제 지원 비용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로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착취 범죄 피해 구제와 대응에 있어, 무엇보다 ‘지속적인’ 심리·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판사 등 관계 종사자는 피해아동·청소년의 궁극적인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심리·정서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에 따르면이라도 피해아동·청소년은 일상의 다양한 트라우마를 보고하기도 했다. 학계 전문가 또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상담지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조사 참여자의 경우 적절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관련 기관에 대한 인력과 예산 확충 또한 필요하다. 학계 전문가는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현실을 우려하며, 각 기관의 역량 강화 및 기관 간의 협업시스템 정비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8) ‘예방’을 위한 ‘교육’ 마련

‘예방’을 위한 ‘교육’은 아동·청소년과 관계 종사자, 학계 전문가가 한 목소리로 강조한 과제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일상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 담당자 또한 예방을 위한 교육의 양적·질적 확대에 대해 모두 동의하였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처벌 강화, 응보만으로 척결할 수 없다.

교육의 대상을 아동·청소년에 국한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 관계 종사자는 가정, 학교, 사회, 국가 모두 함께 디지털 성착취 범죄 근절과 예방이 우리의 과제라는 인식, 그 범죄가 아동·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계 전문가는 전통적인 성폭력예방 교육에 덧붙여 디지털 성착취 예방 교육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며, 안전하고 성평등한 디지털 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업무종사자(예컨대, 교사, 피해아동기관 종사자 등) 및 보호자를 위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을 수행할 기관의 전문성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기술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에서 겪게 될 위험과 기회 요소들에 관한 교육도 필요하다.

특히, 정책 담당자 조사에 참여한 교육부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관한 내용을 법적 의무교육에 포함시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아쉽게도 아동·청소년과 관계종사자 조사에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관계 종사자와 아동·청소년 모두 교육에는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는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아동·청소년 참여자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공통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9)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체계와의 연계와 협력

결국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은 국가가 보호할 책무를 지는 아동이자 청소년이다. 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은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는 아동·청소년들의 피해 구제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조사 참여자 중에는 아동학대, 부모 빈곤 및 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등으로 가정해체를 경험하거나, 가정 내 갈등과 위기 상황에서 탈가정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다수 있었다. 하지만 관계 종사자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아동학대 등 아동보호시스템에서 성착취 피해아동은 배제되어 있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방향 아래 아동보호체계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되었는데,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또한 이러한 시스템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처와 기관을 넘어 함께 협력해야 한다.

아동보호의 핵심 가치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자, 가정의 역할은 중요하며 보호자가 미치는 영향력 또한 막대하다. 아동·청소년 심층면접조사 결과, 보호자 대부분 사전에 성착취 범죄를 충분히 알고 관련된 정보에 접근 가능했던 경험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가족 상담을 거부한 보호자도 있었다. 아동·청소년의 일상유지와 가정환경 지원을 위한 보호자 대상 의무적 상담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 등 관계 종사자는 아동·청소년이 적절하게 지원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10) 아동사법제도의 취지 이행

‘처벌’보다 ‘예방’의 관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아동사법제도의 취지는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성을 전제로 ‘회복과 사회복귀’에 있으며, 이러한 아동사법제도의 목적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도 관철되어야 한다. 학계 전문가 또한 소년법에 대한 처벌 강화보다 교육의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 담당자의 경우에도 응보적 관점보다 법을 위반한 아동 또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아동·청소년이 연루된 경우, 대

부분의 종사자가 지적인 특징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었다. 지원 기관이 가해아동·청소년을 마주하게 되었을 경우 때로는 지원의 방향을 고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해아동·청소년 또한 아동·청소년이라는 관점을 놓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관계 종사자 특히 판사는 아동이 가해자의 위치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지만 그 역시 학대피해아동 등 가정환경이 해체되거나 어려운 양육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했다.

11) 종사자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결국 법·제도·정책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아쉽게도 본 연구의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종사자 가운데 아동 권리에 기반한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성범죄, 아동학대예방 교육이 종사자에게 의무 교육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실천을 도모할 수 있는 실천적인 인권 교육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책 담당자 조사에서도 이러한 교육·훈련을 기관 자체에 내맡길 것이 아니라 부처가 주도하여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과 훈련은 결국 전문성과도 맞닿아 있다. 관계 종사자 조사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전문성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시각에서 필요한 정보와 상담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가해자를 잡기 어렵다거나 신고를 귀찮아하는 느낌을 보고하는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낮은 인식 수준이 주요하게 지적되었다. 조사를 받는 피해아동·청소년 앞에서 가해자에게 전화하여, 참여자의 실명과 신고 사실을 언급한 수사기관도 있었다. 학교에서 적절한 지원이 제공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상담교사가 2차 가해를 야기한 경험도 보고되었다. 결국 이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이 업무에 전문성을 축적하고, 이렇게 축적된 경험이 조직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이 제도와 되어야 한다.

IV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국제법규 및 해외사례

1. 국제법과 국제기준
2. 독일의 현황 및 입법례
3. 일본의 현황 및 입법례
4. 호주의 현황 및 입법례
5. 소결

1. 국제법과 국제기준

2020년 영국의 인터넷 감시재단 (Internet Watch Foundation: IWT)에 의하면 온라인 상에서 아동, 특히 11세에서 13세 사이의 여성 아동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⁸⁶⁾ 가해자가 아동 성착취 행위를 아동의 침실 등에서 직접 촬영하여 온라인에 배포한 사례는 2019년보다 77% 증가한 6만 8천여 건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80%의 사례에서 피해자는 11세 이상 13세 이하의 여성 아동이었다.

인터넷 등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아동이 포함된 성착취물이 무작위로 제작, 배포가 가능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착취는 한 국가의 사회적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닌, 국제적 접근이 필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기술의 발달과 함께 아동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가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 성착취물의 소지 또는 배포를 처벌하지 않거나 성착취 범죄와 다르게 처벌하는 현실은 아동에 대한 2차 가해 및 추가적인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 성착취를 막기 위한 조약 등의 발효와 함께 국제적인 공조와 노력이 시작되었다.

1)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하 “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 협약으로, 현재까지 미국을 제외한 유엔 가입국이 모두 비준한 중요한 국제 협약이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90년 9월 2일 발효되었고 한국은 유엔에 가입한 해인 1991년 협약을 비준하여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아동 폭력에 대하여 아동권리협약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은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당사국은 이를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제19조), 아동을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진다(제34

86) Internet Watch Foundation, 「The Annual Report 2020」, <https://annualreport2020.iwf.org.uk/>(검색일: 2021. 7. 16.).

조)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권리협약의 채택 이후에도 아동에 대한 성착취 행위가 계속되고, 피해 아동의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유엔은 「아동의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 규제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를 채택하였다. 이 선택의정서는 아동권리협약의 목적의 실현과 협약의 규정 이행을 위한 것으로, 아동을 경제적 착취, 교육에 방해되는 일,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노동(제32조), 성착취와 성 학대(제34조), 약취, 유인, 거래(제35조), 그리고 아동 복지의 모든 측면에 해가 되는 모든 형태의 착취(제36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아동의 매매, 성매매, 아동 음란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조치를 확대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선택의정서 중 피해 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주요 조항에는 제8조와 제9조가 있으며, 제8조는 형사 절차에 있어서 당사국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이 형사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피해 아동과 일하는 사람이 적절한 훈련, 특히 법적, 심리적 훈련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유형의 아동 폭력 중 특히 온라인 상에서의 아동 성착취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21년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에 대한 별도의 일반논평(제25호)」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협약 당사국과 시민사회 단체, 국가인권기구, 아동의 의견 등을 반영해 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와 기업, 개인 등 이해관계자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역할과 의무에 대한 권고를 발표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5호 중 디지털 성착취와 특히 관련있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23. 당사국은 국제인권표준에 따라 국내법을 검토, 채택 및 개정하여 디지털 환경이 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권리와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법은 기술 발전 및 변화하는 삶의 모습을 반영해야 한다. 당사국은 아동 권리 영향평가를 의무화하여 입법, 예산 할당, 그리고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기타 행정적 결정에 아동의 권리가 고려되도록 하고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공공기관과 기업이 영향평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25. 온라인상의 아동보호는 국가의 아동보호정책과 통합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사이버공격, 디지털 기술로 촉진된 온라인 성착취 및 학대 등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이와 관련된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며 피해 아동에게는 구제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아동친화적인 정보, 그리고 필요한 경우 소수언어로 번역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외되거나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고려해야 한다.

37. 아동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업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당사국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지닌다. 비록 기업이 아동권리 침해 행위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지 않더라도 디지털 서비스의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폭력에서 자유로워야 할 아동권리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당사국은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폭력을 조사, 판결 및 시정할 뿐 아니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 및 규정을 제정, 모니터링, 집행해야 한다.

VII. 아동폭력

80. 디지털 환경은 아동이 폭력을 쉽게 경험하도록 상황을 조장하고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는 데에 영향을 미치며 지금까지는 다른 방식으로 아동에게 폭력을 가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유행병 등 위기 속에서 아동이 가상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아동이 온라인상에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81.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성 범죄자는 성적 목적으로 아동을 유인하여 온라인 성 학대에 연루시킬 수 있다(예: 실시간 비디오 스트리밍, 아동 성학대 콘텐츠의 제작 및 배포, 성착취 등). 디지털 기술로 촉진되는 폭력과 성착취 및 학대는 가족과 친구, 청소년의 경우 연인처럼 아동이 신뢰하는 대상에 의해 자행될 수 있다. 괴롭힘과 명예훼손을 포함한 사이버 공격, 혹은 강요나 설득에 의해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메시지 및 이미지를 생성하고 공유하는 것, 또한 자해, 자살 시도, 섭식장애 등의 자학 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등이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해당된다. 아동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경우, 해당 아동을 위해 당사국은 가능한 예방적, 보호적,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접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82. 당사국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과 규제 및 제도를 정기적으로 검토, 갱신하고 집행하는 등 입법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폭력과 위험요소로는 신체 또는 정신적 폭력, 상해 혹은 학대, 유기 혹은 방임, 성착취 및 학대를 포함한 착취와 학대, 인신매매, 젠더 기반 폭력, 사이버 공격 및 폭행, 그리고 인터넷이나 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정보전이 포함된다. 당사국은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에 따라 안전 및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112. 아동은 디지털 환경과 관련하여 웰빙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 착취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아동 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성착취 및 학대, 아동매매 및 인신매매, 납치, 사이버 범죄를 비롯한 범죄 행위에 가담할 아동 모집 등이 있다. 아동은 자신의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면서 디지털 환경 속 경제적 행위자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이는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

113. 당사국은 관련 법과 정책을 검토하여 아동이 경제적, 성적, 그리고 기타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고 디지털 환경의 노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와 이와 관련된 보상의 기회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팔레르모 의정서

유엔은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인신매매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이하 “팔레르모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UN 국제범죄조직 방지 협약(United Nations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Convention (UNTOC))」에 부속된 이 의정서는 인신매매에 관한 국가 간의 규약을 정한 문서이다. 성매매를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특정 국가에서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를 넘나드는 국제범죄이자 마약밀매나 무기거래와 같은 조직범죄로서 다룰 것을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협약인 것이다. 팔레르모 의정서는 인신매매의 폐해와 각국 정부의 공동 대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초점을 맞춰 강제노동, 노예

제도, 가정 노역 등 관습에 따른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일체의 인신매매 행위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 의정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3p 패러다임인 예방(prevention, 입법제도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피해를 예방한다), 기소(prosecution, 가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범죄자의 자유를 구속하는 최대 형량을 정한다), 보호(protection,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한다)라는 진행원칙을 반영하였으며, 각국의 대응 방식이 이 의정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의정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점에서 세계인권선언이 밝히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아동 성착취 행위를 포함한 성매매를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성매매가 특정 국가의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제적인 인신매매의 성격을 띠어가고 조직범죄화되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로 이러한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인신매매범들을 처벌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보호 등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근원국, 경유국 및 목적국에서의 종합적이고 국제적 접근방법”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또한 아동 성착취로서의 성매매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4조와도 부합한다.

3)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아동 매매와 성착취에 관한 특별보고관⁸⁷⁾

인권을 안보 및 개발과 함께 국제사회의 3대 주요 과제로 격상시키고자 2006년 유엔 총회의 결의로 설립된 유엔 총회 산하 보조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는 아동의 매매와 성착취에 대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에 1990년 인권이사회 결의 1990/68에 의해 ‘아동의 매매와 아동 성착취에 대한 특별보고관(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an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을 임명하고 관련 특별절차 제도를 창설하였다. 아동의 매매와 아동 성착취에 대한 특별보고관은 아동의 매매와 성착취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새로운 동향에 대해 파악하며, 아동 매매와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노력에 대해 평가하고, 아동 피해자의

87)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an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https://www.ohchr.org/EN/Issues/Children/Pages/ChildrenIndex.aspx> (검색일: 2021. 10. 28.).

사회 복귀와 재활과 관련하여 권고를 내리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특별절차는 현재 유엔 특별절차 중 유일하게 아동에 초점을 둔 절차에 해당한다.

한편 특별보고관은 2015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한 아동의 매매와 성착취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유엔 가입국이 아동의 매매와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권고를 내렸다. 이러한 권고 중에는 “아동 성착취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하여 알선업자, 소개업자, 조력자 뿐 아니라 재정, 기술을 담당하는 자까지 공급 과정에 있는 모든 단계의 기관에 대한 기소 및 유죄 판결을 위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잠재적 범죄를 타겟으로 하여, 오프라인 및 온라인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확장할 것” 뿐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아동이 소송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아동이 다시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아동에 초점을 둔 아동보호 시스템에 아동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소송 등 절차에 있어 아동 피해자를 참여시키고 아동 피해자가 자신을 가지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아동이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일부로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⁸⁸⁾

88) 특별보고관이 당사국에 국가적 차원의 개선을 요구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특히 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대한 선택의정서 등 관련한 모든 지역적, 국제적 조약을 비준할 것. 또한 모든 형태의 아동 성매매 및 성범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불법화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명확하고 포괄적인 법 체계를 마련할 것
- (b)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아동 성착취에 대한 수요를 특별하게 다루는 법 체계를 마련할 것
- (c) 아동 성착취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사절차는 즉각 착수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d) 아동 성착취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하여 알선업자, 소개업자, 조력자 뿐 아니라 재정, 기술을 담당하는 자까지 공급 과정에 있는 모든 단계의 기관에 대한 기소 및 유죄 판결을 위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 (e) 성착취로부터 발생한 모든 수익과 자산은 피해자를 위한 보상 정책 등 치료와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압류하고 몰수할 것
- (f) 국가 법은 성범죄 및 성착취의 아동 피해자가 범죄자처럼 취급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아동은 성범죄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할 것
- (g) 포괄적이고 적절한 아동보호 시스템에 의하여 아동이 피해를 고발하고 신고할 수 있는 아동에 특성화된 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범죄자가 구금, 조사, 기소될 수 있도록 할 것
- (h) 범죄자의 효과적인 구금, 조사, 기소 및 제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와 교육 전문가, 법 집행 담당자, 판사까지 관련 전문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 훈련을 받도록 할 것
- (i) 형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아동이 소송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아동이 다시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아동에 초점을 둔 아동보호 시스템에 아동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j) 잠재적 범죄를 타겟으로 하여, 오프라인 및 온라인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확장할 것
- (k) 아동 성착취의 수요에 대한 모든 단계를 조사할 것 - 즉, 직접적인 관계자 뿐 아니라 중개인,

4) 유럽연합

2019년 유럽 내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아동 성착취 자료의 2/3 이상이 유럽에서 제작되었을 뿐 아니라 유럽연합 내 신고된 온라인 아동 성학대는 2010년 2만 3천여 건에서 2019년 72만 여 건으로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했다.⁸⁹⁾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유럽은 2007년 란사로테 협약(Lanzarote Convention)이라 불리는 「성착취 및 성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 유럽 평의회 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을 발효하였다. 이 협약은 아동의 성학대와 착취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며, 이를 위한 국내와 국제 공조와 협력 증진, 그리고 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국제 협약 최초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이로 인한 위험성을 지적하며, 성적 목적을 가지고 아동에게 제안하는 행위를 범죄로 확립하며 필요한 경우 비밀 수사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어 2011년에는 아동 성학대, 성착취 및 포르노그래피 방지에 관한 지침(2011/93/EU)⁹⁰⁾을 제정하여 유럽연합 회원국들로 하여금 시급히 정책을 마련하여 법률 상 미비한 점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지침은 유럽연합 최초의 포괄적 입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관계자 모두를 조사하며, 이러한 조사를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포괄적 전략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

- (l) 온라인 범죄와 여성 범죄자 등 범죄자에 대한 연구, 보호 및 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와 성공적인 진행 방식 등에 대한 연구를 주기적으로 진행할 것
- (m) 소송 등 법적 절차에 있어 아동 피해자를 참여시키고 아동 피해자가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또한, 아동이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일부로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
- (n) 아동, 사회 전체, 아동 권리 전문가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 성착취 수요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것

89)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EU Strategy for a more effective fight against child sexual abuse", 24 July 2020.

90) Directive 2011/9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2011 on combating the sexual abuse an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child pornography, and replacing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4/68/JHA,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1L0093>(검색일: 2021. 7. 19.).

법 장치로, 아동 성학대와 성착취와 관련한 범죄 행위를 정의하고, 이러한 범죄의 조사, 기소, 예방, 그리고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다루며 최저법정형 기준의 규정과 함께 신고, 조사 및 기소 절차를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관할권을 확대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의 역외 범죄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이 법적 구제 수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절차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2. 독일의 현황 및 입법례

독일에서는 온라인기반 아동청소년성착취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아동성학대 및 그루밍행위의 처벌, 잠입수사의 허용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형법,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었다.⁹¹⁾ 또한 현재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한 온라인 수색에 관한 법제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한 한국에 비해, 독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온라인상의 비밀수사 및 예방활동을 허용하는 입법적 시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례도 존재하며, 형사소송법에도 해킹을 수단으로 하는 온라인수색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⁹²⁾ 구체적인 범죄로 이행되기 이전에 위협예방이나 범죄예방의 영역에서 온라인 수색은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지만, 기본권 침해의 우려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독일의 법적 상황은 우리에게 중요한 입법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온라인 기반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

근래 독일에서도 우리나라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비교될만한 충격적인 아동성착취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 심각성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2021년 5월, 독일 경찰은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교환 플랫폼으로 추정되는 ‘보이스타운(BOYSTOWN)’을 적발해 폐쇄하고 운영진과 일부 회원을 체포하였다고 밝혔는데, 회원 수가 40만명에 이르는 이 플랫폼에서는 2019년 6월부터 주로 남자아동에 대한 성폭행 사진과 동영상의 교환된 것으로 알려졌다.⁹³⁾ 또한 2020년 6월에는 거대규모의

91) 2021년 7월 1일 Gesetz zur Bekämpfung sexualisierter Gewalt gegen Kinder에 의해 아동 성학대 관련 형법개정이 있었고, 2020년 3월 13일 Siebenundfünfzig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 Versuchsstrafbarkeit des Cybergroomings에 의해 온라인 그루밍 미수의 처벌, 잠입수사의 특별 요건 및 절차에 관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다.

92) 2017년 8월 17일 Gesetz zur effektiveren und praxistauglicheren Ausgestaltung des Strafverfahrens에 의해 온라인 수색 및 소스통신감청에 관한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신설되었다.

93) Tagesschau(2021.05.03.), “Schlag gegen Kinderpornografie-Plattform”, <https://www.tagesschau.de/inland/kinderpornografie-boystown-zit-101.html>(검색일 : 2021.10.21.).

아동 성애자 네트워크가 적발되었으며, 약 3만명이 온라인 채팅방과 게시판에서 위법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⁹⁴⁾ 이 사건이 수면으로 올라온 것은 2019년 10월 쾰른 지역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뒤 이를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한 것을 가족이 발견하면서였는데, 수사기관이 이 남성의 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경을 넘는 대규모의 용의자 네트워크가 드러났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단순히 아동성착취물을 보유하거나 공유한 것을 넘어서 아동 성폭행 등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COVID-19로 지역봉쇄가 이뤄지고 학교가 문을 닫자 이들은 은신처를 마련해 서로의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범죄 행위가 더 악랄해졌으며, 피해자 중에는 생후 3개월 된 아기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⁹⁵⁾

연방범죄수사청(BKA)은 오늘날 국제적 차원의 범죄로 진화된 아동 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에 특히 주목한다. 인터넷으로 인해 국경의 의미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장거리 데이터 교환이 순식간에 가능해진 상황은 독일과 전 세계의 경찰에 중요한 도전이라고 인식하며, 연방범죄수사청은 아동 성착취물과의 싸움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고 선언했다.⁹⁶⁾ 연방범죄수사청은 늘어나는 아동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추방 본부(Zentralstelle für die Bekämpfung von Sexualdelikten zum Nachteil von Kindern und Jugendlichen)’를 신설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추방 본부는 국내 및 해외 기소 당국과 관련 기관 및 조정 사무소 사이의 연계기능을 수행하며,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및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의 중앙본부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94) Euronews(2020. 6. 30.), “NRW: Pädophilen-Netzwerk mit wohl 30.000 Mitgliedern von Chatgruppe entdeckt”,
<https://de.euronews.com/2020/06/29/nrw-padophilen-netwerk-mit-moglicherweise-30-000-verdachtigen-entdeckt>(검색일: 2021. 10. 21.).

95) Der Tagesspiegel(2020. 6. 29.), “Mehr als 30.000 Verdächtige im Pädophilen-Fall Bergisch Gladbach”,
<https://www.tagesspiegel.de/gesellschaft/neue-dimension-des-tatgeschehens-mehr-als-30-000-verdaechtigen-im-paedophilen-fall-bergisch-gladbach/25959292.html>
 (검색일: 2021. 10. 21.).

96) 독일연방범죄수사청 웹사이트 참조 :
https://www.bka.de/DE/UnsereAufgaben/Aufgabenbereiche/Zentralstellen/Kinderpornografie/kinderpornografie_node.html(검색일: 2021. 10. 21.).

2)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제

독일에서는 1970년대 초부터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철폐하려는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약자들에 주목하는 법개정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그리고 특별한 의존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성보호가 강화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1) 형법 제13장 -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죄

독일형법 제13장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죄(Straftaten gegen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는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그 행위태양에 따라 성학대(Sexueller Mißbrauch), 성강요(Sexuelle Nötigung), 그리고 성적 괴롭힘(Sexuelle Belästigung)으로 구분하고, 다시 그 대상(행위 객체)에 따라 아동·청소년, 보호를 받고 있거나 장애가 있는 자 및 일반 성인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란물 제조·판매·소지 등의 행위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보아 제13장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다.

가. 아동·청소년 성학대의 처벌

성학대(Sexueller Mißbrauch)는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이용한 행위들을 의미하며, 독일형법은 아동에 대한 성학대(StGB §176 : Sexueller Missbrauch von Kindern)와 청소년에 대한 성학대(StGB §182 : Sexueller Mißbrauch von Jugendlichen)를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아동성학대란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적 행동(Sexuelle Handlungen)⁹⁷⁾을 하거나 아동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성적 행동을 하게 하는 경우 또는 아동으로 하여금 제3

97) 독일 형법에서 성적 행위(Sexuelle Handlungen)란 성행위 내지 신체삽입이 수반되는 유사성 행위에 한정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각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행위만을 말한다(StGB §184h). 유형, 강도 및 기간을 고려하건대 보호법익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StGB §184h에서 말하는 중요한 행위로 평가된다(BGH Beschl. v. 6.5.2020 - 2 StR 543/19, BeckRS 2020, 12562 mwN 참조).

자에게 성적 행동을 하도록 하거나, 제3자의 성적 행동을 용인하도록 하는 경우는 물론 그러한 행위를 아동에게 제안하거나 알선을 약속하는 것을 말하며,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⁹⁸⁾ 청소년성학대란 곤경(Zwangslage)⁹⁹⁾을 이용하여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성적 행동을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성적 행동을 하게 하는 경우, 또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성적 행동을 하도록 하거나 제3자의 성적 행동을 용인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며,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8세 이상의 사람이 대가를 주고(gegen Entgelt)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적 행위를 한 경우도 청소년성학대범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뿐만 아니라 21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능력 부족을 악용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제3자와 성적 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청소년성학대 범죄로 처벌하되 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다.¹⁰⁰⁾

독일형법은 2021년 7월 1일 개정을 통해 아동성학대 관련 규정의 대대적 정비를 단행했다.¹⁰¹⁾ 종래에는 §176에서 아동성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176a와

98) StGB §176 (아동성학대)

(1)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한 자
2.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하여 성적 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3자의 성적 행위를 용인하도록 한 자
3. 아동에게 제1호와 제2호의 행위를 제안하거나 알선을 약속한 자

99) StGB §18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곤경(Zwangslage)”은 피해자가 심각한 개인적 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전제로 하며, 이로 인해서 청소년이 성폭력의 위협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을 의미한다(BGH, Urteil v. 25.2.1997 – 4 StR 40/97, BGHSt 42, 399, 400 f. mwN; Beschl. v. 7. 2. 2019 – 1 StR 11/19, Rn.9 참조). 입법자가 “곤경”의 전형적 사례로 예정했던 것은 마약중독 또는 가출로 인한 긴급상황이었다(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4584 S. 8 참조).

100) StGB §182 (청소년성학대)

(1) 곤경을 이용하여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학대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18세 미만자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18세 미만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2. 제3자에 대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제3자의 성적 행위를 용인하도록 하는 경우
- (2) 18세 이상의 사람이 대가를 주고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로 하여금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학대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 (3) 21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능력 부족을 악용하여 다음 각호의 학대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01) StGBuaÄndG 2021 제1조(Gesetz zur Bekämpfung sexualisierter Gewalt gegen Kinder : 아동성폭력근절법)에 의해 2021년 7월 1일부로 개정된 형법 조문은 §66, §78b,

§176b에서 각각 아동에 대한 중한 성학대(Schwerer sexueller Mißbrauch von Kindern)와 아동성학대치사(Sexueller Mißbrauch von Kindern mit Todesfolge)를 가중처벌하였으며, 아동 성학대의 목적으로 서면이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아동에게 접촉하는 등의 행위, 즉 아동 그루밍행위도 §176의 아동성학대 조문 제4항제3호와 제4호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었다.¹⁰²⁾

개정법률에서는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아동 간의 성적 행위 합의를 의해 행해졌고 둘 사이의 연령, 발달상태 또는 성숙도의 차이가 경미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능력 없음을 이용한 경우가 아닌 한 처벌하지 않을 수 있음이 §176 제2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¹⁰³⁾ 그리고 아동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아동 앞에서 제3자가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학대를 §176에서 분리하여 §176a 아동과의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지 않은 아동성학대(Sexueller Missbrauch von Kindern ohne Körperkontakt mit dem Kind)¹⁰⁴⁾에서 별도로

§140, §174, §174a, §174b, §174c, §176, §176a, §176b, § 176c(신설), §176d(신설), §180, §181b, §183, §184b, §184c, §184i(신설)이다.

102) 개정 전 StGB §176

(4)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wird bestraft, wer
3. auf ein Kind mittels eines Inhalts (§11 Absatz 3) einwirkt, um
a) das Kind zu sexuellen Handlungen zu bringen, die es an oder vor dem Täter oder einer dritten Person vornehmen oder von dem Täter oder einer dritten Person an sich vornehmen lassen soll, oder
b) eine Tat nach § 184b Absatz 1 Nummer 3 oder nach § 184b Absatz 3 zu begehen, oder
4. auf ein Kind mittels eines pornographischen Inhalts (§ 11 Absatz 3) oder durch entsprechende Reden einwirkt.

103) StGB §176

(2) 제1항 제1호의 경우, 가해자와 아동 간의 성적 행위가 합의에 의해 행해졌고 둘 사이의 연령, 발달상태 또는 성숙도의 차이가 경미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능력 없음을 이용한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른 처벌을 배제할 수 있다.

104) StGB §176a (아동과의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지 않은 아동성학대)

(1)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아동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아동 앞에서 제3자가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한 자
2. 아동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를 하게 한 자(다만 제17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해 처벌되는 자는 제외)
3. 음란한 콘텐츠(제11조 제3항)나 그에 상응하는 대화를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
(2) 아동에게 제1항의 행위를 제안하거나 알선을 약속하거나 타인과 그러한 행위를 약속한

규정하게 되었다. 또한 그루밍행위를 아동성학대의 예비(Vorbereitung des sexuellen Missbrauchs von Kindern)라는 별도의 죄명으로 §176b¹⁰⁵⁾에서 규정하였다. 그밖에 §176c조와 §176d조에서 각각 아동에 대한 중한 성학대와 아동학대치사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아동그루밍 행위의 처벌

현행 독일형법상 아동그루밍 행위는 §176a 제1항제3호 및 §176b조 제1항에서 처벌한다.

(1) §176a 제1항제3호의 아동그루밍 - 음란한 콘텐츠나 그에 상응하는 대화를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아동그루밍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독일형법은 이러한 음란한 콘텐츠(Pornographischen Inhalt)를 이용한 그루밍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지 않은) 아동성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처벌한다. 아동에게 §184에 해당하는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음란한 녹음 내용을 들려주거나 아동에게 음란한 대화를 한 경우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아동 스스로 음란한 콘텐츠에 접근하도록 하는 등 조항의 그루밍 행위에 포함된다. 동 조항은 음란한 콘텐츠나 대화를 이용하여 아동에게 ‘영향을 주어야’ 하므로, 음란물이나 성적 관련 있는 내용에 대해 단순히 ‘이야기 하거나’ ‘알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동에게 ‘영향을 준다(einwirken)’는 것은 아동으로 하여금 성적 흥미나 충동을 일깨우는 것이어

자 역시 동일하게 처벌한다.

- (3)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 제3호의 경우 행위자가 차으로 자신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오인하였기 때문에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한해 미수범을 처벌한다.

105) StGB §176b (아동성학대의 예비)

- (1) 다음 각 호의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아동으로 하여금 행위자에게 또는 행위자 앞에서 혹은 제3자에게 또는 제3자 앞에서 성적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또는 행위자나 제3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성적 행위를 용인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제11조 3항의 콘텐츠를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 자
2. 제184b조 제1항 제3호 또는 동조 제3항의 범죄를 행하기 위하여 제11조 3항의 콘텐츠를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 자
- (2) 아동에게 제1항의 행위를 제안하거나 알선을 약속하거나 타인과 그러한 행위를 약속한 자 역시 동일하게 처벌한다.
- (3) 제1항의 경우 행위자가 차으로 자신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오인하였기 때문에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한해 미수범을 처벌한다.

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모든 형태의 심리적 영향이 이에 포함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완강함은 요구되며, 반복적인 압박, 설득, 약속, 호기심 야기, 권위의 행사, 기만, 위협 그리고 폭력 등이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한다.¹⁰⁶⁾ 일시적인 보여주거나 단 시간의 상영 또는 피상적인 이야기만으로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심리적인 영향을 준다면 반드시 신체적인 접촉이나 근접거리를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화 통화를 통해서 혹은 문자메세지를 통해서도 이러한 영향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접촉이 익명으로 행해졌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¹⁰⁷⁾ 원래 그루밍 처벌조항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아동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가해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지만,¹⁰⁸⁾ 법문에는 접촉시점에 가해자와 아동이 이미 서로 아는 사이였는지 여부에 대한 제한이 없다.

(2) §176b 제1항의 아동그루밍 - 현행의 독일형법은 음란한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그루밍행위가 아동성학대의 예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한다.¹⁰⁹⁾ 동 조항에 따르면 i) 아동으로 하여금 행위자나 제3자에게 또는 행위자나 제3자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또는 행위자나 제3자가 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또는 ii) §184b 제1항제3호 또는 동조 제3항의 범죄(실제로 또는 실제와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는 아동성착취물의 제작 또는 소지·소유)를 위하여 §11 제3항의 콘텐츠(Inhalt)를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준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1 제3항의 콘텐츠(Inhalt)를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주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콘텐츠에는 서면, 음성 또는 이미지 매체, 데이터 저장 매체, 도화 또는 기타 구현물에 담기거나 또는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해 저장과 독립적으로 전송되

106) BGH NStZ 2000, 86 m.w.N.; Hörnle LK-StGB, 12. Aufl., § 176 Rdn. 88.

107) BGH, Beschl. v. 16.07.2015 - 4 StR 219/15 - juris.

108)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5/350 S. 17.

109) 아동으로 하여금 행위자나 제3자에게 또는 행위자나 제3자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행위자나 제3자가 성적 행위를 (아동에게) 하는 것을 수인하도록 하기 위해 아동에게 '서면으로' 영향을 주는 (접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2003년에 §176 제4항제3호에 신설되었다. 그 후 2015년의 형법 개정을 통해 제13장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의 범정형이 상향되는 과정에서 §176 제4항제3호의 구성요건도 수정되었으며, 기존의 '서면'을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 외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mittels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technologie)'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 그리고 음란물의 제작이나 취득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가 추가됨으로써 동 조항의 처벌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2021년 형법개정에서는 §176 제4항제3호의 그루밍행위가 §176 아동성학대 규정에서 분리되어 아동성학대의 예비(Vorbereitung des sexuellen Missbrauchs von Kindern)라는 별도의 죄명으로 §176b에서 규정되었다.

는 내용이 포함된다.¹¹⁰⁾ 서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종이 메모를 전달하는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익명성을 요구하지도 않는다.¹¹¹⁾ 다만, §176a 제1항제3호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건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콘텐츠에는 음란한 내용이나 성적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콘텐츠를 통해 ‘유혹하거나’, ‘기망하는’ 등 영향을 주어서 성적 행위로 나아가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동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특정 아동에게 ‘영향을 주어야’ 한다. 물론 행위자와 피해 아동이 실제로 만났는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접촉이나 시도를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반복적인 재촉이나 설득, 약속, 기망 혹은 협박 등을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주고자 하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경우여야 한다. 단순히 만남을 요청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해석된다. 한편, 아동에게 영향을 주려는 행위는 주관적으로 아동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는 ‘의도’에서 행해져야 하는데, 여기서 성적 행위는 행위자나 제3자에게 또는 행위자나 제3자 앞에서 행하는 성적 행위이거나, 행위자나 제3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것을 수인하는 성적 행위이다. 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는 행위자가 아동에게 어떤 성적행위이든 상관없으며,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만 하면 충분하다. 또한 반드시 설득이나 기망, 협박을 통해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

(3) 아동그루밍 미수의 처벌 - 독일형법은 그루밍행위의 미수범을 전부 처벌하지는 않고, 제한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76a 제1항제3호의 경우든 §176b 제1항의 경우든 그루밍의 기수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행위자가 각 조항에 규정된 그루밍 행위에 착수하였더라도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행위자가 착각하여 아동에 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러지 못한 경우에 한해 미수범으로 처벌한다(§176a 제3항2문, §176b 제3항). 그루밍 미수범 처벌규정은 2020년 3월 13일의 형법개정을 통해 신설되었다. 행위자가 성적 행위를 할 의도로

110) StGB §11 (Personen- und Sachbegriffe)

(3) Inhalte im Sinne der Vorschriften, die auf diesen Absatz verweisen, sind solche, die in Schriften, auf Ton- oder Bildträgern, in Datenspeichern, Abbildungen oder anderen Verkörperungen enthalten sind oder auch unabhängig von einer Speicherung mittels Informations- oder Kommunikationstechnik übertragen werden.

111) Hamm MMR 16,425.

온라인상에서 아동인줄 알고 대화를 시도하였는데 사실 성인이 아동 행세를 한 경우(불능미수)에 개정 전의 형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런데 행위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아동과 접촉, 영향을 주려고 한 행위의 가별성 여부가 행위자가 대화를 한 상대방이 아동인지, 아동인 척 한 성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며, 아동인척한 성인인 경우(Scheinkind)에도 행위자의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는 견해에 입각하여 그루밍 미수의 처벌규정이 도입된 것이다.¹¹²⁾ 행위자가 성적 행위를 할 의도로 아동이라고 생각한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고자 한다면, 이미 아동이 성적행위를 통해 입을 수 있는 중대한 신체적 위험(추상적 위험)이 존재하며, 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즉 행위자의 범죄적 에너지가 드러나서 동 조항의 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면 해당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이 입법자들의 생각이었다.¹¹³⁾ 현행의 독일 형법에서는 행위자가 아동인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동이 아니라 성인이었거나 또는 경찰이 수사를 위해 아동인척 한 경우(Scheinkind Konstellation)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성적 행위를 위해 접촉하였다면 미수범(불능미수)으로 처벌된다. 한편, 그루밍행위에 대한 미수범 처벌까지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회 토론과정 중에서도 의견대립이 있었고, 법개정 이후에도 형사정책 학자들을 중심으로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¹¹⁴⁾

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취득·소지의 처벌

독일형법 §184b¹¹⁵⁾는 아동음란물의 배포·취득·소지(Verbreitung, Erwerb und

112) BT-Drs. 19/13836.9.

113) BT-Drs. 19/13836.9.

114) Endern, Sexueller Missbrauch von Kindern ohne Einwirken auf ein Kind – Zur Versuchsstrafbarkeit des Cybergroomings, NJW 2020, S.1033; Kriminal politischer Kreis, Stellungnahmen zur Einführung einer Versuchsstrafbarkeit für Cybergrooming, Februar 2019.

115) StGB §184b (Verbreitung, Erwerb und Besitz kinderpornographischer Inhalte)

(1)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wird bestraft, wer

1. einen kinderpornographischen Inhalt verbreitet oder der Öffentlichkeit zugänglich macht; kinderpornographisch ist ein pornographischer Inhalt (§ 11 Absatz 3), wenn er zum Gegenstand hat: a)sexuelle Handlungen von, an oder vor einer Person unter vierzehn Jahren (Kind), b)die Wiedergabe eines ganz oder teilweise unbedeckten Kindes in aufreizend geschlechtsbetonter Körperhaltung oder c)die sexuell aufreizende Wiedergabe der unbedeckten Genitalien oder des unbedeckten Gesäßes eines Kindes,

Besitz kinderpornographischer Inhalte)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184c는 청소년음란물의 배포·취득·소지(Verbreitung, Erwerb und Besitz jugendpornographischer Inhalte)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184b 제1항제1문에 의하면, ① 아동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일반에 공개한 자(제1호), ② 실제 사실 또는 실제인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아동음란물에 타인이 접근하거나 소지하도록 한 자(제2호), ③ 실제의 사실을 묘사하는 아동음란물을 제작한 자(제3호), ④ 아동음란물을 제작, 수령, 공급, 보관, 제공, 취득(하려 노력)하거나 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혹은 타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사용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아동음란물을 수입 또는 수출한 자(다만 제3호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는 제외)(제4호)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¹¹⁶⁾ 동조 제1항제2문은 감경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제1문제1호 및 제4호의 아동음란물이

-
2. es unternimmt, einer anderen Person einen kinderpornographischen Inhalt, der ein tatsächliches oder wirklichkeitsnahes Geschehen wiedergibt, zugänglich zu machen oder den Besitz daran zu verschaffen.
 3. einen kinderpornographischen Inhalt, der ein tatsächliches Geschehen wiedergibt, herstellt oder.
 4. einen kinderpornographischen Inhalt herstellt, bezieht, liefert, vorrätig hält, anbietet, bewirbt oder es unternimmt, diesen ein- oder auszuführen, um ihn im Sinne der Nummer 1 oder der Nummer 2 zu verwenden oder einer anderen Person eine solche Verwendung zu ermöglichen, soweit die Tat nicht nach Nummer 3 mit Strafe bedroht ist. Gibt der kinderpornographische Inhalt in den Fällen von Absatz 1 Satz 1 Nummer 1 und 4 kein tatsächliches oder wirklichkeitsnahes Geschehen wieder, so ist auf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zu erkennen.
- (2) Handelt der Tät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Satz 1 gewerbsmäßig oder als Mitglied einer Bande,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solcher Taten verbunden hat, und gibt der Inhalt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Satz 1 Nummer 1, 2 und 4 ein tatsächliches oder wirklichkeitsnahes Geschehen wieder, so ist auf Freiheitsstrafe nicht unter zwei Jahren zu erkennen.
- (3) Wer es unternimmt, einen kinderpornographischen Inhalt, der ein tatsächliches oder wirklichkeitsnahes Geschehen wiedergibt, abzurufen oder sich den Besitz an einem solchen Inhalt zu verschaffen oder wer einen solchen Inhalt besitz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 (4) Der Versuch ist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Satz 2 in Verbindung mit Satz 1 Nummer 1 strafbar.
- (7) Gegenstände, auf die sich eine Straftat nach Absatz 1 Satz 1 Nummer 2 oder 3 oder Absatz 3 bezieht, werden eingezogen. § 74a ist anzuwenden.
- 116) 종래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1년 7월 21일 형법개정으로 통해 법정형이 상향되었다.

실제 사실이나 실제처럼 보이는 사실을 묘사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제2항은 가중적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제1문의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또는 그러한 범죄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결합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하고, 제1항제1문제1호, 제2호,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 아동음란물이 실제 사실 또는 실제인 것을 보이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¹¹⁷⁾ 제3항에 의하면 실제 사실이나 실제처럼 보이는 사실을 묘사한 아동음란물에 접근하거나 소지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며, 제4항은 제1항제1문제1호와 제1항제2문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제7항은 몰수에 관한 규정이다.

(2) 온라인 성범죄의 수사를 위한 잠입수사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온라인 사이트나 SNS 등을 이용하여 아동성착취물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적발이 쉽지 않다. 그러한 온라인사이트 등은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회원 상호 간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원가입 또는 회원유지의 요건으로 본인도 아동성착취물을 업로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 스스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 한 - 이러한 온라인 사이트 등에 침투하여 수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사기관이 그러한 폐쇄적인 공간에 잠입하기 위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2020년 3월 13일 독일에서는 아동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하여 특정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잠입수사관을 투입할 수 있는 실체법·절차법적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다.¹¹⁸⁾ 독일형법 §184b 제5항제2문이 잠입수사관 투입의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의 제작이나 배포를 가능하게 하는 실체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이라면, 독일형사소송법 §110d는 이를 위해 요구되는 절차법적 허용요건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17) 종래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1년 7월 21일 형법개정으로 통해 법정형이 상향되었다.

118) 입법과정에 대해서는 <https://kripoz.de/Kategorie/gesetzentwuerfe/cybergrooming-gesetzentwuerfe/>(검색일: 2021. 10. 21.).

가. 잠입수사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면책특례

독일형법 §제184b 제5항과 제6항 및 이를 준용하는 §184c 제6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관련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회원으로 활동, 혹은 범죄자들의 환심을 사고자 교환용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마련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음란물 범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184b 제5항에 의하면 동조 제1항제1문제2호 및 제3항은 오로지 ① 국가적 임무, ② 권한있는 국가관청과의 협의에 의한 임무, ③ 직무상이나 직업상의 의무를 합법적으로 이행하는데 기여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아동음란물에 접근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아동음란물에 접근하거나 소지하게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184b 제6항에 의하면 동조 제1항제1호와 4호의 처벌규정도 ① 그 음란물이 실제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지 않고 또한 아동이나 청소년의 사진을 사용하지 않고 제작된 것이며, ② 범죄사안의 규명이 다른 방법으로는 성공할 가망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형사상 수사절차의 과정에서 직무상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된다. 즉 일정한 요건 하에 수사기관의 아동음란물 제작 또는 배포행위가 면책되는 것이다. 다만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음란물이 실제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아동과 실제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부자연스럽게 성(性)을 강조한 자세로 전부 또는 일부 벌거벗은 실제의 아동을 등장시키거나, 실제 아동의 벌거벗은 성기나 엉덩이를 성적으로 자극하는 형태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처벌의 예외가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형태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사진촬영을 해서도 안 되며, 실제의 사진을 포토샵 등으로 편집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 다만 회화, 스케치, 캐리커처 등은 여기서의 ‘사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수사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오직 기술적인 방법으로 또는 디지털 형태로 생성되는 음란물(예컨대,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한 사진이나 그림)을 제작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것도 이 예외조항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아동음란물 제작 또는 배포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그것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 한해서이다. 즉 컴퓨터의 압수 등과 같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는 범죄사안의 규명이 성공할 가망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다. 또한 형사상 수사절차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직무상 행위여야 하므로, 형사상 수사목적으로 투입되는 수사기관에게만 이러한 혜택이 주어질 뿐이고, 사인(私人)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84b 제5항과 제6항의 규정은 청소년음란물의 제작, 배포(유포), 취득, 소지 등을 처벌하는 규정에도 준용된다(제§184조c 제6항). 따라서 잠입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청소년음란물에 접근 또는 소지하거나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역시 일정한 요건 하에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

나. 잠입수사 허용의 절차법적 근거 및 요건

독일형사소송법에는 종래부터 이미 잠입수사관(Verdeckter Ermittler)의 투입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StPO §110a - §110c),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잠입수사관과 관련된 절차요건이 2020년 3월의 법개정을 통해 특별규정의 형태로 신설되었다.

(1) 잠입수사관 투입의 일반적 요건 및 절차 - 잠입수사관이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부여된 변경된 가장신원(Legende)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경찰공무원을 의미한다 (StPO §110a조 제2항제1문)¹¹⁹⁾. 잠입수사관은 그 가장신원으로 법적 거래행위를 할 수 있고(동조 제2항제2문), 가장신원의 생성 또는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문서를 작성, 변경, 사용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또한 가장신원을 사용하여 권리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출입할 수 있는데, 가장신원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출입권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그러한 승낙을 받아서는 안 된다(StPO §110c). §110a 제1항은 잠입수사관의 투입이 허용되는 중한 범죄행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잠입수사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례성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모든 경우에 보충성을 공통요건으로 설정하고 있으며,¹²⁰⁾ §100조d 제1항이 준

119) StPO §110a (Verdeckter Ermittler)

(2) Verdeckte Ermittler sind Beamte des Polizeidienstes, die unter einer ihnen verliehenen, auf Dauer angelegten, veränderten Identität (Legende) ermitteln. Sie dürfen unter der Legende am Rechtsverkehr teilnehmen.

120) 제110a조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잠입수사관의 투입이 허용되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금지된 마약류 또는 무기거래, 통화 또는 유가증권위조의 범죄, 국가안보에 관한 범죄, 업무상 또는 상습적으로 수행되는 범죄, 조직범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용되기 때문에 사생활 형성의 핵심영역(Kernbereich Privater Lebensgestaltung)을 알아내기 위한 잠입수사관의 투입은 허용되지 않는다.¹²¹⁾ 한편, §110a 제1항에 의해 잠입수사관의 투입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110b가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특정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나, 공중에 개방되지 않은 주거에 비밀수사관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동조 제2항제1문).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사전승인만으로도 충분하나(동조 제2항제2문), 검사의 판단을 적시에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이 우선 지체 없이 비밀수사관을 투입해야 하며(동조 제2항제3문), 그 후 3근무일 이내에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투입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동조 제2항제4문). 법원의 승인은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투입요건이 지속된다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동조 제2항제5문). 이에 비해 특정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나, 공중에 개방되지 않은 주거에 비밀수사관이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검사의 사전승인만 받아도 투입이 허용되고(동조 제1항제1문), 지체의 위험이 있고 검사의 판단을 적시에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이 우선 지체 없이 비밀수사관을 투입해야 하나, 검사가 3근무일 이내에 사후승인을 하지 않으면 그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동조 제1항제2문). 잠입수사관 투입을 위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그로부터 획득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110a 제1항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획득한 증거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100조d 제2항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사생활 형성의 핵심영역을 알아내기 위해 잠입수사

행위가 있었다는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범죄의 규명이 다른 방법으로는 성공할 가망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② 중죄(Verbrechen)에 해당하고, 특정한 사실에 근거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며, 그 중죄의 규명이 다른 방법으로는 성공할 가망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③ 특히 중대하여 잠입수사관의 투입이 필요한 중죄가 행해졌고, 그 중죄의 규명이 다른 조치로는 성공할 가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21) StPO §100d (Kernbereich privater Lebensgestaltung ; Zeugnisverweigerungsrechte)

- (1) Liegen tatsächliche Anhaltspunkte für die Annahme vor, dass durch eine Maßnahme nach den §§ 100a bis 100c allein Erkenntnisse aus dem Kernbereich privater Lebensgestaltung erlangt werden, ist die Maßnahme unzulässig.
- (2) Erkenntnisse aus dem Kernbereich privater Lebensgestaltung, die durch eine Maßnahme nach den §§ 100a bis 100c erlangt wurden, dürfen nicht verwertet werden. Aufzeichnungen über solche Erkenntnisse sind unverzüglich zu löschen. Die Tatsache ihrer Erlangung und Löschung ist zu dokumentieren

관을 투입하여 얻어낸 증거는 언제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절대적 증거사용금지). §110b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경우, 단순히 서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 증거물의 증거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¹²²⁾ 그러나 검사나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게 되어, 그 이후에 획득한 증거물은 공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사후승인을 얻는데 실패하기까지 3근무일 내에 획득한 증거물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해석된다.¹²³⁾

(2) 아동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잠입수사관 투입의 절차요건에 관한 특별규정 - 온라인 공간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잠입수사의 절차적 요건에 관한 제110조a부터 제110조c상의 엄격한 형식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논란이 있어오다가,¹²⁴⁾ 아동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잠입수사관 투입에 관한 명확한 절차요건이 §110d에 규정되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을 직접 제작·유포하는 형태의 잠입수사관 투입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검사의 승인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110b의 경우와 달리 검사의 결정을 기다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 스스로 투입을 결정할 수는 없다. 법원이 사전·사후의 승인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독일형법 §184b 제5항제2문제2호의 보충성원칙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고, 그 결과 비밀수사관의 투입이 위법하다고 여겨진다면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법원이나 검사의 승인은 서면으로 행해져야 하며, 여기에는 개별상황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비교형량을 했다는 점이 적시되어야 한다. 또한 일정한 기간을 설정한다는 점도 기재해야 하는데, 그 기간의 상한을 법률이 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는데, 단순히 서면형식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증거물의 증거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법원 또는 검사의 승인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다만 지체의 위험이 있어 먼저 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사후에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잠입수사관 투입이 소급적으로 위법하게 되는

122) BGH StV 1995, 398; LR-StPO/Hauck, § 110a, Rn. 67; SK-StPO/Wolter/Jäer, §110b, Rn. 13; SSW-StPO/Eschelbach, § 110b, Rn. 13.

123) BGHSt 41, 64, 66; Beulke/Swoboda, Rn. 481b Putzke/Scheinfeld, Rn. 267; Volk/Engländer, § 28, Rn. 30; BeckOK-StPO/Hegmann, § 110b, Rn. 13; KMRStPO/Bockemühl, § 110b, Rn. 24; M-G/S/Köler, § 110b, Rn. 11.

124) 이에 관하여는, 신상현(2020),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잠입수사관 제도의 도입방안”, 『고려법학』 제97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참조.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후부터는 이 조치가 위법하게 되나, 그 이전까지 3근무일 간 획득한 증거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처음 투입을 결정하면서 설정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 재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얻은 증거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3) 국가의 합법적인 해킹행위로서 온라인 수색의 허용

온라인 수색(Online Durchsuchung)이란 유체물 형태의 압수물 획득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오프라인 수색’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디지털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수색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 기술적 수단(원격 통신 감시 소프트웨어)¹²⁵⁾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정보기술시스템에 비밀리에 접근하여 이용자의 시스템 이용을 감시하고 시스템에 저장된 내용을 열람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의 합법적인 해킹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오늘날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으며, 범죄 발생과정에서도 온라인 공간이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해킹 또는 데이터의 변형 또는 삭제, 악성소프트웨어의 유포와 불법정보의 불법적 획득 등이 온라인 공간에서 범해지는 대표적인 범죄이지만, 그 외에 국제테러, 불법무기·마약거래, 탈세범죄 뿐 아니라 아동성착취물의 제작·유통·배포 및 소비에 있어서도 온라인 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점차 더 많은 유형의 범죄정보들이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으며, 성착취 범죄의 예방 또는 수사의 관점에서도 디지털 기술의 역할이 커졌다. 수사기관은 효과적인 범죄예방이나 범죄수사를 위해서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범죄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이러한 목적으로 온라인 접속을 하게 되면 온라인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기술적 어려움과 법적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범죄자들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외부와 차단을 해 놓은 범죄 관련 정보에 수사기관이 접근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소위 해킹기술이 요구된다. 그런데 그러한 수사행위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정보와 관련된 자의 개인적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온라인 내지 사이버공간에서의 수사활동에 관한 기술적·법적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125) Remote Communication Interception Software (RCIS). 독일에서는 국가 트로이 목마 (Staatstrojaner) 또는 연방 트로이 목마(Bundestrojaner)라고도 부른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독일은 온라인상의 비밀수사를 허용하는 입법을 위해 가장 노력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다. 타인의 정보기술시스템의 이용을 감시하고 저장된 내용을 기록할 목적으로 국가가 타인의 정보기술시스템에 비밀리에 접근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온라인 수색은 당사자의 IT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이해되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위헌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¹²⁶⁾ 현재 독일에서는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정보수집의 한 방법으로 연방범죄수사청이 행하는 온라인 수색이 연방범죄수사청법(BKAG)에 규정되어 있으며,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행하는 온라인수색도 형사소송법에 전면적으로 도입되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관련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요건이 설정되어 있다.

가. 범죄예방목적의 온라인 수색

독일의 연방범죄수사청법(BKAG)은 제49조에서 정보기술시스템에의 비밀 침입(Verdeckter Eingriff in informationstechnische Systeme)이라는 표제 하에 범죄예방목적의 온라인 수색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범죄수사청은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자유에 대한 위협이나, 국가(연방 또는 주)의 기반이나 존립 또는 인간의 생존의 기초를 이루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위협의 방지를 위해서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정보기술시스템에 당사자 몰래 침투하여 거기에 있는 당사자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1) 실체적 요건 - 제49조 제1항은 온라인수색의 실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자유에 대한 위협이나 국가의 기반이나 존립 또는 인간의 생존의 기초를 이루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위협이 존재한다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특정한 사

126) 독일에서 온라인 수색은 국가기관의 정보 수집의 한 방법으로 명확한 법률규정 없이 시행되어 오다가 2006년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Land Nordrhein-Westfalen) 헌법보호법에서 범죄예방 목적으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연방헌법재판소로부터 2008년 2월 27일 무효로 선언되어 위헌판결을 받았다. 이 결정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온라인수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BVerfG, Urteil des Ersten Senats vom 27. Februar 2008 - 1 BvR 370/07 und 1 BvR 595/07). 이후 2016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온라인 수색의 근거규정을 둔 연방범죄수사청법(BKAG)에 대한 위헌여부를 심판하면서, 다시 한 번 온라인수색의 허용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온라인수색처분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비례성의 관점에서 매우 높은 요구조건이 설정되어야 하다고 보았다(BVerfG, Urteil vom 20. April 2016 - 1 BvR 966/09, 1 BvR 1140/09).

실이 있는 경우(제1항 제1문), 또는 이러한 법익에 대한 피해가 예견가능한 기간 내에 적어도 구체적인 방식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을 정당화하는 특정사실이 있거나, 개인의 행동을 통해 그가 예견가능한 기간 내에 이들 법익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제1항 제2문) 온라인 수색은 허용된다. 다만, 이러한 온라인 수색은 직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거나 본질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된다(제1항 제3문).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와 관련하여서도 법익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이 특정사실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온라인 수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온라인 수색의 제한 - 제49조 제2항은 온라인 수색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기술시스템의 변경이 행해지고, 이러한 처분의 종료 시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자동으로 복구되도록 해야 한다(제2항 제1문). 사용된 수단은 현재의 기술수준에 따라 무단이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제2항 제2문). 또한 수집된 데이터는 현재의 기술수준 따라 변경, 무단 삭제, 무단 액세스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제2항 제3문).

(3) 온라인 수색의 대상 - 온라인 수색은 연방경찰청법(BPolG) 제17조¹²⁷⁾ 또는 제18조¹²⁸⁾의 책임자에 대해서만 취해질 수 있다(제3항 제1문). 다른 사람이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는 경우에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제3항 제2문).

(4) 온라인 수색의 절차 - 온라인 수색은 연방범죄수사청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에 의해서만 법원에 의해 명령될 수 있다(제4항). 온라인 수색 청구서에는 ① 가능한 한 이름과 주소가 첨부되어 있는 처분의 대상자, ② 가능한 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127) 연방경찰청법 제17조(사람의 행위에 대한 책임)

- (1) 사람이 위험을 초래하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 그 사람이 아직 14세가 되지 않은 경우,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그 사람에 대한 감독자가 선임된 경우, 그의 책임 범위 내에서 감독자에 대한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
- (3)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받은 사람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험을 야기한 경우, 업무수행을 지시한 사람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28) 연방경찰청법 제18조(동물의 행동 또는 사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

- (1) 동물이나 사물이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사실상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해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서물에 적용되는 다음의 규정들은 동물에도 적용된다.
- (2) 소유자나 기타 권한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사실상 권한을 가진 자가 소유자 또는 수권자의 의사 없이 이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방치된 물건에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 자를 대상으로 조치할 수 있다.

서 접근해야 될 정보기술시스템의 정확한 표시, ③ 처분의 방법, 범위 및 기간, ④ 사실관계, ⑤ 사유가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제5항). 그리고 법원의 온라인 수색 명령서에는 ① 가능한 한 이름과 주소가 첨부되어 있는 처분의 대상자, ② 가능한 한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서 접근해야 될 정보기술시스템의 정확한 표시, ③ 처분의 방법, 범위 및 기간, ④ 본질적인 사유(제6항 제2문)가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 명령은 3개월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제6항 제3문). 수집한 데이터에서 알아낸 내용을 고려하여 명령의 요건이 존속하는 한,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한 매번 연장이 가능하다(제6항 제4문). 명령의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령을 근거로 하여 취해진 조치는 지체없이 종료되어야 한다(제6항 제5문).

(5) 사생활의 보호 - 제7항은 사생활의 핵심영역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수색을 통해서 사생활의 핵심영역에 관한 정보만을 알게 된다는 사실상의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능한 한 사생활의 핵심영역과 관련이 있는 데이터는 수집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온라인 수색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명령을 내린 법원에 지체없이 제출되어야 한다. 법원은 이의 사용가능성과 삭제여부를 지체없이 결정해야 한다. 사생활의 핵심영역과 관련되는 데이터는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지체없이 삭제되어야 한다. 데이터의 수집 및 삭제 사실은 기록되어야 한다.

(6) 긴급한 경우의 예외 - 수집된 데이터의 사용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8항은 긴급한 경우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위험이 긴박한 경우, 연방 범죄수사청장 또는 그 대리인은 연방범죄수사청의 데이터보호감독관과 협의하여 확보한 정보의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 수집한 데이터의 열람 시 연방범죄수사청장 또는 그 대리인은 연방범죄수사청의 2명의 공무원의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중 한 명은 법관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방범죄수사청의 공무원은 이를 통해서 알게 된 사용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발설해서는 안 된다. 제8항의 의한 예외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제7항에 규정된 법원의 결정이 지체없이 보완되어야 한다.

나. 범죄수사목적의 온라인 수색

독일 형사소송법은 온라인 수색(Online-Durchsuchung)이라는 표제 하에 “당사자의 인식과 무관하게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당사자가 이용하는 정보기술시스템에 침입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1) 온라인 수색의 실체적 요건 - 제100b조 제1항에 의하면, 온라인 수색을 위해서는 ① 누군가가 정범 또는 공범으로 제2항에 기술된 특별히 중한 범죄를 범했거나 개별적 미수를 범하였다는 혐의가 특정한 사실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② 범죄행위가 개별적으로도 특별히 중하고(비례성원칙), ③ 사실관계의 조사나 피의자의 소재지 수사가 다른 방법으로는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거나 가망이 없어야 한다(보충성 원칙). 이와 관련하여 동조 제2항은 특별히 중한 범죄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176조 제1항(아동성학대), 제176C조(아동에 대한 중한 성학대), 제176d조(아동학대치사), 제184d조(아동 음란물의 배포, 취득 및 소지)도 이에 포함된다. 제100b조 제3항에 의하면, 온라인 수색은 원칙적으로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피의자가 타인의 정보기술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특정한 사실을 근거로 인정되며, 피의자의 정보기술시스템에 대한 접근만으로는 공동피의자의 소재지 수사나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해서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기술시스템에 대한 온라인 수색이 가능하다. 한편, 제100b조 제4항은 전기통신감청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술적인 확보와 프로토콜 규정이 온라인 수색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기술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것은 조치의 종료 시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자동적으로 복구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된 수단은 현재의 기술 수준에 따라 무단이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현재의 기술수준에 따라 변경, 무단삭제 및 무단 액세스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술적 수단을 사용할 때마다 ① 기술적 수단의 표지 및 투입 시점, ② 정보기술시스템을 식별하는 정보 및 이에 대한 일시적이지 않은 변경사항, ③ 수집된 데이터의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④ 작업을 수행하는 조직단위가 기록되어야 한다.

(2) 사생활의 핵심 영역의 보호와 증언거부권자 - 제100d조는 사생활의 핵심영역의 보호와 증언거부권에 관한 규정으로, 온라인 수색에도 적용된다. 사생활의 핵심영역에 관한 정보만이 확보된다고 인정할 사실상의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제1항). 또한 온라인 수색을 통하여 수집한 사생활의 핵심영역에 관한 정보는 사용될 수 없고, 그러한 정보는 지체없이 삭제되어야 하며, 그러한 정보의 수집과 삭제의 사실은 기록되어야 한다(제2항). 온라인 수색과 관련하여, 사생활의 핵심영역과 관련되는 데이터는 수집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가능한 한 기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온라인 수색을 통해 확보된 정보로서 사생활의 핵심영역과 관련되는 정보는 지체없이 삭제하거나, 또는 검사가 데이터의 사용 및 삭제여부에 관한 결정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사용가능성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다른 절차에도 구속력이 있다 (제3항). 한편 독일형사소송법 제53조의 경우에는 온라인 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 즉 증언거부권자(특히 업무상비밀준수자)에 대한 보호가 온라인 수색에도 적용된다(제4항).

(3) 온라인 수색의 절차적 요건 - 제100e조 제2항은 온라인 수색과 관련하여 법원의 명령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수사판사 대신에 법원조직법 제74a조 제4항에 언급된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명령을 내린다. 이 합의부는 이 조치의 명령과 지속 여부에 관하여 통제한다. 긴급한 경우 재판장이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3일 이내에 합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명령은 최고 3개월을 넘지 못한다. 확보된 수사결과를 고려하여 요건이 충족되는 한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매 연장이 허용된다. 다만 명령의 기간이 전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이 결정한다.

(4) 기타 - 형사소송법의 비밀 처분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규정인 제101조가 온라인 수색에도 적용되며, 통계작성의무 및 보고의무에 관한 제101b조도 온라인 수색에 적용된다.

3) 시사점

독일 형사법의 최근 개정내용에 주목하여 시사점을 찾아본다면 다음과 같다.

가. 그루밍행위의 처벌과 관련하여

(1) 오프라인을 통한 그루밍행위의 규제 -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루밍 행위는 반드시 온라인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오프라인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청소년성보호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그루밍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외에 오프라인에서 전화 통화나 서면 등을 이용한 그루밍 행위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즉, 온라인 그루밍행위가 아닌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¹²⁹⁾

(2) 그루밍 미수의 처벌 - 독일형법에서는 자신이 접촉하고 있는 대상이 아동인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동이 아니라 성인이었거나 또는 경찰이 수사를 위해 아동인척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성적 행위를 위해 접촉하였다면 미수범(불능미수)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이미 가벌성의 범위를 성적 행위의 전 단계로 당겨놓은 그루밍 행위에 대해 다시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것은 처벌의 시기를 성적행위의 전 전 단계(Vorfeld des Vorfelds)로 당기는 것이 되며, ‘예비행위의 미수범 처벌’은 과잉입법금지나 보충성의 원칙과도 맞지 않다는 비판이 독일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것¹³⁰⁾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루밍 행위의 미수범 처벌을 도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온라인 그루밍행위(기수)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성적 의도를 가지고 아동·청소년에 대해 접촉을 시도하거나 영향을 준 행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다.¹³¹⁾ 그루밍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수범 처벌을 통해 처벌시기를 앞당기기 보다는 매 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색출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사역량을 마련하는 데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법정형 -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아동성학대범죄 및 성착취물 범죄, 아동그루밍범죄의 법정형을 벌금형 없이 자유형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청소년성보호법에 신설된 온라인그루밍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물론 그루밍 행위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이나 양형 기준 전반에 대한 상황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배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129) 안경옥(2020), “독일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의 검토 및 우리 형법예의 시사점”, 『경희법학』 제55권 제4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57면.

130) Krininal poltischer Kreis, Stellungnahmen zur Einführung einer Versuchsstrafbarkeit für Cybergrooming, Februar(2019); Endern, Sexueller Missbrauch von Kindern ohne Einwirken auf ein Kind - Zur Versuchsstrafbarkeit des Cybergroomings, NJW 2020,1033.

131) 안경옥(2020), 위의 글(주129), 57면.

나. 잠입수사의 허용과 관련하여

암호화, 익명화를 특징으로 하는 다크웹과 텔레그램이 등장하면서, 범죄 현장에 남겨진 흔적이나 단서를 토대로 범인과 증거를 찾던 과거와는 수사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범죄가 디지털이라는 무대로 옮겨온 현 시점에서 잠입수사는 필요하다. 청소년 성보호법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를 위와 관련하여 잠입수사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비교적 오랜 논의와 제도적 보완을 거친 독일의 잠입수사 규정을 참고로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형 법은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를 위해 수사관이 관련 사이트 등에 잠입하여 활동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 배포 취득 소지 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 허용요건이 엄격하다. 즉, 실제의 사건을 묘사하거나 아동 청소년의 실제 사진을 사용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또는 유포하는 경우 등은 면책될 수 없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은 잠입수사관이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지, 판매 또는 광고할 수 있는 아동성착취물의 내용에 대해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온라인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곳에 잠입한 수사관이 신분의 지속적 위장을 위해 범죄자로부터 요구받은 영상을 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최대한 방지하여야 함을 망각해서는 안 될 일이다. 실제의 사건을 묘사하거나 실제 사진을 사용한 영상물을 사용하는 것은 설령 수사를 위해 피해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잠입수사관의 활동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 온라인 수색의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는 현재 온라인 수색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이에 대한 법적 논의도 공론의 장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처분의 필요성이 일응 인정되며, 특히 구체적인 범죄로 이행되기 이전에 위협예방이나 범죄예방 영역에서 온라인 수색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 수색은 범죄예방이나 범죄수사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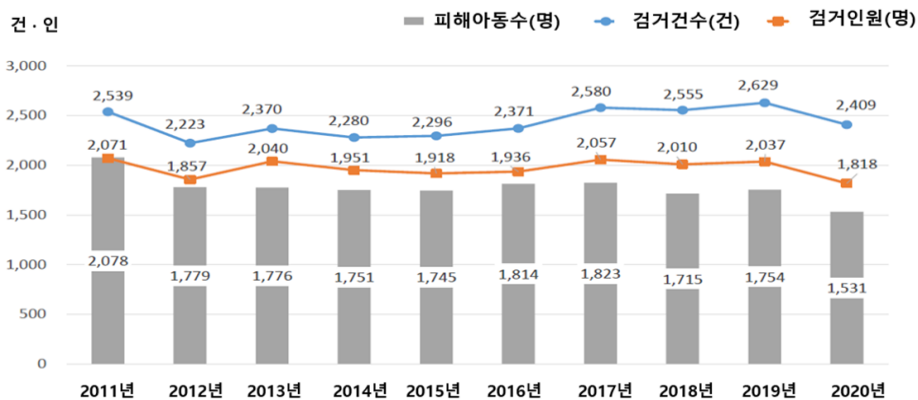
적으로 지금까지 등장한 국가의 비밀처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처분이어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향후 입법을 통해 온라인 수색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 목적의 온라인 수색을 허용하는 입법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거쳐 관련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장치들을 마련했던 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일본의 현황 및 입법례

1)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

일본에서 아동성착취란 자기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아동의 매매, 아동포르노 제조 기타 아동에게 성적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성에 주목한 형태의 영업을 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제60조에 해당하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 그리고 그 조장행위(아동매춘 주선, 아동매춘 등 목적의 인신 매매, 아동의 성에 주목 한 형태의 영업을 위한 장소 제공 및 아동포르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웹 사이트 개설 등)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¹³²⁾ 일본 경찰청이 발표한 아동성착취 피해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12년 이후 2019년까지는 큰 변동없이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에는 적발건수나 검거인원 및 피해아동 수가 전년도 대비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일본 내 아동성착취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기 보다는 COVID-19의 영향으로 대면활동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IV-1〉 2011년~2020년 일본의 아동 성착취 현황



※ 출처 : 일본 경찰청

132) 「児童の性的搾取等に係る対策に関する業務の基本方針について」(平成28年3月29日付け閣議決定), 일본 경찰청은 아동성착취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계자료를 공개한다. 2021년의 아동 성착취 통계는 https://www.npa.go.jp/policy_area/no_cp/uploads/kodomo_noeihigair3.pdf.

아동성착취 중에서 아동포르노 범죄에 주목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적발된 사건의 피해아동 수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¹³³⁾ 전체 피해아동의 80%가 중·고등학생이지만 초등학교 이하 아동의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피해 아동의 수는 201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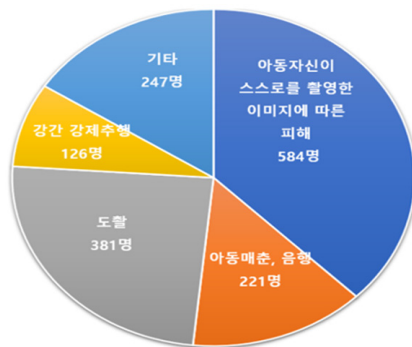
〈표 IV-1〉 일본의 아동포르노 사건 피해 아동 수

구 분 \ 연 도	2015년 (平成27年)	2016년 (平成28年)	2017년 (平成29年)	2018년 (平成30年)	2019년 (令和元年)
총 인원 (명)	905	1313	1,216	1,276	1,559
미취학	31	39	36	39	51
초등학생	113	146	227	237	240
중학생	359	698	441	437	621
고등학생	374	390	477	532	617
기타학생	28	40	35	31	30

※ 출처 : 일본경찰청 2020 범죄백서

2019년 적발된 아동포르노 사건의 피해아동 1,559명을 그 피해 양태에 따라 구분을 해 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아동이 스스로를 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피해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IV-2〉 2019년 아동포르노 피해양태별 현황



※ “아동이 스스로를 촬영 한 화상에 따른 피해 ”란 기망이나 위협으로 아동이 자신의 벗은 신체를 촬영하게 한 후 메일 등으로 보내도록 하는 형태의 피해를 말함
 ※ “음행”이란 청소년보호육성조례의 음행행위를 말함.

※ 출처 : 일본 경찰청

133) 日本 警察庁, 令和2年版 警察白書.

한편, 2020년 한 해 동안 18세 미만 아동 1,819명이 SNS로 촉발된 범죄사건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경찰청 통계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¹³⁴⁾ 범죄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란한 행위 등의 청소년보호육성조례 위반 피해 738명, 알몸사진촬영 등 아동포르노 피해 597명, 아동성매매 피해 311명, 약취·유괴피해자 75명, 강간 등 피해 45명이며, 살인미수도 2건이 포함되었다. 피해아동의 대다수가 중·고등학생이지만,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으로 초등학생 피해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경찰청은 피해가 많이 발생한 SNS 매체 5곳을 발표했는데, 트위터(Twitter), 인스타그램(Instagram), 히마베(ひまべ : 학생 전용 채팅 교환 사이트), 틱톡(TikTok), 코토모(KoeTomo)였다. 특히 트위터가 아동성매매 상대를 찾는 데 쉽게 이용되면서, 2017년에는 전 세계에서 아동성착취 문제로 삭제된 트위터 계정 3개 중 1개(38%)가 일본 이용자 계정이라는 분석이 나와 일본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¹³⁵⁾

2) 온라인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제

일본에서 아동성착취는 아동 매매와 아동포르노 위주로 규제되고 있으며, 관련법률로는 아동매춘·아동포르노 관련 행위 등의 규제와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規制及び処罰並びに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¹³⁶⁾과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해서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インターネット異性紹介事業を利用して児童を誘引する行為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¹³⁷⁾이 있다.

134) 朝日新聞(2021.03.11.), “子どものSNS被害、1819人・児童ポルノは597人”, <https://www.asahi.com/articles/ASP3C3VZJP3BUTIL01F.html>(검색일: 2021.7.17.).

135) NEWSポストセブン(2017.10.22.), “Twitterから追い出された児童ポルノ業者、地下に潜る”, https://www.news-postseven.com/archives/20171022_622878.html?DETAIL(검색일: 2021. 7. 12.).

136) 약칭 : 児童買春禁止法, 児童ポルノ禁止法(아동매춘금지법, 아동포르노금지법).

137) 약칭 : 出会い系サイト規制法, 出会い系サイト被害防止法 (인터넷 만남사이트 규제법, 인터넷 만남사이트 피해방지법).

(1) 아동매춘·아동포르노 관련 행위 등의 규제와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 연혁 및 목적

1998년에 제정되어 2014년 최종 개정된 이 법률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가 아동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감안하여, 아동매춘과 아동 포르노에 관한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행위 등에 의해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주요개념

아 동	18세 미만인 사람
아동매춘	아동, 아동에 대한 성교 등을 알선하는 자, 아동의 보호자(친권을 행사하는 자, 미성년자의 후견인 및 그 외 사람으로 아동을 실제로 감호하는 자), 혹은 아동을 그 지배하에 두고 있는 자에게 대가를 공여하거나 그 공여의 약속을 하여 해당 아동에 대하여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자기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할 목적으로 아동의 성기 등(성기, 항문 또는 유두)를 만지거나 또는 아동에게 자기의 성기 등을 만지게 하는 것
아동포르노	• 사진, 전자적 기록에 관한 기록매체 기타의 물건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의 모습을 시각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묘사 한 것 •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에 의한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에 관한 아동의 모습 • 타인이 아동의 성기 등을 만지거나 아동이 타인의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에 관한 아동의 모습 • 옷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고 있지 않은 아동의 모습으로, 일부러 아동의 성적 부위(성기 등 또는 그 주변부, 엉덩이 또는 가슴)가 노출되거나 강조되어 성욕을 불러일으키거나 또는 자극하는 것

다. 금지 및 주요 처벌 규정

일반적 금지 (제3조의2)	누구든지 아동매춘을 하거나 함부로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거나 아동 포르노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보관하거나 기타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 또는 성적학대에 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아동매춘의 처 벌 (제4조~제6조)	• 아동매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엔 이하의 벌금 • 아동매춘 조장·알선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엔 이하의 벌금 • 아동매춘 조장·알선 사업 운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엔 이하의 벌금
아동포르노의 처 벌 (제7조)	• 아동포르노 소지·보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 엔 이하의 벌금 • 아동포르노 제조·제공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백만 엔 이하의 벌금 • 아동포르노 불특정 다수인에 공개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백만 엔 이하의 벌금

라.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한 규정

수사·공판에 서의 배려 등 (제12조)	• 아동매춘·아동포르노 관련 사건의 수사 및 공판에서 직무관계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아동의 인권 및 특성을 배려하는 동시에 그 명예와 존엄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무관계자에 대하여 아동의 인권, 특성 등의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사의 게재 등의 금지 (제13조)	아동매춘·아동포르노 범죄사건에 관련된 아동은 그 성명, 연령, 직업, 재학 중인 학교명, 주거, 용모 등에 의해 해당 아동이 당해 사건의 관련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기사나 사진 또는 방송 프로그램을 신문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하여서는 안된다.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받은 아동의 보호	• 후생노동성, 법무성, 도도부현의 경찰, 아동상담소, 복지사무소 기타 국가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관계 행정기관은 아동매춘 또는 아동 포르노의 피해자로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받은 아동에 대하여 상호 연계를 도모하면서, 그 심신의 상황, 그 놓여져

(제15조)	있는 환경 등에 따라 당해 아동이 받은 영향으로부터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회복하고 개인의 존엄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지도, 임시보호시설에의 입소 기타 필요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절히 강구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이 위의 조치를 취할 경우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호자에게 상담, 교육 및 기타 조치를 취한다.
인터넷 사업자의 노력 (제16조의3)	인터넷 사업자는 수사기관에 협력하고, 당해 사업자가 갖는 관리 권한에 따라 아동포르노에 관한 정보의 전송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해서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가. 연혁 및 목적

2003년에 제정되어 2008년 개정된 이 법률은,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성교 등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에 필요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한 아동매춘 기타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나. 주요개념

아 동	18세 미만인 사람
인터넷 이성소개 사업	낮선 이성과 교제를 하고자 하는 자(이성교제 희망자)의 요구에 따라 그 이성교제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중이 열람 할 수 있는 상태로 두거나 전달하고, 당해 정보의 전달을 받은 이성교제 희망자가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통신을 이용하여 해당 정보에 관한 이성교제 희망자와 서로 연락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 금지 및 주요 의무

- 아동에 대한 유인행위 금지 (제6조)

: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성교 등의 상대가 되도록 유인하거나, 성인을 아동과의 성관계의 상대가 되도록 유인하거나, 대가를 주고 아동을 이성교제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거나, 대가를 받고 성인을 아동과의 이성교제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거나 그밖에 아동을 이성교제의 상대가 되도록 유인하거나 성인을 아동과의 이성교제의 상대가 되도록 유인하는 것은 금지된다.

- 이용금지의 명시(제10조)

: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의 광고 또는 선전을 할 때는 아동이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명시해야 하며, 당해 사이트를 이용하고자하는 자에 대하여도 아동이 이를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전달해야 한다.

- 아동여부의 확인 (제11조)¹³⁸⁾

: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자는 이성교제 희망자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다른 회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그 이성교제 희망자가 아동이 아님을 확인해야 한다.

-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해를 미치는 행위의 방지조치(제12조)

: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자는 당해 사이트를 이용하여 금지유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당해 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중이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정부의 대응정책

일본에서는 아동성착취 피해에 대응하여서 국가공안위원회의 통합조정 하에 정부의 전 관계부처가 긴밀한 연계·협력을 도모한다. 2017년 4월 18일 범죄대책각료회의는

138) 2003년 법률이 발효되었을 때는 사이트 이용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에 확인할 수 있었지만, 2008년의 법개정에 의해 2009년 2월부터는 원칙적으로 사이트를 이용할 때마다 다음 2가지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아동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됨.

1. 운전면허증, 국민건강보험증, 또는 사이트 이용자의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공식서류를 제시하게 하여 그 사본을 송부 받거나 또는 이미지를 전송 받음.
2. 신용카드 결제 등 아동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요금지불의 동의를 받음.

“아동성착취 등에 관한 대책의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일본정부가 아동성착취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6단계 기본계획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¹³⁹⁾

- 아동성착취 근절을 위한 국민의식의 향상 및 국민운동의 전개, 국제사회와의 연계 강화
- 아동성착취의 피해없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아동 및 가정 지원
- 아동성착취에 이용되는 수단 등에 착안 한 피해의 예방·확대 방지 대책 추진
-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 및 적절한 지원 추진
- 피해 상황에 맞는 단속 강화와 가해자의 갱생
- 아동성착취 등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기반 강화

4) 시사점

일본은 특히 근래에 들어 아동성착취 실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는 있으나, 사회전반의 인식 및 관련 법제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확인된다. 아동성매매 및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엄격하지 않고, 아동그루밍을 범죄화하고 있지도 않으며, 온라인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기법의 도입에도 미온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 매매와 성착취에 관련한 특별보고관(당시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일본의 미성년자 상품화가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명하였고, 일본 사회에서 성착취를 사회가 용인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역시 외국인과 어린 여성들이 성매매에 빠지기 쉬운 상황에 대해 ‘일본 시민권자 중에서도 특히 가출 십대 청소년들이나 외국인 어머니를 둔 시민권자 아동들이 성매매를 당하기 쉬우며, “원조교제”나 이의 변형인 “JK비즈니스” 같은 현상이 계속하여 성매매를 유발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다만 일본에서는 아동성착취에 대응하여 실태분석을 해마다 공표하고, 정부의 전 관계부처가 긴밀한 연계·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이 연계하는 구조는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만하다.

139) 이와 관련하여서는 일본경찰청 웹사이트의 [なくそう, 子供の性被害](https://www.npa.go.jp/policy_area/no_cp/effort/masterplan.html) 페이지 내용을 참조. https://www.npa.go.jp/policy_area/no_cp/effort/masterplan.html(검색일: 2021. 7. 18.).

4. 호주의 현황 및 입법례

호주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방식의 아동 성착취와 성학대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국가이다. 호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아동 학대물(Child Abuse Material), 또는 아동 착취물(Child Exploitation Material)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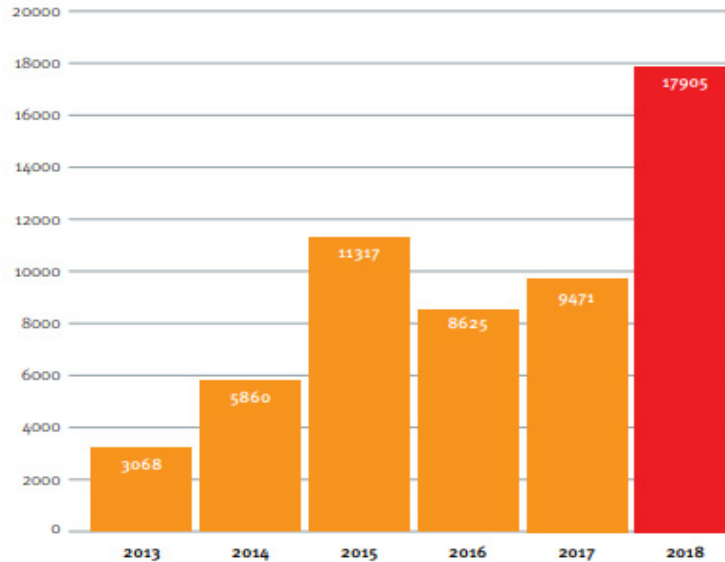
1)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

2017년, 호주의 임시 독립조사기관인 왕실위원회(National Royal Commission)는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호주의 성인들이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여 아동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 성학대 보고서를 발표했다. 왕실위원회는 2012년 호주 줄리아 길라드 총리에 의해 구성되어 5년의 임기 동안 카톨릭 교회, 학교, 스포츠 클럽 등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력 현황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 조사 결과를 통해 호주 내 수 많은 아동 성학대 및 성착취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공무원이 이를 신고하여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 대신 무시하거나 학대를 은폐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호주 총리는 2018년 아동성착취대응센터(Australian Center to Counter Child Exploitation)를 설립해 호주 연방경찰과 주 경찰로 하여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에 엄격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는데, 아동성착취대응센터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이미지에 기반한 자료와 성착취 자료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2000년대 초, 아동 성착취 이미지가 1,000여개 정도 신고되었던 것에 비해 최근 온라인 상에서 적발되는 이미지 및 동영상 자료는 8만여 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호주 연방경찰은 아동 성착취에 대한 신고만 1만여 건을 접수했으며, 118건의 범죄에 대해 70여 명의 가해자를 체포하였다고 한다.¹⁴⁰⁾

140) Australian Centre to Counter Child Exploitation, 「Blueprint 2019-2021」, <https://www.accce.gov.au/sites/default/files/2020-12/ACCCE%20Blueprint%20>

〈그림 IV-3〉 호주의 아동성착취 신고 현황 (2013년~2018년)



2) 온라인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제

(1) 형법 및 각 주법

연방국가인 호주의 관련법은 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형법에 의해 인터넷 (혹은 다른 형태의 소통 방식)으로 아동을 꼬어내어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아동에게 부적절한 자료를 보내거나 접촉을 시도하여 아동을 꼬어내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호주 형법은 아동과 성적인 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부적절한 소통을 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데, 연방법인 형법 제474.27조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규정하였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유통될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또는 콘텐츠 호스팅 제공자 역시 처벌하고 있다.¹⁴¹⁾ 형법 제

19-2021_online.pdf(검색일: 2021. 7. 19.).

141) 형법 (Criminal Code Act of 1995) 제474.27조.

Using a carriage service to “groom” persons under 16 years of age

474.25조에 의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또는 콘텐츠 호스팅 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아동 학대물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합리적 기간 내에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¹⁴²⁾ 이 때,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 또는 호스팅 제공자가 기업일 때, 해당 기업이 신속하게 삭제 또는 호스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사 연간 매출액의 10%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어 기업에 대해서도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¹⁴³⁾

(1) A person (the sender) commits an offence if: (a) the sender uses a carriage service to transmit a communication to another person (the recipient); and (c) the sender does this with the intention of making it easier to procure the recipient to engage in sexual activity with the sender; and (d) the recipient is someone who is, or who the sender believes to be, under 16 years of age; and (e) the sender is at least 18 years of age.

Penalty: Imprisonment for 15 years.

(2) A person (the sender) commits an offence if: (a) the sender uses a carriage service to transmit a communication to another person (the recipient); and (c) the sender does this with the intention of making it easier to procure the recipient to engage in sexual activity with another person (the participant); and (d) the recipient is someone who is, or who the sender believes to be, under 16 years of age; and (e) the participant is someone who is, or who the sender believes to be, at least 18 years of age.

Penalty: Imprisonment for 15 years.

(3) A person (the sender) commits an offence if: (a) the sender uses a carriage service to transmit a communication to another person (the recipient); and (c) the sender does this with the intention of making it easier to procure the recipient to engage in sexual activity with another person; and (d) the recipient is someone who is, or who the sender believes to be, under 16 years of age; and (e) the other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 (c) is someone who is, or who the sender believes to be, under 18 years of age; and (f) the sender intends that the sexual activity referred to in paragraph (c) will take place in the presence of: (i) the sender; or (ii) another person (the participant) who is, or who the sender believes to be, at least 18 years of age.

Penalty: Imprisonment for 15 years.

142) 형법 (Criminal Code Act of 1995) 제474.25조

Obligations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internet content hosts

A person commits an offence if the person: (a) is an internet service provider or an internet content host; and (b) is aware that the service provided by the person can be used to access particular material that the person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is child abuse material; and (c) does not refer details of the material to the Australian Federal Police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becoming aware of the existence of the material.

Penalty: 800 penalty units.

143) 이정민 외(202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현황 및 플랫폼 규제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Vol. 31, No. 2, 한국교정학회, 44면.

연방법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 각 주에서도 주법을 통해 디지털 상에서의 아동 성착취물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퀴즈랜드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모두 주 형법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처벌하고 있다. 퀴즈랜드의 주 형법에 의하면 웹사이트의 기능 디자인, 제작, 운영, 유지, 호스팅을 위한 기기 제공, 기능 작동 및 사용 촉진은 모두 아동 성착취물의 ‘관리(administering)’에 해당한다.¹⁴⁴⁾ 이렇게 아동 성착취물 배포를 위해 사용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람은 징역 14년 이하, 숨겨진 네트워크 또는 익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징역 20년 이하에 처해진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의 주 형법은 아동 성착취물을 거래하기 위해 본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및 아동 성착취물이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자 또는 운영을 보조하는 자에게 징역 10년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¹⁴⁵⁾

144) 호주 퀴즈랜드주 형법(Criminal Code Act 1899) 제228DA조.

Administering child exploitation material website

(1) A person who administers a website knowing the website is used to distribute child exploitation material commits a crime.

Maximum penalty-

- (a) if the offender uses a hidden network or an anonymising service in committing the offence-20 years imprisonment; or (b) otherwise-14 years imprisonment.
- (2) The Penalties and Sentences Act 1992, section 161Q also states a circumstance of aggravation for an offence against this section.
- (3) An indictment charging an offence against this section with the circumstance of aggravation stated in the Penalties and Sentences Act 1992, section 161Q may not be presented without the consent of a Crown Law Officer.
- (4) It is a defence to a charge under this section to prove that the person, on becoming aware the website was being used to distribute child exploitation material, took all reasonable steps in the circumstances to prevent other persons from being able to use the website to access child exploitation material.

Examples of steps that may b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 telling a police officer the website is being used to distribute child exploitation material and complying with any reasonable direction given by the police officer about what to do in relation to the website
- shutting the website down
- modifying the operation of the website so it can not be used to distribute or access child exploitation material

(5) In this section-

administer, a website, includes-

- (a) design, create, manage or maintain the website, part of the website or a function of the website; or (b) provide a device to host the website, part of the website or a function of the website; or (c) facilitate the operation and use of the website, part of the website or a function of the website.

145)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형법(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제63AB조.

Offences relating to websites.

- (1) A person commits an offence if - (a) the person hosts or administers, or assists in the hosting or administration of, a website; and (b) the website is used by another person to deal with child exploitation material; and (c) the person - (i) intends that the website be used by another person to deal with child exploitation material; or (ii) is aware that the website is being used by another person to deal with child exploitation material.

Maximum penalty: Imprisonment for 10 years.

- (2) It is a defence to a charge of an offence against subsection (1) to prove that the person, on becoming aware that the website was being used, or had been used, by another person to deal with child exploitation material, took all reasonable steps, in the circumstances, to prevent any person from being able to use the website to deal with child exploitation material.
- (3) In determining whether a person has taken all reasonable steps, in the circumstances,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2) regard must be had as to whether the person, as soon as it was reasonably practicable, did any of the following: (a) shut the website down; (b) modified the operation of the website so that it could not be used to deal with child exploitation material; (c) notified a police officer that the website was being, or had been, used to deal with child exploitation material, and complied with any reasonable directions given by a police officer as to action to be taken by the person in relation to that use of the website; (d) notified a relevant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that the website was being, or had been, used to deal with child exploitation material, and complied with any reasonable directions given by the authority as to action to be taken by the person in relation to that use of the website.
- (4) In proceedings for an offence against subsection (1) it is not necessary to prove the identity of the person that was using the website to deal with child exploitation material.
- (5) A person commits an offence if - (a) the person encourages another person to use a website; and (b) the person intends that the other person use the website to deal with child exploitation material.

Maximum penalty: Imprisonment for 10 years.

- (6) In proceedings for an offence against subsection (5) it is not necessary to prove- (a) the identity of the person encouraged to use the website to deal with child exploitation material; or (b) that another person in fact used the website to deal with child exploitation material; or (c) if another person did in fact use the website, that it was the person's encouragement that caused the other person to do so.
- (7) A person commits an offence if - (a) the person provides information to another person; and (b) the person intends the other person to use the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avoiding or reducing the likelihood of apprehension for an offence committed by that other person against this Division.

Maximum penalty: Imprisonment for 10 years.

- (8) In proceedings for an offence against subsection (7) it is not necessary to prove- (a) the identity of the person to whom the information was provided; or (b) that the information was actually used by the other person.

노던테리토리주는 형법에 따라 기업이 아동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본사의 경영자에게까지 책임이 미친다. 경영자에는 본사의 경영자, 또는 본사의 경영에 관계하거나 참여하는 임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해당된다. 아동 성착취물 소지, 외설적 자료의 출판, 아동 성착취물이나 아동 학대물의 제작에 아동을 이용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범죄행위에 연루된 본사의 경영자 또는 경영진을 처벌하는 것이다. 형법의 적용에 따라 실제로 아동학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한 남성은 가석방 없는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다크웹에서 여러 아동 착취 사이트를 관리했던 23세의 남성은 15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¹⁴⁶⁾ 이러한 판결은 형법의 관련 조항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데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온라인 안전강화(동의없는 사적 이미지 공유)법 2018¹⁴⁷⁾

2018년, 호주 국회는 온라인 안전강화(동의없는 사적 이미지 공유)법[Enhancing Online Safety (Non-consensual Sharing of Intimate Images) Act, 2018]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해 e-안전위원회(e-Safety Commissioner)가 설치되어 피해자는 성착취 등 가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를 신속히 삭제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가해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등 다양한 강제안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위원회는 사건이 접수되면 가해자, 웹사이트, 콘텐츠 소유자, 소셜미디어 제공자 등에게 48시간 내 위법한 콘텐츠의 삭제를 지시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이미지 기반 학대(image-based abuse)와 관련해 사용자의 고충 처리를 위해 ‘사이버 불링’이라는 신고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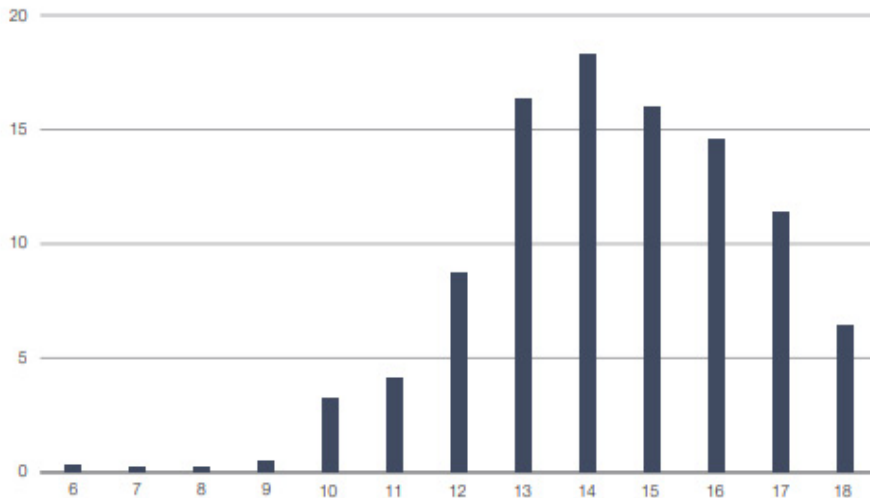
현재 온라인 안전강화법에 따라 e-안전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불법 콘텐츠를 찾고 직접 삭제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2020년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2020년의 기간 동안 총 690 건의 삭제 요청을 받았는데, 이는 2018년~2019년에 비해 30% 증가한 수치로, 13세 이상 17세 이하 아동이 사이버불링 자료의 주 타겟에 해당한다.¹⁴⁸⁾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지 기반 학대와 관련해 신고된 건 중 가장

146) 이정민 외(2021), 위의 글(주 143), 46면.

147) 이 법의 전문은 호주 연방 법제 사이트(<https://www.legislation.gov.au/>)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8A00096>, 검색일: 2021. 10. 27.).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례는 성적 이미지를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추가로 착취하는 유형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 2019년~2020년 연령별 사이버불링 신고 건수



(3) 아동 성착취 방지 개정법 2019¹⁴⁹⁾

아동 성착취 방지 개정법(Combating Child Sexual Exploitation Legislation Amendment Act, 2019)은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방식의 성범죄로부터 아동의 보호하기 위하여 1914년 형법과 1995년의 형법을 개정한 법으로, 아동 성학대 범죄에 대한 신고체계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하여 호주의 연방경찰과 사법기관 공무원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5개 분야의 6개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연방 공무원과 국경의 당국, 경찰, 지역 공무원 등이 아동 성착취를 신고하지 않거

148) Australian Communication and Media Authority, eSafety Commissioner, Annual Reports 2019-20.

<https://www.esafety.gov.au/sites/default/files/2020-10/ACMA%20and%20eSafety%20annual%20report%202019-20.pdf>(검색일: 2021. 7. 18.).

149) 이 법의 전문은 호주 연방 법제 사이트(<https://www.legislation.gov.au/>)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9A00072>, 검색일: 2021. 10. 27.).

나 아동 보호 조치 등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더욱 강화된 처벌의 대상이 되며, 아동 성착취의 근절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관리 및 감독 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 동안 호주 법제에서 통용되던 용어인 ‘아동 포르노그래피(child pornography)’가 가해자 시각에서 생성된 용어이므로 성범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협소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 피해자의 입장에 초점을 둔 ‘이미지 기반 학대(image-based abuse)’ 또는 ‘아동 학대물(child abuse material)’로 변경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아동 성착취 자료의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배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컴퓨터 또는 데이터 저장 장치에 보유된 데이터 형태의 아동 학대물(child abuse material)에 접근하거나 이 자료를 입수하여 소유하는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형법을 개정하였다.

3) 시사점

호주는 2017년, 왕실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아동 성착취의 심각성을 인식하였으며 이후 온라인 안전강화법의 제정, 형법의 개정 등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와 아동 성착취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호주의 법제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온라인상에서의 아동 성착취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아동 성착취물이 발견되는 경우 유포자 개인 뿐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콘텐츠 호스팅 제공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또는 콘텐츠 호스팅 제공자는 제공하는 웹사이트 등에서 아동 성착취물 및 아동 학대물에 접근이 가능하거나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합리적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던테리토리주 등 일부 주에서는 이같은 관리·감독의 책임을 기업의 경영자에게까지 부과하고 있어 이 역시 참고할만 하다. 호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아동 학대물 또는 아동 착취물로 불리며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성착취에 대해서는 온라인 안전강화(동의없는 사적 이미지 공유)에 관한 법 [Enhancing Online Safety (non-consensual sharing of intimate images) Act 2018]을 통해 타인의 사적인 이미지를 온라인에 동의없이 게재하거나 게재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2019년에는 아

동 성착취 방지와 관련된 법을 총 망라한 아동 성착취 방지 개정법을 제정하여 그루밍(Grooming) 등 호주 내외에서 거주하는 아동이 성적으로 연루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5. 소결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아동이 포함된 성착취물이 무작위로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착취 문제는 한 국가의 사회적 문제가 아닌, 국제적 접근이 필요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가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 성착취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조약 및 지침을 채택하여 국제적인 공조의 노력을 진행해 왔으며 해외 다수 국가들은 형법 등의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아동 성착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 협약이자 헌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아동이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 학대를 비롯한 모든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 규제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여 형사절차 진행에 있어 당사국의 의무 등 보다 구체적인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2021년에는 다양한 아동 폭력 중 특히 온라인 상에서의 아동 성착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제25호」를 채택하였다. 이 일반논평은 특히 당사국에 “사이버공격, 디지털 기술로 촉진된 온라인 성착취 및 학대 등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이와 관련된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며 피해 아동에게 구제와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디지털 기술로 촉진되는 폭력과 성착취 및 학대는 가족과 친구, 청소년의 경우 연인처럼 아동이 신뢰한 대상에 의해 자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과 규제 및 제도를 정기적으로 검토, 갱신하고 집행하는 등 입법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

리위원회의 일반논평은 협약에 대한 일종의 유권해석으로, 당사국에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문서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외에도 국제사회에서는 팔레르모 의정서를 통해 아동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를 포함한 성착취 행위를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성매매가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인신매매의 성격을 띠며 조직범죄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국제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0년부터 아동의 매매와 아동 성착취에 대해 특별절차를 마련하여 독립적 전문가인 특별보고관을 임명, 아동 성착취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새로운 동향을 파악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평가 후 권고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 특별보고관은 2015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한 아동의 매매와 성착취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유엔 가입국이 아동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을 권고하여 한국 역시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럽 집행위원회의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온라인 상에서의 아동학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아동 성착취 자료의 2/3 이상이 유럽에서 제작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유럽연합은 2007년 「성착취 및 성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 유럽 평의회 협약」, 그리고 2011년 「아동 성학대, 성착취 및 포르노그래피 방지에 관한 지침(2011/93/EU)」을 제정하여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시급히 정책을 마련하여 법률 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아동의 성학대 및 착취 예방, 피해자 보호, 국내 및 국제 공조와 협력 증진,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확립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유럽의 국가 중 특히 독일은 한국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비교될 만한 충격적인 아동 성착취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으며, 이후 온라인 상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아동 성학대 및 그루밍 행위의 처벌, 잠입수사의 절차 및 허용요건과 관련하여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였다. 이는 동일한 제도를 골자로 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을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한국의 현 상황에서 시사점이 크다. 그루밍 행위의 처벌과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한 그루밍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성보호법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전화 통화 또는 서면을 이용한 그루밍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루밍 행위가 반드시 온라인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

니고 오프라인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역시 ‘온라인 그루밍 행위’가 아닌, ‘그루밍 행위’ 전반에 대한 규제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가 필요하다. 또한, 독일 형법은 자신이 접촉하는 대상이 아동이 아니더라도 아동인 줄 알고 성적 행위를 위해 접촉하였다면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점도 참고할 만 하다. 잠입수사와 관련해서는, 독일 형법은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를 위해 수사관이 관련 사이트 등에 잠입하여 활동하는 과정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해 실제의 사건을 묘사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실제 사진 및 영상을 제작 또는 유포하는 경우에는 절대 면책될 수 없다. 현재 개정 청소년보호법은 잠입 수사관이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지, 판매 또는 광고할 수 있는 성착취물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데, 실제의 사건을 묘사하거나 실제 사진을 이용한 영상물을 사용하는 것은 수사를 위해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잠입 수사관의 활동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겠다.

한국과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형 및 관련 법제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최근 아동 성착취 실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으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회 전반의 인식 및 관련 법제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확인된다. 이에, 아동의 매매와 아동 성착취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15년 방문 조사 이후 일본의 미성년자 상품화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 사회에서 성착취를 사회가 용인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에 대응하여 해마다 실태 분석을 실시·공표하고, 국가 공안위원회의 통합조정 하에 정부의 전 관계부처가 긴밀한 연계·협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지원체계가 분절되어 있는 한국에 시사점을 준다. 특히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정부기관이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계하는 구조는 한국에서도 참고할만 하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방식의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호주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아동 학대물 또는 아동 착취물이라는 명칭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어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개념 및 포섭범위 마련 시 참고할 수 있다. 호주 형법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정의하며, 이를 엄격히 관리하고, 아동 성착취물이 발견되는 경우 유

포자 개인 뿐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콘텐츠 호스팅 제공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또는 콘텐츠 호스팅 제공자는 본인이 관리하는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거나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처벌된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주 형법을 통해 관리·감독의 책임을 기업의 경영자에게까지 부과하고 있다. 한편, 2019년에는 아동 성착취 방지에 대한 법률 총 망라한 아동 성착취 방지 개정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호주 내 뿐 아니라 호주의 인터넷 서비스 및 콘텐츠 호스팅을 통해 국외에서 거주하는 아동이 성적으로 착취되는 상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및 아동권리협약 등 협약의 당사국으로서의 한국의 의무에 대해 살펴보고, 독일, 일본, 호주 등 해외의 국가들은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살펴보았다. 현행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제도 개선 시 이러한 국제규범과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제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법제 및 정책제언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제 개선방안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3.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의 인권적 구제를 위한 정책제언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제 개선방안

오늘날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이 일상 깊숙이 들어와, 인간,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을 서로 촘촘히 연결하는 이른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살아가고 있다. 고도로 지능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혁신의 창출이 가능한 반면, 초연결사회에서 인간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대상화’되기 쉽다. 인간 ‘대상화’를 통한 대표적 인권침해가 성의 상품화·성착취이며, 초연결사회는 다양한 방식의 디지털 착취를 통해 새로운 인권침해 상황을 야기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사회의 대응은 선제적이거나 예방적이지 못하며, 사후 입법을 통해 대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사회적 충격을 계기로 형법,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이 추진되었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되면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대응 법제가 어느 정도는 정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해 법정형을 강화하고 구성요건을 확대하여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범위에 포함시키고, 온라인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 특례를 도입하였다.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범죄 전반에서 예방효과가 제고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 이후 여론의 영향을 받아 급하게 추진된 법 개정은 몇몇 지점에서 정당성이나 실효성과 관련하여 정밀한 재검토의 과제를 남겼다.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의 개념 정의와 포섭범위 확대

아동·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이용하여 이들의 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그 자체로 착취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범죄 유형은 모두 성착취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 성폭력범죄, 성을 사는 행위, 그리고 성착취물 등으로 나누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범죄를 분절적으로 바라본다. 최근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성매수범죄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모두 피해자로 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은 여전히 성폭력,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등을 구분하고, 성매매의 경우는 아동·청소년의 탓으로 돌리는 시선이 남아있으며, 이를 피해자의 비행 또는 범죄로 간주하는 경향도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에 따르면, 피해아동·청소년은 죄책감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가정에서 성매수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또 다른 폭력에 노출되기도 했다. 성착취에 대한 정의, 디지털을 매개한 성착취 범죄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은 현재, 법과 제도의 분절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라는 범죄 특성과 나날이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의 모습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정의 규정을 포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즉, 형법과 청소년성보호법 등에서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성착취는 권력 불균형을 전제하는 개념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해 성착취 범죄를 근절하고 처벌할 필요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다. 성매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모두 성착취 범죄로 통합하여 정의하고, 각각의 범죄 행위에 대한 형량을 달리 규정할 수 있다.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은 어디까지나 매개일 뿐, 성착취 범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아동·청소년을 유인·강요하거나 성적 피해를 주는 모든 형태의 범죄로서, 디지털을 이용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는 관점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청소년성보호법에 ‘성매매’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도록 목표할 필요도 있다. 과거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실상 구별되지 않는 범죄를 구별하려는 법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성착취 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형사법제에 반영된다면, 성착취 범죄를 근절하고 규율하기 위한 처벌의 주안점이 ‘착취 행위자’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이용당한 아동·청소년이 죄책감을 갖지 않고, 범죄 피해를 이유로 가정에서 또 다른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명확히 인지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정의하여 다양한 행위태양을 포섭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에 대한 인권적 구제를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이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취지에 부합하여 아동·청소년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

로 개편되기 위해서는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 폐지는 필수 과제라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에서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폐지 이후에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가출과 음주, 흡연 등을 이유로 혹은 성매수남을 공갈했다는 범죄 사실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았던 사례가 확인되었다.

2) 처벌 흠결에 대한 입법적 보완

(1) 신종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처벌 및 대응 입법 필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사이버공간의 확장에 따라 범죄의 수단과 방법도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든 범죄유형에 있어 법률이 완벽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처벌의 공백이 커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주요한 책무이다. 즉, 큰 이슈가 발생한 이후에야 사후처방 방식으로 행해지는 입법을 넘어,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초연결사회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한 법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현재 메타버스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형의 범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법제 영역이다. 종래 SNS와 게임에서 제공되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최근 급속히 확산되면서,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장소가 메타버스로 이동·진화하고 있는 징후가 포착되기 때문이다.

메타버스란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지칭한다. 여러 통계조사에 의하면,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주요 이용자는 10대 여성 청소년인데, 아바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온라인의 낯선 사람에게 느끼는 심리적 경계를 한층 더 약화시킨다는 점이 특히 위험요인으로 작동한다. 2021년 10월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들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기관에 한 달에 4~5건 정도 ‘메타

버스를 이용한 성착취'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메타버스의 특성을 고려한 명확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재, 아바타를 이용하여 상대방 아바타에게 행하는 성적 행위들에 적용할 법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메타버스에서 시작된 관계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현실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메타버스를 포함하여, 끝없이 진화하는 신중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입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오프라인을 통한 그루밍의 규제 강화

그루밍행위 자체는 성적 행위가 아닐 수 있지만, 성인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아동과 친밀해지기 위해 접근하고, 그 이후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성착취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왔다. 이에 청소년성보호법은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범죄로 규정하여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다(제15조의2).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범죄에서 그루밍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성적 학대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심리·정서적으로 종속된 상황에서 범죄의 적발도 어려워 더욱 위험하다. 무엇보다 가해자가 성적 의도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단계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사실상 무한대로 확장되는 피해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루밍행위의 처벌은 중요하다.

그런데 성착취 범죄의 예비단계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그루밍행위가 오프라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그루밍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는 문제점이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규제 강화가 강조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그루밍행위의 위험성이 특히 부각되면서, 오히려 전통적인 범주의 그루밍행위에 대한 규제가 간과된 것이다. 독일의 입법례를 보면, 음란한 콘텐츠(서면, 음성 또는 이미지 매체, 데이터 저장 매체, 도화 또는 기타 구현물에 담기거나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저장과 독립적으로 전송되는 내용 포함)나 그에 상응하는 대화를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그루밍행위의 경우 그 자체로 아동 성학대를 구성하며, 음란한 콘텐츠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의 콘텐츠 등을 이용하여 아동을 성적으로 유인하는 경우에도 아동 성학대의 예비로 규정하여 처벌한다. 요컨대,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그루밍에 한정하지 않고 아동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

를 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아동과 접촉하여 영향을 주는 포괄적 행위들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그루밍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전화통화나 서면, 또는 대화 등을 이용한 그루밍행위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정비되어야 한다.

3)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수사법제 정비

암호화, 익명화를 특징으로 하는 다크웹과 텔레그램이 등장하면서, 범죄 현장에 남겨진 흔적이나 단서를 토대로 범인과 증거를 찾던 과거와는 수사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으며,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온라인 사이트나 SNS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등 전통적인 수사기법으로는 그 적발이 용이하지 않게 되었다. 익명성에 철저히 숨어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약탈하는 가해자들을 찾아내고 처벌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 수사 및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잠입수사 이외에 온라인 수색도 허용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으며, 현행 잠입수사 규정 또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1) 온라인 수색의 허용

‘온라인 수색’이란 유체물 형태의 압수물 획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오프라인 수색’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디지털정보 획득을 위한 수색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 기술적 수단(원격 통신 감시 소프트웨어)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정보기술시스템에 비밀리에 접근하여 이용자의 시스템 이용을 감시하고 시스템에 저장된 내용을 열람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성범죄의 무대가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이동함에 따라, 점차 더 많은 유형의 범죄정보들이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예방 또는 수사를 위해서도 디지털 기술의 역할이 커졌다. 이에 온라인 내지 사이버공간에서의 수사활동에 관한 기술적·법적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크웹 상에서 전개되는 모든 형태의 범죄를 대상으로 온라인 수색이 허용될 수는 없지만, 형법상 내란죄, 테러단체조직죄, 아동성착취물의 유통·취득·

소지 등은 물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죄 등에 대해 엄격한 요건 하에 온라인 수색을 허용하는 독일의 입법례는 참고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 온라인 수색에 관한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법적 논의도 공론의 장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로 이행되기 이전에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온라인 수색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 수색은 강력한 비밀처분으로 국가의 영장주의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 향후 입법을 통해 온라인 수색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이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 목적의 온라인 수색을 허용하는 입법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거쳐 관련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장치들을 마련했던 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2) 잠입수사제도의 실효적 이행

잠입수사란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거나 몰래 숨어들어가 범죄를 수사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위장수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수사기법은 청소년성보호법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도 수사 현장에서도 종종 활용되던 기법이며, 학계에서도 이른바 ‘함정수사’의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왔다. 종래 우리 대법원은 함정수사를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나누어, 이미 범죄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범죄의 기회만을 제공하는 ‘기회제공형’은 적법할 수 있지만, 범죄의사가 없는 자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으로 범의를 일으켜 범죄를 실행하도록 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허용되지 않는 위법수사로 판단해 왔다. 또한 기회제공형에 속하는 경우에도 수사의 위법이 중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서는 ‘잠재적’ 성적 의도를 가진 행위자 또는 범의 여부가 불확실한 행위자에 대해서도 잠입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예컨대 랜덤채팅에의 잠입수사의 경우 범의유발형 위법한 함정수사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 수사관이 불법 대화방이나 다크웹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분을 가공하여 일부 범

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어, 이 경우 자칫 위법한 함정 수사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던 것이다.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수사를 명시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은 잠입수사의 허용범위 및 절차, 잠입수사를 통해 얻은 증거물의 증거능력, 수사관의 법적 책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잠입수사에 관한 규정은 제도 자체로 잠재적 가해자의 범의를 축소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성착취 범죄에 예방적 효과가 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잠입한 경찰을 맞닥뜨린 위험을 상정하기 때문이다. 이전의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가해자로 위장하여 아동·청소년을 만났던 것에 반해, 명문화된 위장수사 규정에 따라 성착취 범죄 가해자를 단속하는 형태로 변화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대상 함정수사는 심층면접에 참여한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이기도 했다.

다만 잠입수사는 수사의 신의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허용요건 및 절차와 관련하여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현행의 규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우선, 잠입수사의 허용요건과 관련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의 규정은 잠입수사관이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지, 판매 또는 광고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내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이다. 온라인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곳에 잠입한 수사관이 신분 위장을 위해 범죄자들로부터 요구받은 영상을 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최대한 방지하여야 함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실제의 사건을 묘사하거나 실제 사진을 사용한 영상물을 사용하는 것은 설령 수사를 위해 피해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잠입수사관의 활동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잠입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관의 면책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 징계 또는 문책하지 아니하며, 손해배상의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한 그 어떤 영역에서도 보기 힘든 생경한 구조이다. 물론 법 원칙상 공무집행과 관련한 책임 범위의 해석에서 당연히 도출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명시적인 면책 규정에 따라 오히려 종래 함정수사 제한의 법리가 간과되고 잠입수사의 남용이 우려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당한 법 집행을

수행한 수사관을 보호하면서도 수사의 대원칙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조문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

반면, 개정된 잠입수사 규정은 제도가 남용될 것을 지나치게 우려하여,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현장의 지적도 있다. 예컨대,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에 따르면,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에만 처벌되는데, 신분비공개수사나 신분위장수사를 실시하는 수사기관은 성인이므로, 그루밍죄의 기수범이 성립할 수 없다. 범죄자가 자신과 연락하는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믿었다면 (불능)미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그루밍법은 물론 잠재적 가해자를 색출하기 위한 잠입수사의 도입취지에도 반하는 결과이다. 그 밖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수사를 하려면 상급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수사가 더욱 위축될 수 있으며,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개정 법률이 위장수사의 범위인 ‘디지털 성범죄’를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밋’ 제15조의2의 죄로 한정하고 있어, 수사기관 등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의 대상으로 포섭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률을 개정하여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범위를 명백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4)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도입

디지털 성착취물은 영상물의 무한 복사, 소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영구적인 불안상태에 놓이게 된다. 디지털 성착취물 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절실한 도움은 영상물의 조기 차단 및 삭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영상물의 삭제·차단의 주체는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을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이다. 수사기관은 신고 등으로 사건 초기에 피해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영상물을 직접 삭제·차단하거나 이를 서비스제공자들에게 직접 요청하지 못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다. 수사기관에 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또는 요청의 권한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자율규제조치를 요구하거나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하고, 불이행시 삭제 등을 명령하는 절차 등을 진행하는데,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에 제약이 되는 현실이며, 일련의 절차를 거쳐 삭제명령이 있

기 전까지 유통될 위험도 있다. 디지털 성착취 역시 행위 제지 등을 통한 현장 초기대응이 필요하나, 온라인에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은 부재한 상태이다.

즉, 수사기관이 신고를 받거나 범죄현장을 확인하거나 또는 의심사실을 발견한 경우,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영상물의 확산을 차단하는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에 대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응급조치에는 첫째, 영상물 채증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것이 포함된다. 신고 또는 인지 등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 피해영상물이 확인되거나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이 해당 영상물에 대한 자료확보 등 채증을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여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직접 영상물의 삭제·차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범죄행위의 제지 및 처벌경고 등도 응급조치에 포함되어야 한다. 오프라인 범죄에 대한 범죄행위 제지를 온라인 범죄에 구현하자면, 피해영상물이 유포중이거나 유포가 의심되는 플랫폼 채널에 경고 문구를 현출하여 영상물 유통채널의 비활성화를 유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피해자에게 보호 및 삭제 지원 절차를 안내하는 것도 응급조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시설 등으로 인도하는 것도 가능하여야 한다. 범죄 대응체계가 피해 지원체계와 분절되어서는 안 되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피해자 지원은 실효적인 수사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응급조치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다크웹 등 각종 폐쇄적 플랫폼에 처벌 경고를 효율적으로 현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점검·개발하고, 응급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며, 응급조치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보급하는 것이 더불어 준비되어야 한다. 2021년 출범한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또한 2021년 10월, 성폭력처벌법 등에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의 신고 또는 발견 즉시 피해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초기 대응을 취하도록 ‘응급조치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¹⁵⁰⁾

150) 법무부 보도자료(2021. 10. 28.), “신속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을 위한 ‘응급조치’ 신설” 권고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제2차 권고 발표- 참고.

5) 적절한 법정형과 양형기준 마련

디지털 성폭력 전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규제의 사각지대였던 광고·소개, 구입·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도입되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처벌의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도 대폭 상향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 법제가 여전히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성을 간과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것처럼, SNS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매개로 성매매 범죄가 발생하고, 성폭력·성매매 상황에서 사진이 찍혀 유포되거나 협박을 받는 등 오늘날 성착취 범죄의 배경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관계 종사자들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 디지털 환경에서 일어나는 행위태양에 관한 처벌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성착취 범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 모두에서 넘나들며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오프라인에서 성착취 범죄로 시작되었지만 관련 성착취물 유포 등 온라인 범죄까지 이어지는 사례 또한 많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예비단계로 볼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개정안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불명확한 성착취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즉, 강화된 처벌 규정이 성착취 범죄 예방과 근절에 실효적으로 작용하려면 오프라인을 전제하는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과 양형기준도 디지털 성범죄만큼 상향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시청, 구입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법정형이 규정된 이후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이들 범죄에 대해 오히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보고도 있는데, 불법과 책임의 크기를 넘어서 과도한 처벌이 되지 않기 위한 고민에서 나온 선택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힘의 우열 관계를 이용한 착취적 범죄라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중대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예방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즉, 가상의 표현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라는 존재를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표현물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으며(현

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가17 결정), 얼마든지 가상의 경계를 넘어 현실의 범죄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불법의 정도와 책임이 비례하는 형사법 원칙은 지켜져야 하지만,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서 불법의 정도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1) 디지털 성착취 예방교육 강화

디지털 성착취 예방교육 강화는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 참여한 아동·청소년과 관계 종사자, 학계전문가 대부분이 한 목소리로 강조한 과제이다.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에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예방교육,¹⁵¹⁾ 성폭력 예방교육,¹⁵²⁾ 성매매 예방교육,¹⁵³⁾ 가정폭력 예방교육¹⁵⁴⁾)이 실시되고 있으나,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예방교육은 강사에 따라 강의내용에 들어가는 여부와 비중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실태가 지적되었다. 심층면접에서 학교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한 아동·청소년은 없었으며, 참여자 모두 성착취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일상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가정, 학교, 사회, 국가 모두가 디지털 성착취 범죄 근절과 예방이 우리의 사회의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그 범죄가 아동·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고 즐기는 잘못된 문화와 관행이 고착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성평등한 디지털 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디지털 성착취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4대 폭력예방교육에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처벌 강화 또는 응보만으로 척결할 수 없으며, 또래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발달적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범죄 발생에 앞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151)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152)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아동복지법 제31조 제1항 제1호.

153)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154)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관계 종사자와 아동·청소년 모두 이러한 교육에는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교는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이기 때문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조항과 관련된 문제가 교육 시스템의 모든 수준에서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야 하고,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의 위험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아동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적절한 자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CRC/C/156, para. 28).

한편, 디지털 성착취 사건은 법무부, 경찰, 여성가족부 등에서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원화된 지원체계가 없고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어느 곳에서 어떤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거나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대상에 따라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내용도 맞춤형 교육내용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복지·지원체계의 연계·협력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국가의 책무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아동복지법」 제4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며,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제1항, 제2항). 위기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교육과 특별지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도 이미 현행법에 명시된 청소년복지·지원체계의 한 내용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3조, 제14조, 제16조 등).

아동·청소년은 물론 관계 종사자 대상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학대나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이 해체된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관련된 가해아동·청소년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범죄에 노출되고, 범죄를 행하고,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그 누구도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발달을 지지하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다. 가정을 벗어난 아동·청소년은

생존을 위해, 의지할 사람을 찾기 위해, 성착취 범죄에 내몰리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복지·지원체계는 본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복지체계도 각각의 보호·지원체계와 잘 연계되지 않았다.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종사자가 나름의 노력은 했으나, 아동·청소년을 중심에 두고 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과 서비스가 무엇인지 검토되며, 교육행정과 복지행정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시민단체 종사자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관계하고 있으나, 성착취 범죄 대응체계와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어려움을 보고했다.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2020년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아동보호체계 전면개편이 이루어졌다.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위기가정의 보호 대상아동으로, 위기청소년으로 공공의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범부처 통합과 협력이 필요하며, 현행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복지 지원체계의 소통과 연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도 마땅히 중요하다.

3) 아동·청소년 권리기반 접근을 통한 회복적 사법의 실천

심층면접에 참여한 관계 종사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모호한 결과, 수사과정에서 가해자로 분류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을 찾기 힘든 상황에 봉착하기도 한다. 디지털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 보호지원을 받으나,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해아동·청소년도 아동·청소년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가 학대 피해자이거나, 부모 빈곤 및 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등으로 가정해체를 경험하거나, 가정 내 갈등과 위기 상황에서 탈가정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사회가 지키지 못한 위기가정의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노출되고, 범죄를 학습하고, 범죄를 행하거나, 범죄 피해자가 되는 모든 과정은 결코 성착취 범죄 가해자로 분류된 아동·청소년을 단지 ‘범죄자’로만 취급해서는 안 될 이유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이 가해자의 위치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때에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단순히 처벌 강화와 응보적 관점만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보다 원가정 보호와 관계 개선을 중점에 두는 다양한 보호와 지원이 효과적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 아동사법제도의 취지와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기초하여, 이들의 권리보장과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을 위반한 아동·청소년의 진정한 반성과 이를 통한 사회적 복귀를 도모하는 일련의 정책은 곧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자신의 일상을 회복하는 결과에도 기여할 수 있다. 피해와 가해를 이분법적으로 보기에 앞서, ‘아동·청소년’을 중심에 둔 정책의 아동권리 기반 접근은 범죄의 순환을 차단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처벌’보다 ‘예방’의 관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회복과 사회복귀’라는 아동사법제도의 목적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도 동등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4) 범정부 디지털 성착취 대책 전담기구 설치

디지털 성착취에 대응하여 정부의 전 관계부처가 긴밀한 연계·협력을 도모하고, 특히 피해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이 연계하며,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대응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통합적 관점에서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전담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앞서 제시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복지·지원체계의 연계·협력 제언과 같은 맥락에서 디지털 성착취 범죄 대응 업무는 다양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법제에서는 범죄 예측 및 모니터링, 유포차단, 검거, 삭제, 피해자 지원, 예방 등이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심층면접에 참여한 관계 종사자들은 분절되고 중복되는 피해자 지원체계를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는데, 경찰과 검찰,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 간 연계나 협력 없이 별도로 피해자 지원이 행해지고 있으며, 지원 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 기관 간의 소통이나 연계 부족은 피해자들도 신속한 지원을 받기 힘든 결과로 나타나며, 기존에 지원된 내용을 포함해 피해아동·청소년에 관한 정보 등이 공유되지 않아 지원의 공백이 생기거나 범죄피해가 방치되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

지던 창구를 일원화하여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자문위원회 또한 2021년 10월 ‘성범죄 피해자 ONE-STOP 지원’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로 법무부 내 피해자 지원신청 원스톱(One-Stop) 접수 창구를 설치하고, 2단계로 각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며 통합회의를 개최하고, 마지막 3단계로 피해자 지원 통합 기구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피해아동·청소년이 성착취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각 전달체계의 개별 기관이 어떤 내용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 로드맵(road map)”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법원행정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함께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과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범정부 디지털 성착취 대책 전담기구 설치가 필수적이다. 이 때 기구는 각 부처별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TF 혹은 위원회 방식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를 망라하는 전담기구가 있을 때, 비로소 공통의 계획에 따라 협력적 업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분절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이루어질 수 있다.

5) 디지털 성착취 범죄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무 강화

아동·청소년 피해 당사자 대상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의 아동·청소년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를 이용한 성매매 등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미성년자도 허위정보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할 수 있었고, 성인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아동·청소년은 기성세대와 달리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만큼, 접근 가능한 디지털 매체의 범위와 그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디지털 환경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유통되는 유해매체, 불법매체의 문제를 보여준다. 청소년범죄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성착취 범죄 매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설명한 아동·청소년 참여자도 있었는데, 해당 영화 모두 “청소년관람불가”였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유해매체 규제가 적절히 이행되지 않는 실태를 뒷받침한다. 채팅 애플리케이션 상단에 ‘경고’가 뜨긴 하지만,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응답 내용도 있었다.

생각건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현출되며 이용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매체와 관련된 기업은 사실상 성착취 범죄의 동조자이자 방조자로서, 범죄 예방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아동은 권리의 주체자인 동시에 소비자, 합법적으로 고용된 피고용인, 미래의 피고용인과 기업가,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사회나 환경의 구성원 또는 구성요소로서 기업의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다(CRC/C/GC/16, para. 2). 국가는 기업의 활동과 경영이 아동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침해된 경우에도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CRC/C/GC/16, para. 4). 또한, 기업이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유익한 디지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도록 독려해야 한다(CRC/C/GC/25, para. 36).

이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정책 집행에 있어 기술적 지원과 협력은 당연히 요청되며, 아동·청소년의 피해 회복을 위한 사회적 기구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것도 떠올릴 수 있다. 거대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자신들의 경영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심리적 영향을 포함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조사 보고서를 연 1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미국 페이스북 내부 고발 기사 참조).¹⁵⁵⁾ 기업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확장에 충분히 기여하는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각종 유해한 정보와 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화하는 책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현출되며 이용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대부분 은밀하게 발생하고 그루밍 등으로 종속적 관계가 시작되기 쉬운 특성상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서 더 큰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모니터링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매체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으로

155) David Ingram, Olivia Solon, Brandy Zadrozny and Cyrus Farivar, "The Facebook Papers: Documents reveal internal fury and dissent over site's policies", NBC News, Oct. 25, 2021, <https://www.nbcnews.com/tech/tech-news/facebook-whistleblower-documents-detail-deep-look-facebook-rcna3580> (검색일: 2021. 11. 8.).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채팅 애플리케이션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개인 간 대화 내용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에게 성범죄 관련 정보관리 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그루밍을 처벌하는 현행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범죄가 사전에 준비되고 발생하는 공간을 관리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또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확산에 고의 또는 과실로 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범죄 피해자인 원고로 하여금 배상금 산정의 적절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은 명백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이 자신의 책무를 인식하고, 그에 적합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주 형법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처벌하고, 기업이 아동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본사의 경영자 또는 경영진까지 처벌하는 호주의 사례는 특히 참고할 만하다.

6)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도의 도입 검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근래의 디지털 성착취물 범죄는 조직화·기업화되어 불법 영상물 등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하고 거액의 수입을 얻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죄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래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범죄사실의 특정 및 개별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 입증 어려워 범죄수익환수가 좌절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에 2020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등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보다 원활하게 환수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되었다.¹⁵⁶⁾

156) 제10조의4(범죄수익등의 추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의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범죄수익등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으로 추정한다.

다만, 여전히 현행법상 재산 몰수는 부가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이 있을 때에만 부가적으로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하다. 범죄자가 해외로 도주해 재판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또는 재판 도중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법원이 별도로 추징을 명령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지위와 의존적 특성을 이용하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악질적인 성격과 더불어 온라인 환경에서 범죄의 확산과 재이용이 손쉽고, 그 수익 구조도 기업화되어 있다. 범죄의 기소나 유죄판결 없어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어야 한다. 독일,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 범죄자의 해외 도주나 사망 등의 이유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한 사건 또는 최종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독립몰수제도 또는 민사몰수제도)한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다. 다만 독립몰수제를 도입할 경우, 선의의 제3자가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제 구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
[본조신설 2020. 5. 19.]

3.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의 인권적 구제를 위한 정책 제언

1) 보다 실효적인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오늘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하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체계는 기존의 성폭력·성매매 여성 지원체계, 혹은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등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디지털 매체의 특성에 기반하여 전통적인 성범죄와 그 양상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과거와 전혀 다른 전문성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아동·청소년이라는 연령에 따른 지위와 성착취 범죄 피해자라는 이중의 취약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우선 청소년성보호법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디지털을 매개로 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일어나는 성착취 범죄” 등으로 정의하여 다양한 범죄를 포괄하고, 이들 피해자를 실제로 보호·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공간의 접근성과 안정성, 종사자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 아동의 의견이 제대로 청취되는 일련의 시스템 등이 요구된다. 예컨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거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독립적으로 사이버상담을 할 수 있는 기능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도 같은 취지였다.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상담소 및 센터의 업무의 성격상 성인 성매매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위기청소년 등과는 달리 특화된 발견·상담·교육·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확인하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다만,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현재까지 전국 17개 지역에 설치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예산에 따라 지원인력이 3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독립적 기구가 아닌 3년 계약기간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하는 것부터 상담, 법률·의료·심리지원, 교육, 부모지원, 주거, 학업, 일자리 등 자활지원 및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사후지원하도록 법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범죄피해에 대한 구제와 회복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더욱이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범죄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와 지원 프로그램이 갖춰져야 한다. 위기청소년과 보호대상아동을 발굴하여 성착취 범죄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는 활동은 사실상 아웃리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도 있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을 중심에 둔 의미 있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 지원이 실천되려면, 이들 지원기관에 대한 과감한 예산투자과 충분한 권한 부여가 필요하며, 나아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일상을 다각적 방면에서 지지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연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편,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에서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은 피해 영상물의 삭제 지원이다. 이는 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과 관계 종사자와 학계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하다. 현재 디지털 성착취물의 삭제·차단 지원업무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지원센터는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2017. 9. 26.)」에 따라 2018년 설치된 이래로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을 위한 기술적인 시스템과 채증·수사지원, 검색, 추적, 삭제지원, 유포 현황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성폭력상담소 등 다른 피해자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수사·법률·의료 등에 관하여도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자 등이 신고하거나 제보한 불법정보에 대해 심의하고 해당 정보에 대해 직접 삭제를 요구하거나 접속차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엄밀히 살펴보면, 현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불법정보와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권한이 없고, 피해자의 요청, 신고에 따라 해당 사이트에 삭제요청을 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요청을 하거나, 경찰청에 채증자료를 작성하여 제보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디지털 성착취물의 신속한 삭제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차단조치의 신속성, 효율성,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시스템이 정비될 필요를 알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고유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업무와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이에 인력과

예산도 미약한 문제도 있다. 유포와 재확산이라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특성에 부합하는 구제 대책이 제대로 실천되려면, 현행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충분한 인적·재정적 자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이 진행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민사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이 입은 정신적 피해, 삭제 지원 비용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로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착취 범죄 피해 구제와 대응에 있어, 무엇보다 ‘지속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또한 중요하다. 판사 등 관계 종사자는 피해아동·청소년의 궁극적인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심리·정서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에서 나타났듯이, 피해아동·청소년은 일상의 다양한 트라우마를 보고하기도 했다. 학계 전문가 또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상담지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2) 디지털 성착취 관련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화

심층면접 결과, 관계종사자 중 아동권리에 기반한 교육을 받아 본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직접 범죄명과 범죄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떠한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듣고, 신속한 재판 보장과 재판 결과를 통지받으며, 보호자 또한 아동·청소년의 일상 회복에 적절히 역할하도록 안내하고 교육하는 일련의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현실을 알 수 있었다.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무엇이며, 이들의 권리보장이 왜 중요한지, 성착취 범죄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무엇에 중점을 두고 피해회복과 구제를 지원해야 하는지 분명한 관점을 견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이 아동·청소년을 중심에 둔 조력을 제공하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제도·정책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되더라도, 그 제도를 현장에 실천하는 사람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법제는 형식적인 문구로만 남게 된다.

현재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대응 업무 분장을 살펴보면, 법무부, 경찰,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매매상담소,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등에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관련 부처가 많아서 이들도 원스톱으로 피해자 지원을 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인데, 온라인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와 방식으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착취의 피해 특성을 이해하고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행하기에 업무담당자 등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현장전문가, 활동가 등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3)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사법환경 및 지원체계 마련

신고 단계에서부터 수사와 조사, 재판, 이후 사후 지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발달단계, 개별적 상황과 특성이 고려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이 마주하게 된 상황을 각자에게 맞는 언어로 안내되어야 하며, 표명된 의견은 실제로 절차에서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 대부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절차에 관한 안내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는 들은 적이 없으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참여자 대부분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사법체계는 아동을 존중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관련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 결과, 수사 전반에 아동친화적인 절차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없이 아동·청소년 홀로 조사에 참여하거나 아동·청소년 의사에 반해 경찰에 신고되고 보호자에게 알려졌으며, 조사를 받는 피해아동·청소년 앞에서 가해자에게 전화하여, 참여자의 실명과 신고 사실을 언급한 경찰도 있었다. 아동·청소년이 피해를 입은 즉시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보다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수사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밀이 유지되는 안전한 신고방법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범죄 발생 즉시 스스로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성착취 범죄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보호자에게 알려질 것을 가장 염려하고 있었고,

가해자의 지속적인 협박이나 임신 등 외부적 요인을 계기로 보호자에게 상황이 공유되었다는 점이 나타났다.

범죄피해의 당사자는 아동·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묻고 직접 소통하는 기관 또한 찾기 어려웠다. 국선 피해자 변호사제도가 있지만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수사방법 또한 아동·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관계 종사자 조사에서 경찰들이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아동·청소년을 통해 가해자 정보를 알아낸 뒤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수사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조사 참여자 또한 함정수사는 수사의 초점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동·청소년의 개별적 욕구와 연령 등의 상황을 고려한 전문화된 지원체계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을 만나는 기관들은 성착취 범죄 피해를 발견한 경우 즉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등 특화된 기관에 연계함으로써 피해아동·청소년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기관 간 연계와 소통이 되지 않은 결과, 피해아동·청소년이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피해사실을 여러 번 진술하게 되는 경험도 보고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은 각 지역에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기관이 확충되고, 보다 촘촘한 지원이 연계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4) 법 개정 취지를 이행하는 실효적인 법 집행

무엇보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계기로, 대폭 변화된 법률이 개정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성매매범죄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은 모두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피해자’라는 정체성을 사회 전체가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에도 계속하여 비슷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조직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처벌도 가볍게 나오는 실정이다.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개정안 도입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

상으로 기회제공의 형식으로 위장수사를 행하는 관행도 계속되고 있고, 실제로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 삭제로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사건을 입건할 수 없자,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광고행위로 입건한 사례도 있었다. 여전히 성매매와 성착취를 구분하며, 성착취 범죄를 아동·청소년의 타, 비행, 범죄로 간주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게 마주할 수 있었다.

법률의 변화는 사회적 인식을 견인하는 주요한 수단 중 하나이지만, 결국 그 법이 현장에 실천되고 정착되는 결과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적절한 이해와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다. 기존의 수사관행을 탈피하여 성착취 범죄 ‘가해자’ 대상 위장수사로 전환하고, 모든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자로 처우하고 적절한 지원체제와 연계하며, 인신매매와 다른 성착취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처벌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법 집행이 실천되어야 한다.

5) 디지털 성착취 범죄 처벌을 위한 국제공조 활성화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처벌에 있어서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효적인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강화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아동착취 및 온라인보호센터(CEOP,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ommand)’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학대에 대한 신고, 조사, 분석, 전문가 개입을 전담하며 국내·외 공조를 주도한다. 즉, 인터폴,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사법당국 등이 설립한 국제사법공조체계인 지구촌가상대책반과 협력체계를 이루어 온라인상에서의 국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대처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연방범죄수사청(BKA) 산하 ‘아동·청소년 성범죄 추방 본부(Zentralstelle für die Bekämpfung von Sexualdelikten zum Nachteil von Kindern und Jugendlichen)’가 국내 및 해외 기소 당국과 관련 기관 및 조정 사무소 사이의 연계기능을 수행하며, 인터폴 및 유로폴의 중앙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공조와 연계하여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실효적으로 근절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VI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예방 안내 책자(안)

1. 디지털 성착취 범죄와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매뉴얼 분석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예방 안내 책자(안)
3. 참고자료: 교직원 대상 디지털 성폭력·성매매 예방
통합교육 매뉴얼

1. 디지털 성착취 범죄와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매뉴얼 분석

1) 분석 결과

총 24종의 매뉴얼을 살펴본 결과, 아동·청소년용 6개, 성인용 2개, 보호자용 1개, 교사용 2개, 전체용 2개, 그리고 실무자용이 13개(중복有)였다.

(1) 디지털 성폭력 예방 매뉴얼은 제목부터 디지털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착취,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성폭력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성폭력은 성매매를 제외한 다양한 디지털 상에서 일어나는 성적 목적을 위한 사진, 영상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협박, 온라인 상의 성적 괴롭힘 등을 의미한다고 하여 용어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는 온라인 기반 성매매를 사이버 성폭력에 포함하여 설명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피해를 주요 목표로 하여 발간된 매뉴얼은 2종으로,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발간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북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발간한 매뉴얼 5종 중 1개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안내서였다. 이 중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매뉴얼은, 성매매는 성폭력·성착취가 아니라는 인식 그래프를 예로 들면서 성착취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소개한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매우 낮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여전히 피해자로 인지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의도적으로 성착취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매뉴얼에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의미를 포함하는 기관은 절반 정도이며, 모든 기관이 디지털 성폭력 발생 현황/구조/원인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고 법률, 용어, 특성/특징도 다루지 않았다.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으로, 사례를 접목시켜 예방법과 피해에 대한 대처방법을 주 내용으로 다뤘다. 마지막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기관 안내로 마무리를 맺었다.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사례와 그림을 삽입하여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디자인적 요소를

넣었다. 안양나눔여성회에서는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인식개선 콘텐츠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 활용워크북을 제작하여 학교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토론 등을 통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인 대상 매뉴얼은 기존 항목에 거의 부합하였다. 아동·청소년용과의 차이점으로는 성폭력 발생 현황/구조/원인, 특성/특징, 법률/정책/제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예방수칙보다 법률/정책/제도, 피해대처법에 중점을 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호자 대상 매뉴얼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의 아동·청소년 교사 및 보호자를 위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 대응 가이드이다. 해당 매뉴얼은 보호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매뉴얼로서,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대하는 법과 2차 피해에 대한 안내, 보호자로서의 역할이 필수로 들어가 있다. 발생 현황/구조/원인, 유형/종류/사례, 특성/특징, 예방법, 법률, 지원기관, 용어 등 전반적으로 모든 내용도 포괄적으로 담았다.

교사 대상 매뉴얼은 위에서 말한 나무여성인권상담소의 아동·청소년 교사 및 보호자를 위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 대응 가이드와 온서울세이프의 디지털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이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는 디지털 성폭력 발생/현황/구조/원인과 특성/특징을 포함하여 다루었으며, 온서울세이프는 다루지 않았다. 두 기관 모두 나머지 기준 항목은 포함되어 있다. 다른 매뉴얼과의 차이점은 학교에 관한 여러 안내사항으로 교내 디지털 성폭력 처리 절차, 성폭력 사안 처리 교직원 유의사항, 교내 디지털 성폭력 대응 체계 점검리스트, 교사로서의 역할 등을 제시된 것이다.

업무 관련 실무자 대상 매뉴얼은 기관 별로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달랐다. 하지만, 피해 지원 방법과 법률/정책/제도, 지원기관 안내는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아동·청소년용은 예방수칙을 중점으로 두었지만, 실무자 대상은 예방수칙보다는 피해 지원 방법과 실무자로서의 지침에 대한 내용 등이 속해 있어 더 전문적/구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ISSUE BRIEF>는 피해 대상별로 편을 구분하여 피해 지원 시 가장 중요한 점, 피해 지원방법 등을 요약 형태로 보여주었다.

전체 대상 매뉴얼은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북: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다. 이 매뉴얼은 유형/종류/사례와 교육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성착취 예방법, 자녀의 성착취 피해 발생 시 부모의 대처법, 지원안내, 법률(신고포상금제도, 아동법) 등에 대해 나와 있다. 성착취 예방 매뉴얼 중 전체를 대상으로 다루는 매뉴얼은 십대여성인권센터 하나이며, 교육기관/수사기관/보호자(부모) 등 대상별로 안내할 사항들을 다루어 요약적으로 정리한 것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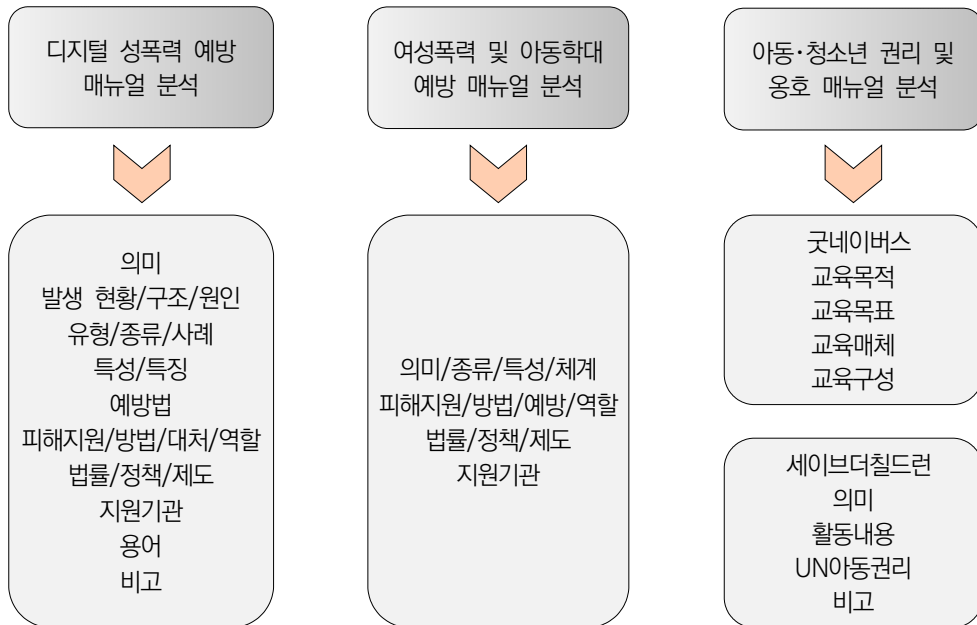
(2) 여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은 주로 실무자용과 전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무자 대상 매뉴얼들은 분석기준 항목에 대부분 부합하였다. 다만, 보건복지부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한 현장전문가용 아동안전교육 표준지침서는 교육에 대한 표준지침서이다. 교육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분석기준 항목으로 구분을 해놓았지만, 디지털 성착취 피해 예방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아동·청소년 권리 및 옹호 매뉴얼은 굿네이버스와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제공한 자료이다. 굿네이버스는 아동에 대한 권리 교육을 실무자용으로 만들었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실무자용인 옹호교육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 한편,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토론회 사전자료집은 국제아동인권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으로 제작한 것이다. 4가지 매뉴얼 모두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권리의 의미, 교육 활동내용을 다루었다.

즉, 누구를 대상으로 매뉴얼 또는 교육자료를 제작하는지에 따라 중점을 두고 있는 내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대상별로 안내자료가 달리 만들어져야 할 이유이다. 아동·청소년, 성인, 보호자, 업무 관련자 등 각 대상별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을 정하여 반드시 안내해야 할 사항에 초점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관점에서, 매뉴얼의 분량도 중요하다. 예컨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매뉴얼이 너무 길고 문자 독해 중심이라면 활용률이 낮을 것이다. 안양나눔여성회에서 제작한 아동·청소년 활용워크북은 소모임 토론을 통해 행동원칙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형태와 구성을 참고할 수 있다.

여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과 아동·청소년 권리 및 옹호 매뉴얼은 참고자료로 쓸 수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발간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합 안내서는 여성폭력 지원기관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어 지원기관 안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이프더칠드런에서 발간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옹호매뉴얼은 안전과 보호문제 항목에서 여러 사항을 제시하였는데, 보호자와 교육기관 대상 매뉴얼에 반영할 만하다. 분석기준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VI-1〉 분석기준 항목



2) 기관별 디지털 성착취(성폭력) 예방 매뉴얼 분석¹⁵⁷⁾

(1)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아동·청소년 교사 및 보호자를 위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 대응 가이드

(보호자용/교사용)_2020/53P	
의미	카메라 등(디지털 기기)의 매체를 이용한 성폭력, 동의 없이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는 것, 동의하에 찍었다고 해도 온라인, SNS 등에 동의 없이 올리는 것, 인터넷상에서 누군가를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 등을 디지털성폭력
발생 현황/구조/ 원인	▶ 피해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이유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위협과 협박 때문에 -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 나를 좋아한다고 오해해서 - 스스로에 대한 자책 때문에 - 그 외 주변 환경적인 요소 ▶ 디지털성폭력 발생하는 이유
유형/종류/ 사례	▶ 디지털성폭력 유형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유통공유, 유포불안, 온라인성착취(그룹), 온라인 성적 괴롭힘, 사진합성, 성적이미지 전송, 개인계정 도용 및 사칭, 개인정보 유출, 소지/구입/저장 ▶ 피해 체크리스트 ▶ 사례(만화로 보는 Q&A)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한 친목, 알바, 게임, 딥페이크, 연인 간의 성관계촬영
특성/특징	▶ 특성 5가지 - 시공간 제약 없이 가해 발생 - 온라인의 빠른 확산으로 인한 피해 확대

157)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포래상담팀 김유선 상담원이 정리하였다.

	- 가해자들의 범죄인식과 죄책감이 적음 - 가해자의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 - 피해자 자신이 범죄대상인 것을 모르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
예방법	-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성폭력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줍니다. - 많은 디지털성폭력이 온라인에서 친밀한 만남이나 게임, 아르바이트 등 관심사를 나누는 대화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 온라인상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본인과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도록 알려주세요. - 동의 없이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도록 당부해주세요. - 동의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을 성적이미지와 합성하거나 보내는 것은 범죄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 타인의 사진, 영상을 퍼트리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려주세요. -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반드시 어른이나 전문기관에 알리도록 당부해주세요.
피해지원/ 방법/대처/ 역할	▶ 교사 및 보호자의 역할 1. 신속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 - 디지털성폭력 피해를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경우 온라인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까지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신속한 대응은 유포, 재유포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신속한 대응은 가해자 검거나 처벌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회복은 피해정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지만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지원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변인이 임의로 처리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오히려 2차

	피해를 겪거나 주변인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성폭력 피해는 증거물과 함께 고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증거물이 소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하더라도 피해를 알게 된 시점 즉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기관으로 바로 연락주세요. 2. 평상 시 역할 - 자존감을 높여주고, 내적인 대응력을 지지해주세요. - 성폭력 통념을 점검해주세요. 3. 피해 지원 시 역할 : 피해·가해 사실 확인/상담 -> 신고/상담 -> 피·가해자 긴급 조치 -> 상담·치료 및 후속 지원 (2차 피해 예방) 4. 교사 및 보호자 상담																						
관련 법률/정책/ 제도	▶ 관련 법령 안내 <table border="1"> <tr> <td>불법촬영</td><td>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td></tr> <tr> <td>유포</td><td>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74조</td></tr> <tr> <td>유포협박</td><td>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 형법 제283조</td></tr> <tr> <td>유통공유</td><td>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td></tr> <tr> <td>온라인 성착취(그루밍)</td><td>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아동복지법 제17조</td></tr> <tr> <td>온라인 성적 괴롭힘</td><td>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07조, 제311조</td></tr> <tr> <td>사진합성</td><td>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td></tr> <tr> <td>성적 이미지 전송</td><td>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td></tr> <tr> <td>개인계정 도용 및 사칭</td><td>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07조, 제311조</td></tr> <tr> <td>개인정보 유출</td><td>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td></tr> <tr> <td>피해 촬영물 소지/구입/저장</td><td>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td></tr> </table>	불법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74조	유포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 형법 제283조	유통공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온라인 성착취(그루밍)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온라인 성적 괴롭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07조, 제311조	사진합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	성적 이미지 전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개인계정 도용 및 사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07조, 제311조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피해 촬영물 소지/구입/저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불법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74조																						
유포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 형법 제283조																						
유통공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온라인 성착취(그루밍)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온라인 성적 괴롭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07조, 제311조																						
사진합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																						
성적 이미지 전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개인계정 도용 및 사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07조, 제311조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피해 촬영물 소지/구입/저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 지원기관 소개	▶ 지지동반자 활동 안내 ▶ 피해발생 시 지원절차 및 지원기관 - (상담/신고) 성폭력상담소, 1366, 해바라기센터																						

	- (신고) 수사기관 - (불법촬영물 삭제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디지털성폭력 관련 지원기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서울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관련 용어	▶ 유통플랫폼,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텔레그램 용어
비고	▶ 우리 학교 안전 점검 - 교내 디지털성폭력 처리 절차 - 성폭력 사안 처리 교직원 유의사항 - 교내 디지털성폭력 대응 체계 점검 리스트

(2)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및 연계 매뉴얼

(실무자용)_2020/47P	
의미	디지털성폭력이란 “디지털 기기 및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 침해 행위”로서 촬영물(이미지)을 기반으로 한 동의 없는 신체 촬영, 촬영물을 유포·유포 협박·합성·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 언어(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성적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이버성폭력’, ‘기술매개젠더기반폭력’
발생 현황/구조/ 원인	-
유형/종류/ 사례	비동의촬영, 비동의 유포 및 재유포, 온라인 성착취, 온라인 그루밍, 몸캠 피싱, 사진 합성 및 도용, 유포협박, 유포 불안 및 재유포 불안, 사이버공간 내 성적 괴롭힘

특성/특징	- 발생 공간적 특성 - 기술적 특성 - 사회적 특성 -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
예방법	-
피해지원/ 방법/대처/ 역할	▶ 피해유형 별 지원방법 비동의촬영, 비동의 유포 및 재유포, 온라인 성착취, 온라인 그루밍, 몸캠 피싱, 사진 합성 및 도용, 유포협박, 유포 불안 및 재유포 불안, 사이버공간 내 성적 괴롭힘, Q&A ▶ 삭제지원 연계 방법 확인 - 피해촬영물 삭제지원(정의, 한계와 의의, 삭제지원 업무 흐름) - 삭제지원과 유포현황 모니터링 차이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신청절차(피해상황 별 지원 내용, 신청방법, 신청서류, 기관 연계 시 유의점) - 아동청소년 삭제지원 신청 안내 - 삭제지원 신청 후 내용 및 결과 확인 - 삭제지원 기간 및 연장 - 삭제지원하는 플랫폼 ▶ 지원 사실 확인서 관련 내용 ▶ 성폭력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체계 ▶ 채증방법
관련 법률/정책/ 제도	▶ 관련 법률 안내 - 비동의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촬영물 유포/재유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작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합성/편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 유통 소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적 괴롭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관련 지원기관 소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관련 용어	-
비고	-

(3) 십대여성인권센터: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북

(전체용)_2020/19P	
의미	-
발생 현황/구조/ 원인	-
유형/종류/ 사례	▶ 게임, 채팅앱, 가출, 메신저, 변호사 사칭 피해 ▶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유형) 1. 온라인 상에서 누군가가 나의 몸 사진 혹은 벗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거나, 나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내려고 할 때 2. 온라인 상에서 나의 신체 사진을 누군가와 공유했는데, 그것을 빌미로 협박을 받을 때 3. 누군가가 나에게 통화, 메시지 등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할 때 4. 온라인 상에서 알게 된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실제로 만나자고 계속

	요구하고, 내가 그것에 압박감을 느낄 때 5. 누군가가 나에게 성관계에 대해 말하고 내가 불편함을 느낄 때 6.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걸어 성적인 대화나 만남을 요구할 때 ➤ 온라인 상에서 알게 된 누군가에게 개인정보(학교, 사는 곳, 메신저 ID 등)나 나의 사진/영상을 보내줄 경우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나 또한 누군가에게 개인정보나 사진/영상을 보내달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 십대여성인권센터를 만난 친구 이야기
특성/특징	-
예방법	▶ 교육기관 혹은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상황의 아동·청소년을 눈여겨 봐주세요! - 성적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 - 현재 신체학대의 증후가 있거나, 성병 감염의 증후가 있는 아동·청소년 - 가출 경험이 있거나, 현재 가출 중인 아동·청소년 - 일정 기간 동안 행방불명되었거나 규칙적으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아동·청소년 - 규칙적으로 학교를 빠지거나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청소년 - 착취에 연루된 다른 아동·청소년과 어울리는 아동·청소년 - 위기 아동·청소년 돌봄 시스템에 속한 아동·청소년 -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고가의 선물, 의료, 휴대폰 등을 가진 아동·청소년 -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성인과 연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또는 가까운 성인과 부적절한 의사소통의 관계로 보이는 아동·청소년 - 잘 수행해왔던 이전 활동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나 철회를 보이는 아동·청소년 - 기분이 자주 바뀌고 감정적인 안정이 안되는 아동·청소년 - 폭력 단체 가입 및 폭력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 등을 자주 방

	문하는 아동·청소년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은 보호 대상이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에게서 이러한 상황과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아동·청소년은 성착취 위협에 노출되어 있거나, 성착취 피해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니 눈여겨 보시고, 발견 시에는 전문기관과 꼭 상의해주세요
피해지원/ 방법/대처/ 역할	▶ 자녀의 성착취 피해 발생 시, 부모의 대처요령 - 부모가 당황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무엇보다 자녀가 ‘피해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 ‘피해자’로서 전문 상담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자녀가 자신의 피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하며,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신뢰관계도 형성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파악하지 말고, 전문 상담기관과 상의해야 한다. ▶ 십대여성인권센터 통합지원체계 - (발견) 사이버포래상담원 발견, 사이버 아웃리치, 오프라인 아웃리치,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연계, 사이버 상담 - (통합지원) 양성교육 및 지속교육, 심리상담, 문화활동, 역량강화, 법률/의료/심리지원, 주거지원 연계, 교육, 부모상담, 생활지원 - (자립·자활) 사이버포래상담원 활동, 취업 역량 증진 및 자격증 취득, 대안 학교, 검정고시 등 학업지원, 상급 학교 진학, 직·간접 일자리 안내 → 전문가 그룹(법률·의료·심리·IT지원단)의 지원 → 저변 확대: 전문가 양성, 교재 개발, 법 제도 개선, 연구 활동, 국제 연대, 온·오프라인 홍보 ▶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소개 - 사이버 상담 및 모니터링 - 직접 지원: 법률/의료/심리/학업/교육지원, 주거지원 연계, 일자리 연계, 부모상담

관련 법률/정책/ 제도	▶ 신고포상금 제도 알고 있나요? - 신고포상금 제도란?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의 범죄를 신고하면 7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 -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 신고사항 발견 → 112,117 또는 안전드림센터 신고 → 여성가족부에 포상금 신청 → 여성가족부 검토 → 포상금 지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1.20.
관련 지원기관 소개	- 십대여성인권센터 -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포래상담팀 - 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S·N·S(Stop N Start)
관련 용어	-
비고	-

(4) 안양나눔여성회

가.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인식개선 콘텐츠(아동청소년 활용워크북)

(아동·청소년용)_2020/16P	
의미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여 촬영, 저장, 유포, 협박, 전시, 판매하는 등의 온라인 환경, 미디어, SNS 등에서의 모든 폭력을 포괄한다.
발생 현황/구조/ 원인	-
유형/종류/ 사례	▶ 단톡방 토론회 - 단톡방 외모품평, 이대로 괜찮은가? - 수학여행 중 불법촬영, 장난이라고? - 연예인 동영상, 입장 바뀌었나?

특성/특징	-
예방법	-
피해지원/ 방법/대처/ 역할	▶ 디지털성폭력 Free-zone - 디지털성폭력 없는 우리 교실, 함께 약속해요! - 단톡방 에티켓, 우리가 새로 쓴다! - 친구에게 일어난 디지털성폭력, 어떻게 도울까? ▶ 피해발생시, 이것만 기억해요! 피해인지 -> 지지자 찾기 -> 정보 확보 -> 증거보존 -> 상담신고 = 피해회복
관련 법률/정책/ 제도	-
관련 지원기관 소개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여성긴급전화 1366
관련 용어	-
비고	온라인성인지감수성 자가진단, 자가진단 채점방법

나.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성인편)

(성인용)_2020/30P	
의미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여 촬영, 저장, 유포, 협박, 전시, 판매, 시청, 소지하는 등의 온라인 환경, 미디어, SNS 등에서의 모든 폭력을 포괄한다.
발생 현황/구조/ 원인	▶ 피해상담 통계 피해상담통계, 가해자 및 피해자 연령,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증가율과 처벌선고형 ▶ 디지털성폭력의 원인 1. 산업구조 생산, 유통, 소비, 삭제 사이클 소개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문화 2. 사회문화적인식 디지털성폭력의 기반이 되는 야동문화 3. 피해자를 향하는 시선 피해자다움, 순결한 피해자 프레임 4. 구조와 문화의 연결고리 피해촬영물을 개인취향으로 소비, 유통하는 사회구조 야동문화에 관대하고 피해자에게 엄격한 사회문화
유형/종류/ 사례	▶ 디지털성폭력 피해 유형 불법촬영, 유포피해, 성적괴롭힘, 딥페이크, 온라인성착취, 협박피해, 불안피해, 온라인그루밍
특성/특징	익명성, 시공간무제약성, 비대면성, 유포인지불가, 계속성, 반복성, 암수성, 전파성
예방법	-
피해지원/ 방법/대처/ 역할	▶ 디지털성폭력 대응실전 1. 불법촬영 인지한 즉시 112에 신고(설치된 카메라를 증거로 제출, 가해자의 휴대폰 기종 및 인상착의 단서 기억) 2. 유포피해 증거를 확보하여 관할경찰서에 신고(게시물링크, 원본영상, 캡처본, 가해자 아이디 등 유포증거 확보 후 단면인쇄해 고소장 작성, 해당사이트운영자 및 삭제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요청) 3. 유포협박 증거를 확보하여 관할경찰서에 신고(협박메시지, 통화내용 녹취 등 가해행위 채증, 상대방이 협박하는 촬영물 원본 지참 신고, 가해자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 혹은 신고자의 관할 경찰서로 신고) 4. 지인피해 피해자가 용기를 갖고 피해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 안내 및 전문기관 안내

	5. 전문기관 소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관련 법률/정책/ 제도	▶ 관련 법령 안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2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제74조(벌칙)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청이용음란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 2(신설: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 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조의 2(예비, 음모) - 처벌 수위 안내 ▶ 근절을 위한 노력 1. 개인적 노력 스티키 스마트폰 접착패드 부착, 캠페인 등 2. 사회적 노력 온라인플랫폼 관리규제강화, 가해자처벌 관련법 기준 강화, 피해자 종합지원 및 기금지원 강화, 디지털성폭력 시민인식개선교육 => 안전하고 성평등한 온라인 사회환경
관련 지원기관 소개	-
관련 용어	-
비고	- 활동 1. 온라인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 - 활동 2. SNS를 사용하면서 불쾌하거나 성적 모욕감이 들었던 경험, 개선 필요한 부분? - 활동 3. 우리 조직에서의 온라인 에티켓 정하기

(5)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 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아동·청소년용)_2020/10P	
의미	-
발생 현황/구조/ 원인	-
유형/종류/ 사례	-
특성/특징	-
예방법	1.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2.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 클릭하지 않기 3.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영상 찍거나 보내거나 보지 않기 4. 타인의 사진/영상에 성적 이미지 합성하지 않기 5. 타인의 사진/영상 퍼트리겠다고 위협하지 않기 6.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 묻거나, 만남 요구하면 어른들께 알리기 7. 촬영, 유포, 협박 등으로 두려움 느낄 때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피해지원/ 방법/대처/ 역할	-
관련 법률/정책/ 제도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여성긴급전화1366 - 청소년상담전화 1388 - 카카오톡 ‘여성폭력사이버상담’
관련 지원기관 소개	-
관련 용어	-
비고	-

(6) 온서울세이프

가. 디지털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길잡이용)

(교사용)_2020/12P	
의미	스마트폰, 태플릿PC, 디지털 카메라 등의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저지르는 성폭력을 디지털성폭력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허락받지 않고 하는 촬영,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인터넷이나 단체 채팅방에 올리겠다는 협박, 다른 사람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 등을 허락받지 않고 퍼뜨리기,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이나 채팅으로 누군가를 성적으로 괴롭히기 모두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발생 현황/구조/ 원인	-
유형/종류/ 사례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유포 협박, 온라인 그루밍, 합성물 제작, 사이버 공간 내 언어 성폭력, 성적 이미지 전송, 개인정보 도용/사칭
특성/특징	-
예방법	▶ 디지털성폭력 없는 교실을 위해 길잡이가 할 수 있는 일 - 장난과 괴롭힘 구분해주세요. - 가해와 피해는 양비론으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 성평등한 교실이 디지털성폭력을 예방합니다.
피해지원/ 방법/대처/ 역할	▶ 디지털성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청소년을 진심으로 지지해주세요. - 증거를 모으세요. -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는 청소년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 당사자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 “네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야”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도 전하지 마십시오.

관련 법률/정책/ 제도	▶ 관련 법률 안내 - 불법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비동의 유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유포 협박 : 형법 - 온라인 그루밍 및 사이버 공간 내 성적괴롭힘 : 사례에 따라 다름.
관련 지원기관 소개	여성긴급전화 1366,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지지동반팀, 탁틴내일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관련 용어	-
비고	-

나. 디지털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청소년용)

(아동·청소년용)_2020/12P	
의미	스마트폰, 태플릿PC, 디지털 카메라 등의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저지르는 성폭력을 디지털성폭력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의 몸을 허락받지 않고 하는 촬영,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인터넷이나 단체 채팅방에 올리겠다는 협박, 다른 사람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 등을 허락받지 않고 퍼뜨리기,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이나 채팅으로 누군가를 성적으로 괴롭히기 모두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발생 현황/구조/ 원인	-
유형/종류/ 사례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유포 협박, 온라인 그루밍, 합성물 제작, 사이버 공간 내 언어 성폭력, 성적 이미지 전송, 개인정보 도용/사칭
특성/특징	-
예방법	▶ 디지털성폭력 없는 학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몸을 허락 없이 찍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의 몸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허락 없이 퍼나르지 않습니다.

	- 디지털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을 발견하면 용기를 내 지적합니다. 지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위에 알려 올바른 대처 방법을 함께 고민합니다. - 디지털성폭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나도 용기를 내 동참합니다.
피해지원/ 방법/대처/ 역할	▶ 디지털성폭력을 겪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증거를 모으세요. - 도움을 요청하세요. -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 친구가 디지털성폭력을 겪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피해를 겪은 친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 “네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세요. - 친구가 겪은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 가해자를 편들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정책/ 제도	-
관련 지원기관 소개	여성긴급전화 1366,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지지동반팀, 탁틴내일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관련 용어	-
비고	-

(7)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가.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실무자용)_2017/103P	
의미	사이버성폭력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의미하며, 젠더에 기반한 폭력입니다. 디지털성폭력, 온라인/인터넷 기반 성폭력, 성적 이미지 조작/착취 성폭력, 온라인 기반 성매매, 온라인 상의 성적 괴롭힘 등이 포함되며, 행위를 매개하는 기술적 의미와 피해 발생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발생 현황/구조/ 원인	▶ 발생현황 - 예전엔 잘 몰랐던 성폭력 - 늘어나는 신고/상담/심의 요구 - 법적, 제도적 해결의 공백 - 사이버성폭력 사건해결, 나침반 필요 ▶ 발생원인 - 젠더 기반 폭력과 혐오문화 - 대중매체에서의 여성 차별적 문화 - 남성중심적인 인터넷/사이버 공간 - 사법절차 및 피해구제장치의 미비
유형/종류/ 사례	▶ 가해행위별 유형과 종류 - 촬영물 이용 성폭력(촬영, 유포/재유포, 유포협박, 유통/소비)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특성/특징	▶ 기존의 성폭력과 무엇이 다른가요? - 발생 공간의 특성(시공간 초월,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 가능, 가해업체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가해자가 외국에 있을 때 처벌 어려움, 피해 발생 인지 불가, 사진/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맞는지 확실하지 않음)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1대 다수의 경우가 많음, 무수한 가해자가

	존재) - 가해자의 특성(죄책감이 적으며 가해자의 연령 및 사회적 위치 등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음, 전 연령대에서 접근성이 높음) - 피해자의 특성(심리적 피해, 사회생활의 어려움, 적극적 대응 어려움, 누구나 피해 노출 가능성이 있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 할 거라는 두려움) - 수사/재판 과정 시의 특성(피해자 사진/영상이 노출되며 2차 피해, 초기 대응 부족,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 미비, 편견 등) - 관련 범죄의 특성(현실 성폭력과 밀접한 관계, 최음제 등 불법약물이나 성매매 알선 등 불법 광고와 연결) - 기술적 특성(피해영상 삭제 및 채증을 위한 전문적 기술의 요구) - 사회 구조적 특성(거대 웹하드 업체 등 유통자본산업과 연결되어 있어 개인에 대한 처벌만으로 근절이 어려움, 삭제 대행 업체의 상업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신고/고소가 어려울 시 피해자의 금전적/정신적 피해 발생 가능, 범죄가 사소하게 여겨질 가능성, 전문지원시설의 부족) ▶ 여전히 공통점도 존재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자 본인의 역할 부담, 피해 해결의지와 치유의 힘이 존재
예방법	-
피해지원/방법/대처/역할	▶ 사이버성폭력 사건해결안내 1. 대응에 앞서 생각해 볼 것: 신고, 고소와 함께 해야 할 고민들 - 상황인식하기(심리적, 신체적 건강 살피기, 내가 처한 사회적 상황 살피기, 사건 정리해보기, 법적 규정 알아보기) - 내가 원하는 목표 세우기 - 나를 방해하는 요인 검토하기 - 주변지지 체계와 나의 강점 파악하기(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찾기, 나에게 적합한 제도적 지원 검색, 나만의 강점을 파악하기)

	- 사건 해결의 한계 설정하기 2. 성폭력 고소과정에서의 2차 피해 점검표 수사과정에서 겪은 2차 피해가 있는지 문항에 맞추어 답변 3. 사이버성폭력 수사관을 위한 지침 사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지 않기, 가해자를 대변하거나 두둔하지 않기 등 4. 사이버성폭력 법적 대응: 유형별 과정 촬영, 유포, 재유포, 유포협박, 유통,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등 각 항목에 대한 적용법률 및 예시 5. 비동의의 성적영상 유포 대응하기 팀블러, 트위터, 페이스북 내부신고 및 방심위 신고 방법 안내 ▶ 성폭력 사건지원자를 위한 안내 * 성폭력 사건 해결 지도(비제도적 해결 및 제도적 해결로 나누어 맵 안내) 1. 지원과정과 소속공간별 해결절차 사건접수->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 다양한 사건해결 방법의 장단점 검토하기->사건해결 방법 결정하기 2. 지원자로서 나 돌아보기 - 지원자로서 해야 할 일/하지 말아야 할 일 - 지원자로서 나의 인식 점검하기 - 나의 사회적 위치와 조건 돌아보기(직접 작성 활동 진행)
관련 법률/정책/ 제도	▶ 사이버성폭력에 맞서기 1. 법과 제도의 변화 필요 - 피해현실을 포괄하는 법해석 및 법개정 필요 - 수사과정에서의 추가 피해 없게 하기 - 거대 웹하드 업체에 대한 감시와 제재 - 피해촬영물을 빌미로 한 유포협박 피해에 대한 제도적 방안 필요 - 사이버성폭력 특성 상 근절을 위해 국제공조 필요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및 정책 마련 필요

	2. 인식 개선 및 문화운동 - 당신은 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과 모습으로 상호 교류할 권리가 있습니다. - 온라인 공간에서도 성평등의 가치를 지향해야 합니다. ▶ 성폭력피해자권리보장제도
관련 지원기관 소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기관, 무료법률 지원 기관)
관련 용어	- 사건지원에 필요한 용어 : DNA필터링, NAS, P2P, SNS, 리블로그, 마그넷, 비트코인, 스냅챗, 썸네일, 웹하드, 크롤링, 텀블러, 토렌트, 해시값, 해비업로더 정의 설명 - 사이버성폭력 관련 은어 : 고등어, 골뱅이, 국노, 국산, ㄷㄷ, 은꼴, 지인능욕, 지인얼싸 정의 설명 - 참고할만한 수사재판 절차와 용어
비고	-

나.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을 위한 기본서

(실무자용)_2018/136P	
의미	- 인터넷, 모바일, SNS 등의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젠더 위계에 기반한 폭력이다. - 촬영된 성적 이미지를 조작/착취/유포/유포 협박하는 성폭력, 온라인상의 성적 괴롭힘 등이 포함된다. - ‘사이버’는 행위를 매개하는 기술적 의미와 피해 발생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다.
발생 현황/구조/ 원인	▶ 사이버 성폭력 구조 1. 사이버성폭력의 구조 2. 사이버성폭력을 형성하는 산업구조 - 웹하드 : 제휴콘텐츠 웹하드, 데이터베이스 관리회사, 디지털 장의사 업체 간 유착관계, 웹하드의 사이버성폭력 확대재생산 및 적극

	적 방조 - 불법 포르노 사이트 : 상식 밖의 운영, 포인트/등급제도, 카테고리 분류, 웹하드와의 상부상조 3. 사이버성폭력을 형성하는 문화적 구조 - 놀이문화로서의 ‘야동’ - 피해자다움과 순결한 피해자 프레임
유형/종류/ 사례	1. 촬영물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공공장소 불법촬영 후 유포,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합성 및 편집 후 유포, 유포 협박,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촬영물 전송, 소비 2. 그 밖의 사이버공간 내 성폭력 단톡방 내 성폭력, 게임 내 성폭력, 온라인 커뮤니티 내 성폭력 3. 촬영물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의 특성 불안피해 발생, 폭력의 학습
특성/특징	-
예방법	-
피해지원/ 방법/대처/ 역할	1.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피해지원 상담지원, 삭제지원, 수사/법률지원, 심리치료 연계 지원 2. 피해 지원 과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 현행 법체계에서 사이버성폭력 대응의 한계 - 삭제 지원의 한계 - 피해경험자와의 접촉 없이 이루어지는 피해 지원: 피해경험자 지인의 신고,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피해의 지원, 안전한 피해 말하기가 불가능한 세상 3. 한사성이 추구하는 피해 회복과 지원자의 역할
관련 법률/정책/ 제도	▶ 정책과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1.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 단계별 개선방안 및 조치 계획: 변형 카메라 판매 및 촬영, 불법영상물 유포 및 신고, 디지털 성범죄 단속 및 수사,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 개선점: 여전히 부족한 웹하드 피해촬영물 유통 문제 해결 방안, 사후조치 보다는 사전조치가 시급, 2차 유포 방지 대책이 필요, 아동 청소년 음란물 규제 수준의 피해촬영물 규제 방안 필요 2. 해화역 시위를 통해 살펴본 경찰, 검찰, 법원의 과제
관련 지원기관 소개	-
관련 용어	-
비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선언문

(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 위기대응 모니터링 ISSUE BRIEF ON

(전체용)_2020/2021/ 총9호, 각 호 2~4P	
텔레그램 피해자 지원편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피해 지원 왜 어려운가? -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상담 및 지원 방법
유포불안 피해자 지원편	피해지원 시 가장 중요한 점 - 지원내용 - 신청방법
사진합성 피해자 지원편	피해지원 시 가장 중요한 점 - 구체적 지원방법 - 지원 내용 - 신청방법
미성년자 피해자 지원편	피해지원 시 가장 중요한 점 - 지원방법
이주여성지원편	피해자 지원시 알면 좋은 정보 - Q&A로 보는 피해지원
강화된 디지털 성폭력 대응체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명 - 법 개정 설명
아청법 개정으로 본 피해자 지원편	아청법 개정 내용과 변화방향 -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
변화하는 여성폭력법 제도	스토킹처벌법 - 무료법률지원 제도 개정 - 성폭력방지법 주요 개정 내용 안내

나. 디지털 성범죄 예방하는 슬기로운 학교생활 E-BOOK(청소년용/초등학생용)

(아동·청소년용)_2020/15P	
의미	-
발생 현황/구조/ 원인	-
유형/종류/ 사례	▶ 사례 - 학교생활을 고스란히 SNS에? - SNS에서 만난 친구, ‘누구나 넌’ - 우리반 단톡방 에티켓 - 10대 연인 간에도 나타나는 디지털 성범죄 - 내 친구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라면?
특성/특징	-
예방법	-
피해지원/ 방법/대처/ 역할	▶ 피해지원 Q&A - 피해촬영물 삭제하려면 꼭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신고할 용기가 나지 않아요. 꼭 경찰 신고해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제 몸을 찍은 영상/사진이 인터넷에 퍼졌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하죠? - 제 일상사진을 이용해서 성희롱하는 경우도 피해인가요? - 저의 피해촬영물을 누군가 유포할까봐 두려워요. -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실시간 협박을 받고 있어요.
관련 법률/정책/ 제도	-
관련 지원기관 소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련 용어	-
비고	-

다. 아라언니가 알려주는 디지털 성범죄 알아차리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랜선체험

(아동·청소년용)_2020/12P	
의미	-
발생 현황/구조/ 원인	-
유형/종류/ 사례	
특성/특징	-
예방법	▶ 사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랜선체험 - 무심코 받은 메시지, 어떻게 디지털성범죄로 이어질까? - 처음에는 친구처럼 말을 걸어와. - 같은 여자니까 사진을 보내줘도 되지 않을까? - 친구가 되었으니 집 주소와 학교는 말해줘도 되지 않을까? - 원래 사귀는 사이에는 이런 사진을 주고받는거라고?- - Quiz 정답 & 풀이
피해지원/ 방법/대처/ 역할	▶ 초등학생 학부모를 위한 5가지 1. 아이 탓하지 않기 2. 아이 안심시키기 3. 피해지원, 빠르게 전화하기 4. 피해가 일어난 채팅방 나가거나, 계정 삭제하거나 피해촬영물 삭제하지 않기 5. 좌절하지 않기
관련 법률/정책/ 제도	-
관련 지원기관 소개	잊지마! 1366, 1388
관련 용어	-
비고	-

라.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디지털 성폭력 바로보기

(실무자용/성인용)_2019/54P	
의미	- 디지털성폭력이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 등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하며, 이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입니다. - 디지털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디지털성폭력의 범위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으며, 점차 다양해지는 디지털성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생 현황/구조/ 원인	▶ 디지털성폭력 발생현황 ▶ 디지털성폭력 발생이유
유형/종류/ 사례	-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 -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 유포 협박 - 사진 합성 - 불법촬영물 공유/소비 - 그 밖의 디지털성폭력 : 온라인 그루밍, 스튜디오 및 개인 방송에서의 촬영, 온라인에서의 성희롱, 온라인에서의 스토킹,
특성/특징	기존 여성폭력과의 차이/디지털성폭력 가해, 피해 특성
예방법	▶ 대학, 직장 등 공동체에서의 디지털성폭력 예방
피해지원/ 방법/대처/ 역할	▶ 타인의 피해를 알게되었을 때의 대처 - 타인의 피해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립니다. -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 피해 회복의 조력자가 되어주세요.

	▶ 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 플랫폼 별 피해촬영물 신고방법 기재 ▶ 실무자를 위한 디지털성폭력 피해 지원 사례
관련 법률/정책/ 제도	▶ 정부 대응 디지털성폭력 대응 체계 마련, 단속 및 가해자 처벌 강화 ▶ 법률 - 촬영물이용성폭력 -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재유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유포협박) 형법 - (유통/소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 사이버공간 내 성적 괴롭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관련 지원기관 소개	▶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 안내 ▶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 연계 전 확인해야 할 내용
관련 용어	-
비고	-

마.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안내서

(실무자용)_2019/26P	
의미	성매매와 성착취 용어
발생 현황/구조/ 원인	▶ 왜 만들었나요? (매뉴얼 제작 의도) 1. 넓어지는 피해 ① 피해의 전연령화 - 성매매 유입 당시 연령 그래프 ② 스마트폰 채팅앱·SNS플랫폼을 통한 성착취 피해증가

	- 첫 성매매 유입 경로 그래프 - 성매매 유형 그래프 ③ 길들여진 관계에서의 그루밍 성범죄 만연 - 20세 미만 성폭력 피해 중 그루밍 성폭력 비율 그래프 - 그루밍 피해 당시 연령 그래프 ④ 학교·가정 안팎의 구분 없이 피해 확산 - 조건만남 경험 시기 그래프 - 성매매에 이용된 청소년의 재학 여부 그래프 - 전국 7개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상담 이용자 현황 그래프 2. 숨겨지는 피해 ①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 - 청소년들이 말하는 신고할 수 없는 이유 그래프 - 언론에 의한 피해 내용 그래프 ② 성착취에 수반되는 부당 피해 - 성매수자로부터 입은 부당한 경험 그래프 - 성매매는 성폭력·성착취가 아니라는 인식 그래프 3. 그래서 우리는 - 성착취 용어를 사용 -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문제 - 청소년의 편
유형/종류/ 사례	-
특성/특징	-
예방법	▶ 변화에 동참하기 1. 나로부터 시작되는 인식 변화 - 변화를 위한 다섯 가지 약속 - 내가 할 수 있는 일 : 여성·시민단체 활동 관심갖기, 여성주의 회원활동 함께하기, 성평 등 교육콘텐츠 활용하기, 디지털 환경 감시하기

	2. 기관과 기관이 만드는 변화 - 우리 기관이 할 수 있는 일 : 기관정보와 각자의 역할 숙지, 유사기관 실무자 간 교류 확대, 기관 특성을 살린 연계체계 구축 - 주요 피해상황 : 개입·지원할 수 있는 주요기관
피해지원/ 방법/대처/ 역할	▶ 묻고 답하기 - 가출 상황에서 돈을 벌려고 조건만남을 한 청소년도 성착취 피해자인가요? - 성매매는 개인의 선택 아닌가요? -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는데 신고를 해서 청소년이 처벌받을까봐 겁이 납니다. - 저는 청소년을 돕고 싶는데 당사자가 지원을 원하지 않고 소극적입니다. - 부모 등 보호자가 청소년 지원을 거부합니다. -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처음 지원할 때 유의할 점을 알려주세요. - 성매매에 재유입되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지원하면 되나요? - 청소년들에게는 어떠한 교육과 개입이 필요한가요? - 채팅앱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 아닌가요?
관련 법률/정책/ 제도	▶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률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 성매매처벌법 - 청소년성보호법 또는 아동법 - 성폭력방지법 ▶ 아동·청소년의 법적 기준 ▶ 법·제도 변화로 나아가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활동 -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관련 지원기관 소개	▶ 알아보기 -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체계 : 생활시설/이용시설 -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보호·지원체계 : 성매매피해자보호법/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생활시설/이용시설 - 지원기관 목록 : 지역별 분류 - 청소년 상담·보호·교육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성문화센터 - 위기상황 개입 전문기관 : 성매매피해 사이버 상담, 자살·자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전문기관, 불법촬영·유포 피해, 여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학교폭력 피해신고, 성매매피해청소년 의료지원
관련 용어	-
비고	▶ 랜덤채팅앱·소개팅앱의 특징 - 익명성, 허술한 성인 인증, 증거수집 어려움, 포인트 수익구조, 영상채팅으로 변화, 편법적 운영, 관련 법 사각지대, 성착취 목적의 성인이용자 ▶ 온라인서비스 제공사업자 등의 랜덤채팅앱 규제를 위한 정책 변화 노력 구글플레이스토어/원스토어

3) 기관별 여성폭력 및 아동폭력 예방 매뉴얼 분석

(1)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 피해자 지원에 관한 안내서

(실무자용)_2015/15P	
의미/종류/ 특성/체계	-
피해 지원/방법/	▶ 지원제도 소개 1단계. 사건발생 및 신고

예방/역할	- 즉시 경찰112 신고 후 해바라기센터 방문하여 증거채취 및 의료 지원 - 신고가 망설여진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먼저 상담 받기 - 신고 후 신원이 알려질까봐 두렵다면?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가명조서, 이사비 지원, 비상호출기 지원 가능 2단계. 지원 - 가까운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받은 후 법정 및 수사기관 동행, 법률 및 의료 지원 연계 등 도움 받기 - 피해 회복에 대한 의료비, 간병비는 여가부 차원에서 지원 가능 -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에서 일정기간 보호 및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직업 훈련비도 지원 가능 - 신고 후 국선변호사 무료 지원 가능, 상담소를 통해 무료법률 구조사업 지원 요청 가능 - 전국피해자구호전화에서 긴급 생계비, 자녀 학자금 등 지원 가능, 검찰청 1301에서 범죄피해구조금 신청 가능 3단계. 사후지원 - 성폭력 상담소와 해바라기 센터를 통한 ‘치료회복프로그램’ 참여 가능
법률/정책/제도	▶ 관련 법령 안내 - 성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지원기관	▶ 관련 지원기관 소개 1. 해바라기센터 - 수사: 여성경찰관 상주,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진술조력인 지원을 통한 진술 조력 제공

	- 상담: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긴급상담 - 의료: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전담 의료진이 무료진료. 응급키트를 활용한 증거물 채취 - 법률: 무료법률구조사업, 피해자 국선변호사 연계 - 동행 서비스 - 돌봄비용 지원 - 간병비 지원
	2. 성폭력상담소 - 상담 및 각종지원: 상담, 수사·재판 절차 지원, 의료지원 서비스 연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역 내 시설 연계
	3. 전담의료기관 -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전담 의료진이 무료진료 - 응급키트를 활용한 증거물 채취
	4. 무료법률구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 무료법률구조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형사·민사·가사 소송(고소, 재정 및 항고 신청, 본안소송 등 포함) 등 무료법률 구조 지원 -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통한 무료 변호 지원
	5.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 생활시설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으로서 보호, 상담, 수사·재판 절차 지원, 의료지원서비스 연계, 자립·자활 지원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그룹홈)으로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시설 퇴소 시 숙식 및 보호, 직업교육 등 자립 및 자활 지원
	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사후지원) - 치료회복프로그램: 집단상담, 미술치료, 사이코드라마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 사례관리(성폭력상담소): 피해자 장기 사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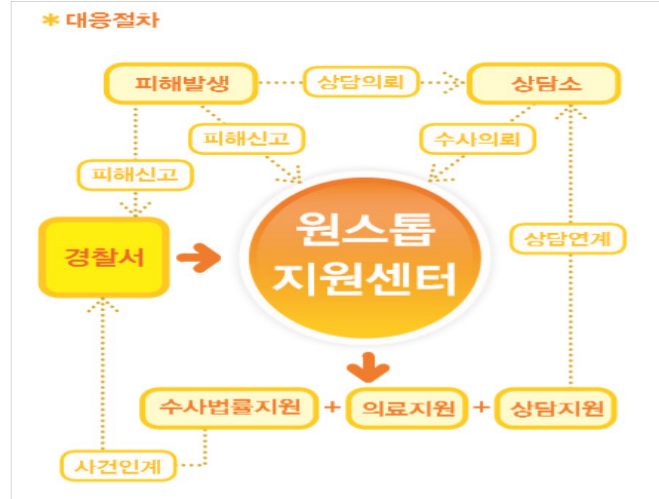
	▶ 기타 피해자 지원 관련 제도 및 기관 안내 - 범죄피해구조금: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1301) - 스마일센터: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 가명조서: 해바라기센터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1301) - 비상호출기: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1301) - 이사실비 지원: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1301) - 범죄피해자통지제도: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1301) - 피해자 임시숙소: 16개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센터: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02-700-2973) ▶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 연락처 - 긴급상담: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 상담전화(1388) - 수사, 상담, 의료, 법률 지원: 해바라기센터 - 상담, 법률지원: 전국 성폭력 상담소 - 의료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CARE팀 - 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변호사협회 ▶ 해바라기센터 지역별 연락처

(2) 전남동부해바라기센터: 전남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실무자용)_2012/13P	
의미/종류/ 특성/체계	▶ 성폭력의 정의 - 정의: 피해자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행위 - 아동성폭력: 13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 협박, 폭력, 유인 등을 통해 가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 - 장애인성폭력: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모든 성적행위

	▶ 가정폭력의 정의 -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 - 가족 구성원의 범위: 배우자(사실혼의 관계 포함) 및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거나 이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 서자의 관계이거나 이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 ▶ 학교폭력의 정의 -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폭력 등으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폭력 등이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집단 따돌림 등) - 유형: 언어·심리적 유형, 신체·물리적 유형 ▶ 아동·장애인 성폭력의 특성 폭력이나 협박보다는 먹을 것이나 선물로 유인, 그루밍 과정, 아는 사람에게 의한 피해가 대다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 양상을 가짐, 아동·장애인의 경우 성폭력과 친밀감을 구분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음. ▶ 가정폭력의 특성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그 정도가 심각해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었을 때 신체적 손상과 함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되며 폭력에 대한 공포와 학습된 무력감 때문에 폭력으로부터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믿게 됨,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폭력에 항거하기보다는 폭력적인 가정에 안주하게 됨,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력으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 하여 다른 범죄로 이를 해결하려고 함.
피해 지원/방법/ 예방/역할	▶ 지원제도 소개 피해자 직접 신고, NGO 연계접수, 수사기관 연계=>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 조치요령 지역별 경찰서, 전남 순천 원스톱지원센터, 전남 목포 해바라기센터에 신고

▶ 대응절차(출처:전남동부해바라기센터, 2012)



▶ 성폭력 피해 발생시 조치요령

-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즉시 원스톱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응급조치를 받으세요.
- 부모님이나 가족 등 지지자를 찾으세요.
- 피해 당시 입고 있었던 옷가지 등은 증거물이 될 수 있으니 모아서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하세요.
- 피해 사실 또는 가해자 특징 등을 생각나는대로 모두 기록해두세요.

▶ 가정폭력 피해 발생시 조치요령

폭력 발생 시 피난 경로 미리 확인, 지원받을 수 있는 대피처 미리 확보, 피난시 필요한 물품 등을 믿을만한 친지에게 맡겨두고 집에서 폭행을 당하는 것이 의심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 긴급 전화번호를 알아두고 상담 받아보도록 함.

▶ 학교폭력 피해 발생시 조치요령

-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학급교체 등 전학 등의 조치 받을 수 있음, 가해자, 가해자의 보호자, 학교 등을 상대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 처분 받을 수 있음,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행, 협박 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 받게 됨,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원 등에서 보호 처분을 받음. - 피해 신고 방법 안내
법률/정책/ 제도	-
지원기관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소개 - 목포여성상담센터 - 해남성폭력상담소 - 무안여성상담센터 - 여수성폭력상담소 - 전남성폭력상담소 - 나주늘푸른상담센터 - 담양인권지원상담소 -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소개 - 영암행복한가정상담소 - 무안열린가정상담센터 - 여수여성상담센터 - 순천여성상담센터 - 광양여성상담센터 - 함평열린가정상담센터 - 영광여성상담센터 ▶ 전국의 원스톱, 해바라기 센터 현황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안내 ▶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 여성긴급전화, 헬프콜청소년전화, 어린이보호재단, 중앙노인복지전문기관, 아동여성장애인경찰지원센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국가인권위

	원회 - 아동·여성보호 1319팀 운영: 아동·여성 성범죄 등에 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조사 및 피해자 보호의 동시 수행을 위하여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된 지방청 내 전담반 운영(성범죄 전담 수사팀) -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 무료법률지원 - 기타 무료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가. 만 2세 현장전문가용 아동안전교육 표준 지침서

(실무자용)_2018/99P	
의미/종류/ 특성/체계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내 몸의 소중함, 내 몸의 정확한 명칭,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법, 유괴범에 대한 개념, 유인·유괴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피해 지원/방법/ 예방/역할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내 몸의 소중함, 내 몸의 정확한 명칭,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법, 유괴범에 대한 개념, 유인·유괴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법률/정책/ 제도	-
지원기관	

나. 만 3~5세 현장전문가용 아동안전교육 표준 지침서

(실무자용)_2018/29P	
의미/종류/ 특성/체계	▶ 내 몸의 소중함 (1) 1. 활동명 - (이야기나누기) 나는 소중해요. - (신체) 소중한 알을 보호해요. 2. 목표 나는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안다.
	▶ 내 몸의 소중함 (2) 1. 활동명 - (이야기나누기) 나와 친구 모두 소중해요. - (이야기나누기)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요? - (이야기나누기) 서로 존중해요(예절). 2. 목표 - 나와 다른 사람, 모두의 소중함을 안다. - 나와 다른 사람의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 내 몸의 소중함 (3) 1. 활동명 - (이야기나누기) 우리들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 (역할) 허락받기, 동의/거절하기, 인정하기. 2. 목표 - 자신의 몸으로 하는 일은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 다른 사람의 몸을 접촉할 때(손잡을 때, 어깨동무나 껴안을 때 등)는 허락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함을 안다. - 허락과 동의를 구하는 행동이 거절 당했을 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 내 몸의 정확한 명칭 (1) 1. 활동명

	- (언어) 내 몸에는 이름이 있어요. - (이야기나누기) 나와 친구의 몸이 달라요. - (이야기나누기) 이름도, 생김새도, 하는 일도 달라요. 2. 목표 몸 각 부분의 정확한 명칭을 알고 남자와 여자 몸의 차이를 구분한다. ▶ 내 몸의 정확한 명칭 (2) 1. 활동명 - (이야기나누기) 남자와 여자 모두 할 수 있어요. - (역할) 동화 바꿔보기. 2. 목표 또래 관계에서의 평등한 성역할과 양성평등의식을 기를 수 있다. ▶ 좋은 느낌, 싫은 느낌 (1) 1. 활동명 (신체) 몸짓과 표정 맞추기. 2. 목표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의 차이를 이해한다. ▶ 좋은 느낌, 싫은 느낌 (2) 1. 활동명 - (이야기나누기) 내가 불편할 때는 이야기해요(감정표현하기). - (조작) 이럴 때 내 몸과 마음이 아파요. - (미술) 종이컵 마음등 만들기. 2. 목표 - 내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불편함을 구분한다. - 자신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말로 표현한다.
피해 지원/방법/ 예방/역할	▶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1) 1. 활동명 - (이야기나누기) 느낌과 상관없이 만지거나 보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 (미술) 속옷 그려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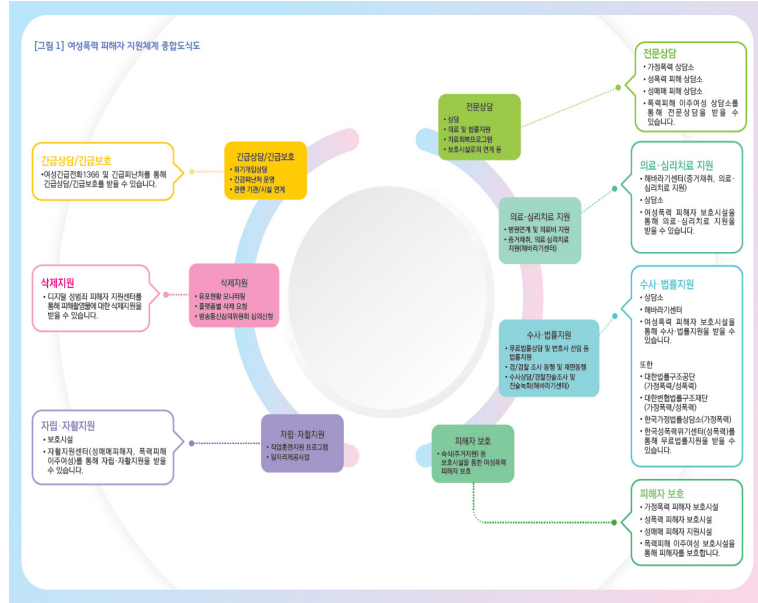
	2. 목표 다른 사람이 내 몸을 만지거나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 ▶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2) 1. 활동명 - (이야기나누기) 좋은 비밀? 나쁜 비밀! - (이야기나누기) 위험한 성폭력 상황을 인식하고 도움청하기. - (게임) 부모님께 알려요. 2. 목표 - 좋은 비밀과 나쁜 비밀을 구분하고 나쁜 비밀은 바로 알려야 함을 안다. - 다른 사람이 내 몸을 만지거나 보여 달라고 하면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 ▶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3) 1. 활동명 - (이야기나누기) 친구와 놀이 할 때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어요. - (미술) 우리 반 약속 가랜더 만들기. 2. 목표 나와 다른 사람의 경계를 알고 존중한다. ▶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4) 1. 활동명 - (이야기나누기) 도와주는 어른 알기(신고의무자). - (미술) 도움 파이 만들기(성폭력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 생각해보기). 2. 목표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다.
법률/정책/ 제도	-
지원기관	

(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합 안내서

(실무자용)_2020/194P	
의미/종류/ 특성/체제	▶ 여성폭력 및 2차 피해의 개념 -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 여성폭력 유형별 정의 -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성폭력: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 - 강간(強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으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입니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피해
지원/방법/
예방/역할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출처: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1. 여성긴급전화 1366: 주요업무, 긴급피난처
2.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매매 피해 상담소
주요 업무, 치료 회복 프로그램, 의료지원, 법률지원 기재.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경우 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사업과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3.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유형 및 특성, 해바라기센터 주요 지원내용(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법률지원, 심리치료 지원, 동행서비스 지원)
4.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시설 주요 지원내용, 보호시설 현황, 보호시설 유형 및 주요 지원내용,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 자활 지원
5. 자활지원센터(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개관, 일자리제공사업(공동작업장, 인턴십 프로그램)
6.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초기상담,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폭력피해 이주

	여성을 위한 의료 법률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폭력 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관련 정보 7.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개념 및 피해 유형의 분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초기상담 안내, '디지털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지원 안내, 디지털 성범죄 및 센터 지원 관련 Q&A
법률/정책/ 제도	▶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기타 관련 제도 및 정보 1. 여성폭력 피해자 공통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2. 가정폭력 피해자 - 등록사항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의 제한 -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 - 가정폭력 피해아동 취학지원 및 비밀전학 제도 - 가정폭력 신고의무 - 수사/공판단계에서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2. 성폭력 피해자 -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의 제한 -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 -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 성폭력 피해 학생의 취학지원 - 수사/공판단계에서의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조치와 신원 및 사생활 보호 3. 성매매 피해자 -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채권) 무효 -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안내 - 성매매피해자등 가족의 취학지원 절차와 비밀보장 - 신고포상금 제도 - 수사/공판단계에서의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조치와 신원 및 사생활 보호

	▶ 자원연계 1. 피해자 임시보호: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경찰청), 피해자 보호시설(안전가옥, 검찰청) 2. 정신건강 상담 및 범죄피해 심리평가: 정신건강복지센터,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 3.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업(검찰청), 긴급복지지원법의 위기 사유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제도’, 피해자 여비 지급 제도 4.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 피해자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비상호출기(위치확인장치) 5. 법률지원: 법률상담 6. 자립 자활지원/창업지원 및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제,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자활근로사업단, 여성 창업 경진대회 7. 주거지원: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급여, 긴급주거지원, 이전비(이사설비) 지원제도 8.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9. 아동, 노인 보호 및 한부모 가정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미혼모부 초기지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 여성폭력 법률
지원기관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연락처 1. 전국 여성긴급전화 1366 2. 상담소(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전국 성폭력 피해 상담소, 전국 성매매 피해 상담소, 전국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3. 전국 해바라기 센터

4) 기관별 아동·청소년 권리 및 옹호 매뉴얼 분석

(1) 굿네이버스

가. 초등 저학년 대상 아동권리교육(CRA)

(교사용)/8P		
아동 권리 교육 목적	아동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교육 목표	- 아동의 권리를 추상적 개념이 아닌 일상생활 속의 권리로 인식하도록 한다. - 인간의 존엄성과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함양을 통해 권리존중 태도 실천을 강화한다. - 아동 주도 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한 아동 참여를 강화한다.	
교육 매체	▶ 영상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영상 내용 요약 -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예시로 보여줌. 주제: 존중, 인권, 아동권리, 우리의 권리)	
교육 구성	아동권리의 이해	▶ 아동 권리 소개 ▶ 아동권리의 종류 이해하기 -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 보호받을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 놀 권리 - 나의 생각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
	유엔아동 권리협약 소개	▶ 유엔아동권리협약 소개(아동권리를 위한 특별한 약속) ▶ 전 세계의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와 어른의 의무 명시
	권리 실천 약속	▶ 아동은 누구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강조 ▶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 모두 지켜주어야 함을 다짐

나. 초등 고학년 대상 아동권리교육(PAPCM) 경계준중 편

(교사용)/9P	
아동 권리 교육 목적	아동이 자신과 타인의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며, 이를 기반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 목표	- 아동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 - 인권 및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갖추어 권리침해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나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고 실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 나와 공동체의 권리증진을 위한 실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 매체	▶ 아동권리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애니메이션 시청 (영상 내용 요약 -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예시로 보여줌. 주제: 물리적 영역, 신체적 영역, 정서적 영역, 나 자신의 경계, 타인의 경계, 타인의 경계를 침범했을 때의 발생하는 상황, 나 자신의 경계를 침범 받았을 때 대처방법)
교육 구성	아동권리 의 이해 ▶ 아동 연령(만 18세) 및 아동 권리 소개 ▶ 아동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아동 권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해
	아동권리 소개 ▶ 아동 권리 설명-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유엔아동 권리협약 소개 ▶ 아동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소개 ▶ 우리나라에도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마무리 ▶ 전 세계 아동이 권리를 가져야 하고 누려야 하는 것 강조 ▶ 나와 친구의 권리는 모두 소중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 강조

(2) 세이브더칠드런: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옹호매뉴얼¹⁵⁸⁾

(아동·청소년용)/94P	
의미	▶ 옹호는 아동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이다. ▶ 옹호란? - 태도, 행동, 그리고 지식을 변화시키는 것 - 정책을 만들거나 변화시키는 것 - 사람들이 행동방식을 변화시키는 것 - 단순한 프로젝트보다 큰 어떤 일을 하는 것 -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 ▶ 창의적인 사고하기 창의적인 사고, 계획, 그리고 문제해결방식을 보여줄 수 있다. ▶ 옹호실천하기 아동 청소년들이 주도한 옹호의 두 가지 예를 살펴보고, 비슷한 특성을 파악한다. 각각의 사례에서 목표, 메시지, 다른 해결책, 목표대상, 파트너, 필요한 자원, 한계점, 결과/성과가 어땠는지 파악 해본다.
활동내용	1. 자기평가 ▶ 활동진행과정 타임라인 만들기 과거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노력을 다시 살펴보고 확인하기 위해 타임라인 도표를 사용한다. ▶ 그것은 옹호였는가? 각자 편한 방식(절차)를 활용하여 자신의 옹호관련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깨닫지 못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옹호가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 ▶ “H”평가 “H”평가는 어떤 프로젝트/그룹/과정의 성과와 한계점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간단한 도구이며, 이는 향후 진행할 프로젝트의 개선을 위해 아이디어를 제공해준다.

158) Save the Children Sweden (2008). One Step Beyond. Advocacy Handbook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2. 목표설정

▶ 목표는 무엇인가?

- 목표는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이어야만 한다.
- 목표는 하룻밤 사이에 금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 보다 더 장기적인 것이어야만 한다.
- 아동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와야만 한다.
- 간단해야 하며 하나 또는 두 문장보다 짧아야 한다.

▶ 헤드라인뉴스

전체를 작은 모듈로 나누어 '뉴스 헤드라인'을 만든다. 몇 년 후 본인들이 읽고 싶은 신문기사로, 성과와 함께 이상적인 미래 모습을 묘사한다.

3. 핵심메시지

▶ 우리의 메시지를 개발하는 것

소모둠에서 메시지 작성의 6가지 요인을 탐색해보고, 더 큰 모듈로 함께 모여 각 모듈이 작성 한 메시지와 입장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낸다.

▶ 30초 역할극

30초 이내에 메시지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짧고 간단하게

소모둠으로 나누어 자신만의 '30초 메시지'를 개발하고, 그 메시지를 연습하여 다시 큰 모듈로 모인다.

그 후 활동 9에서 수행했던 시나리오를 재현해보고 차이점과 비슷한 점을 찾는다.

4. 목표대상 및 청중 파악하기

▶ 목표대상 및 청중 이해하기

목표대상(확신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다.

청중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 밸류라인

주기적으로 밸류라인을 체크하면서, 성과는 있는지, 옹호활동을 시작할 때보다 '동의' 쪽으로 더 가까워진 사람이 있는지 살펴본다.

5. 대상에 맞게 메시지 작성하기

- ▶ 다양한 청중이 섞인 완벽한 역할극을 만들어 연습하기
 - 다른 그룹 및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경험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 ‘맞춤형’ 메시지를 준비할 수 있다.

▶ 미디어 역할극

미디어를 위한 핵심메시지를 준비한다.

미디어 인터뷰를 하는 동안, 우리가 가진 권리를 이해한다.

6. 목표대상 및 청중과 관계 형성하기

- 청중이 선호하는 매체는 무엇인가?
- 현재 이벤트나 활동과정
-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보자.

7. 갖고 있는 자원과 욕구를 파악하고 도식화하기

▶ 우화; 두 마리의 노새

끈에 함께 묶여 있는 두 마리 노새가 그려진 스토리보드를 사용하여 협력의 이점에 대해 알아본다.

▶ 시각적으로 도식화하기

다양한 단체나 커뮤니티그룹 등 각기 다른 수준에서 어떻게 파트너십을 만들어내는지 나타내기 위해 시각적 도식화 활동을 한다.

8. 활동계획 수립

- 첫 번째 단계들을 파악한다.
- 그 다음 단계들을 나타내고 준비한다.
- 우선순위화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9. 현재상황 평가

▶ 변화 이야기

일정간격으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모으고 그룹토의를 통해 이를 해석해보는 활동이다.

▶ 신체지도

사용 전&후 활동을 통해 자신의 참여활동과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유엔 아동권리	▶ 유엔아동폭력보고서 청소년을 포함하여 정부, 지역 기관, 연구자들이 아래 내용을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다. - 범세계적으로 어떤 형태의 폭력이 소년 소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 폭력에 피해를 입는 아동들을 돕는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원인과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비고	▶ 안전과 보호문제 -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 개인적인 경험에 반응 보이기 - 비밀보장 -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는 아이가 있다면? - 어디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지 알기 -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듣기 - 분위기를 바꾸기 - 여러분 스스로를 돌보기

(3) 국제아동인권센터·유니세프한국위원회·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토론회 자료집

(아동·청소년용)_2015/16P	
의미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토론회는? ▶ 한국 아동의 권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요 -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고 존중받고 있는지 - 다른 친구의 권리를 존중하는지 - 아동의 권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활동내용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활동은? 토론주제 선정 - 비차별, 비폭력, 안전·건강, 교육·놀이·여가, 의견존중·참여 중 각 지역 토론회 참가 아동 의 사전 투표로 결정 - 참가 준비 - 스스로 토론회 - 스스로 활동 - 토론회에서 나눈 아동권리 지킴이 방안을 발전시켜 지역 사회에서 실천해보기 - 결과 발표회
아동권리	▶ 유엔아동권리협약 -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 195개 나라가 지키기로 했다. - 아동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담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각 나라에서 아동의 상황을 개선하는 기반이 된다. ▶ 일반원칙 - 비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생명·생존과 발달, 의견 표명과 참여 ▶ 기본권 - 생존권 : 안전한 주거지, 충분한 영양 섭취, 보건 서비스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 보호권 : 학대, 차별, 폭력,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 교육, 놀이,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 생각과 종교의 자유 등 - 참여권 : 의견을 말하고 존중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자유롭게 모일 권리 등 ▶ 유엔아동 권리협약 지키기 - 각 나라 정부는 비준 2년 후에 협약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1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후에는 5년마다 보고해야 한다. - 아동권리 전문가 18인으로 구성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각 나라에서 낸 보고서를 검토한 후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 ‘삶의 질 향상, 정부와 정책, 아동의 참여와 시민의식 증진, 비차별/평등, 시민사회와 지역사회’를 모니터링함.
비고	한국의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사례 ▶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아동들이 공동체의 문제를 인식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민주주의를 체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미래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입법활동 체험의 장 선발된 우수 법률안은 입법 절차 진행(예. 버스 손잡이 높낮이 변화) ▶ 2013 대한민국 아동총회 1. 전국의 아동대표들이 참여하여 아동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 제시 - 비차별 - 생활 속에서 차별(외모, 성적)로부터 보호해주세요. -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 폭력·학대 및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 ‘학교폭력’에 대해 정부는 신속한 조치를 마련해주세요. -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해주세요.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예방 안내 책자(안)

1) 개요

디지털 매체를 매개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은 해마다 더욱 심화되었지만, 한국 사회는 그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급기야 2020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전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비로소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관련한 다양한 입법과 정책이 추진되었다.¹⁵⁹⁾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피해 경험은 물론 종사자가 체감하는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듯,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범죄는 대부분 온라인 상에서 시도되고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을 물색하여 접근한 뒤 그루밍 행위를 통해 사진을 요구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사진을 전송받은 가해자는 사진을 근거로 유포협박한 후, 더 심각한 사진 또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강요한다. 또한, 많은 경우에 이러한 접근은 오프라인의 성폭력, 성매매 범죄 피해로 이어진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예측 가능한 범주를 넘어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기의 특성을 적극 이용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넘나든다.

이러한 현실에서 나타난 가장 커다란 변화는 청소년성보호법상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의 삭제라 할 것이다. 수년간 정부의 반대 및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좌절되었던 법률 개정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전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도 성매매 상황의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재정의하는 성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아동·청소년 대부분 본인의 의지로 신고에 나아간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는 성매매 상황에서 자신 또한 처벌될 것을 우려하거나 성착취 상황이 알려질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주된 요인이었다. 즉,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삭제는 성착취 범죄의 규율을 가해자에게 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을 표명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음성적 상황에서 다시금 범죄에 노출되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기회가 되었다. 개정된 법률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어 곧 법

159) 본 실태조사의 “II.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제 및 정책” 참조.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있다.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삭제 외에도 디지털 환경의 위험성에 주목한 추가적인 법률의 개정도 있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규정과 신분비공개 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특례 규정의 도입이다. 개정이유는 “아동·청소년대상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의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힌다.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착취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사회적 인식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법 규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에서는 법이 개정되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여 과거의 관행대로 아동·청소년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피의자 조사를 하거나,¹⁶⁰⁾ 수사관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알선업자와 합의를 종용하고,¹⁶¹⁾ 함정수사를 통해 발견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매매 광고 혐의로 입건하는 등 법률의 개정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공권력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등 아동·청소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관조차도 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잘 모르고 있어, 여전히 기존의 관점으로 피해아동·청소년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비난과 낙인찍기를 하는 경우가 확인된다.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아동·청소년들에게 자신이 피해자이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지도 인식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현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그로 인한 일상의 회복, 범죄의 예방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디지털 성착취 범죄 예방과 인권적 구제방안을 모색하는 본 연구에 있어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되는 디지털 성착취 예방 안내 책자(안)은 유의미한 시도이다. 특별히 실태조사 전 과정에서 청취된 아동·청소년의 경험을 바

160) 십대여성인권센터 보도자료(2021. 8. 31.),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는 커녕 피의자로 조사하고, 범죄자 취급한 수사기관(수사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 http://www.teen-up.com/load.asp?sub_p=board/board&b_code=1&page=1&idx=3636&board_md=view.

161) 십대여성인권센터 보도자료(2021. 5. 11.)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는 목살하고 범죄 수사조차 하지 않은 수사기관을 고소·고발한다.”, http://www.teen-up.com/load.asp?sub_p=board/board&b_code=1&page=1&idx=3593&board_md=view.

탕으로 디지털 성착취의 정의, 유형 및 사례를 제시하고,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징을 정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성착취 예방 안내 책자(안)을 제안할 것이다. 수단이나 방법을 정형화할 수 없는 디지털 환경을 이용하는 성착취 범죄를 최대한 예방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문제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게끔 안내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는 당사자의 인권의식에서 출발할 때 비로소 권리실현의 맥락에서 실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교육과 정보에 대한 욕구는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에서도 분명하게 표명된 것이다.

다만, 연구의 결과물로 제시하는 디지털 성착취 예방 안내 책자(안)은 꼭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내실 있는 자료로 구성될 수 있도록, 시중에 배포되고 활용되는 관련 자료도 최대한 망라하여 살펴보았다. 관계기관의 기능이 중첩되는 경우 유사한 자료가 재생산되는 것도 필수 정보를 알리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살펴본 매뉴얼은 총 24종으로, 디지털 성폭력 매뉴얼 15개, 여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5개, 아동·청소년 권리 및 옹호 매뉴얼 4개이다. 24개의 매뉴얼을 다음과 같은 분석기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예방 안내 책자(안)의 항목과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한편, 디지털 성착취 예방 안내 책자는 아동·청소년, 보호자, 수사기관, 교육기관, 실무자 등 대상자별로 그 내용을 달리해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아동·청소년 대상 책자(안)이므로, 추후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책자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대상자별 안내 책자 세부항목(안)

○ 아동·청소년용

정의 - 유형 및 사례 - 특징 - 예방수칙 - 피해대처법 - 지원기관 안내

○ 보호자용

정의 - 유형 및 사례 - 예방수칙(2차 피해) - 피해대처법 - 법률 - 지원기관 안내

○ 수사기관용

정의 - 유형 및 사례 - 수사관이 가져야 할 태도(2차 피해) -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행동강령(역할) - 수사방향성 안내 - 법률 - 성착취 징후 아동·청소년 발견하는 법

○ 교육기관용

정의 - 유형 및 사례 - 학교 내에서의 예방수칙(2차 피해) -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행동강령(역할) - 법률 - 지원기관 안내 - 성착취 징후 아동·청소년 발견하는 법

○ 실무자용

정의 - 발생 원인/구조 - 유형 및 사례 - 특징 - 예방수칙 - 피해지원법 - 법률 - 지원기관 안내 - 용어

2) 아동·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성착취 예방 안내책자(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예방 안내책자(안)(이하 “안내책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안내책자는 아동의 연령, 장애 정도, 언어 등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버전(Version)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안내책자에 담아야 할 구체적인 항목 중심으로 제시해 보았다.

- 디지털 성착취 정의
- 디지털 성착취 유형 및 사례
- 디지털 성착취 특징
- 디지털 성착취 예방수칙
-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받았을 때 대응방법
- 디지털 성착취 관련 지원기관 안내

(1) 디지털 성착취 정의

디지털 성착취 정의는 크게 ①이러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 ②성착취, 그리고 ③디지털 환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내용을 구성해 볼 수 있다. 우선 디지털 성착취 정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을 기반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근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성매수범죄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모두 ‘피해자’로 의율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이 죄책감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가정에서 성매수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또 다른 폭력에 노출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듯, ‘아동·청소년의 성을 이용하는 모든 범죄’는 결코 행해져서는 안 될 범죄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

다음으로, ‘성착취’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 성폭력범죄, 성을 사는 행위, 성착취물 등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이용해 이들의 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그 자체로 착취적이라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착취의 정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34조,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2011년 채택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제13호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즉, 성착취 범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아동·청소년을 유인·강요하거나 성적 피해를 주는 ‘모든’ 형태의 범죄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예시)

아동 성매매? X	성매매 상황에 있는 아동 성착취! ○
성매매 아동? X	성매매로 착취된 아동! ○
국제사회가 규정하는 ‘아동 성매매’ = ‘성착취’ 이런 상황이 바로 성적 학대, 성착취예요! ① 불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라고 아동을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② 상업적 목적의 성적 착취에 아동을 이용하는 행위 ③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보여주는 시청각 이미지 제작에 아동을 이용하는 행위	

④ 아동 성매매, 성노예, 여행 및 관광에서의 성착취, 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강제결혼을 위한 국내적·국제적 아동매매, 그 밖에 물리적 힘이나 억압이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리적으로 강제적이고, 착취적이며, 상처를 주는 성적 피해를 주는 행위

마지막으로, ‘디지털 환경’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다. 나날이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이 성착취 범죄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안내되어야 한다. 디지털 환경의 의미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2021년 채택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제25호를 참고할 수 있다. 일반논평 제25호는 성인을 위해 설계된 디지털 환경의 속성을 고려하면서 디지털 환경이 아동에게 제공하는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성착취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 디지털 성착취 유형 및 사례

디지털 성착취 유형 및 사례는 이번 연구의 III.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우선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항목화할 수 있다. 사례의 경우 가출, 아르바이트, 게임, SNS, 채팅애플리케이션, 익명메신저(오픈채팅), 사이버스토킹 등 발생경로 혹은 플랫폼별로 범죄 유형과 연결지어 다양한 사례를 안내하여, 예측 가능한 접근경로를 최대한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 불법촬영 • 제작 • 제작강요 • 유포 • 유포협박 • 유통공유 • 유포불안 • 재유포 • 성착취물 이용 강요	• 그루밍 • 성적 괴롭힘 • 사진합성 등 편집 • 성적이미지 전송 • 개인계정 도용 및 사칭 • 개인정보(인적사항) 유포 • 이용: 소지·구입·저장·시청

(예시)

○ 그루밍, 유포협박, 유포불안

“처음에는 사진이랑 동영상 같은 거를 찍으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얼굴 나오게. 거기서부터 피해자를 붙잡아 놓는 거고. 이제 가면 갈수록 약간 심각한 걸 시켰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피해를 당했거든요. 그게 하루 종일 핸드폰을 못 놓게, 그냥 하루종일 일과를 보고하라는 그런 식으로 했었고. 그러면 밖에 나가거나 어디를 간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밖에 나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라.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리고 가해자는 제가 당하는 피해가 별거 아니라는 듯이, 다른 피해자들 사진을 저한테 보내면서, ‘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 정도면 약한 거라고.’ 이렇게 약간 세뇌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네가 도망가면 이렇게 애네들처럼 뿌릴 거라고, 애네들처럼 사진을 유포할 거라고 협박하면서.” (참여자 1)¹⁶²⁾

(3) 디지털 성착취 특징

안내책자의 목적은 아동·청소년 당사자가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위험을 스스로 알고, 주변 아동·청소년에게도 잘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아동·청소년이 이러한 특성을 인식하고 온전히 이해한다면, 본인이 마주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해 조기에 피해를 예방하거나 더 큰 피해로 나아가기 전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호에 대한 권리는 안전한 사회를 조성해야 할 의무 이행자의 역할과 함께 권리주체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로 실현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은 시공간의 한계를 넘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알고, 개인의 인격을 앗아가는 성착취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162) 본 실태조사 “Ⅲ.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분석,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당사자 조사” 중 일부 발췌.

(예시)

- 밤/낮, 집/학교 등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 인터넷 커뮤니티, SNS를 통해 사진/영상물이 빠르게 퍼져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범죄 인식이 낮아요!
- 디지털 기기 사용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가해자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어요!
- 피해자는 가해자의 악랄한 수법으로 자신이 피해를 받고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온라인 그루밍 등)

(4) 디지털 성착취 예방수칙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한 번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특히 관련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사실상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또래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신체적·심리적·정서적 성숙도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당사자가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예시)

-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기
-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찍거나 보내거나 보지 않기
- 타인의 사진·영상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지 않기
- 타인의 사진·영상을 퍼트리겠다고 위협하지 않기
-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즉시 주변의 어른(성인)에게 알리기
- 촬영, 유포, 협박 등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

(5)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받았을 때 대응방법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만약 피해를 입었을 경우 초기에 잘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차 피해 및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의 의사와 욕구를 고려해 당사자에게 필요하고도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와 잘 연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관계종사자 대상 심층면접조사에 따르면, 보호자가 아동의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발견했을 때 피해아동·청소년 또한 잘못을 했다는 전제로 다그치거나 벌을 주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이 중요한 증거인 애플리케이션이나 채팅방 등을 삭제하거나 참고인 조사에서 피해자로서의 진술을 잘 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 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안내하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아동·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야 한다.

(예시)

- 피해를 받았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
(돈을 받았든, 사진을 보냈든 피해자이고,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 증거자료 모으기!
- 자책하지 말기!

안내책자(안)에 구체적인 상황을 전제로 해결방법을 제시한다면, 내용 전달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예시)

▶ 피해지원 Q&A

- 신고나 상담을 받을 때, 부모님께 말을 해야 하나요?
- 제 몸을 찍은 영상·사진이 인터넷에 퍼졌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 제 일상사진을 이용해서 합성하거나 성희롱하는 경우도 피해인가요?
- 저의 피해촬영물을 누군가 유포할까봐 두려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실시간 협박을 받고 있어요.

▶ 친구가 겪었을 때, 이렇게 도와주세요!

- 피해를 겪은 친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 “네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세요.
- 친구가 겪은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 가해자를 편들지 않습니다.

(답변 예시)

• Q: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을 때, 부모님께 말을 해야 하나요?

- A: 우선 나는 ‘피해자’로서 성착취와 같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선 나의 곁에서 긴밀하게 나를 조력할 사람(성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어렵다면 내가 피해 사실을 처음 이야기한 사람, 혹은 피해자 변호사, 지원기관 상담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처벌되고 내가 받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경찰에서 내가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혼자 참여하지 않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성인과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라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판결).

(6) 디지털 성착취 관련 지원기관 안내

본 연구의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 관계 종사자, 학계 전문가 모두 분절되고 때로는 중복되는 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것은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또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안내책자에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내가 손을 뻗을 수 있는 지원기관과 내용을 되도록 부처를 넘어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현재 부처별로 통합해 지원기관과 내용을 정리한 자료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부처별 부처 별

법률·경제·의료·보호 및 주거지원 관련 피해자 지원 내용은 법무부 자료를 참고할 만 하다.

〈표 VI-1〉 부처별 피해자 지원 내용 (2021년 9월 기준)¹⁶³⁾

	법무부(검찰청)	경찰	여성가족부
법률	- 피해자 국선변호사 - 진술조력인 - 법률구조		무료법률지원 (해바라기센터 종합 상담·지원) (경찰 24시간 배치)
경제	- 범죄피해구조금(사망·중상해시) - 생계비·학자금·장례비 - 취업지원비	강력범죄 현장정리비	돌봄 비용(피해자 자녀 등)
의료	- 치료비 - 심리치료(스마일센터)	- 피해자 전담 경찰관 - 피해자 심리전문요원	- 의료비 - 간병비 - 치료회복 프로그램
보호 · 주거	- 안전가옥(4개)· 임시주거(스마일센터) - 주거지원, 이전비 - 위치확인장치 지급 - 법정 동행 등 증인 지원	- 임시숙소 (449개) - 주거지 순찰·CCTV·번호 등록 - 위치확인장치 지급 - 수사관서 동행 등 진술 지원	주거지원

특히, 불법영상물 등을 삭제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검찰,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이 있고, 관련 민간 기관으로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탁틴내일 등이 있다. 그 밖에 상담 전화번호로는 1366(여성긴급상담전화), 1388(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112(경찰청 범죄신고) 등을 제시할 수 있다.

163) 2021. 10. 6. 법무부 보도자료, “디지털 전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및 첫 번째 권고안 발표, -자문위원 위촉과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ONE-STOP) 지원 권고-”.

(7) 부록

기타 부록으로는 디지털 성착취 관련 용어를 아동·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하고, 청소년성보호법(‘대상아동·청소년’ 규정 삭제, ‘온라인 그루밍’ 규정 및 ‘신분비 공개수사’ 내지 ‘신분위장수사’ 신설 등),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방법, 형법(의제강간 죄 연령 상향 등), 관련 법률의 최신 개정사항을 안내하는 것을 제안한다.

3. 참고자료: 교직원 대상 디지털 성폭력·성매매 예방 통합교육 매뉴얼¹⁶⁴⁾

1) 추진 배경

- ☐ 사이버 성폭력 등 심각한 신종 성범죄가 대두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 및 피해자 지원 체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 필요
- ☐ 디지털 성범죄의 사회 구조적 이해 및 성매매 관련 피해자 우선 관점, 적극적 보호 참여를 위한 인식 고양 필요

2) 추진 목적

- ☐ 신종 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 평등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의식 고양

3) 추진 방침

- ☐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성범죄와 청소년 성매매를 구조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자료의 개발
- ☐ 교직원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성매매 예방 교육 매뉴얼(교원·강사가 바로 활용 가능한 세부 강의안 포함) 개발

4) 개발 자료

- ☐ 강의용 매뉴얼 1종(PPT 파일, 100분 분량)
- ☐ 강사·교원용 상세지도안 1종(Hwp 파일)

164) 2021년 4월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십대여성인권센터에 의뢰하여 교직원 대상 디지털 성폭력·성매매 예방 통합교육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5) 개발 내용

- ☐ 교직원 대상 디지털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 통합교육 매뉴얼 개발
- ☐ 사례를 통해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디지털 매체를 통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 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정보 제공
- ☐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사회·구조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개정된 법률내용 제공
- ☐ 디지털 성착취(성매매 등)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직원의 역할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에 관한 정보 제공
- ☐ 강사·교원이 바로 적용 가능한 매뉴얼 및 세부 강의안 개발
- ☐ 각종 성범죄의 증가는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계기 제공

6) 매뉴얼 내용의 특징

- ☐ 본 교육 매뉴얼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성폭력·성매매) 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초점을 맞춰 내용을 구성함.
- ☐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사회적으로 공론화 된 사건을 통해 연속성 속에서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징과 매개가 되는 디지털 매체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성하였음. 이를 통해 디지털을 매개로 벌어지는 성착취 범죄가 아동·청소년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하도록 하였음.
- ☐ 특히 우리 사회 전체가 경험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일련의 진행과정이 있음을 뚜렷히 알 수 있게 된 바, 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여 온라인 그루밍, 사진/영상 요구, 디지털 스토킹, 사진/영상 유포 협박, 성착취 영상/사진 제작 강요, 성착취 사진/영상 판매, 구매, 소지, 성폭력, 성매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범죄가 일련의 진화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음과 동시에 피해가 심화되는 과정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를 통해 성매매에 유인된 아

동·청소년을 범죄 가담자로 보지 않고 성착취 피해자로 인식하여 피해자적 관점을 분명히 하도록 하였음. 또한 이러한 변화된 인식을 기반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률과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음.

7) 강의용 매뉴얼 PPT 슬라이드 개요

번호	슬라이드제목	개요
1	표지	교직원 대상 성폭력·성매매 예방 통합교육 매뉴얼
2	강사소개	
3	학습목표	Step1. 디지털 매체를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성매매 등) 범죄의 실태에 대한 이해 Step2. 대표적인 디지털 성착취(성매매 등) 범죄인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성매매 피해와의 연속성, 불가분성에 대한 이해 Step3. 교직원으로서 피해 아동·청소년 발생시 대응역량 강화
4	목차	Chapter 1. 디지털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성매매 등) 범죄 사건 일지 Chapter 2. 디지털을 매개로 한 성착취(성매매 등) 범죄의 특징 Chapter 3. 성착취(성매매 등) 유인·알선·조장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sns, 인터넷 개인방송의 특징과 실상 Chapter 4.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성매매 범죄가 가진 연속성 Chapter 5.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개정된 법률 내용과 지원 체계 소개
5	Chapter1. 디지털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성매매 등) 범죄 사건 일지	디지털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성매매 등) 범죄 사건 일지(사회적으로 공론화 된 사건으로만 한정함.) 1. 2014년 김해여고생 살해사건 2. 2015년 관악구 모텔 14세 소녀 살해 사건 3. 2016년 지적장애 아동 하은이 사건: 만 13세 지적 장애 아동 ‘하은이’를 성폭력한 사건을 성매수로 수사하고 형사처벌 받은 성매수자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4. 2017년 성매매 알선된 여중생의 에이즈 감염 사건 5. 2019년 다크웹 성착취 영상 사이트 ‘Welcome to Video’ 운영자 손정우 국제공조 검거 발표 6. 2020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조주빈, 문형욱, 안승진, 이원호 등 검거
6	Chapter2. 디지털을	사례) 만 14세 가영이의 피해 사례

번호	슬라이드제목	개요	
7	매개로 한 성착취(성매매 등) 범죄의 특징	1. 대부분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일어난다. 2. 성폭력과 성매매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 3. 법적 권리 행사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 협박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4. 그루밍 수법 5. 심각한 피해 6. 성범죄자들에게 안전성과 보안성이 더욱 강화되고 다양한 매체들이 융합되고 있는 성착취(성매매 등) 범죄수법	
8	Chapter3. 성착취(성매매 등) 유인·알선·조장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sns, 인터넷 개인방송의 특징과 실상	1. 디지털 매체의 변화 양상	1) 2014년도 이후 스마트폰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9			2) 2017년도 이후 그루밍, 영상요구, 유포 협박 증거 자료
10			3) 최근
11		2.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1) 스마트폰 채팅 어플 내 성매수 제안
12			2)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다른 플랫폼으로의 확산 및 연동
13		3. SNS	1) 페이스북
14			2) 인스타그램
15			3) 트위터
16			4) 틱톡
17		4. 인터넷 개인방송	
18		1.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19		2. 성착취 영상제작 강요의 구체적 형태	
20		3. 사진유포 협박을 통한 성매매 알선 강요 사례	
21		4.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성매매 범죄가 가진 연속성	
22	Chapter4.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성매매 범죄가 가진 연속성	5. 성매매는 성착취이다.	
23		1.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개정된 법률 내용과 지원체계 소개	
24		1.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개정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6			
27			
28			
29			
30			
31	Chapter5.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개정된 법률 내용과 지원체계 소개	1.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개정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33			

번호	슬라이드제목	개요
34		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35		3. 자녀의 성착취 피해 발생시, 양육자의 대처요령
36		4. 교육기관 혹은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상황의 아동·청소년을 눈여겨 봐주세요!
37	Q & A	질의응답
38	마무리	감사합니다

8) 슬라이드 예시

교직원 대상

성폭력·성매매 예방 통합교육 매뉴얼

서울특별시교육청
 심대여성인권센터

학습 목표

Step 1

디지털 매체를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성매매 등) 범죄의 실태에 대한 이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성매매 등) 범죄의 사례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알고,
디지털 성착취(성매매 등)를 아동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이해한다.

Step 2

대표적인 디지털 성착취(성매매 등) 범죄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성매매 피해와의 연속성, 불가분성에 대한 이해
성매매는 성착취임을 분명하게 이해함으로써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바라보고
보호할 수 있도록 관점과 인식을 변화한다.

Step 3

교직원으로서 피해 아동·청소년 발생시 대응역량 강화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 개정된 법률의 내용과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에 대해 이해한다.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직원의 역할을 이해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심대여성인권센터

교직원 대상 성폭력·성매매 예방 통합교육 매뉴얼

목차

- Chapter. 1
디지털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성매매 등)
범죄 사건 일시
- Chapter. 2
디지털을 매개로 한 성착취(성매매 등) 범죄의 특징
- Chapter. 3
성착취(성매매 등) 유인 알선 조작하는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
sns, 인터넷 개인방송의 특징과 실상
- Chapter. 4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과 성매매 범죄가 가진 연속성
- Chapter. 5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 개정된 법률 내용과 지원체계 소개

Chapter. 1

디지털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성매매 등) 범죄 사건 일시 (사회적으로 공론화 된 사건으로만 한정함)

1. 2014년 김해 여고생 살해사건
2. 2015년 관악구 모텔 14세 소녀 살해 사건
3. 2016년 지적장애 아동 하은이 사건 : 만13세 지적 장애 아동 ‘하은이’를
성폭력한 사건을 성매수로 수사하고 형사처벌 받은 성매수자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4. 2017년 성매매 알선된 여중생의 에이즈 감염 사건
5. 2019년 다크웹 성착취 영상 사이트 ‘Welcome to Video’ 운영자 손정우
국제공조 검거 발표
6.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조주빈, 문형욱, 안승진, 이원호 등 검거

서울특별시교육청
 심대여성인권센터

Chapter. 2 디지털을 매개로 한 성착취(성매매 등) 범죄의 특징 1. 대부분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일어난다. 2. 성폭력과 성매매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 3. 법적 권리 행사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 협박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4. 그루밍 수법 5. 심각한 피해 6. 성범죄자들에게 안전성과 보안성이 더욱 강화되고 다양한 매체들이 융합되고 있는 성착취(성매매 등) 범죄수법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성인상담센터 사이버성인상담센터 성폭력·성매매 예방 통합교육 메뉴얼 7	Chapter. 3 성착취(성매매 등) 유인·알선·조장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SNS, 인터넷 개인방송의 특징과 실상 1. 디지털 매체의 변화 양상 •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아동·청소년의 유형에 큰 변화. 가솔 아동·청소년 →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모든 아동·청소년 • 채팅 어플은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가 없고, 임의로 성별과 나이만 입력하면 사용이 가능, 실제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발생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음. • 대화조차 상대방이 채팅방을 나갈 경우, 삭제되는데 이러한 대화의 휘발성은 범죄에 악용되고 성매수자가 증거를 남기지 않는 유리한 상태가 됨.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성인상담센터 사이버성인상담센터 성폭력·성매매 예방 통합교육 메뉴얼 8
Chapter. 4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과 성매매 범죄가 가진 연속성 4.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과 성매매 범죄가 가진 연속성 온라인 그루밍 ↓ 사진요구, 유로 협박 더 심각한 영상을 찍도록 강요 웹하드, SNS 등을 통해 공유, 판매 등 → 범죄의 진화 과정 ↓ 사진, 영상을 근거로 성폭행/성매매 알선 강요 → 피해의 심화 과정 1)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이렇듯 동일 선상에서 심화 발전되는 범죄이다. 피해자가 성매매에 이용되기까지는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 아동·청소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성인 여성도 그 대상이 되고 있으며 동일한 과정을 거쳐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다. 여기서 성매매와 성폭력은 분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성폭력 상황에서 성매매 알선을 당하기도 하고, 성매매 알선 강요 상황에서 성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성인상담센터 사이버성인상담센터 성폭력·성매매 예방 통합교육 메뉴얼 26	Chapter. 5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 개정된 법률 내용과 지원체계 소개 1. n번방 이후 개정된 법률 • 아동·청소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020. 11. 20. 시행령) 가. 피해아동·청소년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6호) 나. 대상아동·청소년의 정의 규정과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2조제7호, 제39조 및 제40조 삭제) 다.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제13조제3항 신설) 라.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함(제20조제3항제1호) 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여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교육·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제38조) 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정·군수·구청장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 신설) 사. 동쪽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함(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성인상담센터 사이버성인상담센터 성폭력·성매매 예방 통합교육 메뉴얼 31

참고문헌

- 강정은·김희진(2019), “아동인권 관점에서 바라본 국내 아동 성착취 제도 개선 과제”, 『이화젠더법학』 제11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고명수(2020), “인터넷을 통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수요(소지·시청) 규제에 관한 연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개정을 중심으로”, 『법제』 vol.690, 법제처.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19. 9. 9.), “국회 계류 중인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4511&menuid=001004002001>.
- 굿네이버스, 「초등 저학년 대상 아동권리교육(CRA)」.
- _____, 「초등 고학년 대상 아동권리교육(PAPCM) 경계존중 편」.
- 권미경(2018),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제10권 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김경희·김수아·김은경(2020), “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다면적 이해와 정책 시사점”,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김두상(201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합리적 규제와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3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_____(2019),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성진(2013), “미국에서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 아동음란물의 규제입법 및 인터넷상 함정수사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15집 제1호, 중앙법학회.
- 김성현·석희진·김리원·이은정·서연주·이수정(2019), “온라인 기반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 국내 및 국외 현행법·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제14권 제4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 김애라(2020), “디지털 ‘매개성’을 고려한 젠더폭력 가피해 범주의 재설정 필요성”,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 모색 라운드 테이블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연수·정준섭(2018),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부대책과 개선방안”,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3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김영지·김희진·이민희·김진호(2019),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정연(2019), “성폭력범죄 판결에서 나타난 ‘그루밍’성범죄의 피해특성과 관련 개정 법률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피해자학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 김지영·항지태·최수형·김현아(2018), 「2018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여성가족부.
- 김택수(2020), “2000년 이후 프랑스 형법전 개정의 동향”,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4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김한균(2017), “사이버성범죄·디지털성범죄 실태와 형사정책”,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_____(2019), “아동·청소년 성보호 실질화를 위한 의제강간죄, 16세미만 간음죄 및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개정”, 『민주법학』 제71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김한균·이정민(2018),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불법영상물 유통 차단 및 제재 강화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김혁(2017), “아동·청소년 성매매 현황과 대응방안”, 『형사정책』 제29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 김혜진(2020), “디지털 아동 성착취 대응현황과 해외 인공지능 범죄 예측 시스템 비교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7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_____(2020), “해외 사례를 통해 본 국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피해 지원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미국, 영국, 호주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10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김희정·박광민(2020).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유형·실태 및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제32권 제4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아동·청소년 교사 및 보호자를 위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 대응 가이드」, 2020.
- 독일연방범죄수사청, https://www.bka.de/DE/UnsereAufgaben/Aufgabenbereiche/Zentralstellen/Kinderpornografie/kinderpornografie_node.html.

대검찰청 정보자료>통계자료>범죄분석 <https://www.spo.go.kr/site/spo/crimeAnalysis.do#n>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2020),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및 연계 매뉴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_____ (2020), 「2020 사전 모니터링 분석보고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d4u.stop.or.kr/>

박광선(2016), “랜덤채팅의 음란정보 유통 실태 및 정책대안의 탐색”, 『경찰학연구』 제16권 제4호, 경찰대학.

박다온·이관희(2020),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CSEM)의 실태와 대응 방향에 관한 소고- 국제적 동향과 국내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제15권 제3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박찬걸(2016),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소년정책학회.

_____ (2017), “랜덤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소년보호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소년정책학회.

박현정(2020), “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에 관한 처벌규정의 비교법적 고찰- 성폭력 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4호,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무부 보도자료(2021. 10. 28.), “신속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을 위한 ‘응급조치’ 신설” 권고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제2차 권고 발표-.

_____ (2021. 10. 6.), “디지털 전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및 첫 번째 권고안 발표, -자문위원 위촉과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ONE-STOP) 지원 권고-”.

변길희(2018),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따른 정책 방향 모색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8권 제3호,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세이브더칠드런(2015),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토론회」.

_____,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옹호매뉴얼」.

- 손휘택·김은기(2017),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의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69호, 한국공안행정학회.
- 신상현(2020),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잠입수사관 제도의 도입방안 - 최근 개정된 독일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고려법학』 제97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신현주·오세연(2020),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잠재적 성 착취 과정 분석과 정책 과제”, 『한국범죄정보연구』 제6권 제2호,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 십대여성인권센터(2020),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북」.
- 십대여성인권센터 보도자료(2021. 5. 11.),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는 목살하고 범죄 수사조차 하지 않은 수사기관을 고소·고발한다.”, http://www.teen-up.com/load.asp?sub_p=board/board&b_code=1&page=1&idx=3593&board_md=view.
- _____ (2021. 8. 31.),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는커녕 피의자로 조사하고, 범죄자 취급한 수사기관(수사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 http://www.teen-up.com/load.asp?sub_p=board/board&b_code=1&page=1&idx=3636&board_md=view.
- 안갑철(2021), “불법 성적 촬영물 구매행위 처벌규정에 관한 위헌성 검토”, 『인권과정의 통권』 495호, 대한변호사협회.
- 안경옥(2020), “독일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의 검토 및 우리 형법예의 시사점”, 『경희법학』 제55권 제4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안양나눔여성회(2020),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인식개선 콘텐츠[아동청소년 활용 워크북]」.
- _____ (2020),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성인교육]」.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9), 「성매매 근절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국외 우수 정책사례집」.
- 여성가족부(2020), 「아동·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 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 여성가족부(2021. 3. 16.), “2020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2019년의 1.7배”,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2020. 5. 21.),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 결과 발표,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8312.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8. 4. 26.),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제 국가가 도와드립니다”.
- _____ (2018. 10. 17.),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 점검체계 여성가족부장관 주재로 격상”.
- _____ (2019. 2. 7.),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성매매·성착취 집중단속”.
- _____ (2019. 11. 11.), “4개 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해 협력 강화한다”.
- _____ (2019. 12. 30.),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 월평균 삭제지원 건수 지난해보다 2배 ↑”.
- _____ (2020. 3. 18.),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91.4%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을 통해 이뤄져”.
- _____ (2020. 4. 23.), “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 _____ (2020. 6.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청소년 사이버 상담 강화 예산 증액”.
- _____ (2020. 12. 11.),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7개소 운영”.
-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7. 9. 27.),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 _____ (2021. 2. 25.),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종합지원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 본격 운영”.
- 여성가족부 정책뉴스 (2021. 4. 1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결과,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479>.
- 여성신문(2020. 5. 27.), “디지털 성범죄, 초기 대응이 핵심... 망설이지 말고 도움 청하세요”,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414>.
- _____ (2021. 10. 22.), “[국감] ‘신종’ 메타버스 10대 성착취 피해 잇따라... 텔레그램 사건과 유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938>.

- 오세연·신현주(2019),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제14권 제4호, 경찰학연구소.
- _____ (2020),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실태 및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제6권 제1호,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 오향숙(2015), “일본의 아동포르노 소지구제에 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28호, 한국소년정책학회.
- 온서울세이프(2020), 「디지털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길잡이용]」.
- _____ (2020), 「디지털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청소년용]」.
- 우리말샘,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우리말 사전, <https://opendict.korean.go.kr/main?target=pc&view=main>.
- 원혜옥·홍민지(2020), “온라인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 유엔사무총장(2020), 「코로나 19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보고서」(Policy Brief: The Impact of COVID-19 on children), <https://www.unicef.or.kr/upload/120/118616/Policy%20Brief%20on%20COVID%20impact%20on%20Children,%2016%20April%202020.pdf>.
-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03),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일반논평 제5호, CRC/GC/2003/5.
- 윤지영(2020),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법제 개선 방안 - 온라인 수색과 잠입 수사 법제화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32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 이수정 외 7인(2019),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체계분석과 법·제도적 대응방안」,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이은영(2019), “비동의 성적촬영물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5권 제4호, 한국범죄심리학회.
- 이재상·장영민·강동범(2021), 『형법각론』, 박영사.
- 이재영·김용균(2019),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루밍 성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과학회지』 제8권 제4호, 한국융합과학회.
- 이정민·김승원·김승혜·민지윤·배민경·이수정(202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현황 및 플랫폼 규제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Vol. 31, No. 2, 한국교정학회.

- 이지수·이연주·김기범(2019), “모바일 메신저에서 디지털성착취물 시청행위 포렌식 방안”, 『경찰학연구』 제20권 제4호, 경찰대학.
-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2015), 「피해자 지원에 관한 안내서, 성폭력 없는 세상 관심이 희망입니다」.
- 장다혜·김수아(2018),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명선(2017), “성평등 입법과제의 현황”, 『페미니즘 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여성연구소.
- _____(2018),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제10권 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전남동부해바라기센터(2012), 「전남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 정현미 외 5인(2016),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전윤정·최진웅(2019), “다크웹상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규제 현황 및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1636호, 국회입법조사처.
- 전윤정(2020),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제도개선 현황 및 과제”, NARS 현안분석 제161호, 국회입법조사처.
- 정익중·김현숙·이현숙·김시아·석희진(2020), 『아동 디지털성범죄 전문영향평가』, 아동권리보장원.
- 조진경·김진·김현아·박혜란(2017), 「해외의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채윤호·김휘강(2020), “디지털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시스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제14권 제4호,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 천성덕·강구민(2020),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한 온라인 음란물 최초 유포자 확인 연구- 클라우드,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제33권 제2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최소윤·한민경(2020), “‘사이버 음란물’에서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범죄학』 제14권 제2호, 대한범죄학회.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2018), 「만 2세 현장전문가용 아동안전교육 표준 지침서」.
- _____(2018), 「만 3~5세 현장전문가용 아동안전교육 표준 지침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2017),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_____(2018),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을 위한 기본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0), 「디지털 성범죄 예방 E-BOOK[청소년용/초등학생용]」.
 _____(2019),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디지털 성폭력 바로보기」.
 _____(2019),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안내서」.
 _____(2020),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합 안내서」.
 _____(2020/2021), 「위기대응 모니터링 ISSUE BRIEF」.
 한숙희·정희진·조아미(2020),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 판례분석”, 『청소년문화포럼』 통권62호, (사)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함영옥·임종인(2020),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실태 분석 및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경찰연구학회.
 허경미(2017), “섹스팅과 리벤지 포르노의 범죄화 및 처벌법 쟁점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4호, 한국경찰연구학회.
 홍태석(2020), “딥페이크 이용 아동성착취물 제작자의 형사책임 - 일본의 판례 및 논의 검토를 통하여”, 『디지털포렌식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Australian Centre to Counter Child Exploitation, 「Blueprint 2019-2021」.
https://www.accce.gov.au/sites/default/files/2020-12/ACCCE%20Blueprint%202019-2021_online.pdf.

Australian Communication and Media Authority, eSafety Commissioner, Annual Reports 2019-20. <https://www.esafety.gov.au/sites/default/files/2020-10/ACMA%20and%20eSafety%20annual%20report%202019-20.pdf>.

Berliner Morgenpost(2020. 3. 23.), “BKA: Verbreitung von Kinderpornos nimmt laut BKA dramatisch zu”, <https://www.morgenpost.de/vermischtes/article228756051/Kinderpornografie-BKA-verzeichnete-2019-deutlich-mehr-Faelle.html>.

Bonetti, L., Campbell, M. A., & Gilmore, L.(2010), The relationship of

- loneliness and social anxiety with children's and adolescents' online communication,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3(3), 279-285. P3C3VZJP3BUTIL01F.html.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2019),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CRC/C/156, para. 55.
-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3(3), 279-285, Internet Watch Foundation, The Annual Report 2020. <https://annualreport2020.iwf.org.uk/>.
- David Ingram, Olivia Solon, Brandy Zadrozny and Cyrus Farivar, "The Facebook Papers: Documents reveal internal fury and dissent over site's policies", NBC News, Oct. 25, 2021, <https://www.nbcnews.com/tech/tech-news/facebook-whistleblower-documents-detail-deep-look-facebook-rcna3580>.
- Der Tagesspiegel(2020. 6. 29.), "Mehr als 30.000 Verdächtige im Pädophilen-Fall Bergisch Gladbach", <https://www.tagesspiegel.de/gesellschaft/neue-dimension-des-tatgeschehens-mehr-als-30-000-verdaechtige-im-paedophilen-fall-bergisch-gladbach/25959292.html>.
- Directive 2011/9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2011 on combating the sexual abuse an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child pornography, and replacing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4/68/JHA,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1L0093>.
- Ecpat(2018), 『Country Overview: South Korea』.
- Endern, Sexueller Missbrauch von Kindern ohne Einwirken auf ein Kind – Zur Versuchsstrafbarkeit des Cybergroomings, NJW 2020, S.1033; Kriminal politischer Kreis, Stellungnahmen zur Einführung einer Versuchsstrafbarkeit für Cybergrooming, Februar 2019.

Euronews(2020. 6. 30.), “NRW: Pädophilen-Netzwerk mit wohl 30.000 Mitgliedern von Chatgruppe entdeckt”, <https://de.euronews.com/2020/06/29/nrw-padophilen-netwerk-mit-moglicherweise-30-000-verdachtigen-entdeckt>.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EU Strategy for a more effective fight against child sexual abuse.

<https://kripoz.de/Kategorie/gesetzentwuerfe/cybergrooming-gesetzentwuerfe/>.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8A00096>, 2021. 10. 27.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9A00072>, 2021. 10. 27.

https://www.npa.go.jp/policy_area/no_cp/effort/masterplan.html.

https://www.npa.go.jp/policy_area/no_cp/uploads/kodo-monoseihigair3.pdf.

Internet Watch Foundation, 「The Annual Report 2020」, <https://annualreport2020.iwf.org.uk/>

Kriminal poltischer Kreis, Stellungnahmen zur Einführung einer Versuchsstrafbarkeit für Cybergrooming, Februar(2019); Endern, Sexueller Missbrauch von Kindern ohne Einwirken auf ein Kind – Zur Versuchsstrafbarkeit des Cybergroomings, NJW 2020,1033.

NEWSポストセブン(2017. 10. 22.), “Twitterから追い出された児童ポルノ業者、地下に潜る”, https://www.news-postseven.com/archives/20171022_622878.html?DETAIL.

Tagesschau(2021. 5. 3.), “Schlag gegen Kinderpornografie-Plattform”, <https://www.tagesschau.de/inland/kinderpornografie-boystown-zit-101.html>.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an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https://www.ohchr.org/EN/Issues/Children/Pages/ChildrenIndex.aspx>.
「児童の性的搾取等に係る対策に関する業務の基本方針について」(平成28年3月29日付
閣議決定).
日本 警察庁, 令和2年版 警察白書,
朝日新聞(2021. 3. 11.), “子どものSNS被害、1819人・児童ポルノは597人”
<https://www.asahi.com/articles/A>.

[별첨 1] 아동·청소년 면접조사 조사지

〈공통질문〉

구분	세부 내용
기본사항	나이, 성별, 거주지역
디지털 성착취 범죄 인식	디지털 성착취 범죄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답변을 바탕으로)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나요?
처벌과 피해구제, 예방	디지털 성착취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적 경험, 인식하는 정도 모두 포함)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나를 잘 이해한다고 느꼈나요? 특별히 좋은 선생님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좋았는지도 이야기해 주세요.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필요한 지원과 도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교육 모두)

〈대상별 질문: 아동·청소년〉

구분	세부 내용
피해 현황	나에게 발생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유형, 피해 내용) 어떤 경로로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가 발생했나요? (오프라인/온라인 모두 포함, 온라인의 경우 유입경로가 된 매체 질의) 가장 무섭거나 불안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수사 및 재판	수사기관의 사건 인지 경위 경찰/검찰은 어떻게 이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나요?

		나에게 발생한 피해가 ‘어떤 범죄’인지 경찰한테 잘 안내받았나요? 수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은 잘 제공되었나요? 범죄 발생과 수사 과정을 보호자가 모를 때, 변호사나 선생님같이 도와줄 성인 조력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수사 과정에서 보호자의 알 권리	경찰/검찰이 나에게 발생한 범죄를 수사하기 전에, 보호자에게 연락했나요? 연락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알 권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나에게 잘 설명되었나요? 설명해 준 사람/기관은 누구입니까?
	재판 과정에서 보호자의 알 권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보호자에게 잘 설명되었나요? 설명해 준 사람/기관은 누구입니까?
	2차 피해 경험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했던 점이 있나요? 있다면, 그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비밀보장 포함)
피해자 지원체계	아동·청소년의 정보접근권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일상을 잘 회복하기 위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 기관(심리 전문기관, 수사 및 법률지원 기관, 삭제 전문기관, 기타 기관 포함)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인터넷 검색, 지인의 권유, 수사기관 소개 등)

		(내가 직접 찾아봤을 경우) 단어나 표현 등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나요? (누군가 알려줬을 경우) 그 정보는 나에게 직접 안 내되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존중되었나요?
	보호자의 알 권리	보호자가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의 문제를 알고, 나(손자녀 등 동거가족 포함)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있었나요? 그 정보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보호자에 대한 별도의 상담이 제공되었나요?
	피해회복과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피해회복 전 과정에서 비밀은 잘 보장되었나요? 어떤 기관과 연계되어 도움을 받았나요? 기관이 제공한 지원 프로그램(심리상담, 법률상담, 학업지원, 의료지원 등)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무슨 내용이었나요? 지원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나요? 지원 프로그램 중 아쉬운 점은 있었나요? 있었다면, 그 내용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착취 범죄 피해 구제를 위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나요?

[별첨 2] 종사자 면접조사 조사지

〈공통질문〉

기본사항	나이, 성별, 근무지역, 관련업무 수행 경력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 인식	디지털 성착취 범죄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답변을 바탕으로)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나요.
피해 현황	주로 접하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는 어떤 내용인가요. (유형, 피해 내용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는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발생하나요.[오프라인·온라인 모두 포함, 온라인의 경우 유입경로가 된 매체, 최근 신설된 청소년정보보호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온라인 그루밍’ 등]
처벌과 피해구제	디지털 성착취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필요한 지원과 도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교육·훈련 현황 (전문성)	귀 기관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나요. 그 교육의 방식과 내용은 어떠한가요. 귀 기관은 성착취 범죄의 특수성에 관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나요. 그 교육의 방식과 내용은 어떠한가요.
유관기관 협력 현황과 한계	협력하는 유관기관은 어떤 곳이 있나요.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나요. 더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어떠한 점이 개선되어야 할까요. (한계 등)

〈대상별 질문: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

수사 및 재판	수사기관의 사건 인지 경위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나요. 수사 중 피해자에게 범죄에 대해 어떻게 안내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전과 비교해 피해자에 대한 안내 방법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보호자와의 관계	범죄 수사·재판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반드시 연락하시나요.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연락할 보호자가 없을 경우, 또는 보호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이럴 경우 피해자에게는 어떤 조력이 필요할까요.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알 권리	수사 및 재판 진행과 판결에 대해 피해자에게 주로 어떻게 안내하나요. 안내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수사 ¹⁶⁵⁾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전과 비교해 수사 방법이 달라졌나요. 달라졌다면 어떻게 달라졌나요. 수사 과정에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필요성을 인식한 적이 있나요. 실효성 있는 신분비공개수사 내지 신분위장수사가 진행되려면 현재 제도에서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가 처벌(피해 구제)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요.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어려움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나요. (아동에 대한 이해, 디지털성착취 범죄에 대한 이해, 가해자 특성의 어려움, 피해자 신변보호 등)

	2차 피해 관련 대응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피해자 지원체계	아동·청소년의 정보접근권	수사 및 재판 이후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안내를 하나요. 관련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하나요. 한다면 어떤 기관 및 프로그램을 어떻게 전달하나요.
	피해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피해회복 전 과정에서 비밀은 잘 보장되나요. 어떤 기관과 연계하여 도움을 제공하나요. 지원 프로그램 중 아쉬운 점은 있었나요. 있었다면, 그 내용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피해자지원체계에서 성착취 범죄 피해회복(구제)과 사회복귀를 위해 더 보완되어야 할 점, 필요한 지원, 지원하는 데에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대상별 질문: 현장지원기관 및 시민단체〉

수사 및 재판	사건 인지 경위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나요.
	지원 현황	귀 기관에서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는 어떤 지원이 제공되나요. 현재 제공되는 지원 외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보호자와의 관계	범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호자와는 어떤 내용으로 연락을 주고 받나요.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연락할 보호자가 없을 경우, 또는 보호자를 알기

165) 변호사, 판사의 경우 적절히 변형하여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적용 상황을 질의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이럴 경우 피해자에게는 어떤 조력이 필요할까요.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알 권리	수사 및 재판의 진행, 판결 및 이후 과정에 대해 피해자에게 어떻게 설명을 제공하나요.
	수사 과정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과는 어떻게 소통하나요. 수사기관과의 소통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재판 과정	재판 과정에서 지원기관으로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차 피해 관련 대응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 나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기관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나요.
피해자 지원체계	아동·청소년의 정보접근권	수사 및 재판 이후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안내를 하나요.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피해자에게는 어떻게 안내하나요.
	피해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피해자에게 해당 기관 외 어떤 기관과 연계하여 도움을 제공하나요. 해당 기관에서는 피해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나요. (내용과 방법, 다른 지원기관과의 차별점 등) 현재 피해자지원체계에서 성착취 범죄 피해회복(구제)과 사회복귀를 위해 더 보완되어야 할 점, 필요한 지원, 지원하는 데에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별첨 3] 학계 면접조사 조사지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개념 및 특성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 포섭범위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까요?

2.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파악하십니까?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현황

1. 인터넷 환경의 발전 및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더불어 SNS 등을 통한 초고속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 현실은 종래 우리사회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성폭력들을 출현시키고 있으며, 그 대상이 저연령 아동·청소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현황의 심각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2. 성폭력이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진화되는 양상은 이른바 n번방 사건 등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적 착취를 당한 피해자 중에 저연령의 아동·청소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고, 가해자들은 성착취물을 유료화하여 범죄수익을 창출하였을 뿐 아니라 다수가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수행함으로써 마치 기업과도 같이 움직였던 것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 후 디지털 성착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커졌고, 제도적 대응책이 다각도로 마련되기도 하였는데, 근래에 최근 법개정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디지털 성착취로 개념지을 수 있는 다양한 범죄들 중에서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관련하여 특히 더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유형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의 피해실태를 고려하건대 정책적으로 더욱 초점을 두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디지털 성착취 유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3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대응 법제에 대한 평가

1. 디지털 성착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법제가 계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이 개정되었는데,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현행 법제의 실효성을 대략적으로 평가하신다면 어떠한 의견이십니까?

2.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을 보여주었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하는 경우의 법정형을 상향하였으며,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은 종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로 표현되던 용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의 형량을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소개하거나 구입·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 온라인 그루밍의 처벌과 관련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은 성착취 범죄의 예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의 정당성 및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루밍처벌규정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잠입수사 특례규정과 관련하여,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온라인 사이트나 SNS 등을 이용하여 아동성착취물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적발 및 수사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 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의 정당성 및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의 처벌

1. 디지털 성착취 범죄 가해자에 대한 현행의 처벌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디지털 성폭력은 대체로 전통적인 성폭력에 비해 가해자의 연령이 낮으며, 심각한 죄의식 및 가해인식 없이 행해지는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엄중한 처벌을 넘어서는 새로운 예방 전략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요.

5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1.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과 도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요.

2.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수사·재판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3. 디지털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피해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보완되어야 할 법제도·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오.

4.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에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오.

6

기타

1. 그 밖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대응 법제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오.

※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의견은 아동·청소년 인권의 보장 및 디지털 성착취 관련제도 개선을 위해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별첨 4] 관계부처 담당자 조사지

경찰청

1. 현행법상 정의 가능한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 범죄란 무엇입니까? 한계가 있다면, 어떻게 개정할 수 있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고)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기소 비율은 어떠하며, 경향성은 어떠합니까?

3.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에 대한 각 지방 경찰청(사이버수사 담당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 담당) 및 지역경찰서의 업무 분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와 관련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4.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전담수사관의 소속과 업무 등 인력 현황은 어떠합니까?

5.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 피해자 관련 지역별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연계기관 목록, 매뉴얼 등)

6.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아동권리(아동학대 관련 교육은 제외) 및 성착취 범죄의 특수성에 관한 교육은 어떻게 제공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

1. 현행법상 정의 가능한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 범죄란 무엇입니까? 한계가 있다면, 어떻게 개정할 수 있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고)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적 착취”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유입경로와 피해의 경향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온라인 접근성 피해아동·청소년 연령,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3. 2021. 6. 9. 시행된 청소년성보호법 제53조의2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실시할 계획입니까? (주기, 대상, 방법 등)

4.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제47조의2)의 현황(예산, 인력, 지역 분포 등 포함)은 어떠하며, 피해자 지원 현황은 어떠합니까?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유관기관(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수사기관, 피해자변호사)과의 협력 방법과 그 내용은 어떠합니까? 소통과 협력이 어렵다면 개선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6.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 등) 도입 당시, 그때 여전히 남아있는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을 보완하는 법무부의 의견표명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8조의2가 적용되고 그에 따라 처벌되는 실태가 어떠합니까?

7.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계기관 종사자에 대한 아동권리(아동학대 관련 교육은 제외) 및 성착취 범죄의 특수성에 관한 교육은 어떻게 제공되고 있습니까?

교육대상 기관

교육 제공기관 또는 전문가

교육의 내용과 주기

법무부

1. 현행법상 정의 가능한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 범죄란 무엇입니까? 한계가 있다면, 어떻게 개정할 수 있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고)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아동학대,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국선 피해자변호사의 각 지역별 현황은 어떠합니까? (전담/비전담 구분)

2-1. 국선 피해자변호사 선정 방법 및 선정 요건

2-2. 국선 피해자변호사에 대한 아동권리교육(아동학대 관련 교육 제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교육 제공 여부, 주기와 횟수

3. 피해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피해 관련 전담검사의 각 지역별 현황은 어떠합니까?

4. 아동사법제도 관련 종사자 대상 아동권리교육(아동학대 관련 교육 제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교육이 의무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1) 검사

2) 보호관찰관

3)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종사자

4) 꿈드림센터 종사자

교육부

1.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성범죄, 성매매, 성폭력)’에 대한 교육이 의무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있다면 부처 단위의 교육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공통의 교육안이 있다면 그 내용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성범죄, 성매매, 성폭력)’에 대한 교육이 의무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있다면 부처 단위의 교육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공통의 교육안이 있다면 그 내용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학교 상담복지 지원체계와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체계는 어떻게 연계되고 협력하고 있습니까? (매뉴얼 여부, 소통경로 등)

4. 학생위기상담종합지원센터 위(Wee) 클래스를 통해 성착취 피해 사례가 신고되는 현황은 어떠하며, 그 운영 및 실태가 모니터링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

1.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마련한 시책(정보통신망법 제41조 등)은 무엇이 있습니까?
2.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에 대한 처리명령(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에 명령 현황은 어떠한가요? (건수, 구체적인 명령 내용 등)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서,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 제1호 이용 현황은 어떠한가요?
4. 피해자는 어떤 방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정보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으며, 불법정보 중 디지털 성착취 범죄로서 차단이 이루어지는 현황은 어떠한가요?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유관기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수사기관 등)과의 협력 방법과 그 내용은 어떠한가요? 소통과 협력이 어렵다면 개선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보건복지부

1. 아동학대 사례에서 성착취 범죄가 확인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담당팀은 어떻게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2. 시설보호아동에게 성착취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전문화된 서비스가 연계 됩니까? 연계되는 서비스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3.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 보호체계와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체계는 어떻게 연계되고 있습니까? (매뉴얼 여부, 유관기관 공통 교육 등)

공통질문

1.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법제 및 정책제언의 실효성과 정당성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 각 부처가 디지털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실효적인 권리 구제 및 인권 보장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법·제도·정책이 있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중심으로-

인 쇄 일 | 2021년 12월 31일

발 행 일 | 2021년 12월 31일

발 행 처 | 국가인권위원회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문의전화 | 아동·청소년인권과 (02) 2125-9646

F A X | (02) 2125-0929

E-mail | research@humanrights.go.kr

제 작 | 경성문화사 02-786-2999

ISBN : 978-89-6114-860-3 93330 비매품

